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76-10

釜山史料叢書 20

國譯 通信使謄錄(I)

(1641. 10 ~ 1656. 5)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解題 金東哲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 8.



일러두기

- 이 책은 현존하는 통신사등록 14책(1641년, 인조 19년 ~ 1811년, 순조 11년)과 통신사초등록 1책 중 통신사등록 제1책과 제2책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조선후기 일본의 통신사 파견요청, 통신사절목, 통신 3사(정사, 부사, 종사관) 자료와 왜선의 출래, 차왜의 출래, 안위관 파견, 차비역관의 출래, 문위역관의 파견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통신사등록의 국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하되, 외교 및 무역 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이 책은 조선후기 공용문서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국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 표기와 다른 경우는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문대로 살렸다. 다만 필사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日本 人名과 地名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 측의 表音이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 표기하였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I) (1641. 10 ~ 1656. 5)

차 례

- 일러두기
- 차 례
- 국역 통신사등록(I) 해제

제 1 책

■ 신사(辛巳, 1641년, 인조 19년)

- 10월 14일 日本 關白 生子 致賀次 通信使 파견 요청 4
- 10월 26일 日本 關白 生子 致賀 通信使 파견에 대한 논의 50

■ 임오(壬午, 1642년, 인조 20년)

- 1월 11일 關白生子傳告差倭 나옴에 대비하여 按慰官과 差備譯官 差定 5
 - 차왜에 대한 3度宴 貯給 禮單物目
 - 안위관 일행의 騎卜時 準備
 - 역관 贈給禮物 마련
- 1월 27일 대마도에 대한 回答書契와 역관 下送을 재촉함 54
- 2월 6일 안위관 李泰運과 역관 洪喜男, 李長生이 경상도 도착 55
 - 차왜와의 회답은 비변사의 지휘로 정할 것
- 2월 13일 關白生子傳告差倭 平成幸 나옴 55
 - 차왜가 關白生子致賀次 通信使 파견 요청

- 2월 21일 차왜가 조선측의 賀意의로 通使한다는 회답서계 措辭 요청 56
 - 차왜에 대한 회답서계 준비와 別幅 回禮物目
 - 차왜에 대한 동래부사의 회답서계 준비와 회례물목
 - 차왜에 대한 부산첨사의 회답서계 준비와 회례물목
- 2월 23일 차왜 일행에 대한 初頭宴 設行 및 예단 마련 58
 - 차왜가 안위관에게 보낸 예물 및 그에 대한 처리
 - 안위관 회례물건
 - 진상물목 확인

■ 계미(癸未, 1643년, 인조 21년)

- 1월 5일 통신사 사행시의 應行諸事와 일행 員役人數(曹甘結) 6
- 1월 5일 통신사 사행시의 應行諸事와 일행 員役人數(曹啓日) 6
- 1월 6일 통신사 사행시의 禁齋節目 64
- 통신사 사행시의 應行諸事 66
- 1월 11일 통신사 사행 員役의 관직과 성명 6
- 1월 15일 일본에서의 日光山 設祭時 사신예단물목 7
- 1월 25일 日光山 設祭時 幣帛 마련 68
- 2월 12일 통신사 사행시의 폐백과 예단 68
 - 일광산 致祭時 폐백
 - 威德院使臣禮物
 - 使臣各處禮單 加 마련 數
- 2월 일 통신사 일행 役員의 관직과 성명 69
- 1월 10일 통신사 渡海日期 재촉차 차왜 騰智繩 나옴 및 사행에 따른 諸數問題 논의 70
 - 일본 若君前 서계 및 별폭 마련
 - 日光社堂 祭文 및 香奠 마련
 - 信使催促事나옴差倭 藤智繩에 대한 按慰官 差定
 - 통신사 發程日期 推擇
- 1월 14일 통신사 사행시의 일본국왕 이하 각처예물물목 74
- 일본국 왕자 약군예단물목 75
- 1월 15일 통신사행 준비에 대한 일본측 요구 76
 - 對馬島主 條列小紙 解書 내용
 - 奉行 等 條列小紙 解書 내용
- 1월 17일 통신사 齋去 雜物物目 및 4道 卜定數 82
- 1월 18일 통신사 齋去 禮物에 대한 경상도등록 上送事 84

	– 통신사 예단 중 應連 4도복정수	
• 1월 25일	통신사 재거 被虜人物 刷還 諭文	85
• 1월 22일	통신사 재촉차 차왜 甚兵衛 내용	86
	차왜와 사행준비에 관한 문답	
	– 통신사 發程日期 재촉	
	– 일본측 文書主僧長老에 대한 서계 별폭 요청	
	– 일본측 文書主僧長老에 대한 書契 및 別幅 요청	
• 1월 26일	통신사 帶行員役의 駒手를 馬上才로 대신함	87
• 2월 6일	통신사 일행 員役의 給祿規定	88
	– 召長老處 서계 및 별폭	
	– 若君處 례수 및 서계 별폭	
	– 日光社堂 致祭禮節	
• 2월 11일	御筆 奉持時 儀仗 豫備는 불허, 기타 應行節目은 該曹에서 참작 마련	91
	洪喜男 齋來 藤差條列 내용	
	– 御筆 奉持時 儀仗 豫備	
	– 日光社堂 祭幣 및 成得院 禮單 마련	
	– 秀忠廟堂 歷訪	
	– 大君 若君 各處 行禮	
	– 使臣各處禮單 齋來	
	– 屏寂 古畫 等物 齋來	
• 2월 9일	통신사 催促事 내용 差倭 平成似 禮單 마련	94
• 2월 12일	통신사 使行時 日本國王 이하 各處禮單 前例數	94
• 2월 14일	통신사 日光山 香奠時 器具	
	器具는 역관에게 물어 措備할 것	
• 2월 15일	통신사 齋去禮單 封褻	100
• 2월 26일	일본측에서 통신사 일행 員役數名錄 先送 요구	100
• 2월 27일	통신사 일행의 職名員役數 探知次 差倭 내용	102
	– 통신사 일행의 職名員役數 閉錄 下送	
• 3월 10일	일본측에서 통신사 齋去 書契 조정의 改撰 요구	102
• 3월 21일	통신사장계(개찬서계)	104
	통신사장계(통신사 일행 부산도착 후 乘船 待風)	
	통신사장계(醫官 1인 先送事)	
• 3월 23일	일본의 文書次知書僧 교체	106
• 3월 27일	일본 신임 書僧에 대한 禮物 마련	107
• 4월 16일	통신사 출발일시 탐지차 차왜 내용	107

• 4월 20일	통신사장계(통신사 일행 중 馬上才가 병으로 체류)	108
	통신사 입왕 중 邊風 還來 및 支供 加分定事	
• 4월 25일	통신사 일행 渡海糧 부족분을 倭供으로 推移資送함	109
• 5월 5일	통신사장계(통신사 일행 다시 출발함)	110
• 5월 14일	통신사 일행 대마도 도착	110
• 7월 18일	일본 도착 후 통신사 일행의 일정 및 근황	111
• 8월 25일	일본에서의 통신사 일행의 일정 및 근황	111
	대마도주 서계 내용	
	통신사장계(통신사 일행 江戶 향해 출발)	
• 11월 2일	통신사 선래군관 및 호송차왜 일행 나옴	113
	- 군관호송차왜에 대한 예단 마련	
	통신사호행차왜 나옴에 대비한 접위관 및 차비역관 差定	
	통신사호행차왜 일행에 대한 兩宴 예단물목	
• 11월 5일	통신사 일행 부산 도착	115
• 11월 10일	통신사호송차왜 일행에 대한 접대사 논의	115
	대마도주 서계 내용	
	- 대마도주에 대한 회답서계 준비 및 回禮物目	
	대마도주가 동래부사 및 부산참사에게 보낸 禮物物目	
	통신사 일행 入來	
• 11월 22일	통신사 齋來 일본국 回禮進上物目	118
	대마도주 및 萬松院에 대한 回禮 여부 논의	
	대마도주처 回禮禮單物目	
	일본측에서 통신사 入往時의 日供餘米를 換金 津送함	
	통신사 入往時 諸處送禮之物 처리문제 논의	
• 11월 29일	日供餘米는 公木價로 計受하고 換金은 差倭便에 還授할 것	121
	日供餘米 換金の 환수는 別定禁軍을 보내 처치토록 할 것	
• 12월 1일	일본측에서 통신사 입왕시 馬價銀을 進送함	122
	- 마가은을 閉論 還給할 것	
• 12월 9일	차왜측에 마가은을 환급함	123
• 12월 27일	대마도주 서계에 대한 회답서계 논의	123
	- 대마도주 서계 내용	
	- 대마도주 서계에 대한 회답내용은 承文院이 廟堂에 稟定하여 마련할 것	

■ 갑신(甲申, 1644년, 인조 22년)

• 1월 25일	통신사 이하 書啓 및 加賞人員數問題 논의	125
----------	------------------------------	-----

- 1월 28일 통신사 護送差倭 回禮宴 設行 125
- 2월 15일 통신사 호송차왜 入歸 126
- 3월 25일 통신사 예단 致斃分에 대한 대마도주의 追後價償 요구 126
 - 追給不許를 동래부사로 하여금 措辭 방식케 할 것
- 4월 8일 대마도주가 통신사에게 보낸 서계 내용 127
 - 題額書送 決定 및 회답서계 회답예물 마련
- 4월 15일 대마도주가 통신사에게 보낸 예물에 대한 回禮物目 128
- 5월 12일 통신사 追償에 대한 논의 129
- 5월 21일 일본측이 斃鷹 追償 및 서책 頒給 재촉 129
- 6월 28일 일본측의 斃鷹 追償 재촉에 대해 追給 결정 130
- 10월 4일 일본측이 斃鷹 追償 재촉으로 鷹連卜定 該道에 催替 131

제 2 책

■ 계사(癸巳, 1653년, 효종 4년)

- 10월 16일 請使通報差倭 藤成方 나옴 135
 - 차왜 접위관 差定에 대한 건의(경상도 都事)접위관
- 11월 17일 차왜에 대한 回答書契 및 3次宴 예단 마련 135

■ 갑오(甲午, 1654년, 효종 5년)

- 3월 29일 통신사 사행시의 인원 및 물품에 대한 일본측 요구 136
- 6월 11일 대마도 文書次知僧, 교체 137
- 8월 13일 通信使行期 定奪事로 차왜 나옴 138
- 8월 23일 통신사행기 報知 및 事知譯官 請送事로 차왜 나옴 139
- 8월 25일 使行에 대한 차왜와 문답 140
 - 통신사 入去 燈籠 및 예단 마련
 - 求請物件 許賃事
 - 일본서계 改書事
 - 차왜 催促數 減除事
- 11월 7일 차왜 일행에 대한 茶禮 設行 및 사행에 관한 문답 142
 - 일본측이 使行期에 관한 회답서계 재촉

- 차왜 伴從數 조정 및 예물 마련
- 11월 16일 통신사 사행시의 應行諸事節目 141
 통신사 사행시 일본국왕 이하 各處贈給 예단물목
 信使齋去雜物 各道卜定數
- 11월 19일 信使齋去 각도분정잡물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 141
- 12월 18일 信使齋去禮單 및 行中該用物件 마련 142
- 12월 29일 차왜 일행에 대한 上船宴 設行 및 문답 142
 - 차왜가 통신 3사 직성명 통보 요구
 - 應連 優數 加送事
- 12월 26일 사행시의 禮物物種 粉定에 관한 논의 154

■ 을미(乙未, 1655년, 효종 6년)

- 2월 25일 信使入送 및 行期 通報事를 廟堂에서 議處케 할 것 156
- 3월 2일 문위역관 李亨南의 渡海還後 手本 내용 157
 통신사 사행에 관한 일본측의 요구를 기록한 문위역관의 別單
 별단 중 중요사항에 대한 예조 및 비변사의 조치지침
- 3월 8일 일본측 요구인 別幅空紙或帖에 대한 전례 고찰 및 논의 169
 問慰別幅禮單物目
 倭館作變別幅禮單物目
 渡海驛館齋來 대마도주 進上物件
- 3월 8일 통신사 출발일시 推擇 170
- 3월 13일 大飢院에 보낼 악기를 精造할 것 171
 임진년 造送 樂器數
 대유원 致 祭時 幣物 마련
 信使 일행 員役의 관직 및 성명
- 3월 13일 被擄人刷還論文作送與否 논의(不作送) 174
 관백예단 중 가송물종에 대한 논의
 大飢院 및 權現廟堂 악기 조성 지연에 대한 該官員 推考
- 3월 23일 대유원 致祭時 예물 마련 176
- 4월 3일 통신사 사행시의 禁齋節目 177
- 4월 3일 권현묘 및 대유원 致祭儀 178
 통신사 齋去 國書 및 각처 서계내용
- 4월 3일 통신사 齋去 禮單 180
 권현사 및 대유원 致祭에 관한 논의

• 4월 9일	통신사 齋去 禮單 封裏	183
• 4월 17일	관백 예단에 대한 준비 소홀로 該官 推考	185
• 4월 23일	통신사 일행 원역에 대한 주의사항 및 각종 준비물에 대한 확인	185
	대유원 致祭時 祭物 마련	
• 4월 26일	예단준비물 중 柵箕 및 禮單馬鞍具에 대한 일본측 요구	187
	일본측이 요구한 御筆 문구에 대한 논의	
	어필 서체 및 용지에 대한 논의	
	御筆筒 措備	
	대유원 및 권현묘 제물 마련	
• 5월 3일	御筆 安寶에 대한 논의	190
• 5월 16일	통신사장계(예단응자 부족으로 통신사 승선일기 지연)	190
• 5월 17일	통신사 乘船吉日을 改擇함	191
• 5월 16일	禮單馬 還送 및 應連 改備	191
	통신사 迎候次 차왜 平成連 나눔	
• 5월 30일	일본측이 예단응련 및 馬匹 入送 재촉	194
• 6월 5일	통신사장계(신사제거 회답서계 및 御筆 재촉)	195
• 6월 7일	통신사장계(御筆 부산도착)	196
• 6월 11일	통신사장계(예물응련 致幣로 인한 부족분 보충 논의)	196
• 6월 12일	예단응련 加定에 대한 경상감사의 조치 및 견해	197
• 6월 14일	통신사장계(예단응련 운송 보급)	198
	신사호행차왜 차왜 일행에 대한 上船宴 設行	
• 6월 22일	통신사 및 종사관 일행의 渡海 중 근황 보고	198
• 6월 25일	대마도주처 문서는 전예조참의의 명의로 써 보낼 것	199
• 8월 14일	통신사장계 및 대마도주 서계 전달차 차왜 平成長 나눔	199
	- 차왜 접대는 以酉菴送使 例로 할 것	
	- 대마도주 서계 중 改年號에 대한 문답	
	- 差倭在來 대마도주 서계 내용	
	- 차왜에 대한 접대준비 및 예단 회답서계 마련	

■ 병신(丙申, 1656년, 효종 7년)

• 2월 14일	통신사에게 禮曹公事 傳給	202
	- 나온한 차왜 접대는 京接慰官 및 3度宴로 할 것	
• 2월 17일	통신사 일행 및 信使護行差倭, 禮單齋來差倭 일행 나눔	202
	- 차왜 일행에 대한 예단 및 接待伴從數 조정	

信使護行差倭에 대한 接待는 鄉接慰官으로 할 것

－ 兩差倭 改姓 이유에 관한 문답(신사호행공로로 關白이 賜姓)

● 2월 18일	信使護行差倭에 대한 鄉接慰官 差定	204
● 2월 23일	信使護行差倭에 대한 茶禮 設行	205
	－ 對馬島主之子 平義眞에 대한 禮單 加送 및 別遣譯官 記問事	
● 4월 9일	차와 源成倫에 대한 잡물 入送	205
● 4월 22일	대마도주가 보낸 信使禮單 처리 및 회답서계 재촉	206
● 5월 19일	대마도주가 보낸 信使禮單物目 上送	206
■ 影印本 通信使臚錄 第1冊		92
■ 影印本 通信使臚錄 第2冊		33
■ 『국역 통신사등록』(I) 찾아보기		904



김 동 철 (부산대학교 사학과)

차례

1. 통신사의 명칭과 성격
2. 통신사 관련 등록류 개관
3. 『통신사등록』 개관
4. 『국역 통신사등록』(I) 개관

참고문헌

1. 통신사의 명칭과 성격

일본의 대외교섭관계 사료집인 『통항일람(通航一覽)』(1850~1853년경 편찬)에는 17세기 이후 일본의 교섭관계를 통신의 나라[조선·유구]와 무상(貿易)의 나라[중국·네덜란드]로 구분하였다. 무상의 나라는 단순한 교역국이다. 유구는 1609년 이후로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통신의 나라는 조선뿐이었다.

17~19세기 일본과의 교류는 통신사와 왜관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던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는 1607 회답검쇄환사의 파견,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로 정상화되었다. 1607년 1차 회답검쇄환사의 파견 후, 1617, 1624년에 2, 3차 회답검쇄환사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1636년부터 1811년까지 9차례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 12차례의 사행을 회답검쇄환사와 통신사로 구분하거나, 합쳐서 통신사로 부르기도 한다. 17세기 이후 조선과 일본 간의 대등한 선린우호 외교의 상징이 통신사였다.

통신사는 17세기 이후에만 간 것은 아니다. 통신사란 이름은 고려 때도 있었다. 1375년(고려 우왕 1) 나홍유를 무로마찌막부에 통신사로 파견한 적이 있다. 조선 건국 이후 16세기 말까지 일본으로 보낸 조선국왕사는 20여 차례나 된다. 이 가운데는 통신사나 통신관이란 이름으로 파견된 사절도 10여 차례나 된다. 이 가운데 ‘통신사’로 불만한 사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1413년(태종 13) 정사 박분 때가 통신사 조건을 갖춘 첫 통신사였으나, 이 사행은 경상도에서 도항이 중지되었다. 그 때문에 1428년(세종 10) 사행을 첫 통신사로 본다. 정사 박서생, 부사 이예, 서장관 김극유로 막부장군의 경조를 위한 사절이었다. 1432년(세종 14) 사행까지는 통신사와 회례사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다가, 1439년(세종 21) 정사 고득중 때부터 통신사로 명칭이 정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조선전기 통신사에 대해서는 어느 사행이 통신사의 개념에 가장 적절한가에 따라, 통신사의 시작을 1413년, 1428년, 1439년 등으로 보고 있다. 조선후기 통신사를 기준으로 조선전기 통신사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1602, 1604년의 사절은 일본 사정을 염탐하는 사절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교가 다시 열리면서 일본에 간 통신사는 조선국왕이 일본국왕인 도쿠가와막부 장군에게 파견하는 외교사절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간 통신사는 모두 12회였으나, 1607, 1617, 1624년 3차례의 사절 이름을 통신사라 하지 않고, 회답검쇄환사라 한 것은 장군의 국서에 대한 회답과 납치된 포로의 쇄환을 목적으로 한 사절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통신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통신사’로 부를 만큼 일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임진왜란이 남긴 전쟁의 상처는 그만큼 크고 깊었기 때문이다. 1636년 사절부터 통신사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통신사행은 1636, 1643, 1655, 1682, 1711, 1719, 1748, 1763, 1811년, 9차

례 파견되었다.

통신사 파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막부장군의 장군직 계승 등을 축하하고, 일본의 국정을 탐색하며, 양국의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장군직 계승과 관련 없이 파견된 적도 있다. 즉 1636년 통신사는 양국 우호의 유지와 일본 정세 파악, 1643년 통신사는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때 아들 이에쓰나(家綱)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통신사는 지금의 도쿄인 에도(江戸)까지 갔지만, 1617년에는 교토, 1811년에는 쓰시마의 이즈하라 엄원(嚴原)까지 갔다. 특히 1811년 통신사는 통신사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이를 역지(易地)통신이라고 부른다. 우호와 평화의 사절단으로 상징되던 통신사도 1811년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통신사가 중단된 후에도 양국 간의 관계는 왜관을 통해 유지되었다.

통신사의 명칭은 대체로 조선에서는 통신사, 신사, 일본통신사, 일본에서는 신사, 조선통신사, 조선신사라고 불렀다. 조선에서 출발한 해와 일본에 도착한 해가 달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다. 조선에서는 1763년 계미통신사, 일본에서는 1764년 갑신통신사라고 부른다. 통신사를 보내는 나라와 맞이하는 나라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온 통신사라는 뜻에서 붙여진 조선통신사란 명칭에는 그 속에 통신사는 조공사절이라는 역사인식이 암암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을 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쓴 명칭을 그대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이미 브랜드화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익숙할 정도로 고착된 개념이라는 현실론의 입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의견도 강하다.

1876년 개항 이후에 4차례 일본에 간 사절의 이름은 통신사가 아니라 수신사였다. 4차례의 수신사 외에 1881년 조사(朝士)시찰단 이름으로 1차례 갔다. 이처럼 조선 국왕이 보낸 사절 자격으로 일본에 간 사행의 이름은 다양하였다.

2. 통신사 관련 등록류 개관

조선후기 일본과의 교류사를 연구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인 등록류는 현재 많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통신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등록류는 『통신사등록』, 『통신사등록초』, 『통신사왕희시광주부관교참거행등록』, 『동래부접대등록』 등이 있다. 이 4종류의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하우봉, 정연식, 한문중 등의 연구를 토대로 이 책들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래부접대등록』(규 18108)은 동래부가 편찬한 책으로, 1653년(효종 4)부터 1841년

(헌종 7)까지 대마도에서 파견한 차왜에 대한 접대 기록이다.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러 온 통신사청래차왜, 통신사를 호행하러 온 통신사호행차왜에 대한 접대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1841년 통신사청래차왜에 대한 기록은 마지막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던 1811년 이후의 양국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통신사왕희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규 15068)은 1811년(순조 11) 통신사 정사가 경기도 광주부(廣州府) 판교참(板橋站)을 오갈 때의 준비 및 접대 내용을 광주부에서 편찬한 책이다. 광주부는 통신사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에 위치한다. 통신사가 통과할 때의 도로, 다리, 선창의 수리에 대한 경기감영의 공문, 이에 대한 광주부의 처리와 보고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양재참의 도로와 다리, 한강나루의 선창에 대한 수리를 둘러싸고 광주부판관과 파천현감 사이에 오간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정사 일행의 인원과 말, 예단의 수송, 접대음식의 종류와 수량, 숙소의 치장 도구, 통신사가 돌아올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예물의 품목과 수량, 짐꾼의 인원수 등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셋째, 『통신사초등록』(규 15067)은 일본의 요청, 외교 교섭상의 문제 등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된 통신사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책이다. 1786년(정조 10)부터 1808년(순조 8) 사이에 통신사 파견과 관계되는 사항을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책이다. 표지에는 해당 연도인 병오(1786), 정미(1787), 기유(1789), 신해(1791), 갑인(1794), 임술(1802), 계해(1803), 을축(1805), 병인(1806), 정묘(1807), 무진(1808)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1786년(정조 10) 9월 일본 에도막부의 10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가 죽은 것을 위문하고, 이듬 해 1787년(정조 11) 4월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가 11대 장군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통신사를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연이은 흉년과 화재 등 일본의 국내 사정으로 일본이 통신사 파견의 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중지된 사행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넷째, 『통신사등록』(규 12870의 1, 2, 3)은 예조 전객사에서 통신사에 관련된 문서를 연월일 순으로 모아 필사한 책이다. 동래부사나 경상감사 등 대일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의 외교 업무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예조나 비변사의 논의와 처리에 관한 각종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왜선의 왕래에 대한 보고, 차왜의 파견, 접위관과 차비역관의 파견, 차왜에 대한 접대, 차왜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의 상송(上送), 회사(回賜) 예단의 마련, 문위역관 파견 요청, 통신사 파견 요청, 통신사절목의 마련, 통신사 삼사의 파견 등 조선후기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의 외교 관련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3. 『통신사등록』 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14책의 『통신사등록』은 ㉠ 『통신사등록』(규 12870의 1, 12책, 1641~1811년), ㉡ 『통신사등록』(규 12870의 2, 1책, 1681~1682년), ㉢ 『통신사등록』(규 12870의 3, 1책, 1641~1811년)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통신사등록』(규 12870의 1) 12책에서 제1책은 계미통신사(1643년, 인조 21), 제2책은 을미통신사(1655년, 효종 6), 제4책은 임술통신사(1682년, 숙종 8), 제5책과 제6책은 신묘통신사(1711년, 숙종 37), 제7책과 제8책은 기해통신사(1719년, 숙종 45), 제9책과 제10책, 제11책은 무진통신사(1748년, 영조 20), 제12책은 계미통신사(1763년, 영조 39), 제14책은 신미통신사(1811년, 순조 11) 관련 내용이다. 제3책과 제13책은 결본이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국역 통신사등록』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1991년 영인본으로 간행한 『통신사등록(일~오)』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이 영인본 『통신사등록』은 14책의 『통신사등록』과 1책의 『통신사초등록』을 합하여, 전체 15책으로 간행되었다. 영인본에 수록된 해제를 토대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영인본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원책과 관련 통신사행

원책 번호	사행명(사행연도)	수록기간	비고
제1책	계미사행(1643, 인조 21)	1641.1.14~1644.10.14	
제2책	을미사행(1655, 효종 6)	1653.1.16~1656.5.19	
제3책	임술사행(1682, 숙종 8)	1681.6.26~1682.4.12	『통신사등록』 (규 12870의 2)
제4책		1681.4.15~1683.3.4	
제5책	신묘사행(1711, 숙종 37)	1709.2.16~1711.3.1	
제6책		1711.3.3~1712.5.20	
제7책	기해사행(1719, 숙종 45)	1713.1.24~1718.11.17	
제8책		1718.11.14~1720.7.7	
제9책	무진사행(1748, 영조 24)	1746.7.10~1747.7.9	
제10책		1747.7.10~1747.12.29	
제11책		1748.1~1748.11.25	
제12책	계미사행(1763, 영조 39)	1760.12.17~1765.윤2.26	『통신사등록』 해제에는 갑신사행
제13책	사행퇴정(1788, 정조 12)	1786.10.6~1787.12.26	『통신사등록』 (규 12870의 3)
제14책	신미사행(1811, 순조 11)	1809.1.22~1811.12.7	
통신사초등록	사행퇴정(1788, 정조 12)	1786.10.12~1808.12.11	『통신사초등록』 (규 15067)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사등록』(규 12870의 2)이 제3책, 『통신사등록』(규 12870의 3)이 제13책, 『통신사초등록』(규 15067)이 제15책으로 편집되었다. 제13책인 『통신사등록』(규 12870의 3)은 표제가 『통신사초등록』이다. 『통신사초등록』(규 15067)과 마찬가지로 초서로 적혀 있다. 해당 기간에는 사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행 연기와 역지(易地)통신의 교섭만 진행되어 초기(草記)형태로 남은 채 정서(精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책과 제4책은 수록 날짜가 각각 1681년 6월 26일부터 1682년 4월 13일까지, 1681년 4월 15일부터 1683년 3월 4일까지로 중복되어 있다. 중복된 것은 한 책으로 된 『통신사등록』(규 12870의 2)이 제3책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신사등록』은 1643년 통신사 관련 등록이 처음이다. 그 이전 것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1월 22일자를 보면, “병자 이전의 본조(예조) 문서는 거의 다 분실되어, 정축년(1637)의 전례를 조사하여 참고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 후기 대일관계 등록은 30종 정도 된다. 이 가운데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례초책』을 제외한 모든 등록은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 또는 그 이후부터 수록되어 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승정원일기』 숙종 7년(1681) 12월 26일조를 보면, 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 왕이 어필을 써 보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을미년(1655)통신사등록’을 가져와서 보고 논의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에도 기술된 것처럼, 1643년 통신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1636년 통신사가, 1655년 통신사는 1643년 통신사가 전례가 되었다. 이처럼 『통신사등록』은 통신사 파견 때 항상 전례로 삼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책이었다. 『통신사등록』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하우봉이 전론의 논문을 발표하여 그 사료적 가치를 정리한 바 있다. 하우봉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사의 파견에서 귀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전체 업무와 그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살필 수 있다. 특히 통신사 관련 조약 내용과 결정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양국의 목적, 동기, 배경 등을 잘 알 수 있다.

둘째, 통신사에 관한 외교업무가 발생에서 처리까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어서, 양국의 입장 차이와 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한 수정, 보완 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다.

셋째, 통신사가 가지고 가는 각종 예단과 별폭의 품목과 수량이 수령 대상자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단은 해당 관청과 지방에 배당되었다. 그러므로 통신사의 경제적, 재정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사행원이 지켜야 할 각종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어 일본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인식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에서 조선에 보낸 서계는 일본국왕(막부장군), 대마도주, 차왜 등이 망라되어 있고, 특히 대마도주의 소지(小紙)까지 망라되어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4. 『국역 통신사등록』(I) 개관

『국역 통신사등록』(I)은 신사년(1641 인조 19) 10월 14일부터 병신년(1656, 효종 7) 5월 19일까지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제1책과 제2책,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간행한 영인본 『통신사등록 一』의 1~394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시작 날짜 항목과 다른 내용의 기사는 별도의 제목으로 목차에 실려 있다. 영인본의 목차에 정리된 기사 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 항목의 건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역 통신사등록』(I)의 연도별 기사 항목 수

시기	1641(인조 19)	1642(인조 20)	1643(인조 21)	1644(인조 22)	합계
항목 수	2	15	67	11	95
시기	1653(효종 4)	1654(효종 5)	1655(효종 6)	1656(효종 7)	
항목 수	2	13	45	8	68

<표 2>를 보면 기사 항목 건수는 모두 163건이다.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1641년부터 1644년까지로, 원본의 제1책, 영인본의 1~20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1653년부터 1656년까지로, 원본의 제2책, 영인본의 207~394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상시적으로 파견한 것은 아니다. 첫째 것은 1643년 계미통신사, 둘째 것은 1655년 을미통신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통신사가 파견되기 2년 전, 통신사 파견 해당 연도, 통신사 파견 후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통신사는 일반적으로 막부장군이 장군직을 계승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 도쿠가와(德川)막부 역대 장군의 재임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도쿠가와(德川)막부의 역대 장군과 그 재임 기간

대	장군 이름	재임기간
1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603. 2~1605. 4
2대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1605. 4~1623. 7
3대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1623. 7~1651. 4
4대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	1651. 8~1680. 5
5대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	1680. 8~1709. 1
6대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	1709. 5~1712. 10
7대	도쿠가와 이에쓰구(德川家繼)	1713. 4~1716. 4
8대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716. 8~1745. 9
9대	도쿠가와 이에시게(德川家重)	1745. 11~1760. 5
10대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	1760. 9~1786. 9
11대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	1787. 4~1837. 4
12대	도쿠가와 이에요시(德川家慶)	1837. 9~1853. 7
13대	도쿠가와 이에사다(德川家定)	1853. 11~1858. 8
14대	도쿠가와 이에모치(德川家茂)	1858. 12~1866. 8
15대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	1866. 12~1867. 12

출전: 吉川弘文館編輯部 편, 『日本史必携』, 吉川弘文館, 2006, 470쪽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1641년은 3대 장군 이에미쓰(家光) 재임 때이고, 1643년 통신사는 장군직 계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1643년 통신사는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 때 아들 이에쓰나(家綱)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국역 통신사등록』(I)의 첫 기록은 신사년(1641 인조 19) 10월 14일조이다. 내용은 <동래 부사 정호서(丁好恕)가 장계한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첩부한 계목 내용>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의 장계는 제1특송사가 상선연 때 대군[관백]이 아들을 낳았으므로 내년엔 통신사 파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최근 3~4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힘이 고갈 되었으므로 축하할 일이지만 반드시 해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보고한 것이다. 예조의 계목은 관백이 아들을 낳았으니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축하 사절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므로, 묘당[비변사]에 명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비변사의 계목은 동래부사가 대응한 일에 대해 일본의 답변이 없으므로 뒷날의 기미를 보고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인조의 윤허가 있었다.

이 첫 번째 기록은 「부특송사가 관백이 아들을 낳았다고 전함→ 제1특송사가 통신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전함→ 동래부사가 일본측에 답변한 후 이를 예조에 보고함→ 예조가 이를 보고하고 묘당[비변사]에서 결정하기를 청함→ 비변사가 일본측의 답변을 기다려 결정 하자는 의견을 보고하는 등 통신사 파견 요청과 이에 대한 결정 과정을 잘 보여준다.

1월 26일 두 번째 기사는 첫 번째 기사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다만 장계의 주체가 동래부사가 아니라 경상감사인 점이 차이를 보인다. 경상감사는 관백이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대마도측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재정 압박을 받으므로, 사신을 청하는 일이 없을 듯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예조는 도주의 문서를 기다린 후에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비변사가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우리 쪽이 먼저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확정된 대로 실시하자고 보고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1)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43년 통신사와 1655년 통신사 명단

1643년 통신사 사행록은 부사 조정의 『동사록』, 종사관 신유의 『해사록』, 저자 미상의 『계미동사일기』가 대표적이다. 3책 모두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행록에는 통신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통신사등록』 계미년 1월 11일조에는 통신사가 데려가는 원역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43년 통신사 명단(1)

직책	인원수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비고
당상역관	2	홍희남	승록대부	이장생	정현대부	병자년 예로 데려감
상통사	2	김근행	행 훈도	윤제현	행 사맹	
차상통사	2	정시심	행 사맹	김시성	전 봉사	
압물통사	1	김홍립	전 정			
한학상통사	1	정충현	전 정			
압물통사	1	함식	행 사용			
사자관	2	박승현		김의신		
화원	1	김명국				

이 기사에서는 의원과 잡예인은 사신이 마땅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아직 임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당상역관 2명은 병자년(1636) 통신사 가운데서 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압물통사는 각각 1명씩으로 정해져 있다. 통신사 전체의 현황은 아니지만, 통신사 원역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계미년 2월조에는 통신사 원역의 성명과 직함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43년 통신사 명단(2)

직책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정사	윤순지	병조참지				
부사	조경	홍문관 전한				
종사관	신유	이조정랑				
당상역관	홍희남	행 사직	이장생	행 사과		
상통사	김근행	행 훈도	윤제현	전 판관		
차상통사	정시심	전 직장	김시성	전 봉사		
압물통사	김홍립	전 정				
가정통사	이형남	전 정	한상국	전 정	윤성립	전 주부
한학상통사	정충현	전 정				
한학압물통사	함식	행 사용				
의원	김호	전 정	송경일	전 주부		
이문학관	박안기	진사	정언열			
사자관	박송현		김의신			
화원	김명국		이기룡			
천문학	황효공	전 정				
정사자제군관	윤전지	초관	윤천지	업무		
정사군관	조응립	전 부사	정부현	초관	정신경	겸사복
	이용	전 만호	최기남	사과	장익	전 사과
부사자제군관	조현	충의위	한상량	한량		
부사군관	김민학	전 군수	홍우량	전 현감	맹상현	전 만호
	이대인	내금위	이정	전 사과	유윤번	전 만호
종사관자제군관	신태해	전 주부				
별파진검군관	박의룡		이예남			
마상재	방계남		강승선			
이마	김득신					
전악	김마당		설의립		임허룡	
	조응립		김용금		김천	
숙수	이운		장돌시			
정사반인	조효검					
정사노자	신일		무응실			
부사반인	문기원					
부사노자	선인		생이			
종사관반인	이의신					
종사관노자	예남		점이			

당상역관 이하 원역노자 23명, 군관노자 19명

1643년 사행록에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신사등록』은 통신사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의 구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1655년 통신사의 삼사는 정사 조형, 부사 유창, 종사관 남용익이다. 1655년 통신사의 사행록은 조형의 『부상일기』, 남용익의 『부상록』이 대표적이다. 후자는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일찍부터 이용되었으나, 전자는 최근 원문이 『대계 조선통신사 3』에 수록되고, 또 국역되면서(임장혁, 『조형의 부상일기연구』, 집문당, 2000) 이용이 편리하게 되었다. 이들 사행록에는 통신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3월 13일조에도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부상록』에는 삼사의 경우, 품계, 관직, 성명, 자, 호, 본관, 생년, 과거급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인원은 정사선, 부사선, 종사관선별로 되어 있어,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세 책에 수록된 명단을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1655년 통신사 명단의 비교

직책	부상록				부상일기	통신사등록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이름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정사	조형	시간원 대사관			조형	조(趙)	이초참의(임직)		
부사	유창	사복시 정			유창	유(兪)	사복시 정		
종사관	남용익	홍문관 교리			남용익	남(南)	홍문관 부교리		
당상역관	홍희남	행사용	김근행	행사용		홍희남	행사직	김근행	행사용
역관	홍여우	전 판관	박형원	전 직장	홍희남, 김근행, 홍여우				
	변이표	전 참봉							
상통사	정시심	행사맹	김여택			김시성	행참봉	정시심	전 정
	김시성	행참봉							
차통사						이상한	행사맹	변이표	전 참봉
압물통사						홍여우	전 판관		
한학상통사						오인량	전 판관		
한학압물통사						이승현	전 직장		
한학	오인량	행참봉							
의원	한형국	행참봉	이계훈		한형국, 이계훈	한형국	전 주부	최인	사과
	최인	부사정			최인				
회원	한시각	부사과			한시각	한시각	전 사과		
독축관	이명빈	상호군			이명빈	이명빈	상호군		
서기	배옥		한상	무겸	배옥				
	김자휘		최산준	전 도사	김자휘				
	박문원				박문원				

직책	부상록				부상일기	통신사등록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이름	이름	전·현직	이름
사자관	김의신	전 참봉	유응발		김의신, 유응발	김의신	전 참봉	정침	전 사과
	정침	부사맹	윤덕용		윤덕용				
상사자제군관	조침	행사용				조침	행사용	목양선	한량
부사자제군관	민응성	전 사과				민응성	전 사과	정철선	한량
종시관자제군관	남득정	한량				남득정	한량		
별파진	윤개중		목양선	한량					
	김건희		정철선	한량					
군관	나득성	전 우후	조상빈			조현	전 첨사	나득성	전우후
	조현	전 첨사	이동로	전 현감		한상	무겸	이형익	초관
	박지용	첨정				정지석	내금위	이동로	전 현감
						박지용	훈련원첨정	최산준	전 종사
						정사한	무겸	정귀현	전 판관
별파진검군관						이몽량	내금위	최성길	전 사과
						윤익형		김건희	
선장	황생		전운서						
	정사한	선전관	유달신						
초관	이익형								
도훈도	최시연		배준익						
	이몽량	출신	심계신						
내금	정지석								
청직	최효갑		신선원						
	박홍선								
이마						박홍원			
악공	장일춘		김몽술			설의립		김몽술	
	설의립								
숙수						한영			
소동	신득방		정철귀						
	이승현		안덕용						
	구애길		하민신						
	이영택		이두명						
상사 반당(반인)	정득열					정득열			
부사 반당(반인)	이행점					이행점			
종시관 반당(반인)	도신타					도신타			
사노자	원립		일선						
	애남		경생						
	필성		산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 책마다 직책과 이름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부상록』과 『통신사등록』이 상세하다. 두 책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조형은 원래 직책은 사간원 대사간인데, 임시로 이조참의 자격으로 정사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통신사등록』은 사행록의 명단과 비교하여, 통신사 구성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둘째, 1643년 통신사절목의 마련

계미년(1643) 1월 5일조에는 통신사절목에 관한 예조의 감결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1624년, 1636년 통신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별도 항목으로 작성된 같은 날 예조의 계목을 보면, 병자년 문서가 모두 산실되어 참고할 수 없으므로, 갑자년(1624)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을 후록한다고 하였다. 이 두 절목은 내용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1643년 통신사절목의 비교

통신사절목(예조 감결)		통신사절목(예조 계목)	
1	사신의 반진 등의 물자는 해당 관청에 명하여 미리 먼저 조치함.	1	좌동(左同)
2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한결같이 연경에 가는 사신의 사례대로 거행함.	2	좌동
3	사신의 장복(章服)은 부사 이상은 모두 당상관의 복장을 상의원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3	좌동
4	일행 원역의 의복과 신발 등의 물자는 공조와 제용감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4	좌동
		5	사신의 형명기와 독(麤)은 본도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6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는 본도에 명하여 정하여 보내게 함.
		7	상선 2척, 하선 2척, 소선 2척은 격군과 함께 본도에 명하여 미리 먼저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하게 함.
5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 한 개는 주조한 관방(關防)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도록 함.	8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 1알은 주조된 관방인(關防印)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게 하되, 인가(도장집)와 관가(관방인신집)와 가족 남라개(문서통) 한 바리를 본도에서 만들어 대령하게 할 것.
6	상사는 자제군관 2인, 군관 6인, 중 2명, 부사는 자제군관 2인, 군관 6인, 중 2명, 종사관은 자제군관 1인, 중 1인, 왜통사 5원, 한통사 2원, 의원 2원, 화원 1원, 화포장(火砲匠) 2명, 포수 2명, 사자관 2원은 각 해당 관청에서 택하여 보냄.	9	상사의 자제 2원, 군관 6원, 중 2명, 부사 자제 2원, 군관 6원, 중 2명, 종사관 자제 1원, 중 1명, 왜통사 5원, 한통사 2원, 의원 2원, 화원 1원, 별파진검군관 2인, 포수 2명은 감원하여, 갑자년의 사례에 의하여 각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여 보냄. 사자관은 병자년에 2원을 데려 간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대로 시행함.

통신사절목(예조 감결)		통신사절목(예조 계목)	
		10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엄하게 금단하여, 원역 등이 만약 함부로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조사하여 계문함.
7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에 명하여 지급하게 함.	11	좌동
8	일행의 원역은 각기 중 1명을 거느림.	12	좌동
		13	사신 이하가 관문이나 나무를 넘어 갈 적에 검사할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년의 사례에 의거 마련하여 지급함.
		14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갑자년의 사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인물을 쇠환하기 위하여, 본조에서 만들어 준 돈유(敦諭)공문으로 찾아 다니며 쇠환하여 무마하고 보살펴 데리고 올 것.
9	일본국왕에게는 전례에 따라 ‘위정이덕(爲政以德)’ 서계를 찍었으니 이대로 시행함.	15	좌동
10	일본국 집정과 도주와 수직왜, 수도서인 등에게는 사신이 귀국하여 들어올 때 차등을 두어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전례는 이대로 마련하여 거행함.	16	좌동
11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마를 보낼 것.	17	좌동
		18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함.

통신사절목은 날짜는 같지만 다른 기사로 각각 11조항과 18조항으로 두 절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표 9>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11조항의 절목 내용은 동일하게 또는 일부 수정, 보완되어 18조항 절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1조항의 절목에 없는 일곱 개 항목이 18조항의 절목에 포함되어 있다. 후자는 전자를 수정, 보완한 절목이다. 이 절목은 통신사가 시행해야 할 여러가지 규정을 절목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18조항의 절목은 『춘관지』에도 「신사응행절목(信使應行節目)」이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춘관지』에는 18조항 가운데 제2, 3, 4, 5, 6조항의 다섯 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8조항은 『춘관지』를 편찬할 때 의도에 맞게 수정을 가하여 「신사응행절목」으로 정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통신사절목의 제정 과정과 절목의 내용은 물론 『증정고린지』나 『춘관지』 등 대일관계사와 관련된 기본 책자를 편찬할 때, 원 자료가 어떻게 수정·보완되면서 편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1643년 통신사 종사관 재거(齎去) 일행 금단절목의 마련

계미년(1643) 1월 6일조에는 통신사 종사관이 가져가는 일행금단절목(從事官費去一行禁斷節目)이 수록되어 있다. 예조에서는 전례를 상고하여 이 절목을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한다고 하였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시종사관재거절목(信使時從事官費去節目)’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각 항목마다 시작하는 첫 부분에 일(一, 하나)이라고 하여 항목별로 구분하고 있다. 전체 열 개 항목으로 된 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절목은 『춘관지』에도 ‘종사관재거일행금단절목’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춘관지』에 수록된 절목은 항목별로 된 절목 형태는 아니며, 『통신사등록』과 약간의 글자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양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1643년 통신사종사관재거일행금단절목의 비교

	통신사등록		춘관지
1	일행이 가져가야할 물건은 점검하여 바리로 만들어 각각 글자를 적어 표시하여 서명하고, 또 자호(字號)를 찍어서 달아 놓고, 도중에 불시에 적간하며, 포소 및 대마도와 달리 머무는 곳에 이르면 별도로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물로 몰수하고, 범한 사람은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1	좌와 거의 같음
2	『대전후속록』에 실린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능단, 향백사와 보물을 몰래 거래하는 자는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2	상동
3	『대전후속록』 내에 왜인을 무역하는 자, 왜인이 가져온 대량피 및 포소의 잠상과 무역하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3	상동
4	항통사 및 장사꾼이 어두운 밤에 만나기로 약속하여 매매하거나 혹은 서로 모인 자는 모두 잠상금물 조에 의하여 논단함.	4	상동
5	일행의 인원 등이 본국의 숨겨야 할 일이나 국가의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5	상동
6	상통사 이하 일행의 하인이 금제에 연계된 자는 근장 80대 이하로 직단함.	8	좌동
7	다른 나머지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단속하되, 우리 국경에서 범한 일은 즉시 계문하고, 바다를 건넌 뒤에 범한 일은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적어 장계로 알림.	9	좌와 거의 같음
8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갔다가 쇠환한 사람을 격군으로 뒤섞어 충당하는 것은 극히 편치 못하니 일체 충당하지 말고, 만약 충당하였다가 탄로나면 본관 수령을 각별히 추고하여 죄를 다스림.	10	상동
9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는 종사관이 서명하여 문서에 기록하고, 만약 군기를 몰래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7	상동
10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누설하거나, 상국(上國)과 관련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6	상동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양자는 순서의 차이도 보인다. 『통신사등록』 8번째 항목이 『춘관지』에는 10번째 마지막 항목이다. 『춘관지』에는 마지막 항목에 승덕 계미년(1643)에 한 조항을 첨가하였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이 금단절목은 전부터 존재하던 것에다 1643년에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춘관지』 9번째 조항에 표현되어 있는 ‘나머지 미진한 조건(他餘未盡條件)’이 일반적으로 절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므로, 『춘관지』 순서가 『통신사등록』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이 절목은 『춘관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절목의 제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4월 3일조에는 을미년 통신사 종사관 재거 일행금단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종사관재거금단절목’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이 금단절목은 1643년 통신사의 사례대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내용을 1643년 금단절목과 동일하다.

넷째, 대마도주의 소지(小紙)와 봉행(奉行) 등의 소지(小紙)

『통신사등록』에는 일본에서 보낸 서계는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두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마도주나 봉행들이 보낸 소지(小紙: 비망록)까지도 망라하고 있다. 소지는 대마도주나 봉행이 보낸 조목을 나열한 작은 쪽지이다. 이 작은 쪽지에 대해 예조가 계목으로 보고하고, 다시 비변사가 검토한 후 해당 관청과 경상도에 내려보내 알리도록 하였다. 소지는 계미년 1월 15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시도주급봉행등 조렬소지해서(信使時島主及奉行等條列小紙解書)’라고 부기되어 있다. 대마도주의 소지는 ‘대마도주소지해서’라고 적혀 있다.

『변례집요』(권 18, 신사) 계미년 1월조에도 「도주 소지」가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변례집요』는 축약된 내용이다. 『변례집요』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활자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탈초 과정에서 오타자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1> 대마도주의 소지(小紙) 비교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1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시기는 3월 중순과 하순 사이에 대마도에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택일하였음.	1	좌와 대동소이
2	대군(大君)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해서 하되, 별폭의 물건 수량은 앞서의 연례대로 하며, 약군(若君) 앞으로 보내는 별폭은 조금 차등을 두되, 다만 마필(馬匹)의 수는 대군 앞으로 보내는 것과 한가지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지금 아직 확정하지 못하였으니, 비변사의 조처를 기다려 거행할 것임.	2	상동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3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하여 하되, 별폭 가운데 찍는 어보는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에 찍는 어보를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상감의 말씀대로 시행할 것임.	3	상동
4	일광산에 세 사신이 가는 날 어필을 새긴 종과 향로, 촛대, 화병(花瓶) 등의 물건은 그 때 전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여 이번 사자가 구두로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동래부사가 비변사에 올린 장계로 인하여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확정하였음.	4	상동
5	상감께서 치제하는 제문을 세 사신이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향전(香奠)의 물품은 귀국의 법과 예대로 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들어갈 향전과 제문은 마련하여 지급하여 보낼 것임.	5	상동
6	대군과 약군 앞에서 사신이 상견례를 행할 때 및 일광산에서의 예법은 서로 어긋남이 없는데, 만약 그 때를 당하여 어긋남이 있으면 잡담을 제하고 한결 같이 도주가 하는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회계(回啓)의 판부(判付) 내용에, 사신 등의 예절은 전례가 있는 일인지라 이제 와서 따져 정하는 것은 극히 무리하니 허락하지 말도록 하였음.	6	상동
7	집정 등에게 보내는 서계 별폭은 특별히 유념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하였음.	7	상동

『통신사등록』에는 계미년 1월 15일조에 대마도주의 소지 외에 봉행 등 소지(奉行等小紙解書)가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은 30개 항목, 『변례집요』는 29개 항목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2> 봉행 등 소지(小紙)의 비교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1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가는 일자는 오는 3월 중으로 한정하여 대마도에 들어오되, 차왜 등지승이 가져온 서계의 회답 내용 가운데,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일을 명백하게 적어 보내면, 그 답서를 예도에 들여보내는 것이 한 시각이 급하니, 별도로 한 사람을 정하여 들여보내고, 등지승은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간까지 부산 왜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여 회답서계를 이대로 지어서 보내라고 하였음.	1	좌와 대동소이
2	대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이전과 같이 그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르되, 그 가운데 두 가지 단자(段子)는 없어서는 안되므로, 바라건대 나라 안에서 찾으려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 뜻을 동래 및 두 지사 앞에 이야기하여 해당 관청에 품신하여 보고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국에서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해조에 명하여 거행하게 하였음.	2	상동
3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 가운데 응련(鷹連)과 마필(馬匹)은 없어서는 안되니, 각별히 염두에 두어서 기이하고 귀한 물건을 보내고, 대모필과 각색 붓도 또한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예단의 수량과 물품은 현재 아직 마감하지 않고 비변사의 확정을 기다려 시행할 것임.	3	상동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4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다시 말하지 않고, 한 장에는 어보만 찍고 한 장에는 국왕이라 적고 그 위에 어보를 찍어 도합 두 장을 가져 오는데,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도에 도착하여 집정과 상의하여 좋은 모양으로 조치할 것이니, 이대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4	상동
5	대군과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작은 쪽지에 적어서 내어 보내니 이대로 할 것이나, 이 밖에 나라 안에서 비축된 토산물 가운데 합당한 물건이 있으면 첨가하여 보내는 것도 좋으며, 무릇 예단에 사용하는 물건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지급해야 할 곳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세 사신이 사용할 잡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세 사신의 예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가는 일은 비변사 조정에 의거하여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할 것임.	5	상동
6	집정 등에게는 앞서의 연례와 같이 예조에서 각각 서계를 만들고 별폭 등의 물건은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각처에 보내는 서계 및 예물은 전례대로 조정하여, 승문원 및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거행할 것임.	6	상동
7	이번에 집정 등의 성명을 적어 보내니 이대로 성명을 적어 넣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일을 비변사에서 이미 조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였음.	7	상동
8	별폭 가운데 응자(鷹)는 마침 제철이 지났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도에 들여보낼 수량이 많게는 54~55연에 이르니, 지사(知事) 등에게 말하여 다음 달 중순에 모조리 들여주어서, 왜관 안에서 수습 일 먹이를 먹인 뒤에, 그 중 병이 없는 것을 들여보내면, 여기서 오사카[大坂] 성에 올려보내어 대군의 응사(鷹師)에게 전해줄 계획이니, 급속히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에서는 병자년의 규정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조정하여 본도 및 강원 감사에게 급속히 거행하는 일로 이문하였음.	8	상동
9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은 조정에서 주조하여 일광산에 보내는 모양으로 예조에서 대마도주에게 서계를 만들어 들여보내면, 주조한 물건을 그 서계와 한꺼번에 예도로 들여보내어 귀국의 은근한 정을 보이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보내게 하였음.	9	상동
10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제문과 향전(香奠)을 가져오는데, 사신 또한 예단이 없지 아니하니 합당한 물건을 마련하여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제문과 향전을 거행하는 일은 이미 계하하였고, 예단은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	10	상동
11	이번 세 사신은 반드시 대관(大官)으로 정하여 보내는 것은 이곳에서 감히 진달할 수 없으나, 이 밖의 상하 원역(眞役)은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오되, 일행 가운데 법도를 세워서 하인이 금법을 범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데려가는 원역은 사신이 스스로 선발하여 데려가고 일행 가운데 법도를 세우는 것은 이미 금지하는 사목이 있거니와, 하인이 금령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신에게 명하여 신칙하여 시행하게 할 것임.	11	상동
12	역관은 앞서의 연례 통신사 때에는 수가 적어서 무릇 사환을 하는 사이에 때양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고, 각 배에 나누어 신지 않기가까지 하여 보기에 때우 구차하였으니, 이번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왜어(倭語)에 능통한 자를 잘 선	12	상동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발하여 서너 사람의 인원수를 더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뜻으로 이미 조정하여, 왜어에 능통한 자 세 사람을 사역원에 명하여 선발하여 보내게 하였음.		
13	유자(儒者)로서 글씨를 잘 쓰는 자와 회원 등의 인원 수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각색마다 한 두 사람을 더하여 데려오고, 의원도 또한 최상으로 선발하고, 악공 또한 음악을 잘 하는 자를 가려서 데려 오되, 앞서 연례로 들어온 연담(蓮潭)과 같은 자를 선발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조정하여 각 해당 관청 및 통신사에게 명하여 참작하여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가라고 하였음.	13	상동
14	세 사신이 대군 앞에서 예를 행할 때 신는 화자(靴子)는 흙을 밟고 곧장 전각 안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한 듯하니, 이번에는 화자를 벗고 행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의 회계로 인하여 이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할 것.	14	상동
15	세 사신의 상하 원역이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의 법제(法制) 사목을 적어 대마도에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들어갈 때 본디 금단하는 사목이 있으니 이것을 참작하여 적어 보낼 것.	15	상동
16	사신이 왕래할 때 선박이 정박하는 곳 및 숙소로 삼는 곳에서 접대하는 사람은 모두 대관(大官)으로 정하여 기다리는데, 사신이 간혹 멀미[水疾]를 칭탁하거나 병을 핑계하여 상륙하지 않아서, 접대하기 위하여 허다하게 마련한 물자를 공연히 버려 부질없게 되니, 세 사신 가운데 혹 한 분이라도 상륙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는 일은 오히려 사신이 당연히 시행할 일인지라 사신에게 명하여 입시로 잘 조치하라 하였음.	16	상동
17	육로로 가는 도중에 점심을 먹거나 숙소를 정한 곳에서 접대할 때, 세 사신이 노곤하다고 칭하거나 혹은 병을 칭하여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입시로 선처하라 하였음.	17	17번, 18번째 항목을 합쳐 요약 서술
18	세 사신이 공식 업무를 쉬는 날은 미리 통보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이 거행할 일인지라 이대로 할 것임.		
19	물과 물 곳곳마다 장막을 친 입시 가옥을 정제하여 기다릴 것인데, 하인 등이 입의로 출입하는 것을 주인이 감히 손대지 못하니, 한결같이 도중(島中)의 봉행 등이 하는 말대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할 것임.	18	좌와 대동소이
20	일행의 원역(員役)이 들어가서 탈 말은 모두 장관(將官)이 타는 말에서 나오므로, 대마도에서 별도로 감관을 정하여 그 중 상중하의 등급을 보고 차례로 나누어 주는데, 하인들이 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입의로 뺏어가니 극히 민망하고 우려되어, 이번에는 행중(行中)에서 별도로 4~5인을 정하여 감관이라 일컫고 일일이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다투어 빼앗아 가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하여 거행하되, 만약 따르지 않고 난잡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죄를 따져 시행할 것임.	19	상동
21	바닷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 세 사신이 타는 배가 바람으로 인하여 정박할 때는 비록 혹 앞서거나 뒤처지더라도, 포구에 와서는 기다렸다가 차례차례 정박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더라도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함.	20	상동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22	마상재 두 사람은 각기 잘 길들인 말을 끌고 들어가되, 앞서의 연례 마상재는 모두 숨씨가 치졸하였으니, 이번에는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훈련도감에 명하여 이대로 선발하여 보내는 일로 이문하였음.	21	상동
23	말을 달리고 활을 잘 쏘는 등 각종 기예를 가진 자 두 세 사람을 군관 중에 데려 오고, 활을 쏘는 도구 또한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 중에도 데려가는 군관이 있으니,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데려가게 하였음.	22	상동
24	에도에 도착하여 일을 마친 뒤에 도주가 사실(私室)에서 세 사신을 청하여 잔치를 하려하니, 미리 알려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이대로 시행할 것임	23	상동
25	각 역참에서의 접대는 최상으로 정하게 골라 준비하는데, 상하 원역 등이 즐겨 먹을 수 없는 것은 제하고 은근히 상을 차려 먹을 만한 음식물만 골라 드리도록 함이 어떠할지, 이는 임의로 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거행하는 일을 일행 중의 장무역관이 담당하여 거행할 것임.	24	상동
26	떠들고 잡담하며 혹은 빼앗거나 혹은 가져가거나 불을 금하는 등의 일은 각별히 엄금하고, 만약 일행 중에 절박하게 사들여 사용할 물건이 있으면, 대마도에서 별도로 통사왜(通事倭)를 정하여 사들여 주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게 조목을 세워서 이대로 하라 하였음.	25	상동
27	세 사신이 교자(轎子) 앞에는 앞말 한 필씩으로 끌게 하면 되니 이는 임의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에서 회계할 때 거론하지 않았음.	26	상동
28	세 사신이 타는 배는 각별히 정밀하게 제조하여 용을 그린 배의 휘장과 노 등의 물건을 일일이 정밀하게 갖추어 일본인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사공 등이 바람을 살피지 못하여 매양 우려되는 사태를 당하니, 한결 같이 일본 사공이 말하는 대로 함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본도 및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하는 일로 거행할 것임.	27	상동
29	이제 이번에 진술하는 바의 일은 모두가 귀국을 위하여 유념한 계획이니 한결 같이 도주가 말하는 대로 함이 좋을 것이며, 기왕의 통신사 행차에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있었으나 감히 일일이 진달하지 못하니, 모든 일을 각별히 잘 조치하는 일을 동래·부산 양 지사가 힘을 써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따라도 될 일이면 도주가 하는 대로 하겠으나 따를 수 없는 일이면 결단코 따르기가 어려우니,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살피서 거행하게 하였음.	28	상동
30	위 항목의 조건은 상의하여 조치하고, 조선에서 만약 수궁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비선으로 말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각 항목의 조건을 나열하여 비변사에서 이미 참작하여 보고하고 조정하였음.	29	상동

<표 11-2>에서 보는 것처럼 『변례집요』에서는 『통신사등록』의 17번, 18번째 항목을 합쳐서 1개의 항목으로 만들었으므로 항목 수가 하나 적다. 그리고 『통신사등록』은 『변례집요』와는 달리 각 항목의 끝에 이에 대한 결정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4번째 항목은 비변사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변례집요』는 이런 결정 내용은 무시하고 대마도 측의 소지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변례집요』에는 13번째 조항에 있는 통신사 회원 연담(김명국)에 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두 책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신사가 가져간 선물과 받아온 선물

계미년 2월 12일조에는 통신사가 일본에 가져간 선물 품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조 단자를 보면 병자년(1643) 통신사의 사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선물의 지급 대상은 일본국왕, 봉행 7인, 대마도주, 수도서왜 4인 각각, 소(召)장로, 수직왜 9인 각각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1>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대상자별 선물

	국왕	봉행7인 각각	대마도주	수도서왜 4인 각각	소(召)장로	수직왜 9인 각각
대수자	10필					
대단자	10필					
황조포	30필					
흰모시	30(10)필	10필	10필	5필	5필	3필
검은삼베	30(5)필	5필	5필			
면주	10필	10필	10필	5필	5필	3필
흰무명			20필			3필
인삼	50근		5근		3근	
범가죽	15(2)장	1장	2장	1장		
표범가죽	20장					
칭서피	30장					
(채)화석	20(5)장		5장			2장
황모필	50(30)자루	20자루	30자루		20자루	10자루
준마(안장)	2필					
매	20(1)연	1연				
유매떡	50(20)홀	10홀				
참떡					10홀	5홀
황밀	100근					
청밀	10그릇					
어피	100장					
색지	30권					
백지						5권
유둔	3부			1부		

비고 : 국왕의 팔호안은 품목이 중복된 경우다. 포함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포함하면 매는 21연, 호피는 17장이 되어 수가 애매하므로 중복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표 12-1>을 보면 품목은 식물류, 인삼, 가죽류, 화문석, 동물, 떡, 꿀, 종이류 등이 주종이다. 국왕에 대한 선물은 다른 사람과는 물품과 수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비단류, 가죽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물품과 수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통신사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계미년 11월 22일조에 수록된 예조단자에는 통신사가 일본에서 받아온 선물 품목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 관백(국왕), 약군, 대마도주, 만송원, 평의진, 봉행과 집정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2> 1643년 통신사가 가져온 대상자별 선물

	관백	약군	대마도주	만송원	평의진 [平義眞]	봉행 6인, 집행 2인 각각	집정1인
첩금육곡병풍 (貼金六曲屏風)	20쌍						
산금시회대자 (緞金蒔繪臺子)	5식						
쇠솥[鐵釜]	●						
구리화로[銅爐]	●						
구리물병[銅水壺]	●						
구리관립[銅瓶立]	●						
구리수적[銅水滴]	●						
구리개치[銅蓋置]	●						
산금시회서봉 (緞金蒔繪書棚)	2개						
산금시회광개 (緞金蒔繪廣蓋)	10개						
산금시회의연 (緞金蒔繪衣衾)	5가						
산금초대도(緞金鞘大刀)		10자루					
갑옷[鎧]		10벌					
당직(唐織)		50단					
금대병풍(金大屏風)			10쌍				
홍주(紅朱)			3근				
운문지(雲紋紙)			300근				
납발(鐵鉢)			500근				
색대단자(色大段子)				2권			
산화연상(緞畫硯床)				2개			
단목(丹木)				200근			
문선(文選)					1부 31책		
산화연갑(緞畫硯匣)					2개		
우단초(羽段縮)					3권		
백은(白銀)						100매	100매
월주면(越州綿)						100순	
식룡(食籠)							1구
흑칠시회부채 (黑漆蒔繪扇子)							200자루
말광소삼(末廣小簾)							양면
금니(金泥)							양면
은니(銀泥)							●
청지(靑地)							●
백지(白地)							●

●은 받았지만 수량은 불명확한 것임

백은(白銀) 한 종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준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달랐다. 통신사가 가져온 선물 가운데 집행 이하 9명이 보낸 것은 전례대로 호조로 보내고, 관백과 약군이 보낸 것은 상방(상의원)으로 보냈다.

여섯째,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

통신사가 일본을 오가는 동안에 쓸 각종 필수 물품들을 총칭하여 잡물(雜物)이라 하였다. 계미년 1월 17일조에는 후록으로 잡물들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가는 잡물은 1636년 통신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이 잡물들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지에 나누어 배당하여 마련하였다. 예조의 계목에 후록한 잡물 가운데 약재와 우구(雨具)는 말미에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잡물의 종류와 수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1>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1)

진간장	10섬	간장	1섬	울무가루	5말	청밀	2섬
밀가루	2섬	환소주	150병	밀계	5000립	초	300자루
대절참떡	100정	중절참떡	100정	포육	80접	전복	20접
말린해삼	3섬	말린홍합	3섬	호두	2섬	황울	2섬
꽃감	70접	잣	2섬	인삼	20근	백지	245권
대유지	4권	만화석	30장	채화석	30장	옷칠부채	100자루
기름칠부채	600자루	백접부채	30자루	미선	20자루	참기름	2섬
4장불은유둔	40번	6장불은유둔	20번	누룩	130원	콩	6섬
팔	7섬	조기	3500속	건어	80속	도련지	5권
초주지	30권	녹두	2섬	흰모시베	50필	참깨	2섬
편포	8접	말린노루	14마리	개자	3말	참쌀	3섬
말린팽	100마리	김	40접	미역	200근	좁쌀	7섬
메밀	3섬	황밀	6말	오미자	2말	소금	9섬
생울	2섬	녹두가루	5말	생강	6말	표고버섯	4말
범가죽	16장	표범가죽	8장	사슴가죽	3장	배	100개
군량	333섬	흰사발	15죽	흰보시기	15죽	흰대집	15죽
흰접시	25죽	흰중지	15죽	백자대집	10죽	백자중발	5죽
백자잔대구	8부	백자중지	3죽	백자사발	4죽	백자규화잔대구	3부
차일	5	휘장	6	돛자리	3부	면석	3립
독석	3립	단석	3좌	화방석	3좌	문방석	1죽
다리높은상	3	안식	3부	교의	3	평교자	3
작은병풍	3	모부	3	평연	3	대분토	3
소분토	3	관대가죽상자	3	작은밥상	3	춧대	3쌍
늦쇠타구	3	작은서안	3	일산	3	청산	3
우산	3	요	3	용정	3	향꽃이	3
도장안자	1	매	15연	기름종이포대	4부	바가지 대, 중	24개
밥고리	3	체	6	채갈	3자루	큰밥술	4틀
중간밥술	5틀	작은밥술	4틀	좌철	3	부쇠	2
부텃가락	3쌍	적쇠	3쌍	늦소라	3	늦대야	3
늦요강	3	칠기쟁반	4죽	용탕술가락	3단	늦젓가락	3메이
큰 늦술가락	3가락	늦뚜껍	3	휘건	3	수건	3
흰면주비갑	3쌍	작은 늦술	3	주전자	2	도롱	4마리
차보시기	3	좌면지	30장	항아리	4좌	독	12좌
어피	50장	흰사기항아리	10좌	장지	5권		

<표 13-2>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2) : 약재

생지황	10냥	옥리인(산앵두씨)	3냥	마황	7냥	황기	1근
맥문동	10냥	천문동	1근	길경(도라지)	10냥	적복령	10냥
시호	10냥	백출	2근	방풍	8냥	산약	5냥
천남성	4냥	백작약	5냥	당귀	1근	백복령	10냥
궁궁	7냥	승마	5냥	전호	3냥	향유	2근
백지	3냥	창출	2근	대황	8냥	황백	10냥
강활	5냥	소엽	7냥	황금	8냥	백편두	4냥
택사	6냥	상백피	5냥	반하	8냥	애엽	5두름
목통	10냥	차전자	2냥	말린모과	5냥	오미자	5냥
세신	5냥	박하	3냥	형개	4냥	인동	2근

<표 13-3>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3) : 우구(雨具)

상품 가는 도롱이	3건	상품 언치	3건	백적	3건	유삼	3건
달치	3거리	차상품 익힌 도롱이	32부	차상품 언치	32부	짚도롱이	15부
화자	3부	행수목	1동				

『증정교린지』(권5)에는 「경외노수(京外路需)」 항목에 기록되어 있다. “각 도에 복정한 물품은 부산에 실어다 납부하여 6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여러 도에서 구하여 가린 물품은 사신에게 나누어 보내되, 부경(赴京) 반전의 예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다. 『통신사등록』의 내용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가 일본을 왕래하는 동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내용을 잘 볼 수 있다. 통신사 사행원의 일상생활사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일급제, 피로인 쇠환 유문(諭文)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월 5일조에 수록되어 있는 ‘통신사절목’을 보면,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갑자년(1624) 사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인물을 쇠환하기 위하여 예조에서 만들어 준 돈유(敦諭)공문으로 찾아다니며 쇠환하여 무마하고 보살피 데리고 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 피로인을 쇠환하는 유문이 계미년 1월 25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예조단자를 보면 「피로인물쇠환유문」을 전례를 참고하여 단자에 후록한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조에서 통유(通諭)하는 일임. 국가가 불행하여 갑자기 병란의 화를 입어 팔도의 생령이 도탄에 빠졌는데, 그 중에 겨우 칼날에 죽음을 모면한 자가 모두 묶여 있는 지가 지금까지 50년이 되었다. 그 가운데 어찌 부모의 나라를 그리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은

하는 이가 없겠는가마는,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 업고 나오는 자가 보이지 않으니, 이는 필시 함몰된 지 오래되어서이니 그 실정 또한 가련하다. 국가에서는 쇠환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히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 병자년(1636) 사이에 사신이 데려온 사로잡혀 간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죄를 면하게 하고, 신역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면역하였으며, 공사전은 면천하여 완전히 복호(復戶)하고 보호하고 보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본토에 편안하게 정착하게 하여, 그 쇠환되어 온 사람들 역시 모두 친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다시금 낙토의 백성이 되게 하였는데, 일본에 있는 이들도 또한 필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이제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의 원수가 된 적당을 섬멸하고, 앞 시대에 하던 바를 모조리 고쳐서 서신을 보내어 우호를 요청하기에, 국가에서는 특별히 생명 때문에 사신을 보내나니, 사로잡혀 가서 일본에 있는 자가 살아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이 그 시기이다. 만약 일체히 나온다면, 마땅히 지난 날 나왔던 사람들의 사례대로 면천 면역 복호 등의 은전을 일일이 시행할 것이니, 유시하는 글이 도착하는 즉시 서로 전달하여, 유시문 내용대로 통고하여, 사신이 돌아올 적에 일시에 나오도록 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여 시일을 연기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귀신이 되는 것을 면하도록 하라. 대조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되, 모름지기 통첩을 받을 사람에게 도착되도록. 위 통첩은 사로잡혀 간 사민(士民)들에게 내림.”

통신사는 인조의 지시에 따라 피로인을 쇠환하려고 노력하였다. 1643년 통신사 사행록인 『계미동사일기』에는 피로인 쇠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사람 잉질금과 청도사람 자질사라·자질덕 내외는 모두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어서 나가기를 원하였다. 시나가와(品川)에서 대구 양반 출신인 안경우(安慶佑)를 만났다. 의사로 살고 있는 그는 번주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8월 6일) 하코네(箱根)에서는 도중에 심한 검문을 받기도 하였다.(8월 9일, 14일) 오가키(大垣) 서쪽에 있는 역참에는 피로인이 많다고 하므로 역관 이형남과 김근행을 보내 이들을 찾아 데려 오도록 했다.(8월 17일) 교토에서 대춘(大春)·묘운(妙雲) 등 광주(光州) 출신 여인이 고국에 돌아가기를 원하므로 상통사를 시켜서 데려가도록 했다.(8월 24일) 김근행을 하카다(博多) 근처에 보내 피로인을 찾게 하였다.(9월 22일) 잇키섬(壹岐島)에 도착했을 때 김근행이 3명을 찾아 왔다.(9월 23일) 이형남이 피로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9월 23일)

『인조실록』 21년(1643) 10월 29일조를 보면, 통신사 윤순지와 부사 조경이 대마도에 돌아와 치계하기를, 임진·정유년에 사로잡혀간 인민들은 모두 자손을 두고 그 땅에 안주해 살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14명만 데리고 나왔는데, 도중에 병들어 죽은 자가 여섯 사람이라고 하였다. 11월 3일조를 보면, 통신사 윤순지와 조경 등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 피로인 남녀 14명을 데리고 와서 부산에 도착하였으므로, 경상감사로 하여금 의복과 식량을 넉넉하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14명은 어릴 때 이름과 본관 등을 성책한 후 원적의 지방관으로 보낼 계획이었다.(『통신사등록』 계미년 11월 10일)

쇄환 유문을 가지고 가서 피로인에게 보이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사람을 쇠환하지는 못하였다. 도중에 6명은 죽고 14명만이 다시 조선의 땅을 밟게 되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자손을 두고 일본에서 안주하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은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피로인 문제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종료되었다고 본다.

피로인을 쇠환하는 문제는 1643년 통신사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이 유문은 피로인 문제와 관련한 통신사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3월 13일조에는 계미년 통신사 때 한 명도 쇠환하지 못하였으므로, 1655년 통신사에게 쇠환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가깝다고 서술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 37년(1711) 4월 1일조에도 계미통신사 때 피로인을 쇠환하기 위하여 ‘돈유공문’을 성급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

여덟째, 남선사 금지원과 건인사 십여원의 편액 요청

일본은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중국 남송의 제도를 본받아 오산십찰제(五山十刹制)를 확립하였다. 남선사를 오산보다 위에 두고, 천룡사(天龍寺), 상국사(相國寺), 건인사(建仁寺), 동복사(東福寺), 만수사(萬壽寺)를 교토 오산으로 정하였다.

『통신사등록』 갑신년(1644) 4월 8일조에는 대마도주 다이러 요시나리(平義成)가 상사(上使 : 통신사 정사) 윤순지에게 보낸 서계가 수록되어 있다. 이 서계는 계미년(1643) 11월에 쓴 것이다. 계미(1643)통신사는 일본에 갔다가 1643년 10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러므로 통신사가 돌아가자 곧 보낸 서계이다. 서계는 근래에 일본의 승려가 건물 하나를 지었으나 아직 편액을 써서 걸지 못하였으므로 ‘금지원(金地院)’이란 세 글자를 써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한 건인사의 홍장로(洪長老)가 우거하는 곳이 십여원(十如院)인데, 이 곳의 편액도 바란다는 것이다. 이 부탁을 사양하지 마시길 청하면서, 별도로 서전(書傳) 1부와 산화문갑(緘畫文匣) 1개를 보냈다.

별견역관 홍희남은 수본(手本)으로 이 문제를 보고하였다. 즉 부특송사가 나올 때 통신 상사 앞으로 도주가 바치는 서신과 별폭, 금지원과 십여원의 제액(題額)을 쓸 당지(唐紙) 4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금지원은 대군의 국사(國司) 양장로(良長老)의 수호(守號)이고, 십여원은 대마도에 와서 거주하는 홍장로의 수호인데, 정사가 손수 쓴 필적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전에도 빈번하게 있었으므로 참고하여 회답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보면, 윤순지에게 명하여 써서 보내게 하고, 또 도주가 이미 서신을 보내고 윤순지에게 물건을 보냈으니 서로 신뢰하는 도리에서 회답과 회례가 없어서는 아니되므로, 승문원에 명하여 회답 초고를 짓게 하고, 회례하는 예물을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보내온 서책 등은 예조에 명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인조의 윤택이 있었다.

통신사가 돌아오고 난 이후 양국 간의 교류 양상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윤순지가 금지원과 십여원의 편액을 써 주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내용은 1643년 통신사와 관련된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기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자료의 발굴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홉째, 일광산 동조궁 제사와 대유원 제사

● 일광산 동조궁 제사

1643년 통신사와 1655년 통신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각각 일광산(日光山) 치제(致祭)와 대유원(大猷院) 치제를 들 수 있다. 1641년 일본의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동조궁(東照宮)의 보탑을 석조보탑으로 개조하여 완공할 무렵에 그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보탑 완공을 기회로 통신사를 요청했다. 조선에서는 일광산 동조궁에 대장경, 인조의 어필 편액, 조정 대신의 시, 동종, 향로, 축대, 화병 등 선물을 전달하고, 세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통신사 삼사가 결정된 후 사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643년 1월 부산에서 역관 홍희남과 대마도의 다이라 나리타카(平成幸) 사이에 「통신사강정절목」 24개 조항이 결정되었다. 이 내용은 『증정교린지』(권5, 신행각년례)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강정절목 가운데 일광산 치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삼사가 일광산에 나아갔을 때에 칙필(勅筆), 종, 향로, 축대, 화병 등의 물품을 마땅히 준비하여 지급하고 제문은 삼사가 가지고 가고 향전은 일본의 예법에 따라 행한다.
- ㉡ 대군과 약군 앞에서 상견하는 것 및 일광산에서 예를 행하는 것은 모두 전례에 따르고, 만약 그 때 가서 틀리는 것이 있으면 모두 대마도주가 말한 대로 한다.
- ㉢ 일광산에 삼사가 들어갈 때 쓸 예단을 가지고 온다.

위의 내용은 일광산 치제에 관한 절목이 처음 명문화한 것이다.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월 15일조에 수록된 예조 계목을 보면, 일광산(日光山)에 세 사신이 제사를 지낼 때 쓸 예단(禮單)이 후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인삼 15근, 흰 모시 20필, 흰 명주 20필, 오색종이 50권, 채화석 20장, 황모필 각색 100자루, 유매묵(油煤墨) 100홀, 유둔 10번(番), 백지 100권, 석린(石鱗) 20근이다.

1월 25일조에 수록된 예조단자를 보면, 일광산에 제사지낼 때 쓸 폐백(幣帛)은 홍색 모시 3필, 흰 명주 3필, 검은 삼베 3필, 채초(彩綃) 3필로 정하였다. 그런데 2월 12일조에는 일광

산 치제에 쓸 폐백으로, 금단(錦段) 3필, 채화석(彩花席) 10장, 자기잔대(磁器盞臺) 3죽(竹), 대접(大帖) 3죽, 보시기[甫兒] 3죽, 대화촉(大花燭), 대부용향(大芙蓉香), 운모(雲母), 화석(花席) 5넙. 유둔(油菴) 2부가 추가되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월 15일조에 수록된 ‘대마도주 소지’에는 일광산 치제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표 11-1〉의 4, 5, 6 참조) 그리고 ‘봉행 등 소지’에도 치제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표 11-2〉의 9, 10 참조) 계미년 2월 11일조에 수록된 「홍희남이 가져온 등차(차왜 藤智繩)의 열거 조목(洪喜男賈來藤差條列)」의 일광산 치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지난 여름 어필을 들여보낼 때, 에도에서 사신이 일광산으로 들어갈 때 받들어 가지고 사당에 납입하는 의장 등의 물건을 마련하여 가지고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의장은 여기에서 가져가는 것이 불가한 일이므로, 비변사에서 이미 틀어막는다고 입계 하였음.
- ㉡ 일광산에서 치제할 때의 폐백은 난잡한 상품을 사용하여서는 불가하니, 금단 두세 필과 대화촉, 대부용향, 운모, 채화석, 자기 약간으로 마련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치제의 폐백 12필은 이전에 이미 마련하여 계하하였으니, 이제 이 말대로 세모시[細苧]와 삼베 등 물건은 모두 제거하고, 금단 3필 및 향촉과 운모, 채화석, 자기 등의 물건이 비록 치제의 폐백에 적합치 않지만,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가져가서 임시로 조처하게 할 것.

이처럼 『통신사등록』에는 일광산 치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여러 형태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일광산 치제 때 사배(四拜)를 하느냐 재배를 하느냐는 예법이 문제가 되었다. 계미년 2월 6일조를 보면 대마번 차왜인 후지 도모나와(藤智繩)는 사배의 예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역관 홍희남은 전례를 들어 재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광산에서 사신이 행례하는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필(御筆)을 존경하여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예조는 사배를 하되 약군(若君)에게는 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논의는 그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1643년 통신사의 사행록을 보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계미동사일기』 3월 26일조를 보면, 통신사가 부산에 머물 때 세 사신이 사청(射廳)에 모여 일광산에 헌향하는 의식을 연습하고 난 뒤에 관원과 사공들을 모아 금지 조항을 설명하였다. 일광산 치제 의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7월 15일 에도에 있을 때, 대마도주와 역관 홍희남·이장생이 약군 앞에서 취할 예법과 일광산의 배례 문제를

다시 논의하였다. 약군에 대한 예법은 전명(傳命) 의식이 행해지는 날 참석하지 않아서 쉽게 해결되었다. 일광산 배례 문제도 재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계미동사일기』를 보면 7월 21일 에도에 머물 때, 역관 정충현으로 하여금 숙수를 데리고 먼저 일광산에 가도록 했다. 7월 26일 새벽에는 대마도주가 제물 때문에 상의하고자 역관 홍희남과 함께 먼저 일광산으로 갔다. 7월 27일 사신이 평상 위에서 향을 피우고 축을 읽고 전후 재배의 예를 행하니, 도주와 집정들은 평상 밑에 서서 숨을 죽이고 엄숙한 얼굴로 감히 소리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통신사등록』에는 일광산 치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의견이 오고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과정과 예단·폐백의 결정과정, 치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대유원 제사

대유원은 막부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의 묘당(廟堂)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당인 권현묘(權現廟: 대권현궁, 동조대권현궁) 서쪽 400m 쯤에 위치한다. 이에미쓰는 생전에 그의 묘를 일광산에 축조하려고 하였다. 이에미쓰가 1651년 4월에 죽자 시신은 일광산에 매장되었다. 이어 영묘(靈廟)인 대유원 축조가 이루어져 1653년 4월 완공되었다. 1653년 9월에는 유구의 축하사절이 에도에 왔다가 동조궁과 대유원에 분향을 하였다.

갑오년(1654) 11월 16일조에 수록된 예조 계목을 보면, 대유원의 폐백과 향전(香奠)에 필요한 물품이 수록되어 있다. 물품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1> 대유원에 쓸 폐백(幣帛)

금단(錦段)	대화축(大花燭)	대부용향(大芙蓉香)	채화석	자기잔	대접	보시기[甫兒]	석린
3필	2쌍	30매	10장	1죽	3죽	3죽	10근

<표 14-2> 대유원 향전(香奠)에 쓸 물품

백단향	은향합	홍상건사라	주홍곡수좌면지	백납축	대부용향
2냥	1부	1필	10장	3쌍	3쌍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3월 2일조에는 문위역관 이형남·박원량 등의 도해(渡海) 후 별단이 수록되어 있다. 별단 가운데 대유원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일광산 대권현(大權現) 묘당(廟堂)과 대유원 묘당은 거리가 1~2리 정도이니 통신사는

먼저 대유원에 갔다가 다음 대권현으로 감이 좋겠음.

- ㉠ 대유원 묘당에 통신사가 참배할 때 등롱은 귀국에서 이미 주조하여 만들었다고 하니 이는 다행이며, 악기 여러 도구는 정하게 갖추어 들여보내는 것이 매우 적절함. 또한 제문은 은근히 제작하여 보내고 치제할 때의 전물(奠物)은 새 물과 새 불로 숙수(熟手)가 새 옷을 입고 함매(啣枚)하여 손을 대지 않고 조과(造果)하므로, 계미년(1643) 치제 때 각종 전물이 비록 극히 정하였으나 일본의 풍속과는 달랐기에 사당에 진설하지 않고 곧장 대군 앞으로 들었는데, 이번의 전물 여러 도구는 가져오되 그 가운데 기름에 지지는 물건은 일본 풍속에 맞지 않으나, 호두와 대추, 밤, 잣, 꽃감, 청밀 등의 물건은 수량을 감절로 가져와서, 그 중 좋은 것을 가려 정결한 버들상자에 담아 넣어 치전함이 좋겠음. 혹시 익혀서 진설하는 일이 있으면 숙수가 없어서는 안될 듯하니 숙수 1명을 데려와도 무방함.
- ㉡ 어필을 대유원 묘당에 써서 보낼 때 선대군(先大君) 생시에 귀국에 대하여 은근한 뜻이 많았다는 뜻을 제술하여 보내면 좋겠음.

예조에서는 도해역관 이형남의 별단이 부질없는 내용이 많으므로 긴요한 일만 후록한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대유원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대권현 묘당에 이전에 사신이 들어갔을 때 혹 분향하거나 혹 치제하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제 이전대로 함이 마땅하되, 이른바 대유원 묘당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일체로 시행함이 마땅할 듯한데, 해조에서는 마음대로 하기 어려우니 이는 묘당에 명하여 논의하여 조치할 것.
- ㉣ 저쪽에서는 대유원 묘당에 등롱을 청하여 얻은 뒤에 또 악기를 청하는 것은 대개 대권현 묘와 일체로 하려고 하는 뜻이나, 전에 이미 갖추어 보냈으니 이제 틀어막기가 어려운데, 또한 해조에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니, 묘당에 명하여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며, 전물 한 가지 일은 그 말대로 시행하되, 숙수는 1명을 정하여 보내도 무방하니, 사신에게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게 함.

이러한 예조의 견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권현묘당의 치제와 분향은 본래 전례가 있는데, 대유원은 이에미쓰의 사당이니 치제하는 절차는 달리하기 어려울 듯한데다가, 장소 또한 매우 가까우니 행하더라도 무방할 듯하고, 악기도 등롱을 이미 허락하였기에 그대로 부응함이 마땅할 듯하니, 예조에 명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효종의 윤허가 있었다.

을미년(1655) 3월 13일조를 보면, 왜인이 구청한 대유원 묘당의 악기를 권현 묘당과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내기로 허락하였으므로, 임진년(1652)의 사례대로 호조와 공조 낭청이 장악원 관원과 함께 『악학궤범』의 적도대로 정밀하게 제조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임진년에 보낸 악기대로, 거문고(琴), 슬(瑟), 축(祝), 어(敵), 훈(塤), 지(篋), 약(簫), 적(箏), 관(管), 통소(簫)의 10종 악기를 각 1건씩 만들어 보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증정교린지』(권5) 「일광산에 제사지내는 의례(日光山致祭儀)」에서는 슬(瑟), 어(敵), 금(琴), 적(笛), 지(篋), 약(簫), 관(管), 훈(塤), 축(祝), 진(簞), 소(簫)의 11종을 주었다고 하였다.

대유원 치제는 처음이므로 치제 때 사용할 예물과 잡물은 모두 일광산 치제 때와 같이 마련하도록 하였다.(을미 3월 23일) 을미년(1655) 4월 3일조에는 「권현묘당 및 대유원의 치제 의례(權現廟堂及大猷院致祭儀)」가 수록되어 있다. 사전 준비 내용, 행례 과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유원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문은 다음과 같다.

[유세재 을미 4월 을묘삭 20일 갑술 조선국왕은 삼가 신하 통정대부 이조참의 지제교 조형 등을 보내어 일본국 대유원의 영령에 치제하노라]

“아득히 생각건대 영신(靈神)은, 공덕을 크게 드러내어, 큰 사업을 이어받아 지키며, 남 겨룬 법칙을 준수하여, 후손이 능히 창성하고, 효성스런 생각이 더욱 독실합니다. 우뚝할사저 정한 사당은, 명복을 비는 곳인지라, 그 산은 높다랗고, 단청은 찬란하게 빛나니, 보우하는 은덕이 미쳐, 기반이 더욱 험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대대로 친목을 닦음에 돈독하여, 비록 큰 파도가 막혀 있지만, 명성과 공훈을 사모한지 오래입니다. 이에 사절을 보내어, 보잘 것 없는 제수를 올리니, 부디 음덕의 보살핌으로, 영세토록 함께 즐겁기를”

1655년 통신사 정사 조형의 『부상일기』를 보면, 10월 18일(병인)에 대유원에서 제사를 지냈다. 통신사 종사관 남용익의 『부상록』에도 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제문 날짜가 ‘시월 을묘삭 이십일 갑술’로 『통신사등록』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제문은 대제학 채유후(蔡裕後)가 지은 것으로 『춘관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춘관지』에는 「대유원 등룡명(燈籠銘)」도 수록되어 있다. 『증정교린지』(권5)에도 「일광산에 제사지내는 의례(日光山致祭儀)」가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은 대유원 치제는 물론 권현묘를 비롯한 일광산 치제와 관련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춘관지』, 『증정교린지』, 『부상록』 등 관련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신사등록』은 등록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료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통신사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서와 서계가 중심이다 보니, 전체 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사행원의 일본 내 활동에 대한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외교적, 정치적 측

면의 성격이 강하고, 문화적 측면의 성격이 약하다. 그러므로 문화교류에 관한 내용은 사행록이나 필담창화집 등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통신사 연구에서 『통신사등록』은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않았다. 통신사 연구가 주로 문화연구에 치중한 것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증정교린지』, 『춘관지』, 『통문관지』, 『변례집요』 등에 수록된 통신사 관련 내용은 『통신사등록』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경우 『통신사등록』이 가지는 일차 사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 이번 『통신사등록』의 국역본 간행을 계기로 『통신사등록』이 적극 검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해제에는 다음 참고문헌의 연구성과를 표시 없이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건서 저, 하우봉·홍성덕 역,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 법제처, 『춘관지(상)(하)』, 법제처, 1976.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료의 소개」 『한일관계사연구』 18, 한일관계사학회, 2003.
- 손승철·김강일, 「조선시대 한일관계사료해제」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2010.
- 신로사, 「1643년 통신사행과 조경의 일본 인식에 관한 소고」 『민족문화』 41집, 민족문화추진회, 2013.
- 이훈, 「전근대 한일교류사 자료로서의 대마도종가문서」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 정연식 외, 「『통신사등록』 해제」 『통신사등록 1』(영인본),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대의 관계편, 서울대 도서관, 1991.
- 정장식, 「1655년 통신사행과 일본연구」 『일본학보』 44권 1호, 한국일본학회, 2000.
- 정장식, 「계미(1643년)통신사행과 일본인식」 『일본문화학보』 10호,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 泉澄一, 「대마도 종가문서의 분석 연구-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기록류(6,592점)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집, 국사편찬위원회, 1989.
- 최종일, 「조선통신사의 일광산치제 연구」, 강원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 『역사학보』 112집, 역사학회, 1986.

- 하우봉, 「『통신사등록』의 사료적 성격」 『한국문화』 1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 한문중,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저술의 조사 연구—대일관계 등록류를 중심으로—」 『국사관 논총』 8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 허경진·박혜민, 「조선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일본 문화」 『한국어문학연구』 54, 한국어문학 연구학회, 2010.
- 高橋昌彦, 「朝鮮通信使唱和集目錄稿」 『グローバル時代の朝鮮通信使研究』, 松原孝俊 편, 花書院, 2010.
- 吉川弘文館編輯部 편, 『日本史必携』, 吉川弘文館, 2006.
- 大瀧晴子, 「日光と朝鮮通信使」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映像文化協會 편, 毎日新聞社, 1979.
- 三宅英利 지음, 손승철 옮김,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1.



國譯 鄭景柱 (경성대학교 교수)

監修 李源鈞 (전 부경대학교 교수)

신사(1641) 10월 14일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¹⁾의 장계 내용. 이달 초6일에 신사조 특송(特送)²⁾ 제1선 정관(正官)³⁾ 등의 상선연(上船宴)⁴⁾을 베풀었음. 전에 부특송(副特送) 정관의 말로 인하여 관백(關白)이 새로 아들 하나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미 치계(馳啓)⁵⁾하였는데, 어제 상선연을 받을 적에 정관이 말하기를 “대군(大君)⁶⁾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두어, 일본 나라 안에서 축하하는 뜻은 말로 다하기 어려움이 있거니와, 조선에서도 또한 반드시 경사를 기뻐하여 내년에는 통신사(通信使)⁷⁾를 들여보내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대군이 아들 낳은 일을 전일 연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듣고 기뻐하여 축하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였는데, 문서 내용에는 나오지 않고, 단지 말로만 전한 것이어서 감히 계달(啓達)⁸⁾하지 못하겠기로, 앞의 장계 가운데 개진하지 않았거니와, 근래 3-4년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잇달아 흉년을 당하여 백성들의 힘이 고갈되어, 비록 치하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더니, 다시 답변이 없었으며, 저들로서는 12일에 배를 타고 간다고 운운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전일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역관(譯官)을 보내어 축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관백이 아들을 낳아 본국에서 스스로 기쁜 경사라고 여기는데, 치하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필시 실망할 것이로되, 저쪽에서 문서로 알리는 일이 없었는데 이쪽에서 먼저 축하를 보내는 것 또한 부당한 듯하여, 신의 예조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묘당(廟堂 : 조정)에 명하여 확정하여 조처하시면 어떠할지? 승덕(崇德) 6년(1641) 10월 17일 우승지 신 김육(金堉)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1) 정호서(丁好恕, 1572-?) : 나주정씨로 자는 사추(士推)이다. 광해 즉위년(1608)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인조 18년(1640) 10월에 동래부사로 도임하여 20년(1642) 2월에 교체되었다. 나중에 황해병사를 역임하였다.

2) 특송(特送) : 일본의 대마도에서 동래 왜관에 해마다 보내오는 무역선의 한 명칭. 대마도에서는 해마다 세견선(歲遣船) 17척과 제1특송선(特送船)에서 제3특송선까지 3척, 이떼이양[以酒] 송사선(送使船) 1척, 만쇼인[萬松院] 송사선 1척, 부특송선(副特送船) 1척 등 모두 23척의 송사선을 보내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3) 정관(正官) : 대마도에서 보내오는 공식 무역선을 대표하는 무역 사절.

4) 상선연(上船宴) : 왜관무역에서 공식 무역사절이 떠날 때 베풀어주는 잔치

5) 치계(馳啓) : 역마(驛馬)를 통하여 급하게 장계(狀啓)를 보냄.

6) 대군(大君) : 일본 막부(幕府)의 최고실력자인 쇼군[將軍]을 가리키는 말이다.

7) 통신사(通信使) : 조선초기 이래 조선 정부에서 일본 막부에 보내는 공식 사절을 통신사라 일컬었다.

8) 계달(啓達) : 지방관이 중앙 관서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공식 문서인 장계(狀啓)를 작성하여 전달함.

9) 김육(金堉, 1580-1658) : 청풍김씨로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이다. 인조 반정 직후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교린(交隣)의 도리로는 경하하고 조문하는 일로 사신을 보냄이 예입니다. 이제 이번 관백이 아들을 낳은 데는 사신을 보내는 일이 있어야 하나, 동래부사가 도리에 의거하여 답하였지만 저쪽에서 답이 없었다고 하니, 짐짓 뒷날 일의 기미를 보아 조처함이 어떠할지? 승덕 6년(1641) 10월 20일 좌부승지 신 한흥일(韓興一)¹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사(1641) 10월 26일

경상감사의 장계 내용. “근래 왜선이 나오면서 정관 등이 누차 관백이 새로 사내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와 또한 여러 섬에서 진하(進賀)한다는 말을 언급하였는바, 앞으로 필시 도주(島主)가 전하여 알리는 문자가 있을 것이지만, 혹 이로 인하여 사신의 왕래를 청할 것인지?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일찍이 이런 사례가 없었기에, 도중(島中)¹¹⁾에서는 한 번 우리 사신을 겪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많을 것이라 합니다. 들으니 도주가 가을 사이에 새로 딸자식의 혼례를 행하면서 비용으로 많은 돈을 사용하여 재산이 매우 줄어들었고, 도중(島中)의 올해 가뭄 재해가 우리나라 남방보다 심하여 전답에서 거둘 것이 전혀 없으므로, 관왜(館倭)¹²⁾들이 쌀을 금처럼 아껴서, 가을이 깊어진 뒤에는 쌀로 물건을 무역하는 것을 조정할 것이라고 하며, 관백의 차장(次將)이 내년 2월 사이에 관백의 명을 받들어 나와서 각 섬을 순시하면서 대마도에 올 것이라 하기로, 도주는 바야흐로 비용의 허비를 우려하고 있으며, 접대하고 호송하는 배는 현재 새로 만들어 모두 칠을 하였고, 한편으로 관사(館舍)를 만들고 있는데, 저들의 수많은 경비가 이러하니 우리에게 사신을 청할 리는 없을 듯하다고 운운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¹³⁾ 내용. 사신을 보내어 치하하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도주의 문서를 기다린 연후에 서서히 논의하여 조처한다는 일로 이미 묘당에서 확정하였는데, 이제 이번 장계에 도주가 우리에게 사신을 청할 리가 없을 듯하다고 하였으니, 우리 쪽에서 먼저 제기하는 일은 없음이 마땅하고, 이전에 확정한 대로 시행하는 일로 행이(行移)¹⁴⁾함이 어떠할지? 입계한대로 윤택함.

10) 한흥일(韓興一, 1587-1651) : 청주한씨로 자는 진보(振浦), 호는 유시(柳市)이다. 인조 2년(1624)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1) 도중(島中) : 대마도의 일본측 관청인 대마부중(對馬府中)을 가리킨다.

12) 관왜(館倭) : 부산의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

13) 계목(啓目) : 국왕에게 보고 건의하기 위하여 해당 관청에서 덧붙인 의견서.

14) 행이(行移) : 관공서 사이의 업무 협조 공문인 이문(移文)을 발송함.

임오(1642) 정월 11일

경상감사 구봉서(具鳳瑞)¹⁵의 장계 내용. 이달 초1일 왜선이 나오는 것을 관측한 사정과 문답한 사연은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에 상세하거니와, 이른바 소소선(小小船)의 두왜(頭倭)¹⁶가 나온 뒤에 관수(館守)¹⁷ 다이라 도모쓰라[平智連]가 말한 내용에 ‘에도에서 차출하여 보낸 전 봉행(奉行)¹⁸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를 부관(釜館)으로 내보내어 홍희남(洪喜男)¹⁹ 이장생(李長生)²⁰과 상의하겠다’고 하였는바, 비록 명백한 말은 없으나 그 뜻을 대충 살펴보면, 관백(關白)이 아들 낳은 경사를 온 나라에서 이제 축하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가 우리나라의 방문을 요청하여 얼굴을 내려고 하는지, 반드시 2월 내로 에도[江戸]에 회보(回報)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대마도에서 에도까지는 겹겹의 바다를 건너 거리가 매우 멀기로, 상의하여 확정하는 일을 급속히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인데, 위의 홍희남·이장생에게 밤낮 없이 말을 지급하여 내려보내 주실 것. 다이라 나리다카는 곧 저쪽에서 우리 쪽 일을 담당하는 왜인인지라, 접대하는 한 가지 일은 후지도모나와[藤智繩]와 비교하여 더 우대함이 있어야 할 듯한데, 접위관(接慰官)²¹을 내려 보내는 사이에 날짜가 지연되면 반드시 기일에 미치지 못하겠기로, 요즈음의 사례대로 도내의 수령 가운데 한편으로 가려 보내면서 접대하는 일을 각 별히 신척하였다고 운운한 일 및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 내용.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최의길(崔義吉)²² 등에게 문정(問情)²³하게 하였더니, 그 회언(回言)²⁴ 내용에, “소소선(小小船)에 두왜(頭倭) 2명과 격왜(格倭) 6명 등이 동래로 보내는 서

15) 구봉서(具鳳瑞, 1596-1644) : 능성구씨로 자는 경휘(景輝), 호는 낙주(洛洲)이다. 인조 2년(1624) 증광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인조 18년(1640) 7월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20년(1642) 6월에 첩지가 되어 갔다.

16) 두왜(頭倭) : 일행의 우두머리가 되는 왜인.

17) 관수(館守) : 관수왜(館守倭). 부산 왜관에 상주하면서 왜관에 거류하는 일본인을 관리하는 동시에 외교와 무역 사무 등을 관장하던 대마도주(對馬島主)의 가신(家臣).

18) 봉행(奉行) : 대마도의 도주를 보좌하는 관직 명칭.

19) 홍희남(洪喜男, 1595-?) : 남양홍씨로 자는 자열(子悅)이다. 광해 5년(1613) 역과에 합격하고 왜역으로 종사하여, 임진왜란 이후 대일 관계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승록대부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20) 이장생(李長生, 1604-?) : 자는 자고(子固)이다. 인조 2년(1624) 증광 역과에 합격하고 왜역으로 종사하였다.

21) 접위관(接慰官) : 일본에서 외교상 파견한 사절을 접대하기 위하여 조선 조정에서 차출하여 보내는 관원. 일본 정부에서 보낸 관직이 높은 대차왜(大差倭)가 나올 경우 이를 접대하기 위해 서울에서 관원을 파견하고, 그 외의 사소한 문제로 차왜(差倭)가 나올 경우에는 인근 고을 수령이 대신하였다.

22) 최의길(崔義吉) : 인조 때 역관으로 왜역에 종사하였는데, 그 생몰연대와 이력은 분명치 않다.

23) 문정(問情) : 자세한 사정을 물어서 확인하는 절차. 왜관에 배가 출입하면 역관을 파견하여 그 출입 인원과 사정을 자세히 물어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다.

24) 회언(回言) : 문정을 위하여 파견된 관원이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절차.

계 한 통을 가지고 나왔거든, 그 온 사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저희들은 단지 서계와 관수 다이라 도모쓰라에게 보내는 문서를 가지고 왔을 따름, 그 사이의 일은 모르며, 관수왜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음. 즉시 다이라 도모쓰라를 만나 그 두왜가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다이라 도모쓰라가 답하기를 ‘대군이 아들을 낳은 것은 본국의 큰 다행이고, 또한 이웃나라로서도 서로 찾아보지 않아서는 안될 일인지라, 도주가 에도에서 차출하여 보낸 전 봉행왜(奉行倭) 다이라 나리다카를 부관(釜館 : 부산왜관)으로 내보내어 홍지사(洪知事)·이지사(李知事)와 서로 의논하여 방문하는 예에 있어서 근심이나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의리를 잃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고, 또 달리 의논할 일이 있어서 서계(書契)²⁵를 가지고 별도로 두왜를 정하여 비선(飛船)²⁶을 내보냈으니, 속히 조정에 장계를 올려, 홍(洪)·이(李) 두 지사가 기어코 정월 15일 이내로 내려와서 다이라 나리다카가 건너오기를 기다리게 함이 어떠할지? 다이라 나리다카는 이곳에서 되돌아가 2월 안으로 에도에 돌아들어 가야 하고, 도주가 또 분부한 일이 있다’고 운운하였음. ‘이른바 별도로 상의할 일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였더니, 다이라 도모쓰라가 말하기를 ‘상의한다고만 썼지 특별히 명백하게 적어 보낸 것이 없어서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기로, 이렇게 회언하며, 다이라 나리다카의 본명은 히라다 쇼갱[平田將監]인데 후지 도모나와[藤智繩]에 견줄 바가 아니고, 도주가 친애하여 믿고 존중하는 사람이며, 접대하는 일은 홍희남에게 물어서 확정함이 어떠할지? 운운 회언한다” 하였음. 신에게 온 서계 1통은 해조(該曹)²⁷로 올려보내며, 다이라 나리다카가 에도에서 이미 도중(島中)에 도착하여 이달 15일 전에 마땅히 나올 것이라고 하거니와, 이 왜인은 곧 이미 봉행(奉行)을 역임하고 도주가 친애하고 믿는 사람인데다, 그 아들이 또 현재 봉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접대 등의 여러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조에 명하여 속히 참작하게 하여 분부하시되, 이장생도 반드시 재촉하여 내려보내어, 다이라 나리다카가 왜관에 도착한 뒤에 접대하여 반드시 2월 내로 에도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이제 이번 두왜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 초본을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만들어 보낼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다이라 나리다카가 나온다는 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홍희남과 이장생 등을 내려보내는 것은 무방하나, 다만 홍희남은 현재 상중에 있으니 수일 내로 기복(起復)²⁸하여 직책을 주어 보냄이 마땅할 것이고, 접위관은 전례대로

25) 서계(書契) : 조선의 동래부와 일본의 대마도주를 중개로 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에 거래하던 공식 외교 문서.

26) 비선(飛船) : 대마도와 부산 왜관 사이에 급한 연락이 있을 적에 오가는 작은 배.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예닐곱 명이 타고 왕래하였다.

27) 해조(該曹) : 해당 관청. 무역사절의 출입에 대한 업무는 대개 예조(禮曹)에서 관장하였다.

28) 기복(起復) : 부모의 상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휴직 중인 관원에게 다시 실직을 주어 복직시키는 일.

예조 낭관 가운데서 선정하여 즉시 출발하여 보낼 것. 금주(錦州)의 정세²⁹⁾는 포위되어 결판 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답하였는데, 관백이 아들을 낳아 치하하는 일은 다이라 나리다카가 나오기를 기다려 문답한 뒤에 조처함이 어떠할지? 승덕 7년(1642) 정월 초9일 동부승지 신 이 유성(李惟聖)³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 다이라 나리다카는 이미 후지 도모나와의 부류가 아니라 곧 도주가 친애하여 믿고 존중하는 사람이라 하니, 접위관과 차비역관은 해당 사역원에서 매우 잘 가려서 내려보내고, 무릇 접대는 후지 도모나와 보다 더 우대하여, 처음 나왔을 때 및 되돌아갈 때 각각 한 차례 잔치를 베풀고, 왜관에 머물 때 별도로 잔치를 행하며, 예단 또한 더 마련하여 입계하오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반종(伴從)³¹⁾은 이미 명수가 없으니 짐짓 먼저 이렇게 내려보내어 제급(題給)³²⁾하되, 부족한지 여부는 경상도 및 동래부사가 십분 점검 신척하여, 환대에 실수가 없도록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승덕 7년(1642) 정월 11일 행도승지 신 서경우(徐景雨)³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예조단자. 차왜(差倭)³⁴⁾ 다이라 나리다카에게 처음과 돌아갈 때의 각 연회 및 왜관에 머물 때의 특별 연회 등 세 차례의 증정하여 줄 예단(禮單)³⁵⁾. 각기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인삼 1근, 흰 무명 5필. [이상 해당 관청에서 내려 보냄.] 화석(花席) 3장, 너장 불인 유둔(油菴) 2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세 차례 잔치 때 반종에게 증정하는 물건.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흰 무명 30필. 승덕 7년(1642) 정월 11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예조단자. 비변사에서 계품(啓稟)³⁶⁾한 사연에 의거하여 ‘본조 좌랑(佐郎)이 접위관으로 경

29) 금주(錦州)의 정세 : 당시 후금(後金)의 군사가 명(明)나라의 군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었던 금주위(錦州衛)의 정세를 가리킨다.

30) 이유성(李惟聖, 1581-?) : 전주이씨로 자는 시중(時仲), 호는 사천(沙川)이다. 광해 8년(1616)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에 그쳤다.

31) 반종(伴從) : 높은 신분의 관원이 사환으로 부리기 위해 수행하는 인물. 반당(伴尙).

32) 제급(題給) : 제사(題辭)를 매겨 지급함.

33) 서경우(徐景雨, 1573-1645) : 달성서씨로 자는 시백(施伯), 호는 만사(晩沙)이다. 여러 관직을 거쳐 도승지와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34) 차왜(差倭) : 특별한 외교 업무로 인하여 파견되어 나온 왜인.

35) 예단(禮單) : 예물단자(禮物單子). 즉 예물의 목록.

36) 계품(啓稟) : 군주의 면전에서 의견을 진술함.

상도 동래 땅으로 내려갈 때 타는 말과 짐말 및 데려가는 역관(譯官)과 색리(色吏)³⁷⁾가 타는 말 각 1필. 예단을 실어가는 말 2필을 아울러 전례대로 병조(兵曹)에 명하여 지급함이 어떠할 지?’ 라고 입계하였는데,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임오(1642) 정월 27일

경상좌수사 선약해(宣若海)³⁸⁾의 장계 및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 내용. 지난 번 관수 다이라 도모쓰라가 역관 등에게 말하기를 “서계를 가져 온 왜인을 반드시 속히 들여보내어야 다이라 나리다카[平威幸]가 즉시 나올 수 있으니,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회답서계를 즉시 만들어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역관 등이 말하기를 “도주의 서계는 이미 예조에 보고하였으니, 반드시 회송(回送)³⁹⁾을 기다린 뒤에야 동래 영감이 답장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하였더니, 다이라 도모쓰라가 말하기를, “회답서계를 뒤늦게 들여보내더라도, 홍(洪) 이(李) 두 지사를 내려보내는 일을 이미 장계하였다고 하니, 부특송(副特送)이 들어갈 때 이 뜻을 통보하면 다이라 나리다카를 즉시 내어보낼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제 나온 왜인의 말 내용에 다이라 나리다카는 이미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였는바, 만약 순풍을 만나면 다이라 나리다카의 배가 하루도 안되어 당도할 것인데, 이장생이 아직도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기가 매우 난처하다는 일 및 경상감사 구봉서의 장계 내용임.

다이라 나리다카가 이제 방금 바람을 기다리니 오래지 않아 도착할 것이거니와, 승왜(僧倭)⁴⁰⁾ 1인을 또한 데리고 나온다고 하는 바, 그 주장하는 의도를 살피고 또 왜관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오로지 통신사(通信使)를 요청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사신이 저쪽으로 한 번 들어가면 본도에서 사용해야 할 물력(物力)이 한도가 없을 터이나, 이제 해를 이어 흉년이 든 때를 당하여 이미 네 차레에 걸쳐 말을 운송하는 부역을 겪으면서, 허다한 백성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신은 양쪽 사이에서 미봉(彌縫)하려고 이 조목은 막아두고 있었는데, 이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라 감히 함부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홍희남과 이장생을 내려보낼지 여부는 대단히 긴급한 일은 아닌 듯한데,

37) 색리(色吏) :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

38) 선약해(宣若海, 1579-1643) : 보성선씨로 자는 백종(伯宗)이다. 선조 38년(1605)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등의 관직을 거쳐, 인조 19년(1641) 10월 10일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하였는데, 계미년(1643) 5월 10일 병으로 사망하였다.

39) 회송(回送) : 회답을 보내음.

40) 승왜(僧倭) : 승려 신분의 왜인. 대개 문서 처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저쪽에서 이미 만나보려 한다면, 처음부터 접촉하여 말을 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묘당에 명하여 속히 재촉하여 내려보낼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접위관 및 홍희남 등이 조정의 지휘에 따라 이미 내려갔으니, 차왜가 나와 사정을 물어 치계한 뒤에 조처한다는 뜻으로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승덕 7년(1642) 정월 일 좌부승지 신 홍무적(洪茂績)⁴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오(1642) 2월 초6일

경상감사 구봉서의 장계 내용. 접위관 예조좌랑 이태운(李泰運)⁴²⁾ 및 홍희남·이장생 등이 이제 신의 감영에 도착하였거늘, 차왜와 주고받을 말을 비변사의 지휘를 참작하여 상의 확정하여 보냈거니와, 위의 왜차(倭差) 다이라 나리다카가 이달 초8일에 이미 본도를 출발하여 지금 비야흐로 포구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해안에 정박했다는 보고가 현재 내도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정은 초두(初頭)⁴³⁾의 말을 꺼낸 뒤에 다시 치계할 계획이라 운운한 일임.

임오(1642) 2월 13일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 내용.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홍희남과 이장생이 문정(問情)한 수본(手本)을 바치기를 기다려 치계하겠다는 일은 이미 치계하였는데, 별견역관(別遣譯官) 홍희남과 이장생 등의 수본 내용에, “당일 훈도 최의길과 더불어 왜관의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의 처소에 가서 다례(茶禮)⁴⁴⁾를 베풀고 증명하는 물건을 나누어 주고 나와서 주관하는 일을 탐문하였더니, 답하기를 ‘다른 일은 없고, 대군(大君)이 지난해 8월 상순에 사내 아들을 낳았는데, 막대한 경사라 이 뜻을 귀국에 전달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

41) 홍무적(洪茂績, 1577-1656) : 남양홍씨로 자는 면숙(勉叔), 호는 백석(白石)이다. 광해군의 폐모론에 반대하여 거제도로 유배되었다가, 인조반정 뒤에 기용되어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좌참찬,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42) 이태운(李泰運, 1608-?) : 전주이씨로 자는 도장(道長)이다. 인조 13년(1635)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좌랑에 그쳤다.

43) 초두(初頭) : 왜관에 일본의 사절이 처음 도착했을 때 베푸는 첫 잔치인 하선연(下船宴)을 가리킨다.

44) 다례(茶禮) : 부산에 온 일본의 무역 사절을 맞이하여 조선 측에서 거행하는 간단한 접대 의식 절차.

거늘, 비직(卑職)⁴⁵⁾ 등이 말하기를, ‘대군이 아들을 얻은 것을 이웃나라에서 경하하는 것은 옛날에 전례가 없고, 이른바 몇 건의 일이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더니, 다이라 나리 다카가 답하기를 ‘대군이 아들 낳은 일로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것은 귀국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달려 있고, 몇 건의 일은, 하나는 조선을 위하여 빛을 내는 것이고, 하나는 대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여러가지 곡절을 조용히 말로 설명하겠다고 운운하거늘, 서계(書契)를 보자고 요구하였더니, 말하기를 ‘에도에서 출발할 때 도주(島主)와 대군의 승인(僧人) 도춘(道春)이 한 곳에다 봉표(封標)⁴⁶⁾하여 보냈는데, 다례(茶禮)하는 날 바치겠다’고 운운하거늘, 재삼 보기를 청했으나 끝내 내어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서계 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고 운운하였으며, 나올 때 역풍을 만나 어렵게 도착하여 지금까지 피곤하니 내일 조용히 말하겠다고 하거늘, 짐짓 끝내고 나왔고, 내일 아침 다시 왜관에 가서 상세히 탐문할 계획으로 수본한다” 하였음. 대군이 아들 낳은 것을 그 나라에서 큰 경사로 여기고, 통신사를 받아들여 나라 안에 과장하려는 일은 신이 전일에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제 이번 에 드러내어 말하는 것은 단지 이 한가지 일이고, 또 몇 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나, 침묵을 지키며 말하지 않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음. 신은 일찍이 서계(書契) 가운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본디 개선하지 않다가 다례하는 날 비로소 언급하는 것을 예사로 보았거니와, 왜선이 도착한 지 사흘 뒤에 전례에 따라 다례를 베풀고 서계를 받는데, 지금은 접위관이 이미 내려왔으니, 무릇 접대하고 문답하는 일은 각자 조치함이 있어야 합당하겠거니와, 신은 짐짓 역관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감히 이렇게 치계하는 일임.

임오(1642) 2월 21일

접위관 이태운(李泰運)과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 내용. 어제 신 등이 왜관에 가서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를 만나보고 다례를 마친 뒤에,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平威幸]가 서로 가까이 평좌(平坐)⁴⁷⁾하여 조용히 고할 일이 있다고 원하거늘, 신 등이 그 말대로 자리를 설치하여 평좌하였더니,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말하기를 “대군이 새로 아들 하나를 얻은 것은 나라 안의 막대한 경사이므로, 각 주(州)의 제장(諸將)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하였는데, 한 집행(執政)⁴⁸⁾이 도주(島主)에게 말하기를 ‘이는 일역(日域, 일본)의 큰 경사라, 조선에서 들으면 또한

45) 비직(卑職) : 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스스로를 낮추어 일컫는 말.

46) 봉표(封標) : 서신이나 포장된 물건을 표시를 하여 봉함함.

47) 평좌(平坐) : 공식의 예법을 따지지 않고 편하게 앉음. 왜인들이 무역사절로 오면 반드시 조선국왕의 전패를 모신 대청에서 배알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반드시 기뻐하여 사절을 보내어 치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여러 장관(將官)들이 같은 소리로 함께 호응하여 '그 말이 참으로 옳다. 도주에게 명하여 통지하게 하자'라고 하거늘, 도주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는, 즉시 저희들을 불러 내어보내기로, 저희들은 에도에서 즉시 나왔거니와, 다만 집정 및 여러 장관들이 만약 도중(島中)에서 신사(信使)를 청했다는 의도를 안다면 조선에 전연 광채가 없을 것이니, 회답서에는 단지 '대군이 늦게 약군(若君)⁴⁹을 얻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귀국의 막대한 경사인지라, 이웃나라 우호의 의리로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려 하니, 날짜의 더듬과 빠름을 조만간 도중(島中)에서 헤아려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로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답하기를 "대군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두었으니 조정에서 들으면 또한 반드시 경사라고 기뻐할 것이나, 다만 관백이 아들 낳은 것에 대하여 일찍이 사신을 보내어 축하한 때가 없었거니와, 네가 하는 말을 장계로 알려겠다"고 하였다니, 또 두 개의 봉서(封書)를 역관에게 내어 주거늘, 즉시 뜯어보니, 모두 저쪽 나라의 언서(諺書)인데, 그 중 하나는 예조의 회답서계에 쓸 말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통신사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조로 보내는 서계 및 동래로 보내는 서계에는 특별히 다른 말은 없고, 역관 등에게 보낸 서계 가운데 위 항목 등에 대한 일을 대략 청한 바가 있으므로, 동 서계 3통과 예조와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별폭 3통에다 언서 2통을 아울러 해조로 올려보냄. 대개 대군이 아들 낳은 것을 축하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그들이 스스로 청했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기별을 듣고 보내는 것처럼 하려고, 평좌(平坐)하여 자리를 가까이 한 가운데 그들의 좌우 사람을 모두 물리치고 비밀스럽게 말하였으며, 또 별도의 이야기가 있거늘, 별지(別紙)에 기록하여 이장생(李長生)에게 주어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통신사의 일과 관련한 회답서계는 그들이 직접 받아 가려고 하니, 묘당에 명하여 참작하여 조처하실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말한 일은 이전에 온 장계와 다름이 없는데, 서계 가운데 특별히 구청(求請)⁵⁰한 말이 없으니, 이는 필시 우리 쪽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제 회답 가운데 '귀국의 큰 경사를 잘 지내는 이웃나라 사이에 소홀히 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장차 축하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지어 보냄이 합당한데, 상감께서 재가함이 어떠할지? 승덕 7년(1642) 2월 17일 우승지 신한흥일(韓興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48) 집정(執政) : 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의 정무를 담당하는 대로(大老)와 노중(老中) 등의 직책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49) 약군(若君) : 일본 에도막부 시대 관백(關白)의 아들을 일컫는 말.

50) 구청(求請) : 왜인들이 조선에서 교역하고자 하는 물자를 요청하는 일.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가져온 서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대마도주에게 회답하는 서계를 승문원(承文院)에서 말을 만들어 답장을 만들었는데, 회례(回禮)⁵¹⁾의 물건은 그 별폭(別幅)⁵²⁾에 부친 물건을 살펴보고 참작하여 마련하고 후록(後錄)하였으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급하게 준비하여, 이장생이 내려 갈 때 주어 보냄이 어떠할지?

후록.⁵³⁾ 범가죽 3장, 인삼 5근, 흰 명주 1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50필, 황모필 50자루.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마련함]. 6장을 붙인 유둔(油菴) 3부, 4장 붙인 유둔 3부, 화석(花席) 10넵, 참떡 50홀.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입계한 대로 윤택함.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가져온 동래로 보내온 서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대마도 도주에게 보내는 동래부사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보내게 하였는데, 회례(回禮)를 참작하여 마련하였으니 급급하게 준비하여 내려보내시며, 보내는 물건이 올라온 뒤에 해조에 명하여 구분 조처하게 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범가죽 1장, 인삼 2근, 흰명주 3필, 흰명주 3필, 흰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마련]. 참떡 20홀, 화석 3넵. [이상 본도에서 마련].

승덕 7년(1642) 2월 21일 우부승지 신 남선(南銑)⁵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가져온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계에 대하여 첨부한 계목(啓目)에 쓴 말은 위와 같음.

임오(1642) 2월 23일

접위관 이태운(李泰運)과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의 장계 내용. 차왜 평성왜가 가져온 진상(進上)을 받아 올리고 초두연(初頭宴)⁵⁵⁾을 베풀었는데, 예단은 해조에서 마련한 수량대로

51) 회례(回禮) : 회답의 예단(禮單).

52) 별폭(別幅) : 본 문서에 첨부한 별도의 문서. 대개 인원의 왕래와 관련한 예물(禮物) 물목(物目)을 적은 단자(單子)이다.

53) 후(後) : 후록(後錄) 또는 추록(追錄). 덧붙이는 내용을 적을 적에 사용하는 공문 투식어.

54) 남선(南銑, 1582-1654) : 의령남씨로 자는 택지(澤之), 호는 회곡(晦谷)이다. 인조 7년(1629)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우참찬, 예조, 이조, 형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증정하였음. 진상압물 1인, 시봉 1인 등에게 지급하는 예단은 해조에서 당초에 마련하여 가져 오지 않았기에, 부득이하여 재차연(再次宴)의 예단을 추이(推移)하여 각기 흰 명주 2필과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씩 나누어 지급하였고, 반중 3명에게는 각기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을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재삼 고사하거늘, 조정에서 은혜로 하사하는 물건이니 받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타일렀더니, 차왜 다이라가 말하기를 “조정에서 특별히 먼 곳에서 온 사람을 생각하여 이렇게 아래 사람들에게까지 하사하시니 황공하고 감격하다”고 하였으며, 이어서 말하기를 “술자리를 마친 뒤에는 조용히 접촉하여 말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먼저 소회를 한 마디 진술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걸음은 단지 사신을 청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오로지 어필(御筆) 때문에 온 것이니, 바라건대 모름지기 상세히 장계로 알려져 기어코 반드시 이루도록 해 달라”고 하였음. 신 등이 답하기를 “이 일을 감히 계달(啓達)할 수 없다는 뜻은 전에 이미 말하였는데, 이제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이상생이 이미 서울로 올라갔으니 저절로 조정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짐짓 그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림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말하기를 “추진하는 일이 되고 안되고 간에 회답서계가 내려 오는 즉시 배를 돌려 가겠지만, 이 뒤의 일은 오직 귀국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고는, 아홉 차례 잔을 돌리고 난 뒤에, 좌우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른 사정을 은밀하게 말하였기로, 별지에 적어 계품하였으며, 양식 반찬 등의 물건을 다례(茶禮) 뒤에 동래에서 전례대로 들여 주었더니 사양하여 받지 아니하기에, 역관에게 명하여 날마다 타일렀지만 지금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신 등은 다이라 나리다카에게 말하기를 “조정에서 도주가 믿고 친애하는 사람을 내어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특별히 예관(禮官)을 파견하여 달리 우대하였는데, 사소한 양식 반찬을 이렇게까지 사양하는 것은 무슨 의도이나?”라고 하였더니, 다이라 나리다카가 답하기를 “저희들의 걸음은 연례 송사(送使)에 견줄 바가 아니라서 다례의 잔치가 이미 극히 미안하며, 가져온 양식 반찬 또한 풍족하므로 감히 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재삼 타일렀더니 말하기를, “가져온 물자가 만약 흑시라도 떨어지면 곧장 즉시 알리겠거니와 생선 같은 것은 일행 중에 가진 물건이 아니므로 마땅히 말씀대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의 연향 예단에 부족한 수량은 흰 명주 11필, 흰 모시베 11필, 흰 무명 6필인데, 전일에 쓰고 남은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6필을 동래부에 남겨 두었기로, 이것을 가져다 사용할 계획이거니와, 부족한 물자는 해조에 명하여 급급하게 내려보내는 일 및 경상감사 구봉서의 장계 내용임.

이달 13일 첫번째 연회를 베풀 때 응수하여 답한 사연은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에 상세하

55) 초두연(初頭宴) : 부산 왜관에서 일본 및 대마도에서 건너오는 사절을 위하여 처음으로 접촉하여 간략하게 접대하는 의식인 다례(茶禮)를 가리킴.

게 들어있거니와, 신 또한 은밀히 저쪽의 사정을 탐지하였더니, 이른바 관백이 근년 이래로 항상 집정 등과 더불어 날마다 잔치하고 놀기를 일삼는데, 도주가 이로 인하여 따라다니며 은총을 무겁게 받고 정분이 더욱 친밀해져서, 관백의 뜻에 맞추어서 즐겁게 하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뜻밖의 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니, 조정에서는 되도록 속히 조치하여 재촉하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가만히 요사이 남방에서 온 장계를 살펴보면 대 차왜 왜인 다이라가 조정에서 따라주지 않을까 깊이 의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신(道臣) 이하도 모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연유를 알 수 없거니와, 장계로 알려진 일에 대하여는 모두 그대로 허락하여 조정하라는 뜻으로 수일 전에 이미 행회(行會)⁵⁶⁾하였으니, 회답서계를 예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보내어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지체하여 머무르는 우려가 없도록 하되, 예단에 부족한 물건 또한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히 마련해서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승덕 7년(1642) 2월 20일 동부승지 신 이유성(李惟聖)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당초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나온 일을 장계로 알릴 때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반종(伴從)의 예단만 마련하였는데, 이 장계를 보니 진상압물(進上押物)⁵⁷⁾, 시봉(侍奉) 등도 함께 이미 나왔으니, 장계에 의거하여 흰 명주 11필, 흰 모시베 9필을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히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승덕 7년(1642) 2월 21일 동부승지 신 이유성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접위관 이태운의 장계 내용. 어제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신에게 서신을 보내고 아울러 후추 50근, 납사발[납발] 5개, 돼지 1마리를 보냈고, 오늘 또 황감(黃柑), 당과(糖果) 등의 물건을 한 께작[柙] 보내왔거늘, 역관 이형남(李亨男)을 시켜 말을 만들어 고사하게 하였는데, 저쪽에서 반드시 전달하여 주려고 하여 끝내 되돌려 받지 않기에, 먼 외국 사람의 마음을 잃을까 염려되어 부득이 받았고, 동 돼지고기와 황감 등의 물건은 일행 중에 나누어 주었으며, 후추와 납사발은 동래부로 보내어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운운한 일임.

56) 행회(行會) : 조정의 지시나 명령을 관청의 장(長)이 그 부하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 시행방법을 논정(論定)하기 위한 모임.

57) 진상압물(進上押物) : 진상(進上)은 진상물 즉 일본측에서 공식적인 무역 사절을 보내 올 때 의례히 국왕과 예조, 동래부사 앞으로 예물을 보냈는데 그 예물을 진상(進上)이라 하였다. 압물(押物)은 물건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저쪽에서 이미 예물을 보냈으니 접위관 또한 회례(回禮)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하니, 회례 물건을 참작하여 마려해 내려보내되, 후추 등의 물건은 호조에 명하여 구분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승덕 7년(1642) 2월 23일 동부승지 신 이유성 차지로 입계하여 회계대로 시행하게 하되, 예물은 받아들이라고 하였음.

접위관의 회례 물건.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인삼 1근,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마련]. 너장 불인 유둔 2부, 참떡 20홀.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계하함.

예조에서 상고할 일. 앞서 차왜 다이라 나리다가가 가져온 본조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온 서계에 첨부한 예물은, 그 물목과 수량을 살펴 세 곳의 회례를 이미 마련하여 이제 마땅히 내려보낼 계획이거니와, 또 보내온 장계에 진상(進上)을 받아들린 뒤에 초두연(初頭宴)을 베풀었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진상이란 곧 예조 서계 가운데의 예물 물목을 받아 올리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인지, 또 진상물건이 있는 것인지? 만약 진상이 있다면 물목을 첨부한 문서를 먼저 올려보내어 회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동래부로 이문(移文)함.

계미(1643) 정월 초5일

예조 감결(甘結)⁵⁸. 방금 계하한 예조의 계목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通信使)의 행차에서 시행해야 할 여러 일들은 각 해당 관청 및 본도에 명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고, 별구청(別求請) 및 여러 집행(執政) 등에게 각각 서계(書契)를 쓰고 선물을 증정하는 사례가 있으니, 또한 이 사례대로 거행하도록 알림이 어떠할지?

후록.

- 一. 사신의 반전(盤纏)⁵⁹ 등의 물자는 해당 관청에 명하여 미리 먼저 조치함.
- 一.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한결같이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의 사례대로 거행함.
- 一. 사신의 장복(章服)⁶⁰은 부사(副使) 이상은 모두 모두 당상관의 복장을 상의원(尙衣院)에

58) 감결(甘結) :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일의 처리를 지시하는 공문.

59) 반전(盤纏) : 여행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 여행비.

60) 장복(章服) : 예복(禮服). 공식 행사에 입는 예복으로, 의상에다 신분에 따라 정해진 문양을 수를 놓아 표시한다.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 一. 일행의 원역(員役)⁶¹의 의복과 신발[靴子] 등의 물품은 공조(工曹)와 제용감(濟用監)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 一.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印信) 한 개는 주조한 관방(關防)⁶²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도록 함.
- 一. 상사(上使)는 자제(子弟) 2인, 군관(軍官) 6인, 종 2명. 부사(副使)는 자제 2인, 군관 6인, 종 2명. 종사관(從事官)은 자제 1인, 종 1인. 왜통사(倭通事)⁶³ 5원(員), 한통사(漢通事)⁶⁴ 2원, 의원(醫員) 2원, 화원(畫員) 1원, 화포장(火砲匠) 2명, 포수(砲手) 2명, 사자관(寫字官) 2원은 각 해당 관청에서 택하여 보냄.
- 一. 정남침(定南針)⁶⁵은 관상감에 명하여 지급하게 함.
- 一. 일행의 원역(員役)은 각기 중 1명을 거느림.
- 一. 일본국왕에게는 전례에 따라 ‘위정以德(爲政以德)’ 서계를 찍었으니 이대로 시행함.
- 一. 일본국 집정(執政)과 도주(島主)와 수직왜(受職倭)⁶⁶, 수도서인(受圖書人)⁶⁷ 등에게는 사신이 귀국하여 들어올 때 차등을 두어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전례는 이대로 마련하여 거행함.
- 一. 시급한 일이 있으면 과발마(擺撥馬)를 보낼 것.

승덕 8년(1643) 정월 초5일 행도승지 신 정태화(鄭太和)⁶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하셨기로, 교지 내의 사연을 받들어 살펴서 거행하며, 갑자년(1624)과 병자년(1636) 두 해의 전례를 상고하여 급급하게 거행할 일.

61) 원역(員役) : 관원과 그에 소속되어 여러 책무를 감당하는 인원.

62) 관방(關防) : 공문서의 위조를 막기 위하여 문서의 낱장 연결 부분에 찍는 장방형의 도장. 관방인(關防印).

63) 왜통사(倭通事) : 일본어 통역관.

64) 한통사(漢通事) : 중국어 통역관.

65) 정남침(定南針) :指南침(指南針).

66) 수직왜(受職倭) : 조선시대에 대마도 사람으로 조선의 관직을 받아 특별 대우를 받았던 왜인.

67) 수도서인(受圖書人) : 대마도 사람으로서 조선 정부에서 발급한 특별 인장을 하사받은 인물.

68) 정태화(鄭太和, 1602-1673) : 동래정씨로 자는 유춘(囿春), 호는 양파(陽坡).

계미(1643) 정월 초5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해야 할 여러 일들은 병자년(1636)의 사례대로 마련해야 마땅하나, 병자년 문서가 모조리 흩어져 잃어버려 근거로 상고할 수 없기에, 갑자년(1624)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각 해당 관청 및 본도에 명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되, 다만 병자년에는 별구청 및 여러 집정 등에게 각기 서계를 보내고 선물을 하사한 사례가 있었으니, 또한 이 사례대로 거행할 것을 알림이 어떠할지?

후록.

- 一. 사신의반전(盤纏 : 노자) 등의 물자는 해당 관청에 명하여 미리 먼저 조치하게 함.
- 一.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한결같이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의 사례대로 마련함.
- 一. 사신의 장복(章服)은 부사(副使) 이상은 모두 당상관의 장복을 상의원(尙衣院)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 一. 일행의 원역(員役)의 의복과 신발[靴子] 등의 물자는 공조와 제용감(濟用監)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 一. 사신의 형명(形名)⁶⁹⁾ 기(旗)와 독(纛)은 본도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 一.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⁷⁰⁾는 본도에 명하여 정하여 보내게 함.
- 一. 상선(上船) 2척, 하선(下船) 2척, 소선(小船) 2척은 격군(格軍)⁷¹⁾과 함께 본도에 명하여 미리 먼저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하게 함.
- 一.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印信) 1알은 주조된 관방인(關防印)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게 하되, 인가(印家 : 도장집)와 관가(關家 : 관방인신집)와 가족 남라개(南羅介 : 문서통) 한 바리를 본도에서 만들어 대령하게 할 것.
- 一. 상사(上使)는 자제 2원, 군관 6원, 종 2명. 부사(副使) 자제 2원, 군관 6원, 종 2명, 종사관(從事官) 자제 1원, 종 1명, 왜통사(倭通事) 5원, 한통사(漢通事) 2원, 의원 2원, 화원

69) 형명(形名) : 군대가 행진할 때 정지, 전진 등의 동작을 지시하는 깃발과 북 등의 기구.

70) 취라치[吹螺赤] : 군중(軍中)에서 소라고동을 부는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71) 격군(格軍) : 결군. 배를 운행할 때 노를 짓는 군사.

(畫員) 1원, 별과진겸군관(別破陣兼軍官) 2인, 포수(砲手) 2명은 감원하여, 갑자년(1624)의 사례에 의하여 각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여 보냄. 사자관(寫字官)은 병자년(1636)에 2원을 데려 간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대로 시행함.

- 一.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엄하게 금단하여, 원역(員役) 등이 만약 함부로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조사하여 계문(啓聞)함.
- 一.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觀象監)에 명하여 찾아 지급하게 함.
- 一. 일행의 원역은 각기 종 1명을 거느림.
- 一. 사신 이하가 관문이나 나루를 넘어 갈 적에 검사할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년(1624)의 사례에 의거 마련하여 지급함.
- 一.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갑자년(1624)의 사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간 인물을 쇄환(刷還)하기 위하여, 본조(本曹)에서 만들어 준 돈유공문(敦諭公文)으로 찾아다니며 쇄환하여 무마하고 보살피 거느리고 올 것.
- 一. 일본국왕에게는 ‘위정이덕(爲政以德)’ 서계를 찍는 것이 전례였다고 하니 이대로 시행함.
- 一. 일본국 집정과 대마도주와 수직왜(受職倭), 수도서인(受圖書人) 등에게는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차등을 지워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대로 마련하여 시행함.
- 一. 시급한 일이 있으면 과발마를 보낼 것.
- 一.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함.

승덕 8년(1643) 정월 초5일 행도승지 신 정(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미(1643) 정월 초6일

예조의 계목. 통신사 종사관이 가져가는 일행금단절목(一行禁斷節目)은 전례를 상고하여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후록.

- 一. 일행이 가져가야 할 물건은 점검하여 바리로 만들어 각각 글자를 적어 표시하여 서명하고, 또 자호(字號)를 찍어서 달아 놓고, 도중에 불시에 적간(摘奸)⁷²⁾하며, 포소(浦所)⁷³⁾ 및 대마도와 기타 머무는 곳에 이르면 별도로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물(官物)로 몰수하고, 범한 사람은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 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실린 바,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紗羅) 능단(綾緞), 황백사(黃白絲)와 보물을 몰래 거래하는 자는 율령 대로 죄를 다스림.
- 一. 『대전후속록』 내용. 왜은(倭銀)을 무역하는 자, 왜인이 가져온 대랑피(大狼皮)⁷⁴⁾ 및 포소(浦所)의 잠상(潛商)과 무역하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通事)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 一. 향통사(鄉通事)⁷⁵⁾ 및 장사꾼이 어두운 밤에 만나기로 약속하여 매매하거나 혹은 서로 모인 자는 모두 잠상금물(潛商禁物)⁷⁶⁾ 조에 의하여 논단함.
- 一. 일행의 인원 등이 본국의 숨겨야 할 일이나 국가의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 一. 상통사(上通事) 이하 일행의 하인이 금제(禁制)에 연계된 자는 곤장 80대 이하로 직단(直斷)⁷⁷⁾함.
- 一. 다른 나머지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단속하되, 우리 국경에서 범한 일은 즉시 계문(啓聞)하고, 바다를 건넌 뒤에 범한 일은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적어 장계로 알림.

72) 적간(摘奸) : 금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일.

73) 포소(浦所) : 배가 정박하는 곳.

74) 대랑피(大狼皮) : 일본에서 생산되는 상어껍질. 가죽에 좁쌀알 같은 돌기가 있어서 칼집이나 안장 등의 장식에 사용하였다.

75) 향통사(鄉通事) : 각 지방 관청 소속의 통역관. 서울에서 파견되는 경통사(京通事)와 구별하여 일컫는 말이다.

76) 잠상금물(潛商禁物) : 잠상(潛商)은 관원의 감독을 벗어나 비밀리에 상품을 거래하는 일, 즉 밀무역(密貿易)을 말한다.

77) 직단(直斷) : 상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 책임자가 직접 처단함.

一.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갔다가 쇠환한 사람을 격군(格軍)으로 뒤섞어 충당하는 것은 극히 편치 못하니 일체 충당하지 말고, 만약 충당하였다가 탄로나면 본관 수령을 각별히 추고 하여 죄를 다스림.

一.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軍器)는 종사관이 서명하여 문서에 기록하고, 만약 군기를 몰래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一.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몰래 빼들려 사사로이 교통하거나, 상국(上國)과 관련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승덕 8년(1643) 정월 초6일 동부승지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될 여러 사항을 전례를 참고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시행함이 어떠할지?

후록.

一. 일본 통신사가 가져가는 국왕 및 집정 이하의 각 왜인 등에게 전례대로 증정할 물건은 목록을 마련하여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였는데, 갑자년(1624)에는 수직왜인을 5인으로 마련하였으나 병자년(1636)에는 9인의 인원수로 마련하였는데, 이제 또한 9인으로 마련하였거니와, 그 가운데 혹 죽은 자가 있거나 혹 죄를 받은 자가 있으면 사신이 저쪽에 도착하여 살펴보고, 남아 있는 자에게만 증정할 것.

一. 사신을 들여보낼 때 일본 집정과 대마도주 및 수도서왜인(受圖書倭人) 등에게 본조에서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 때에도 전례대로 서신을 보내되,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마련하게 함.

一. 통신사를 들여보낼 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을 널리 타일러서 쇠환한 절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사례대로 해조에 명하여 유시(諭示)하는 글을 10여 장 만들어 주어서 사신의 행차에 부쳐 보냄.

一. 이제 이번 통신사 일행에게 시행되어야 할 잡물은,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한결같이 갑자년(1624)과 병자년(1636) 사례를 상고하여 급속히 준비하여 명을 기다리게 할 것.

승덕 8년(1643) 정월 초6일 동부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미(1643) 정월 11일

一.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데려가는 원역(員役).

당상역관(堂上譯官) 2원(員) : 승록대부(崇祿大夫) 홍희남(洪喜男), 정헌대부(正憲大夫) 이장생(李長生). [이상 병자년 사례로 데려 감].

상통사(上通事) 2원 : 행훈도(行訓導) 김근행(金謹行)⁷⁸, 행사맹(行司猛) 윤제현(尹悌顯)⁷⁹.

차상통사(次上通事) 2원 : 행사맹 정시심(鄭時諶)⁸⁰, 전봉사(前奉事) 김시성(金時聖)⁸¹.

압물통사(押物通事) 1원 : 전정(前正) 김홍립(金弘立)⁸².

한학상통사(漢學上通事) 1원 : 전정 정충헌(鄭忠獻).

압물통사 1원 : 행사용(行司勇) 함식(咸植).

사자관(寫字官) 2 : 박승현(朴崇賢), 김의신(金義信).

화원(畫員) 1 : 김명국(金鳴國)⁸³.

의원(醫員)과 잡예(雜藝)를 가진 사람은 사신이 선택하여 정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차출하여 정하지 못했음.

승덕 8년(1643) 정월 11일 계(啓).

계미(1643) 정월 15일

예조의 계목. 일광산(日光山)에 세 사신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사신의 예단(禮單)에 합당한 물건을 마련하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동 예단을 참작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78) 김근행(金謹行, 1610-?) : 김해김씨로 자는 선회(鮮悔)이다. 인조 5년(1627)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79) 윤제현(尹悌顯, 1609-?) : 풍양윤씨로 인조 8년(1630)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였으며 판관(判官)과 교회(教誨)를 역임하였다.

80) 정시심(鄭時諶, 1610-?) : 온양정씨로 인조 11년(1633) 증광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였으며, 교회를 역임하였다.

81) 김시성(金時聖, 1616-?) : 안산김씨로 자는 비현(丕顯)이다. 인조 20년(1642)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으며, 교회를 역임하였다.

82) 김홍립(金弘立, 1613-?) : 춘천김씨로 인조 17년(1639)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였으며 총민(聰敏)을 역임하였다.

83) 김명국(金鳴國, 1600-?) : 안산김씨로 자는 천여(天汝), 호는 연담(蓮潭) 또는 취옹(醉翁)이라 하였다. 도화서의 화원이었다.

후록 :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오색지 50권. 채화석(彩花席) 20장. 황모 필 각색 100자루. [이상은 해당 관청]. 유매묵(油煤墨) 100홀. 유둔 10번(番). 백지 100권. [이상은 본도]. 석린(石鱗) 20근. [황해도].

승덕 8년(1643) 정월 15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계미(1643) 정월 25일

예조단자. 호조의 계사(啓辭)에 일광산에서 제사를 지낼 때의 폐백을 예조에서 마련하는 일로 계하하기를, “예문(禮文)에 따라 마련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다만 이 일은 이미 예문이 없고, 또 근거로 삼을 만한 전례가 없어서, 왜역(倭譯)에게 물었더니, 저쪽에서는 사찰의 일에 금은 보배를 사용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제례(祭禮)로 조정해야 마땅하지만, 다만 너무 소략하거나 지나치게 검소하여서는 안되겠기로, 참작하여 넉넉하게 마련하여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후록 : 홍색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검은 삼베 3필. 채초(彩綃) 3필. [이상 호조].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함.

계미(1643) 2월 12일

예조단자 요약. 홍희남이 가져온 왜인 후지[藤]가 열거한 조목에 의거하여 일광산의 치제(致祭) 때 사용할 폐백 등의 물건 및 위덕원(威德院) 사신의 예물과 각처에 사용될 것을 추가로 마련한 예단을 해당 관청에 명하여 준비하는 일을 이미 계하하였기에, 각 항목의 예단을 참작하여 마련하고 개좌(開坐)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일광산 치제 때의 폐백 : 금단(錦段) 3필. [해당 관청]. 채화석(彩花席) 10장. 자기잔대(磁器臺) 3죽(竹). 대접[大貼] 3죽. 보시기[甫兒] 3죽. [이상은 본도]. 대화촉(大花燭). 대부용향(大芙蓉香). 운모(雲母). [이상은 해당 관청]. 화석(花席) 5넙. 유둔(油菴) 2부. [이상은 본도].

사신이 각처에 사용할 예단 추가 마련 : 인삼 5근. 범가죽 3장.[감(減)하라고 부표(付標)함.]. 소은장도(小銀粧刀) 10자루. 큰 참떡 50정(丁). 색필(色筆) 50자루. 녹두가루 10말. 화연(花硯) 5면(面). 어피(魚皮) 30장. [이상 본도].

약재 : 백작약(白芍藥) 5근. 적작약(赤芍藥) 5근. 백렴(白蘘) 5근. 산약(山藥) 5근. 황기(黃芪)

5근. 방풍(防風) 5근. 길경(桔梗) 5근. 백출(白朮) 5근. 창출(蒼朮) 5근. [이상은 양 의사(兩醫司)]. 옥리인(郁李仁) 5근. [본도].

승덕 8년(1643) 2월 12일 입계.

계미(1643) 2월 일

통신사 장무역관(掌務譯官)의 수본(手本) 내용에 **윤운**. 통신사 일행 원역의 직함과 성명을 아울러 후록하였으니, 전례대로 구전(口傳)하시기를.

후록.

정사(正使) : 병조참지(兵曹參知) **윤순지**(尹順之)⁸⁴).

부사(副使) : 홍문관 전한(典翰) **조경**(趙綱)⁸⁵).

종사관(從事官) : 이조정랑(吏曹正郎) **신유**(申濡)⁸⁶).

당상역관(堂上譯官) : 행사직(行司直) **홍희남**(洪喜男). 행사과(行司果) **이장생**(李長生).

상통사(上通事) : 행훈도(行訓導) **김근행**(金謹行). 전 판관(判官) **윤계현**(尹悌顯).

차상통사(次上通事) : 전 직장(直長) **정시심**(鄭時諶). 전 봉사(奉事) **김시성**(金時聖).

압물통사(押物通事) : 전정(前正) **김홍립**(金弘立).

가정통사(加定通事) : 전정 이형남(李亨男). 전정 한상국(韓相國)⁸⁷. 전 주부(主簿) **윤성립**(尹誠立).

한학상통사(漢學上通事) : **정충헌**(鄭忠獻).

한학압물통사(漢學押物通事) : 행사용(行司勇) **함식**(咸植).

의원(醫員) : 전정 **김호**(金浩)⁸⁸. 전 주부 **송경일**(宋擎日)⁸⁹).

이문학관(吏文學官) : 진사(進士) **박안기**(朴安期)⁹⁰. 진사 **정언열**(鄭彦悅)⁹¹).

84) **윤순지**(尹順之; 1591-1666) : 자는 낙천(樂天), 호는 행명(溟溟), 해평인(海平人)이다. 광해군 12년(1620)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과 옥당에 출입하였으며, 평안도관찰사였던 아버지 **훤**(暄)이 정묘호란의 방어 책임을 문책받고 죽자 향리로 물러나 있다가, 병자호란 뒤에 다시 출사하여 일본통신사로 다녀오고, 대제학, 좌찬성에 이르렀다.

85) **조경**(趙綱; 1586-1669); 호는 용주(龍洲). 인조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치고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을 다녀왔으며, 우참찬에 이르렀다. 『용주집』이 전한다.

86) **신유**(申濡; 1610-1665); 호는 죽당(竹堂). 인조 14년(丙子, 1636)에 문과에 급제하고 21년(癸未, 1643)에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예조참관에 이르렀다. 『죽당집(竹堂集)』이 전한다.

87) **한상국**(韓相國; 1599-?) : 청주한씨로 자는 여필(汝弼)이다. 인조 2년(1624)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다. 교회를 역임하였다.

88) **김호**(金浩) : 의성김씨로 인조 2년(1624) 식년 의과에 합격하여 교수를 역임하였다.

89) **송경일**(宋擎日; 1588-?) : 덕산송씨로 광해 7년(1615) 식년 의과에 합격하여 내의원장을 역임하였다.

사자관(寫字官) : 박승질(朴崇質), 김의신(金義信).
 화원(畫員) : 김명국(金明國), 이기룡(李起龍)⁹².
 천문학관(天文學官) : 전정 황효공(黃孝恭).
 정사 자제군관(子弟軍官) : 초관(哨官) 윤전지(尹全之), 업무(業武) 윤천지(尹賤之).
 군관(軍官) : 전 부사(府使) 조응립(趙應立), 초관(哨官) 정부현(鄭傅賢), 겸사복(兼司僕) 정신경(鄭信卿), 전 만호(萬戶) 이용(李鎔), 사과(司果) 최기남(崔奇男), 전사과 장익(張翊).
 부사 자제군관 : 충의위(忠義衛) 조헌(趙憲), 한량(閑良) 한상량(韓相良).
 군관 : 전 군수(郡守) 김민학(金敏學), 전 현감(縣監) 홍우량(洪宇亮), 전 만호 맹상현(孟尙賢).
 내금위(內禁衛) 이대인(李大仁), 전 사과 이정(李稷), 전 만호 유윤번(柳潤蕃).
 종사관 자제군관 : 전 주부 신태해(申泰海).
 별과진검군관(別破陣兼軍官) : 박의룡(朴義龍), 이예남(李禮男).
 馬上재(馬上才) : 방계남(方繼男), 강승선(姜承善).
 이마(理馬) : 김득신(金得信).
 전악(典樂) : 김마당(金磨瑯), 설의립(薛義立), 임허룡(林許弄), 조응립(趙應立), 김용금(金龍金), 김천(金千).
 숙수(熟手) : 이운(李云), 장돌시(張芑屎).
 정사 반인(伴人) : 조효검(曹孝儉).
 노자(奴子) : 선인(先仁), 생이(生伊).
 종사관 반인 : 이의신(李義信).
 노자 : 예남(禮男), 점이(點伊).
 당상역관 이하 원역 노자 23명, 군관 노자 19명.

계미(1643) 정월 초10일

동래부사 정(鄭)⁹³의 장계 내용. 방금 바친 별견역관(別遣譯官)⁹⁴ 홍희남의 수본 내용임.

90) 박안기(朴安期, 1608-?) : 밀양박씨로 호는 나선(螺山)이다. 인조 21년(1643) 사행에 독축관으로 건너갔다. 통신사 일행이 에도(江戶)에 머무는 동안 일본 교토(京都)의 천문학자인 오카노이(岡野井玄貞)가 찾아와 칠정산(七政算)을 비롯한 역법을 배웠고, 그 제자 시부카와(澁川春海)는 이를 바탕으로 일본 최초의 역법인 정향력(貞享曆)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91) 정언열(鄭彦悅, 1596-1656) : 동래정씨로 자는 득지(得之)이다. 인조 5년(1627) 식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92) 이기룡(李起龍, 1600-?) : 경주이씨로 자는 군서(君瑞), 호는 케은(几隱) 또는 동비아인(東鄙野人)이다. 도화서 화원으로 교수를 역임하였다.

차와 후지 도모나와[藤智繩]에게 상견 다례(茶禮)를 하였으며, 약간의 토산물을 전례대로 증정하여 준 뒤에, 그대로 도중(島中)의 사정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일은 내년 5월 내에 에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여 이 달 19일 대군(大君)의 사자가 나왔거늘, 즉시 귀국에 비보(飛報)⁹⁵하였는데, 26일 대군 사자가 또 내도하여 명하기를 ‘만약 기일이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곤란한 일이 많이 있으니, 기어코 5월 내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운운’하기로, 여러가지 일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는 먼저 나왔고,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는 사신을 맞이하는 일로 가까운 시일에 나올 것이거니와, 도주의 말이 ‘이번 사행(使行)이 이렇게 박두하였으니, 조선에서는 필시 내가 주선을 하지 못하여 궁색하게 되었다고 허물할 것인데, 무안함을 말로 다할 수가 없다. 무릇 여러 도구 등은 내 또한 미처 조처하지 못하였으니, 다급하고 민망한 형편을 조선에서 어찌 통촉하여 알 수 있겠는가? 이 뜻을 분명하게 개진하라’ 운운하며 재삼 말하여 보내었으므로, 다례하는 날 동래 영감 앞에서 직접 만나 진술할 계획이다. 대개 대군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약군(若君)의 생신이 곧 8월 초3일인데, 그 때는 나라 안의 대소 장관(將官)이 모두 모여 하례하는데, 다른 나라 사신을 뒤섞어 접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광산(日光山)에 귀국의 어필(御筆)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을 승사(僧使)를 시켜 영송(領送)하게 한다는 말씀은 감사하기는 감사하지만, 두 행차가 중첩하여 건너오는 것은 귀국에게 큰 폐단이므로 승행(僧行)은 정지하고, 이제 이번 사신은 기어코 5월 내로 에도로 들어가서 일을 마치고, 즉시 일광산 사당(社堂)으로 가서 의식을 갖추어 직접 전해준 뒤에, 겨울이 되기 전에 되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운운한 것이다. 대군의 명령이 매우 간곡하니, 만약 잠깐이라도 지체하면 도주가 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귀국으로서도 당초에 통신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이다. 두 차례 나온 대군의 사자에게 도주가 답하기를, ‘이전에 나의 수하 장관(將官)인 다이라 나리마찌[平成倫]를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일에 사례하는 뜻으로 조선으로 보냈더니, 그 답서에 이르기를 「통신사가 들어가는 기일은 다시 알려주기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생각건대 필시 사신을 이미 차출하여 바다를 건너는 소식을 정돈하고는 단지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어서, 이미 조금이라도 서로 어긋날 리가 없다’고 말하여 보냈다. 저로서는 그래서 이곳에 머물면서 통신사 일행의 길을 인도하여 갈 것인데, 제가 서계를 가져와서 밤낮 없이 올려보낸 답서 가운데, 사신이 서울에서 출발하는 날짜를 정월 보름 이전에 내려와야만 비선(飛船)을 들여보내어 동 답서를 대군에게 전하여 바칠 것이라고 명백하

93) 동래부사 정(鄭) : 인조 20년(1642) 3월에 도입하여 동년 8월 교체되어간 정치화(鄭致和, 1609-1677)이다. 정치화는 동래정씨로 자는 성능(性能), 호는 기주(基洲)이다. 인조 6년(1628)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94) 별견역관(別遣譯官) : 특별한 일로 파견하는 역관.

95) 비보(飛報) : 중요한 사정을 급하게 알림.

게 써 넣었고, 또 각종 조정할 절목은 서계 가운데 번거롭게 기록할 수 없어서, 단지 저의 소견을 역관에게 진술하여 특별히 타일렀으니, 생각건대 필시 토로해 줄 것이다. 서계를 바친 뒤에 조정한 절목 30여 건을 도주 및 봉행 등이 홍지사(洪知事) 앞으로 상세히 적어 보냈거늘 가져 왔는데, 이 뜻을 일일이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장계를 올려 시행하되, 동 조목을 열거한 작은 종이는 다례하는 날 동래영감 한 곳으로 전해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청하여 열어보았더니, 모두가 사신이 시기에 임하여 일을 임시로 잘 조처해야 할 내용인데, 그 가운데 약군(若君)에게는 위에서 서계와 별폭을 대군 앞으로 보내는 사례대로 지어 보내고, 별폭의 토산물은 기이하고 귀한 물건으로 써 넣되, 동 별폭 1장은 정해진 형식대로 조선국왕(朝鮮國王) 4자를 쓰고 그 아래 어보(御寶)를 찍고, 또 한 장에는 어보만 찍고 가져왔다가 임시로 선처하라는 등의 말과, 어필의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을 일광산에 전하여 줄 때, 상감께서 제문을 지어 보내고 향전(香奠)을 들여보내달라는 말은, 그 의도하는 바를 측량할 수 없고, 사신이 들어가서 대군 앞에서 만나보는 예를 행할 때의 예절은 생각건대 필시 전례와 다름이 없을 것인데, 만일 사신이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따라하라는 등의 말은 극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통신사의 행차는 단지 이전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저쪽에 도착하여 난처한 일을 미리 헤아릴 수 없어 더욱이 우려되니, 예사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다례를 행하고 서계를 바친 뒤에 그가 하는 말을 다시 탐문할 것이며, 절목의 조건을 적은 작은 종이는 곧 저들 나라의 방서(方書)로 상세하게 적었는데, 등본을 열어보고 아울러 급급하게 올려 보낼 계획이라고 수분하였음.

수본 내의 문답한 사연을 묘당에 명하여 급하게 조정하여 지휘하여 주시되, 그 중 가장 긴급하면서 들어주기 어려운 것으로는, 일광산 사당에 상감께서 제문을 갖추어 치제하는 일 및 관백의 새로 난 아들에게 별도로 서계를 만들어 보내는 두 조목은 그대로 허락해주시기가 어려울 듯한데, 다례하면서 서로 접촉할 때 말을 만들어 타일러 막을 계획이거니와, 다만 이미 도주의 명령을 받고 별록(別錄)을 가져와서, 온갖 교묘한 말로 시종 견고하게 고집하며 기어코 제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니 극히 난처함. 다례를 행한 뒤에 타일러 문답한 사연은 추가로 상세히 치계할 계획임. 앞으로 통신사를 보낼 때 장계를 올려 논의하는 일은 매우 긴급한데, 근래에 파발을 보내는 길에 날짜가 지연되는 일이 더욱 심하여, 회계(回啓)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 대응할 무렵에 막중한 일의 처리를 매양 그르치게 되어 극히 민망하고 우려되니, 파발이 지나는 길에 지연되는 곳에는 별도로 경계하여 신칙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이를 감히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 왜인 후지[藤倭]가 나옴에 대한 홍희남(洪喜男)의 수본 내용에, 사신의 행차를 재촉하는 등의 말은 대단한 것이 아닌 듯하나, 일

광산의 사당에 상감께서 제문을 갖추어 치제하는 일 및 관백의 새로 난 아들에게 별도로 서계를 보내는 등의 일은 참으로 허락하기에 어렵거니와, 그 가운데 별폭 1장은 단지 어보만 찍어서 가져갔다가 임시로 조처한다는 등의 말과, 사신의 예절을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말대로 한다는 등의 말은 극도로 헤아리기 어려운데, 일이 중대한 관계로 장계의 내용대로 묘당에 명하여 조정하여 지휘하게 하되, 파발 길이 지체되지 않도록 빨리 전하는 일 또한 묘당에 명하여 분부하게 하여 시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정월 초7일 행도승지 신 정(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 장계 내용의 네 가지 일은 모두 새로운 규정에 관계되어, 신 등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원임(原任)에게 널리 의논하였는데, 모두들 전후의 장계를 참고하고 도주의 사정을 헤아려보건대, 무릇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대군을 청탁하거나 혹은 공갈 협박하거나 혹은 아첨하는 말을 하여,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룬 뒤에 그만두려고 하거니와,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나, 내용을 쓰지 않은 서계와 제문과 향전(香奠), 사신의 예절은 그 때마다 한결같이 그들의 말에 따라 하자는 등의 네 조목은 모두 이전에 없었던 일인데, 두 나라의 통신사가 왕래할 때의 문서와 절목은 모두 정해진 형식이 있고, 피차간에 접대하는 것도 또한 성신(誠信)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도주가 가운데서 장황하게 떠드는 말이 있더라도, 이제 새로운 규정을 새로 만들어 후일의 난처한 사단을 남겨서는 불가하니, 네 가지 일은 결코 경솔하게 허락하기는 어려우니, 말을 잘 하여서 기어코 틀어막아라는 뜻으로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행이(行移)⁹⁶하시며, 파발 길에 신칙하는 일은 수일 전에 이미 경가·충청 두 도에 신칙하였거니와, 각별히 경계하여 신칙하라는 뜻으로 다시 행회(行會)하되, 통신사가 출발하는 날짜는 해당 관청에 명하여 내일 안으로 택일하고, 사신의 성명과 함께 급하게 알리게 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정월 초8일 좌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하되, 또한 네 조목 가운데 치제(致祭)하는 한 가지 일은 불법(佛法)으로 재(齋)를 베풀어 그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것이 혹 무방할 듯하니 다시 논의하여 조처하라 하신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일광사(日光寺)에 제문과 향전(香奠)을 보내는 한 가지 일은 부득이한 듯하므로, 어제 저녁 계하한 정유성(鄭維城)⁹⁷의 장계에 대한 회

96) 행이(行移) : 행문이첩(行文移牒)을 줄인 말. 관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조회하는 일.

97) 정유성(鄭維城, 1596-1664) : 영일정씨로 자는 덕기(德基), 호는 도촌(陶村)이다. 인조 5년(1627)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인조 20년(1642) 8월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22년(1644) 4월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나중에 우의정에 이르렀다.

계 가운데 이미 진달 품신하였거니와, 사신이 향로와 종을 가지고 가서 전하여 준다면, 불법(佛法)으로 재(齋)를 베푸는 것은 형세가 매우 난처한 형편이라, 토산물을 정하게 갖추고 글을 읽고 전(奠)을 베푸는 것이 혹 무방할 듯하니, 이대로 조처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정월 초9일 좌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일광사(日光寺)에 제(祭)를 베풀 때 들어갈 향전(香奠)은 예조에 명하여 마련하게 하고, 제문을 마련하는 것 또한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정월 초10일 동부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상감사 임담(林潭)98의 장계 내용. 앞서 동래부사 정유성(鄭維城)이 보고한 통신사의 도해(渡海) 일자를 재촉하는 사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해당 동 부사의 치보 내용에, 무릇 여러 일을 조정하기 위하여 차왜 후지 도모나와[藤智繩]가 또 왜관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이 전부터 후지 도모나와가 나오면 전례에 접위관을 차출하여 접대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인근의 양산군수 정호인(鄭好仁)99을 차출하여 전례대로 접대하도록 분부하였거니와, 통신사의 행차에 본부에서 조처할 일이 극도로 호대(浩大)한데, 바다를 건너가기로 택한 날짜가 이렇게 급박하니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극히 민망하고 우려되어,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예조단자. 통신사가 출발할 좋은 날짜를 일관(日官)에게 명하여 택일하게 하였더니, 출발 날짜는 오는 2월 20일, 배를 타는 것은 오는 3월 15일 진시(辰時)가 길하다고 하니, 이 날로 거행하는 일을 알림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정월 초9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계미(1643) 정월 14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기일(期日)이 급박하여 일본국왕 이하 각처에 보낼 예물을

98) 임담(林潭, 1596-1652) : 나주임씨로 자는 이다. 인조 13년(1635)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인조 20년(1642) 10월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21년(1643) 11월에 병조참의가 되었다. 나중에 대사간과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99) 정호인(鄭好仁, 1597-?) : 영일정씨로 자는 자견(子見), 호는 양계(陽溪)이다. 인조 5년(1627)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진주목사에 이르렀다.

마련하도록 계하(啓下)한 뒤에, 해당 관청 및 각 도에서 마땅히 마련해야 하나, 본조에는 이미 병자년(1636) 통신사의 근거할 만한 문서가 없으므로, 그 때 일행으로 간 역관 등이 사사로이 보관한 문서를 가져다가 참작하여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하되, 본조의 계사(啓辭)로 말미암아 병자년 등록을 베껴 적어 올려보내는 일로 동래에 이문(移文)하였으니, 베낀 글이 올라온 뒤에 만약 가감할 곳이 있으면 부표(付標)하여 시행함이 어떠할지?

후록 : 병자년(1636) 전례의 예물.

- 一. 국왕에게 보내는 예단.[서계가 있음.] 대유자(對濡子) 10필. 대단자(大段子) 10필. 황조포(黃照布) 30필. 검은 삼베 30필.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50필. 인삼 50근. 범가죽 15장. 표범가죽 20장. 채화석(彩花席) 20장. 각색 붓 50자루. 청서피(靑黍皮) 30장. 준마(駿馬) 2필, 안장 갖춤.[이상은 해당 관청]. 유매 먹(油煤墨) 50홀. 황밀(黃蜜) 100근. 청밀(淸蜜) 10그릇. [매 단지마다 1말]. 어피(魚皮) 100장. 색지(色紙) 30권. [이상 본도에서]. 응자(鷹子) 20연 중 [15연은 본도에서 5연은 강원도에서].
- 一. 집정 4인. 평소부두공(平掃部頭公), 원하총수공(源下總守公), 등대취두공(藤大炊頭公), 원찬기수공(源讚岐守公)[각기 서계 있음] 예단. 각기.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5필. 범가죽 2장. 황모필 30자루.[이상 해당 관청에서]. 유둔(油菴) 3부. 화석(花席) 5장. 유매먹 20자루.[이상 본도에서]. 응자 1연.[강원도에서].
- 一. 봉행 6인. 등가하수공(藤加賀守公), 원윤두수공(源尹頭守公), 등풍후수공(藤豐後守公), 등대마수공(藤對馬守公), 내장두공(內匠頭公), 원주방수공(源周防守公)[각기 서계 있음.] 예단. 각기.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5필. 범가죽 1장.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유매먹 10홀.[본도에서]. 응자 1연.[강원도에서].
- 一. 대마도주에게[서계 있음] 예단.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인삼 5근.[이상 해당 관청에서]. 화석 5장.[본도에서].
- 一. 도서를 받은 3인에게. 만쇼영[萬松院], 이폐이양[以厓庵],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각기 서계 있음] 예단. 각기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범가죽 1장.[이상 해당 관청에서]. 화석 3장. 유둔 1부.[이상 본도에서].
- 一. 소장로(召長老) [서계 있음] 예단. 인삼 3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황모필 20자루.[이상 해당 관청에서]. 참먹 10홀.[본도에서].

一. 수직왜(受職倭) 9인[서계 없이 인원 수만 적음] 예단. 각기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황모필 1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화석 2장. 참떡 5홀.[이상 본도에서].
 승덕 8년(1643) 정월 14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예조의 계목. 일본국 왕자 약군에게 증정하능 浬단은 국왕의 예단을 참작하여 줄여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응자 10연.[함경도에서]. 준마 2필, 안장 갖추어. 인삼 30근. 범가죽 10장. 표범가죽 15장. 각색 붓 50자루.[예컨대 대모필(玳瑁筆), 용편필(龍鞭筆), 홍당죽필(紅唐竹筆) 등]. 권물(卷物) 10필[이른바 대단자(大段子)임]. 흰모시베 30필. 검은 삼베 15필. 청서피 15장. 권물 10필[이른바 채단(彩段)임] 대신으로 백릉(白綾) 20필.[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유매떡 5홀. 화연(花硯) 5면(面). 어피 100본(本).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미(1643) 정월 15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대마도주가 조목을 나열한 작은 쪽지의 해석 및 봉행 등이 조목을 나열한 작은 쪽지의 해석 각 항목 등에 대한 일을 묘당에서 의논하여 참작 마련하여 조정한 내용을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하는 일로 해당 관청 및 본도에 아울러 이문(移文)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후록. 대마도주의 작은 쪽지의 해석.

一.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시기는 3월 중순과 하순 사이에 대마도에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택일하였음.

一. 대군(大君)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해서 하되, 별폭의 물건 수량은 앞서의 연례대로 하며, 약군(若君) 앞으로 보내는 별폭은 조금 차등을 두되, 다만 마필(馬匹)의 수는 대군 앞으로 보내는 것과 한가지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지금 아직 확정하지 못하였으니, 비변사의 조치를 기다려 거행할 것임.

一.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하여 하되, 별폭 가운데 찍는 어보는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에 찍는 어보를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상감의 말씀대로 시행할 것임.

- 一. 일광산에 세 사신이 가는 날 어필을 새긴 종과 향로, 쫓대, 화병(花瓶) 등의 물건은 그 때 전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여 이번 사자(使者)가 구두로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동래부사가 비변사에 올린 장계로 인하여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확정하였음.
- 一. 상감께서 치제하는 제문을 세 사신이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향전(香奠)의 물품은 귀국의 법과 예대로 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들어갈 향전과 제문은 마련하여 지급하여 보낼 것임.
- 一. 대군과 약군 앞에서 사신이 상견례를 행할 때 및 일광산에서의 예법은 서로 어긋남이 없는데, 만약 그 때를 당하여 어긋남이 있으면 잡담을 제하고 한결같이 도주가 하는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회계(回啓)의 판부(判付) 내용에, 사신 등의 예절은 전례가 있는 일인지라 이제 와서 따져 정하는 것은 극히 무리하니 허락하지 말도록 하였음.
- 一. 김정 등에게 보내는 서계 별폭은 특별히 유념하여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하였음.

봉행 등이 보낸 작은 쪽지의 해석.

- 一.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가는 일자는 오는 3월 중으로 한정하여 대마도에 들어오되, 차왜 후지[藤]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 내용 가운데,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일을 명백하게 적어 보내면, 그 답서를 예도에 들여보내는 것이 한 시각이 급하니, 별도로 한 사람을 정하여 들여보내고, 후지 도모나와[藤智繩]는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부산 왜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여 회답서계를 이대로 지어서 보내라고 하였음.
- 一. 대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이전과 같이 그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르되, 그 가운데 단자(段子)는 두 가지 색깔이 없어서는 안되는데, 바라건대 나라 안에서 찾으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 뜻을 동래 및 두 지사(知事) 앞에 이야기하여 해당 관청에 품신하여 보고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해조에 명하여 거행하게 하였음.
- 一.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 가운데 응련(鷹連)과 마필(馬匹)이 없어서는 안되니, 특별히 염두에 두어서 기이하고 귀한 물건을 보내고, 대모필과 각색 붓도 또한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예단의 수량과 물목은 현재 아직 마감하지 않고 비변사의 확정을 기다려 시행할 것임.

- 一.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다시 말하지 않고, 한 장에는 어보만 찍고 한 장에는 국왕이라 적고 그 위에 어보를 찍어 도합 두 장을 가져오는데,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도에 도착하여 집정(執政)과 상의하여 좋은 모양으로 조처할 것이니, 이대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一. 대군과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작은 쪽지에 적어서 내어 보내니 이대로 할 것이나, 이 밖에 나라 안에서 비축된 토산물 가운데 합당한 물건이 있으면 첨가하여 보내는 것도 좋으며, 무릇 예단에 사용하는 물건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지급해야 할 곳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세 사신이 사용할 잡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세 사신의 예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가는 일은 비변사의 조정에 의거하여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할 것임.
- 一. 집정 등에게는 앞서의 연례와 같이 예조에서 각각 서계를 만들고 별폭 등의 물건은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각처에 보내는 서계 및 예물은 전례대로 조정하여, 승문원 및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거행할 것임.
- 一. 이번에 집정 등의 성명을 적어 보내니 이대로 성명을 적어 넣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일을 비변사에서 이미 조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였음.
- 一. 별폭 가운데 매[鷹子]는 마침 제철이 지났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도에 들여보낼 수량이 많게는 54-5연에 이르니, 지사(知事) 등에게 말하여 다음 달 중순에 모조리 들여주어서, 왜관 안에서 수십 일 먹이를 먹인 뒤에, 그 중 병이 없는 것을 들여보내면, 여기서 오사카[大坂] 성에 올려보내어 대군의 응사(鷹師)¹⁰⁰에게 전해줄 계획이니, 급속히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에서는 병자년(1636)의 규정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조정하여 본도 및 강원 감사에게 급속히 거행하는 일로 이문하였음.
- 一.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은, 조정에서 주조하여 일광산에 보내는 모양으로 예조에서 대마도주에게 서계를 만들어 들여보내면, 주조한 물건을 그 서계와 한꺼번에 예도로 들여보내어 귀국의 은근한 정을 보이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보내게 하였음.

100) 응사(鷹師) : 사냥용 매를 관리하는 조련사.

- 一.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제문과 향전(香奠)을 가져오는데, 사신 또한 예단이 없지 아니하니 합당할 물건을 마련하여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제문과 향전을 거행하는 일은 이미 계하하였고, 예단은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
- 一. 이번 세 사신은 반드시 대관(大官)으로 정하여 보내는 것은 이곳에서 감히 진달할 수 없으나, 이 밖의 상하 원역(員役)은 최상으로 골라서 데려오되, 일행 가운데 법도를 세워서 하인이 금법을 범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데려가는 원역은 사신이 스스로 선발하여 데려가고 일행 가운데 법도를 세우는 것은 이미 금지하는 사목(事目)이 있거니와, 하인이 금령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신에게 명하여 신칙하여 시행하게 할 것임.
- 一. 역관은 앞서의 연례 통신사 때에는 수가 적어서 무릇 사환(使喚)을 하는 사이에 매양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고, 각 배에 나누어 신지 않기까지 하여 보기에 매우 구차하였으니, 이번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왜어(倭語)에 능통한 자를 잘 선발하여 서너 사람의 인원수를 더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뜻으로 이미 조정하여, 왜어에 능통한 자 세 사람을 사역원에 명하여 선발하여 보내게 하였음.
- 一. 유자(儒者)로서 글씨를 잘 쓰는 자와 화원(畫員) 등의 인원 수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각 색(各色)마다 한 두 사람을 더하여 데려오고, 의원도 또한 최상으로 선발하고, 악공(樂工) 또한 음악을 잘 하는 자를 가려서 데려 오되, 앞서 연례로 들어온 연담(蓮潭)과 같은 자를 선발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조정하여 각 해당 관청 및 통신사에게 명하여 참작하여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가라고 하였음.
- 一. 세 사신이 대군 앞에서 예를 행할 때 신는 화자(靴子)¹⁰¹⁾는 흙을 밟고 곧장 전각(殿閣) 안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한 듯하니, 이번에는 화자를 벗고 행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의 회계로 인하여 이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할 것.
- 一. 세 사신의 상하 원역이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의 법제(法制) 사목(事目)을 적어 대마도에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들어갈 때 본디 금단(禁斷)하는 사목이 있으니 이것을 참작하여 적어 보낼 것.

101) 화자(靴子) : 목화(木靴). 옛날 사모(紗帽)와 대대(大帶)의 관복(官服)을 착용할 때 신는 신발로서, 시늬 가죽으로 목을 길게 만들었으며 모양은 장화와 비슷하다.

- 一. 사신이 왕래할 때 선박이 정박하는 곳 및 숙소로 삼는 곳에서 접대하는 사람은 모두 대관(大官)으로 정하여 기다리는데, 사신이 간혹 멀미[水疾]를 칭탁하거나 병을 핑계하여 육지에 내리지 않아서, 접대하기 위하여 허다하게 마련한 물자를 공연히 버려 부질없게 되니, 세 사신 가운데 혹 한 분이라도 육지에 내려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는 일은 오히려 사신이 당연히 시행할 일인지라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잘 조치하라 하였음.
- 一. 육로로 가는 도중에 점심을 먹거나 숙소를 정한 곳에서 접대할 때, 세 사신이 노곤하다고 칭하거나 혹은 병을 칭하여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선처하라 하였음.
- 一. 세 사신이 공식 업무를 쉬는 날은 미리 통보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이 거행할 일인지라 이대로 할 것임.
- 一. 물과 물 곳곳마다 장막을 친 임시 가옥을 정제하여 기다릴 것인데, 하인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주인이 감히 손대지 못하니, 한결같이 도중(島中)의 봉행(奉行) 등이 하는 말대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할 것임.
- 一. 일행의 원역(員役)이 들어가서 탈 말은 모두 장관(將官)이 타는 말에서 나오므로, 대마도에서 별도로 감관(監官)을 정하여 그 중 상중하의 등급을 보고 차례로 나누어 주는데, 하인들이 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뺏아 가니 극히 민망하고 우려되어, 이번에는 행중(行中)에서 별도로 4-5인을 정하여 감관이라 일컫고 일일이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다투어 빼앗아 가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하여 거행하되, 만약 따르지 않고 난잡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죄를 따져 시행할 것임.
- 一. 바닷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 세 사신이 타는 배가 바람으로 인하여 정박할 때는 비록 혹 앞서거나 뒤처지더라도, 포구에 와서는 기다렸다가 차례차례 정박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더라도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함.
- 一. 마재(馬才) 두 사람은 각기 잘 길들인 말을 끌고 들어가되, 앞서의 연례(年例) 마재는 모두 솜씨가 치졸하였으니, 이번에는 가장 잘 선발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훈련도감에 명하여 이대로 선발하여 보내는 일로 이문하였음.

- 一. 말을 달리고 활을 잘 쏘는 등 각종 기예를 가진 자 두 세 사람을 군관 중에 데려 오고, 활을 쏘는 도구 또한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 중에도 데려가는 군관이 있으니,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데려가게 하였음.
- 一. 예도에 도착하여 일을 마친 뒤에 도주가 사실(私室)에서 세 사신을 청하여 잔치를 하려하니, 미리 알려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이대로 시행할 것임.
- 一. 각 역참에서의 접대는 최상으로 정하게 골라 준비하는데, 상하 원역들이 즐겨 먹을 수 없는 것은 제하고 은근히 상을 차려 먹을 만한 음식물만 골라 드리도록 함이 어떠할지, 이는 임의로 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거행하는 일을 일행 중의 장무역관(掌務譯官)이 담당하여 거행할 것임.
- 一. 떠들고 잡담하며 혹은 빼앗거나 훔 가져가거나 불을 금하는 등의 일은 각별히 엄금하고, 만약 일행 중에 절박하게 사들여 사용할 물건이 있으면, 대마도에서 별도로 통사왜(通事倭)를 정하여 사들여 주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게 조목을 세워서 이대로 하라 하였음.
- 一. 세 사신이 교자(轎子) 앞에는 앞말 한 필씩으로 끌게 하면 되니 이는 임의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에서 회계할 때 거론하지 않았음.
- 一. 세 사신이 타는 배는 각별히 정밀하게 제조하여 용을 그린 배의 휘장과 노 등의 물건을 일일이 정밀하게 갖추어 일본인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사공들이 바람을 살피지 못하여 매양 우려되는 사태를 당하니, 한결같이 일본 사공이 말하는 대로 함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본도 및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하는 일로 거행할 것임.
- 一. 이제 이번에 진술하는 바의 일은 모두가 귀국을 위하여 유념한 계획이니 한결같이 도주가 말하는 대로 함이 좋을 것이며, 기왕의 통신사 행차에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있었으나 감히 일일이 진달하지 못하니, 모든 일을 각별히 잘 조처하는 일을 동래·부산 양 지사가 힘을 써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따라도 될 일이면 도주가 하는 대로 하겠으나 따를 수 없는 일이면 결단코 따르기가 어려우니,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살펴서 거행하게 하였음.
- 一. 위 항목의 조건은 상의하여 조처하고, 조선에서 만약 수공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비선(飛

船)으로 말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각 항목의 조건을 나열하여 비변사에서 이미 참작하여 보고하고 조정하였음.

승덕 8년(1643) 정월 13일 우승지 신 이현(李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이에 의거하여 호조, 공조, 승문원, 사역원, 화원장무(畫員掌務), 행차장무(行次掌務) 역관에게 감결(甘結)을 보냄.

계미(1643) 정월 17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잡물은 한결같이 병자년(1636)의 전례를 상고하여 마련하는 일로 이미 이문하였거니와, 동래의 전례(前例) 등록(騰錄)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고, 통신사의 기일이 급박한데, 병자년의 통신사 때 네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바다를 건너간 여행 잡물의 총수를 도장 찍어 성책(成冊)한 것이 그 때의 역관에게 있거늘, 가져다가 상세히 살펴보니 물목(物目)을 실하게 갖추었으므로, 개좌(開座)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수량으로 충청·전라·경상·강원도 등지에 통지하여, 참작하여 분정하게 하고 급급하게 마련하는 일로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후록. 네 차례 걸쳐 나누어 정한 잡물의 총수.

진간장[甘醬] 10섬. 간장(良醬) 1섬. 울무가루 5말. 꿀[清蜜] 2섬. 밀가루[眞末] 2섬. 환소주(還燒酒) 150병. 밀계(蜜桂) 5천 닢(立). 초 300자루. 대절참먹[大節眞墨] 100정(丁). 중절참먹[中節眞墨] 100정. 포육(脯肉) 80점. 전복 20점. 말린 해삼 3섬. 말린 홍합 3섬. 호두 2섬. 황률(黃栗) 2섬. 꽃감 70점. 잣 2섬. 인삼 20근. 백지 245권. 대유지(大油紙) 4권. 만화석(滿花席) 30장. 채화석(彩花席) 30장. 옷칠한 부채[漆扇] 100자루. 유선(油扇) 600자루. 백첩선(白貼扇) 30자루. 미선(尾扇) 20자루. 참기름[眞油] 2섬. 녀장 불인 유둔(油菴) 40번(番). 여섯 장 불인 유둔 20번. 누룩[眞麴] 130원(圓). 콩[太] 6섬. 팥[赤豆] 7섬. 조기 3,500속(束). 건어(乾魚) 80속. 도련지(擣鍊紙) 5권. 초주지(草注紙) 30권. 녹두 2섬. 흰 모시베 50필. 참깨[眞荏子] 2섬. 편포(片脯) 8점. 말린 노루[乾獐] 14마리. 개자(芥子) 3말. 찹쌀 3섬. 말린 꿩[乾雉] 100마리. 김[海衣] 40점. 미역[甘藷] 200근. 좁쌀 7섬. 메밀[木米] 3섬. 황밀(黃蜜) 6말. 오미자 2말. 소금 9섬. 생울(生栗) 2섬. 녹두가루 5말. 생강 6말. 표고버섯 4말. 범가죽 16장. 표범가죽 8장. 사슴가죽 3장. 배(生梨) 100개. 군량(軍糧) 333섬, 세 행차의 밥 지을 쌀을 통틀어 함께 계산함. 흰 사발 15죽(竹). 흰 보시기 15죽. 흰 대접 15죽. 흰 접시 25죽. 흰 종지[白宗子] 15죽. 백자 대접 10죽. 백자 중발(中鉢) 5죽. 백자 잔, 잔대 구비 3부. 백자

중지 3죽. 백자 사발 4죽. 백자 규화배(葵花杯) 잔대 구비 3부(部). 차일(遮日) 5. 휘장 5. 지의(地衣) 3부. 면석(面席) 3넙. 독석(篤席) 3넙. 단석(單席) 3좌(坐). 화방석(花方席) 3좌. 문방석(紋方席) 1죽. 고족상(高足床) 3. 안식(案息) 3부. 교의(交椅) 3. 평교자(平轎子) 3. 작은 병풍 3. 모둔(毛氈)¹⁰² 3. 평연(平硯) 3. 대분토(大分土) 3. 소분토(小分土) 3. 관대 가죽상자[冠帶皮箱] 3. 작은 밥상[小食床] 3, 수반(手盤: 예반)을 갖추어. 촛대 3쌍. 놋쇠 타구[鑪唾口] 3. 작은 서안[小書案] 3. 일산(日傘) 3. 청산(靑傘) 3. 우산(雨傘) 3. 요[褥] 3. 용정(龍亭) 3. 향꽃이[香童子] 3. 도장 안장[印鞍子] 1.

제구(諸具): 매[鷹子] 15연(連). 유지 포대[油紙帑] 4부. 바가지[瓢子] 대중소 24개. 밥고리[食箕] 3. 체[篩子] 6. 채칼[菜刀] 3자루. 큰 밥솥[大食鼎] 4틀[坐]. 중간 밥솥[中食鼎] 5틀. 작은 밥솥[小食鼎] 4틀. 좌철(坐鐵) 3. 부쇠[火金] 2, 석소(石巢) 갖추어. 부젓가락[火筋] 3쌍. 적쇠[炙金] 3쌍. 놋소라[鑪所羅] 3. 놋대어[鑪大也] 3. 놋요강[鑪要光] 3. 칠기 쟁반[漆平盤] 4죽. 용탕 숟가락[禿匙] 3단(丹). 놋젓가락[鑪筋] 3매이(每伊). 큰 놋숫가락[鑪大匙] 3가락[指]. 놋쇠 뚜껑[鑪蓋子] 3. 휘건(揮巾) 3. 수건(手巾) 3. 흰 명주 비갑[白綿袖臂甲] 3쌍. 새옹[沙用: 작은 놋쇠 술] 3. 아리쇠[阿利金: 삼발이] 갖추어. 주전자 2. 도롱(塗籠) 4마리[馱], 잡물을 넣어 담기 위해. 차보시기[茶甫兒] 3, 차순가락과 탁자 구비. 좌면지(坐面紙) 30장. 향아리[缸] 4좌. 독[瓮] 12좌. 어피(魚皮) 50장. 오색지(五色紙) 90권. 흰 사기 향아리[白沙缸] 10좌. 장지(狀紙) 5권.

약재(藥材): 생지황(生地黃) 10냥. 옥리인(郁李仁: 산앵두 씨) 3냥. 마황(麻黃) 7냥. 황기(黃芪) 1근. 맥문동(麥門冬) 10냥. 천문동(天門冬) 1근. 길경(桔梗: 도라지) 10냥. 적복령(赤茯苓) 10냥. 시호(柴胡) 10냥. 백출(白朮) 2근. 방풍(防風) 8냥. 산약(山藥) 5냥. 천남성(天南星) 4냥. 백작약(白芍藥) 5냥. 당귀(當歸) 1근. 백복령(白茯苓) 10냥. 궁궁(芎芎) 7냥. 승마(升麻) 5냥. 전호(前胡) 3냥. 향유(香薷) 2근. 백지(白芷) 3냥. 창출(蒼朮) 2근. 대황(大黃) 8냥. 황백(黃栢) 10냥. 강활(羌活: 강호리) 5냥. 소엽(蘇葉) 7냥. 황금(黃芩) 8냥. 백편두(白扁豆) 4냥. 택사(澤瀉) 6냥. 상백피(桑白皮) 5냥. 반하(半夏) 8냥. 애엽(艾葉) 5두름[冬音]. 목통(木通) 10냥. 차전자(車前子) 2냥. 말린모과[乾木瓜] 5냥. 오미자(五味子) 5냥. 세신(細辛) 5냥. 박하(薄荷) 3냥. 형개(荊芥) 4냥. 인동(忍冬) 2근.

우구(雨具): 상품의 가는 도롱이[上細簑] 3. 상품의 언치[上鞍赤] 3건. 백적(白赤) 3건. 유삼(油衫) 3건. 달치[月乙赤] 3거리[巨里]. 차상품의 익힌 도롱이[次熟簑] 32부. 차상품의 언치[次鞍赤] 32부. 짚도롱이[草簑] 15부. 화자(靴子) 정하게 구비하여 3부. 행수목(行需木) 1동(同). 승덕 8년(1643) 정월 17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102) 원본에 '모부(毛浮)'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모둔(毛氈) 3부(浮)'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쳐 번역하였다.

계미(1643) 정월 18일

경상감사 입담(林潭)의 장계 내용. 방금 과발로 내려온 동래부로 보내는 예조의 관문을 접하였는데, 통신사가 가져 갈 예물을 본조의 문서가 흩어져버려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동래부 등록(騰錄)을 베껴 적어 올려보내라는 일로 계하여 공문을 발행하였는데, 신이 차왜(差倭)가 나오는 날 즉시 감영에 있는 구 등록을 살펴보았더니, 본도에 배당된 잡물만 기록하였을 뿐이고,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예물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단의 규정과 사례 또한 상고할 만한 것이 없고 전혀 상세하지가 않거늘, 생각건대 동래부에 별도로 전해오는 등록이 있으리라 여겨 베껴 보내라고 하였더니, 동래부 또한 상고할 만한 것이 없고, 부산진에 「하사도복정잡물성책(下四道卜定雜物成冊)」이 있다고 하여 보내왔기로, 본도에서 책임지고 장만하는 일은 이것으로 마련하여 준비하는데, 이른바 동래의 등록이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고, 이 밖에 각 항목의 예물 및 별구청(別求請) 예물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사신이 가져오기 때문에, 당초에 본도의 등록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병자년(1636) 옛 문서 가운데 찾아낸 해당 관청에서 예물을 마련하면서 행이(行移)한 공문 너 장 및 부산에서 온 성책(成冊 : 책자로 만든 문서)을 아울러 감봉(監封)하여 해당 관청으로 올려보내니, 각 도에 분부하여 때에 맞추어 마련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가만히 생각건대 이번에 저쪽에서 청한 바의 시행해야 할 예단 가운데 또한 추가로 정한 물건이 있는듯한데, 약군에게 보내는 별폭의 경우에는 규정 외로 나온 것이다. 지금 만약 이대로 허락한다면 서울과 지방에서 준비하는 것은 마땅히 수량을 더하여 조치해야 하는데, 전일 차왜의 문답 가운데 또 응련(鷹連) 5-60이라는 말이 있으니, 이 또한 감하여 보내기가 어렵다면, 제철이 아닌 때에 사들이기는 더욱 쉽지 않고, 생산되는 곳에 진작 분정(分定)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내주도록 하여야 시일이 되어 급박하여 빠뜨리는 폐단이 없겠으니, 아울러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속하게 조치하게 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전일 동래부사의 장계 가운데 한 곳에서는 매가 54-5연이라고 말하였고, 한 곳에서는 60연이라고 말을 하여 분명하게 수량을 정하지 않았거늘, 경상도 20연, 강원도 18연, 함경도 10연, 전라도 7연, 도합 55연을 마련하여 분정하였는데, 이제 이번 본도의 장계 가운데는 5-60연을 마련한다고 말을 하니, 만약 부득이하여 반드시 60연을 마련해야 한다면, 경상도에 2연을 추가로 분정하고 전라도에 3연을 추가로 분정하여, 급급하게 마련하여 동래로 보내주는 일로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정월 18일 동부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였는데, 황해도에는 분정하지 말고 가깝고 편리하게 양남(兩南)에 분정하라고 하셨음. 동 전교에는 황해도로 분정된 것을 경상·전라도 고쳐서 부표(付標)하였음.

계미(1643) 정월 25일

예조단자. 통신사가 가져가는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인물을 쇄환(刷還)하기 위하여 유시(諭示)하는 글의 전례를 상고하여 단자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가져가서 유시함이 어떠할지?

후록 : 예조에서 통유(通諭)하는 일임.

국가가 불행하여 갑자기 병란(兵亂)의 화를 입어 팔도(八道)의 생령(生靈 : 생명)이 도탄에 빠졌는데, 그 중에 겨우 칼날에 죽음을 모면한 자가 모두 묶여 있는 지가 지금까지 50년이 되었다. 그 가운데 어찌 부모의 나라를 그리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하는 이가 없겠는가마는,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 업고 나오는 자가 보이지 않으니, 이는 필시 함몰된 지 오래되어서인지라 그 실정이 또한 가련하다. 국가에서는 쇄환하는 인구에 대하여 특별히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 병자년(1636) 사이에 사신이 데려온 사로잡혀 간 인구에 대하여는 모두 죄를 면하게 하고, 신역(身役)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면역(免役)하였으며, 공사천(公私賤)은 면천(免賤)하여 완전히 복호(復戶)¹⁰³⁾하고 보호하고 보살피서 그들로 하여금 본토에 편안하게 정착하게 하여, 그 쇄환되어 온 사람들 역시 모두 친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다시금 낙토(樂土)의 백성이 되게 하였는데, 일본에 있는 이들도 또한 필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이제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의 원수가 된 적당을 섬멸하고, 앞 시대에 하던 바를 모조리 고쳐서 서신을 보내어 우호를 요청하기에, 국가에서는 특별히 생령(生靈) 때문에 사신을 보내나니, 사로잡혀 가서 일본에 있는 자가 살아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이 그 시기이다. 만약 일제히 나온다면, 마땅히 지난 날 나왔던 사람들의 사례대로 면천 면역 복호 등의 은전을 일일이 시행할 것이니, 유시하는 글이 도착하는 즉시 서로 전달하여, 유시문 내용대로 통고하여, 사신이 돌아올 적에 일시에 나오도록 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여 시일을 연기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귀신이 되는 것을 면하도록 하라. 대조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되, 모름지기 통첩을 받을 사람에게 도착되도록. 위 통첩은 사로잡혀 간 사민(士民)들에게 내림. 이를 인준함. 승덕 8년(1643) 정월 25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103) 복호(復戶) : 호구에 부과되는 잡역(雜役)의 부담을 면해 줌.

계미(1643) 정월 22일

동래부사 정유성(鄭維城)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황직(黃稜)의 치통 내용임.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한상(韓祥)과 별차 김이진(金以鎭)¹⁰⁴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라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차왜 징 헤이에이[甚兵衛]가 세건 제14선에 함께 타고 나왔거늘, 그가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통신사의 행차가 기어코 3월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일은 이전에 이미 보고하여 알렸는데, 아직도 회답이 없기로 후지 도모나와[藤智繩]에게 전할 도주의 사신(私信)을 가지고 나왔거니와, 여러가지 이야기는 사신 가운데 있다’고 하거늘, 후지 도모나와에게 물었더니 답하기를, ‘내일 홍지사(洪知事)와 같은 시각에 왜관으로 가면 도주의 사신을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명백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노인(路引)¹⁰⁵ 2통을 가져다 바쳤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하였는데, 동 노인은 감봉하여 올려보내거니와, 차왜가 가져온 도주의 사신 안의 사연은 역관 등이 탐문하여 수본한 뒤에 추가로 치계할 계획이라고 운운한 일임.

경상좌수사 선약해(宣若海)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황직의 치통 내용임. 방금 접한 훈도 한상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홍지사(洪知事)와 더불어 왜관에 가서 차왜 징 헤이에이[甚兵衛]에게 나온 연유를 상세히 물었더니, 답하기를 ‘다른 것은 없고 후지 도모나와에게 도주가 보내는 사신(私信)을 가져왔으며, 그 사이 곡절은 후지 도모나와가 입으로 상세히 진술할 것이다’라고 하거늘, 후지 도모나와에게 가서 탐문하였더니, 도주가 보낸 서신을 내어 보여주거늘, 열어 보았더니 그 서신에 이르기를 ‘이달 초2일 대군(大君)의 사자가 또 내도하여 묻기를, ‘통신사가 5월 이내로 에도로 건너가는 일은 일찍이 이미 말하여 보냈는데, 지금까지 회답이 없어 그 연유를 모르겠으니, 급히 회보하여 달라’고 하였기로, 도주는 즉시 비선(飛船)으로 대군에게 고하기를, ‘지난 12월 20일 세이 우에몽[淸右衛門]이라고 이름을 일컫는 사람을 내어보냈기에, 같은 달 26일에 후지 도모나와를 내어보내어, 3월 내로 바다를 건너는 사정과 사유를 상세히 조선에 알렸고, 그 회답이 오늘 내일 사이에 마땅히 들어올 것’이라고 회보하였는데, 후지 도모나와가 가져 간 서계의 회답 내용에 사신이 출발하는 기일 및 통신사의 성명을 명백하게 적어 보내되, 만약 혹시라도 지연되면 후회 막급할 것이라, 징 헤이에이[甚兵衛]라 칭하는 사람을 보내니, 그가 돌아올 적에 회답서계를 이 사람에게 부쳐서 기일을 맞추어 보내며, 별쪽에 부치는 단자(段子)는 생각건대 필시 조선에서 갖추어 보낼 것이나, 대군과 약군 두 곳에 보내는 수량이 적지 아니하여, 만약 기일에 맞추어 마련하지 못하면 매우 우려스러

104) 김이진(金以鎭) : 분성김씨로 인조 8년(1630)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으며, 교회를 역임하였다.

105) 노인(路引) : 관청에서 발급한 통행권.

우니, 단자(段子) 35필과 생릉(生綾) 40필을 사들여 보내주도록, 이 뜻을 예조에 고하여 좋을 대로 선처하고, 일광산 제문은 이전에 별단 대로 하게 하되, 독축(讀祝)하는 사람을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라'고 하였으며, 또한 '기왕의 통신사 행차에 문서를 주관하는 승장로(僧長老)에게 도주의 사례대로 예조에서 서계를 만들고 별폭을 갖추어 문안하는 예는, 병자년(1636) 현방(玄方)이 유배되어 간 뒤로 소장로(召長老)와 선장로(仙長老), 인서당(隣西堂) 등은 대군이 정하여 보내어 두 나라의 문서를 전담하여 관장하고, 사신의 행차를 모시고 왕래하는데 서로 위문하는 일이 없어서 불만한 기색이 많았으니, 이번에는 소장로에게 현방의 사례대로 별폭과 서계를 갖추어 들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운운' 하거늘, 답하기를 '이제 이번 서신의 사연은 모두 전일 진술한 일인데, 그 가운데 제문을 독축하는 사람은 동 제문을 허락할지 않을지 현재 조정의 처분이 어찌될지 모르고, 비록 특별히 허락한다 하더라도 독축하는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갈 필요가 없고, 허다한 원역 가운데 어찌 독축할 사람이 없겠는가? 소장로에게 서계를 만들어 보내는 일은, 현방이 있을 때는 과연 이런 사례가 있었으나, 소장로는 비록 대군이 차출하여 보낸 사람이지만 일찍이 서로 친분이 없어서 병자년에 서계를 보내지 아니했는데, 이번에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관청에서의 조치가 있었고, 회답서계 가운데 사신이 출발하는 일자를 명백하게 적어 보내는 일은, 일찍이 이미 재삼 장계로 알렸으니 며칠이 되지 않아서 마땅히 내려올 것이니, 짐짓 기다림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니, 차왜 후지[藤倭]가 말하기를 '매양 짐짓 기다리라고 칭탁하여 시일을 끌어 미루어 이제까지 왔기에 매우 마음을 졸이며 민망하다'고 하였음. 대개 차왜가 잇달아 나와서 사신이 출발하는 일자를 이렇게 재촉하는바, 통신사의 바다를 건너는 기일을 다시 당기거나 물릴 형세는 아니고,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누누이 말하였다는 일로 수분하였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계미(1643) 정월 26일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 때 포수(砲手) 2명을 전례대로 데리고 가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경상감사가 올려보낸 본조의 엽장(葉張) 공문을 가져다 살펴보니, 병자년(1636)에 포수 대신으로 마상재(馬上才)¹⁰⁶를 데려갔는데, 이번 행차에 이미 마상재가 있으니, 포수는 줄여 버리는 것으로 원 사목(事目) 가운데 표를 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정월 26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106) 마상재(馬上才) : 말을 타고 여러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무예의 일종.

계미(1643) 2월 초6일

예조단자. 방금 바친 통신사 장무역관 김시성(金時聖)의 수본 내용에, 통신사 일행의 원역 중 녹(祿)을 받는 인원은 부표하고, 녹을 받지 않는 인원은 처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고하여 시행하는 일로 수본하였기에, 상고해보니 예조에 있는 병자년 등록 내용에, 녹이 없는 인원은 녹을 부쳐주고, 녹을 받지 않는 인원은 돌아올 때까지로 한정하여 처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일로 실려 있으니, 이제 이번 통신사 일행의 원역에게도 각 해당 관청에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하는 일로 이문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2월 초6일 입계하여 그대로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방금 접한 별견역관 홍희남의 수본 내용에, 차왜 후지[藤差]에게 회답하는 서계를 들여주었더니, 왜관에 있는 서승(書僧)을 불러다가 열어서 읽어 본 뒤에 말하기를, “이제 이번 답서(答書)에는 조금 미진한 곳이 있다”고 운운하거늘, 그 연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기일이 뜻밖으로 나와서, 기일을 맞추어 행차하기에는 일이 너무 급박하지만, 도주가 이렇게 알려오니, 이렇게 원하는 대로 들여보낸다는 등의 말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어찌겠는가?”고 운운하거늘, 답하기를 “이 말은 필시 도주가 힘을 써서 급히 들여보내라고 한 일을 좌우에 알리려는 계획이었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이는 성신(誠信)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운운하였더니, 즉시 봉표(封標)하여 차왜 징혜이에이[甚兵衛]가 서계를 가지고 당일 들여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어서 말하기를 “서너가지 조건을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이번의 일은 전에 비하여 다름이 있어서 비록 혹 온당치 못한 일이라도, 십분 상의하여 도주가 청하는 바를 통쾌하게 허락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운운하며 진달하였기에, 이 답서가 내려올 때 필시 정녕 통쾌하게 허락하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니, 그 상세한 내용을 듣고자 하며, 또한 통신사가 들어가서 시기에 따라 선처하는 일을 일일이 진달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였고, 제문을 독촉하는 자를 별도로 들여보내고, 소장로에게 현방의 사례와 같이 별폭을 갖추고 서계를 보내는 일 및 대군과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마필(馬匹)과 응련(鷹連)을 기일에 앞서 들여보내는 일은 일찍이 이미 진달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상세히 들어 알고 도주에게 급히 알려야 하며,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은 별도의 서계가 내려오면 먼저 베껴 적어 들여보내고, 원 서계는 종과 향로를 들여보낼 때 부쳐 보내게 해 달라”고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답하기를 “도주가 진술한 가운데 약군 앞으로 서계를 보내는 한 조목은 결코 행하기 어렵다는 일로 조정에서 이미 확정하였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며, 사신의 예모(禮貌)는 이에야스[家康]로부터 전래되어온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이제 논란하는 것은 무리에 해당하여 바꾸어서는 안되며, 화자(靴子)를 벗는

한 조목은 또한 고치기가 어려운데, 이런 의도로 일찍이 이미 말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고, 당일 돌아들어가는 배에 상세히 도주에게 치보함이 좋겠다. 그 밖의 각종 사항 및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은 비록 타당하지 못하나, 조정에서 특별히 도주의 간청을 유념하여 아울러 허락하고, 마필과 응련도 먼저 내려보내는 일로 또한 해당 관청 및 각 도에 분부하였으며, 그 중 사신이 저쪽에 도착하여 시기에 따라 조처하는 일은 해당 관청에서 일일이 상의하여 확정하였고, 미진한 일 중에 소장로에게 서계하는 일과 제문의 독촉하는 사람을 별도로 들여보내는 일은 추후에 치계하였는데, 해당 관청에서 어떻게 조처할지 모르겠고, 종과 향로를 들여보내는 특별 서계 역시 이미 내려왔으니, 베껴 보내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느냐?”고 하였더니, 차왜 후지[藤差]가 말하기를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은 가장 큰 절목이다. 그러나 서계를 따라주기 어려운 형편은 도주 또한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히 이렇게 진달하니, 별폭으로는 귀국에서 진귀하게 보배로 여기는 물건을 찾아서 들여주어 대군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면 다행이겠고, 형식은 한결같이 대군 별폭의 사례대로 함이 매우 합당하겠으며, 또한 예절에 관한 한 가지 일은 이미 성립된 규례(規例)라고 하여 획일하여 말할 수는 없으니, 대군 앞에서의 예절은 임시로 조처함이 마땅하겠거니와, 일광산에서의 예절 또한 사배(四拜)의 예가 있으며, 약군 앞에서 보는 예 또한 이와 같은데, 이런 일은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운운하거늘, 답하기를 “이런 말을 어찌 당초에 말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발언하는가? 일광산의 예절은 어찌하여 사배(四拜)까지 해야 하는가? 이에야스[家康]는 히데다다[秀忠]에게 지위를 전하였고, 히데다다[秀忠]는 지금의 관백(關白)에게 지위를 전하였는데, 그 당시 통신사 때에는 이에야스나 히데다다나 모두 구대장(舊大將)으로 별궁(別宮)에 있었기에, 사신을 만나는 예가 있어도 단지 재배(再拜)의 예만 행하였으며, 더구나 병자년(1636) 통신사가 대군의 청으로 말미암아 일광산에 들어갔을 때도, 세 분의 사신이 당(堂)에 들어가 분향(焚香)하고 꿇어 앉아 부복하였다가 머리를 들어 마치고 나왔으니, 별도로 배례(拜禮)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찌하여 사배의 예가 있게 되었는가? 약군은 비록 사신과 상견하는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국주(國主)가 아닌데 어찌하여 사배의 예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은 삼가 고집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차왜 후지가 답하기를 “당초에 말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발설한다는 말은 그 연유를 모르겠다. 도주의 별지 가운데 대군과 약군 앞에 사신이 상견례를 할 때 및 일광산에서의 예에 대하여 운운한 이야기는 이것이 아닌가? 전일에 통신사가 올 때는 구장군(舊將軍)에 대한 예절이었고, 병자년(1636) 일광산의 예절은 과연 답한 바와 같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 때와 다르다. 일광산에서 사신이 행례할 때는 이에야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필(御筆)을 존경하여 높이는 것으로, 특별히 어탑(御榻)을 설치하여 그 위에 봉안하는 것이니, 사신이 예를 행하지 않을 것이냐? 이미 예를 행한다면 국왕의 어필 앞에서 재배의 예만 행할 것인가?

이러한 등의 일은 미리 확정하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매양 틀어막는 것을 기화(奇貨)로 여기니 국사가 염려스럽다. 약군 앞에서의 예절은 제가 따져 정할 것은 아니고, 임시로 조치할 것인데, 필경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 뜻을 동래 영감에게 고하여 급급하게 치계하여 달라”고 운운하였는바,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일은 날마다 타일러 방색하였더니, 그쪽에서 답하는 바의 의도는 별폭에 있기에, 서계 한 조목은 거의 조정하여 다시 타일러 영영 방색한 뒤에 수분할 계획이며, 예절과 관련한 한 가지 일은 극도로 난처할 뿐 아니라, 일광산에서의 예절은 심지어 어필을 고집하여 말하니 참으로 우려할 만하고, 종과 향로 등의 물건 관련 특별 서계는 원하는 바대로 베껴 적어서 들여보내고, 그 연유를 수분한다 하였음. 약군에게 별도로 서계를 보내는 일은 결코 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여러가지로 타일렀더니 차왜 후지 또한 마음이 움직여 들어줄 듯하여 거의 방색하는 것으로 조정되겠거니와, 별폭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관백(關白)에게 보내는 것과 같이 하여 차등을 두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청하는데, 전일에 올려보낸 도주의 별록 가운데도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은 조금 차등을 둔다는 말이 있으니, 이대로 차등을 두어 마련하여 들여 보내되 억지로 그들의 청을 따를 필요는 없을 듯함. 사신이 일광산 사당에서의 예절 및 약군에게 상견할 때는 반드시 사배(四拜)의 예로써 미리 따져 확정하려고 하는데, 별록 가운데 없는 일을 그가 스스로 발설하는 것은 극히 무리하니, 이는 오늘 억지로 다룰 필요는 없고, 오직 사신이 임시로 조치하여 변통함이 합당할 듯함. 마필(馬匹)과 응자(鷹子)를 먼저 들여보내는 일을 이렇게 매번 이야기하지만, 먼 곳에 분정한 허다한 응련(鷹連)을 기일에 앞서 들여보내기는 결코 어려워 극히 우려되는데, 수분 내의 문답 사연을 묘당에 명하여 다시 참작 상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을 들여보내는 특별 서계는 엇그제 내려왔거늘 그들의 말대로 종과 향로를 가져 갈 때 들여보내기 위하여 짐짓 머물러 두고 있으며, 동 서계를 베껴 적어 들여보내고,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독축하는 사람으로는 교검(校檢) 이진(李進)을 사신이 이미 계청(啓請)하여 독축관(讀祝官)으로 칭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편하고 합당하며, 소장로에게 별폭과 서계 등을 보내는 일은 해당 관청에서 이미 확정하여 계하하였으며, 약군에게 행하는 예절은 전일 인대(引對)할 때 사신이 또한 이미 품신하여 정하였거니와, 일광산 사당은 이에야스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치제할 때의 예절은 대군과 다름이 없어야 할 듯하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거행하라고 하며, 약군에게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저쪽에서 적어 보낸 것이 대군 앞으로 보내는 것과 이미 차등을 두어 줄임이 있었으나, 해당 관청에서 마련할 때 줄인 물종이 또한 많았기에, 저쪽에서 낙망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니, 진기한 보배가 될 물건을 비록 얻기가 쉽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저

쪽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또한 예사롭게 여겨 관심을 두지 않는 가운데 있을 것이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역관들에게 물어서 찾아내어 보태어 보냄이 마땅할 듯하며, 응자(鷹子)에 대하여도 또한 해당 관청에 명하여 다시 재촉하여 기일에 맞추어 내려보내게 하되, 대군 앞에서 예절은 사신이 저쪽에 도착한 뒤에 임시로 조처한다는 이야기를 하나같이 그치지 않는데, 그 의도하는 바를 비록 측량할 수 없지만, 전해오는 행례(行禮)에 본디 예전 규정이 있으니, 이 외에 무슨 임시로 난처할 일이 있겠는가 하고, 이런 뜻으로 말을 만들어 타이르라는 일로 경상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2월 초5일 좌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사당에서 치제하는 의주(儀註)¹⁰⁷⁾를 이제 이미 마련하였는데, 대략 우리나라에서 선대의 시조(始祖)에게 제사하는 것을 본떠서 사배(四拜)의 의식으로 계품하려고 하는데, 이제 홍희남이 다투어 변론한 것을 보니, 비록 재배(再拜)로 늘려도 저쪽에서 혹 따를 듯합니다. 다만 대국(大國)에서는 예의(禮義)를 다른 나라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만약 재배를 행한다면 이는 그 자손을 높이면서 그 조상을 낮추고, 신에 대한 예가 사람에게 대한 예보다 가벼워서, 법식으로 삼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런 의리 때문에 곧장 사배로 제(祭)를 행하는 것을 허락한 뒤에, 약군(若君) 유아(幼兒)에게는 지위에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사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변론하여 꺾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약군에게 특별히 보낼 물건을 역관에게 물었더니 우리나라에는 저쪽에서 진기하게 여기는 물품이 전혀 없으니, 검은삼베[黑麻布] 15필과 청서피(靑黍皮) 15장으로 수량을 보태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고 함. 응련을 분정한 것이 급작스런 일이라 기일에 맞추지 못할 듯하여 누차 재촉하였는데, 이 뜻을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2월 초6일 동부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미(1643) 2월 11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이제 이번 홍희남이 가져온 후지 차왜[藤差]의 별록(別錄)을 상고해보니, 많게는 40여 건이나 되는데, 이전에 도주의 별록으로 인하여 이미 품지(稟旨)하여 이제 막 거행한 것이 많고, 그 가운데 지난 여름에 청해 간 어필(御筆)은 아직 에도[江戶]에 머물러 두고 있어서, 사신이 저쪽에 도착하면 마땅히 받들어 가지고 일광산으로 갈 것인데, 그

107) 의주(儀註) : 의식의 세부 진행 절차를 명시한 문서.

때 들여야 할 의장(儀仗) 등의 물건을 여기에서 미리 준비해간다고 운운한 것은, 일의 형편상 어려운 것은 논할 겨를도 없거니와, 그들이 발언한 마음을 따지건대 오로지 이 일에만 있는 것도 아닌 듯하여 결코 따라 줄 수가 없으며, 이 밖에 대군과 약군 각 곳에서 행례하는 것과 히데다다[秀忠]의 원당(願堂)을 사신이 지나며 방문하는 등의 일 및 그 밖의 사소한 시행 절목은, 해당 관청에 명하여 참작하여 마련하여 품지(稟旨)하여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운운한 일을 전교하였는데, 후지 차왜가 말한 여러 일을 다시 역관에게 물어서 시행해야 할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으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사신에게 아울러 알려서 시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홍희남이 가져온 등차의 열거 조목.

- 一. 지난 여름 어필(御筆)을 들여보낼 때, 에도에서 사신이 일광산으로 들어갈 때 받들어 가지고 사당에 납입하는 의장 등의 물건을 마련하여 가지고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의장은 여기에서 가져가는 것이 불가한 일이므로, 비변사에서 이미 틀어막는다고 입계하였음.
- 一. 일광산에서 치제(致祭)할 때의 폐백은 난잡한 상품을 사용하여서는 불가하니, 금단(錦段) 두세 필과 대화촉(大花燭), 대부용향(大芙蓉香), 운모채화석(雲母彩花席), 자기(紫器) 약간으로 마련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치제의 폐백 12필은 이전에 이미 마련하여 계하하였으니, 이제 이 말대로 세모시[細亭]와 삼베 등의 물건은 모두 제거하고, 금단(錦段) 3필 및 향촉과 운모채화석(雲母彩花席), 자기(紫器) 등의 물건이 비록 치제의 폐백에 적합치 않지만,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가져가서 임시로 조처하게 할 것.
- 一. 히데다다[秀忠]의 묘당(廟堂)은 에도의 외성(外城) 안, 사신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데, 이번 통신사가 일광산에서 되돌아 올 때, 만약 경유하면서 잠시 들어가 구경하라고 대군이 말한다면 가지 않을 수는 없으니, 미리 품의 확정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이미 일광산에 행례하였으면 히데다다의 사묘(祠廟)에 잠시 들어가 구경하자는 청은 거절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나, 다만 치제하는 일이 없어서 배례하는 절차는 적절치 않고, 단지 분향(焚香)만 하여 경의를 표하고 나오는 것은 병자년(1636)의 전례가 있다고 하니, 형편을 보아서 함이 적절할 것임.

- 一. 약군과 대군이 현재 각기 다른 곳에 거처하여 사신이 서로 접촉할 때의 시기를 혹 앞서거나 혹 뒤에 하는 것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약군과 상견하는 예는 이미 조정하여 결정하였음.
- 一. 소장로(召長老)에게 서계를 보내는 가운데 선장로(仙長老)와 인서당(麟瑞堂) 앞으로는 각기 서계를 보내는 일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으니, 이 뜻을 전달하여 말을 만들어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승문원에 명하여 이미 거행하였음.
- 一. 이도쿠 잉[威德院]은 곧 도주(島主)의 모친으로, 이전부터 사신이 예단을 보내는 사례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해당 관청에서 약간의 물건을 보내줌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해당 관청에서 보내는 예를 새로 만들어서는 불가하나, 사신으로서는 이전부터 증정하는 물건이 있었다고 하니, 약간의 예물을 해조에 명하여 마련해 보내도록 함.
- 一. 사신이 각처에 보내는 예단의 물자는 모두 박하고 간략하게 토산물로 대충 채워 넣었지만, 각처에서 보내는 회례(回禮)는 예단의 수량보다 백 배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인삼과 범가죽, 표범가죽, 작은 은장도, 향약재(鄉藥材) 각 종과, 녹두 가루, 화연(花硯), 큰 참떡[大眞墨], 정필(正筆)을 수량이 넉넉하게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회례로 보낼 곳이 이렇게 번다하나, 이번에 마련하여 가져가는 수량은 박하고 소략함을 면치 못하며, 그 가운데 인삼은 더욱 적어서 넉넉하게 수량을 더함이 마땅하되, 은장도와 어피(魚皮), 향약재, 녹두가루, 화연 등의 물건 또한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함.
- 一. 병풍과 족자, 고화(古畵)의 물건을 모조록 수량이 넉넉하게 찾아내어 가져가서 대군과 약군 앞에 보내는 사신의 예단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병풍 족자 등의 물건은 병란을 겪은 뒤로 남아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이징(李澄)¹⁰⁸이 그린 병풍과 족자가 민간에 간혹 있으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속히 네 다섯 건을 구하여 보내고, 혹 추가로 그려서 보상하거나 혹 값을 쳐주도록 할 것.
- 一. 다른 나머지 조건은 전날 작은 종이쪽지에 적은 것으로 이미 모조리 거행한 것임.

승덕 8년(1643) 2월 11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108) 이징(李澄, 1581-?) : 전주이씨로 자는 자함(子涵), 호는 허주(虛舟)이다. 도화서 화원으로 주부를 역임하였다.

계미(1643) 2월 초9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세전(歲前)에 나왔던 차왜 다이라 나리쓰네[平成似]가 연향(宴享) 등의 일을 고사하여 받지 아니하고 속히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연유는 이미 일찍이 치계하였는데, 정월 14일에 도부한 예조의 회계 관문 내용에, “해당 차왜 다이라 나리쓰네가 통신사의 행차가 바쁘고 급박하다 하여 연례(宴禮)를 받지 않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일의 형편 상 당연함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억지로 청하여 연례를 베푸는 뜻을 보여주어야 하거니와, 만약 바빠서 예단을 받지 않더라도 급급하게 내려 보내어 추후에 들여주라는 일”로 관문을 보냈기에, 동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여 내려 보낸 예단을 역관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들여 주게 한 뒤에, 전례대로 연회를 베푸는 일을 분부하였더니, 방금 바친 역관 홍희남의 수본 내용에, “차왜 다이라 나리쓰네에게 다례를 베풀고 서계 등을 들여 준 뒤에 상선연(上船宴)¹⁰⁹ 날짜를 정하여 베풀겠다고 이야기하였더니, 차왜 다이라[平差]가 답하기를, ‘저희들 일행은 연례 송사(送使)에 견줄 것이 아니고, 이제 이번 통신사가 바다를 건널 기일이 너무 박두하여, 모든 일을 바쁘게 서두는 시기에 주저앉아 잔치를 받아서는 불가하니, 잔치를 받는 것은 시행하지 말되, 후일에 이것을 전례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운운하거늘, 답하기를 ‘무릇 연향은 여기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조정에서 특별히 은전으로 하사하는 잔치라서, 예절로서는 베풀지 않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차왜 다이라[平差]가 하는 말 또한 이치에 가까울 듯하니, 원하는 대로 하자’고 운운하여 이야기하였고, 해당 관청에서 내려보낸 연향할 때 증정할 물건은, 한결같이 해당 관청의 분부대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주었다”는 일로 수본하였음. 연례(宴禮)는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단만 해당 관청에서 마련한 수대로 타일러 들여준 뒤에, 즉시 바람을 기다렸다고 발선하였다는 일임.

계미(1643) 2월 12일

- 一. 예조단자. 일본국왕에게 병자년(1636)의 사례대로 보내는 예단의 수량 물목.
- 一. 대수자(大繻子) 10필. 갑자년(1624) 등록에서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1636)에는 도주의 별구청(別求請)으로 추가로 마련하였고, 그 때의 역관 이장생(李長生)이 도장을 찍은 일기(日記) 및 동래부사가 베껴 보낸 역관 홍희남(洪喜男)의 일기와 왜인 후지[藤倭]가 니열한 조목 가운데 아울러 수록되었음.

109) 상선연(上船宴) : 왜관무역에서 공식 무역사절이 떠날 때 베풀어주는 잔치.

- 一. 대단자(大段子) 10필.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에 도주의 별구청으로 인하여 추가 마련하였고, 이장생 및 홍희남의 일기와 등왜가 나열한 조목 가운데 아울러 수록되었음.
- 一. 황조포(黃照布) 30필. 갑자년 등록에는 명주[綿紬] 15필, 백지 50권으로 기록이 달려 있으나, 경상감사가 올려보낸 본조의 병자년(1636) 엽장(葉張) 공문에는 별구청으로 인하여 명주, 백지 등의 물건 대신으로 황조포 30필, 색지 30권, 붓 40자루, 먹 40홀을 갖추어 지급한다고 운운하였고,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도 황조포와 색지, 필목을 수록하였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조포(照布) 등의 물건이 그대로 기록되었고 명주 50필 또한 수록되어 있으니, 그 연유를 알 수 없음.
- 一. 흰 모시베 30필. 갑자년 등록 및 이장생과 홍희남의 일기,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아울러 수록됨.
- 一. 인삼 50근.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와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아울러 수록되었음.
- 一. 범가죽 15장. 갑자년 등록에는 10장으로 기록되었는데, 병자년에는 별구청으로 인하여 5장을 추가하였고, 홍희남과 이장생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아울러 기록되었음.
- 一. 표범가죽 20장. 갑자년 등록에는 5장으로 실려 있고, 병자년에는 별구청으로 말미암아 15장을 추가하였고, 이장생과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아울러 기록되었음.
- 一. 채화석(彩花席) 20장.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와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아울러 기록되었음.
- 一. 황모필 50자루.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고, 병자년에는 별구청으로 인하여 백지 대신으로 갖추어 보냈는데, 다만 그 수량이 40자루라고 말하였기에,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을 살펴보니 모두 50자루로 기록되었음.
- 一. 청서피(靑黍皮) 30장. 갑자년 등록에는 10장으로 기록되었으나, 병자년의 별구청과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20장이 추가로 기록되었음.

- 一. 준마 2필 안장 구비.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아울러 기록되었음.
- 一. 유매먹[油煤墨] 50홀.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에는 별구청으로 인하여 백지 대신으로 갖추어 보냈는데, 다만 그 홀 수량을 40홀로 말하였고,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모두 50으로 기록되었음.
- 一. 황밀(黃蜜) 100근.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아울러 기록되었음.
- 一. 청밀(淸蜜) 10그릇.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아울러 기록되었음.
- 一. 어피(魚皮) 100장.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아울러 기록되었음.
- 一. 색지(色紙) 30권.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아울러 기록되었음.
- 一. 응자(鷹子) 20연.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아울러 20연으로 기록되었음.
- 一. 검은 삼베[黑麻布] 30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와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30필로 기록되었고, 이장생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 一. 명주[綿紬] 10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10필로 기록되었는데,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 一. 흰 모시베 10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10필로 기록되었는데,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 一. 검은삼베[黑麻布] 5필. 갑자년의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 중에는 10필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 一. 범가죽 2장. 갑자년에는 3장으로 실려 있고,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는 2장으로 기록되었음.
- 一. 황모필(黃毛筆) 30자루.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고,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는 30자루로 아울러 기록되었음.
- 一. 유둔(油菴) 3부.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3부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 一. 화석(花席) 5장. 갑자년 일기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5장으로 실려 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 一. 유매먹[油煤墨] 20홀. 갑자년 등록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20홀로 기록되었으나, 홍희남의 일기에는 30홀로 기록되었음.
- 一. 응자(鷹子) 1연. 갑자년 등록에는 실려 있지 않고,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 아울러 1연으로 기록되었음.
- 一. 봉행(奉行) 7인에게 각각.
- 一. 면주 10필.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고,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 10필로 기록되었으며,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 一. 흰모시베 10필.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 10필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 一. 검은 삼베 5필.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이장생의 일기에 5필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 一. 범가죽 1장.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는 아울러 1장으로 기록되었음.

- 一. 황모필 20자루.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 20자루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30자루로 기록되었음.
- 一. 유매떡 10홀.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 10홀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30홀로 기록되었음.
- 一. 응자 1연.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는 1연으로 아울러 기록되었음.
- 一.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예단.
- 一. 명주 10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 10필로 아울러 기록됨.
- 一. 흰 모시베 10필. 갑자년 등록에는 5필로 기록되었는데,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는 10필로 기록됨.
- 一. 검은 삼베 5필.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 5필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10필로 기록되었음.
- 一. 흰 무명[白木綿] 20필.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 20필로 기록되었음.
- 一. 범가죽 2장. 갑자년 등록에는 3장으로 기록되었고,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는 2장으로 기록되었음.
- 一. 인삼 5근. 갑자년 등록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 5근으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 一. 화석(花席) 5장.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 5장으로 아울러 기록되었음.
- 一. 황모필 30자루.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홍희남의 일기에 30자루로 기록됨.
- 一. 수도서왜(受圖書倭) 4인에게 각각.

- 一. 명주 5필. 갑자년 등록에는 3필로 기록되었고,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5필로 기록되었으며, 홍희남의 일기에는 수도서왜의 예단 한 조목을 기록하지 않았음.
- 一. 흰모시베 5필. 갑자년에는 3필로 기록하였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5필로 기록하였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수도서왜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은 기록하지 않았음.
- 一. 범가죽 1장.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1장으로 기록하였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수도서왜의 예단 한 조목은 기록하지 않았음.
- 一. 유둔 1부.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1부로 기록하였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수도서왜의 예단 한 조목은 기록하지 않았음.
- 一. 소장로(召長老) 예단.
- 一. 인삼 3근.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 이 예단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 3근으로 기록됨.
- 一. 명주 5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 이 예단은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장생의 일기에 5필로 기록됨.
- 一. 흰모시베 5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는 이 예단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장생의 일기에 5필로 기록됨.
- 一. 황모필 20자루.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는 이 예단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장생의 일기에 20자루로 기록됨.
- 一. 참먹[眞墨] 10홀.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는 이 예단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장생의 일기에 10홀로 기록됨.
- 一. 수직왜(受職倭) 9인에게 각각.
- 一. 명주 3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는 2필로 기록되었는데, 이장생의 일기에는 3필로 기록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였음. 당초 사신(使臣)이 들어갈 기구를 헤아려서 본조로 이문(移文)하라 하였는데, 본조에서는 그 때가 되어 쓰기에 적당한 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본도에 명하여 미리 준비하여 대기하라 하였더니, 이제 이 장계 내용의 사연은 실로 홍역관(洪譯官)에게 물어본 것인데, 상탁과 기구는 저쪽에 도착하여 옮겨다가 빌려 쓸 수가 있다 하니, 지의(地衣) 2부와 배석(拜席) 10장 외에는 갖추어 보내지 말라는 일로 행이(行移)함이 마땅하며, 치제의 폐백으로 금단(錦段)과 향촉 등의 물건은 전에 이미 조정하여 계하하였는데, 저쪽에서는 당초 치제를 청하면서 초초하게 해서 안된다고 하였으니, 제물은 이전과 같이 조정하여 시행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2월 14일 동부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계하한 본도의 서장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운운한 내용을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한 일로 관하(判下)¹¹⁰하였기로, 받들어 살펴서 시행하되, 홍역관(洪譯官)의 말로 인하여 부득이 마련해야 할 것은, 대차일(大遮日) 1부, 망소자(網疎煮) 둘, 유자(鑰煮) 둘은 별도로 마련하며, 의주(儀註)로 인하여 상탁(床卓) 등의 물건을 마련하는 일은 또한 이미 이문하였는데, 그 가운데 마련한 물건은 또한 행중(行中)에 가져가는 물건이 있어서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을 듯하나, 홍역 및 사행이 내려가는 것이 멀지 않았기에, 역관에게 물은 뒤에 편의에 따라 마련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 역관에게 물어서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허비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

계미(1643) 2월 15일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예단을 봉함하여 포장하는 것은 오는 17일 세 사신이 호조 예조의 당상과 함께 감독하여 하는 것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2월 15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계미(1643) 2월 26일

동래부사 정유성(鄭維城)의 장계 내용. 이달 15일 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나온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에게 이달 19일 다례를 베풀고 서계 두 통을 받아 해조로 올려보냈거

110) 관하(判下) : 관부(判付). 상주(上奏)한 안(案)을 왕에 윤허(允許)하여 내림.

니와, 접촉하여 담화할 즈음에 왜인 다이라[平倭]가 말하기를 “통신사의 행차는 정해진 기일 내로 들여보내주기로 상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 도주가 감사하고 다행함을 견디지 못하고, 즉시 이 뜻을 대군(大君)에게 달려가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정녕 통보한 뒤로 만약 혹시 조금이라도 그 기일을 어기면 반드시 큰 일이 생길 것이니, 기일을 어지기 말고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도주가 재삼 말을 하여 보내었으니, 이 뜻을 조정에 전달하여 기일을 어겨 일이 생기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고 누누이 간청하여 말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정진 기일대로 들여보낸다는 뜻으로 한편으로 답장의 서계를 만들고 한편으로 여행의 여러 도구를 급급하게 마련하였으니, 반드시 기일을 어겨 신의를 잃는 우려는 없을 것이니 너무 지나치게 염려 말라”고 하였음. 왜인 다이라[平倭]는 또 말하기를 “통신사 일행의 상하 원역 다소를 미리 상세히 알아서 급히 통지한 뒤에라야 도주가 한결같이 접대하는 등의 일을 헤아려 조치할 수 있을 것이거늘, 원역의 수와 명단이 지금까지 오지 않아서 극히 우려스러우니, 이 뜻을 급하게 전달하여 원역의 명단을 먼저 보내어 진작 도중(島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운운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몇 년 전에 통신사를 들여보낼 때 여러 집정들에게 보낸 서계에 적어 놓은 말 가운데, 대군(大君)을 귀대군(貴大君)이라 일컬어서 이렇게 높여서 칭한 뜻을 집정 이하가 감격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이번에도 집정들에게 보내는 서계에는 이전대로 귀대군(貴大君) 등의 말을 적어 보내어 전후로 달리하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고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서신에 하는 말은 사례가 마땅히 이리해야 하니, 이번의 서계에 적는 말도 생각건대 필시 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거니와, 이 뜻을 전달하겠다”고 운운하였으며, 왜인 다이라가 또 말하기를 “이번에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에 찍는 어보(御寶)는 전일에 보낸 어필에 찍은 어보와 다름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어긋난다고 탈을 잡는 사단이 있을 것이니, 이 뜻 또한 장계하여 전달하여 전후로 서로 어긋나는 우려가 없게 해 달라”고 하였음. 위의 문답한 사연은 해조에 명하여 참작 조치하여 주시되, 통신사 일행의 대소 원역의 인원 수를 별도로 기록하여 내려 보내어 진작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원역의 명단을 도중에 먼저 보내는 것이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일행으로 데려갈 인마(人馬)의 수는 경상감사에게 이미 행이하였으니, 대략의 인원수는 필시 이미 듣고 알았을 것이며, 원역은 간혹 증감과 고쳐서 바꾸는 일이 있기에, 사신이 출발하는 날이 되어야 비로소 분명하게 기록하여 부쳐 보낼 수가 있겠거니와, 사신에게 명하여 급속히 베껴 보내도록 함이 마땅하며, 문서에 찍는 어보(御寶)는 전후 한가지이고, 귀대군이란 칭호 또한 그 뜻대로 할 것이니, 이 뜻을 행이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2월 26일 우부승지 신 홍헌(洪憲)¹¹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111) 홍헌(洪憲, 1585-1672) : 남양홍씨로 자는 정백(正伯), 호는 사촌(沙村) 또는 은계(銀溪)이다. 광해 8년(161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관찰사,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계미(1643) 2월 27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작은 배에는 차왜 야부 우에몽[治部右衛門]과 격왜 6명 등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으며, 동 차왜가 관수(館守) 및 전일에 나왔던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 후지 도모나와 등과 한 곳에 모여 말하기를, ‘이제 이번에 바다를 건너가는 세 사신의 직명(職名) 및 일행 원역의 수와 각 항의 차비 인원과 격군 등의 원 인원수를 미리 탐지하여 급히 에도에 알려야만, 에도에서 한 길로 접대하는 각 역참에 전례에 따라 기일에 앞서 분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일로 나왔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회언한다”고 하였는데,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말한 바 사신 일행의 원역 수를 기록하여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이미 치제하였는데, 사신의 직명 및 대소 원역을 탐지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차왜가 또 나왔다고 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사신이 현재 직명 및 원역의 인원수를 상세히 기록하여 급급히 내려보내시며, 각종 명목의 칭호를 가진 대소 차왜가 연속하여 나올 뿐만 아니라, 원래 정한 세선(歲船)도 서로 계속하여 내도하여 이제 바야흐로 왜관에 가득한데, 접대에 사용되는 물자가 끝이 없는데다가, 통신사가 있을 때 도중에서 접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 세선에 지급해야 할 미곡과 포목 잡물을 속히 들여달라는 일로 왜관에 머무는 두왜(頭倭)가 하루에도 세 번씩 독촉하는데, 분정(分定)을 받은 각 지방 관아에서는 전혀 일제히 보내오는 것이 없으니, 앞으로 대응하는 방도를 어찌할지 몰라 천만 고민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앞서 사신 원역의 직명과 순서를 기록하여 이미 행중(行中)에 부쳐 보냈는데, 해당 관청에서 왜인 차사(差使)에게 곧장 보내는 것은 앞서의 규정이 있지 않았으니, 사신에게 명하여 먼저 기록하여 통보하여 보여주라는 일로 이미 계하하여 행회하였거니와, 해당 관청에서 적어 보내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나, 차비(差備) 격군(格軍) 등은 이곳에서 미리 정하기가 어려우니, 사신에게 명하여 동래부사와 더불어 속히 상의하여 일정한 수를 마련하고, 한편으로 일행의 인원과 직명을 적어 통보하여 보여줌이 마땅할 것이며, 왜인에게 지급해야 할 잡물은 어찌하여 재촉하여 미리 저축해 놓지 않고 이렇게 고민하는지, 본도 감사에게 명하여 각별히 대응하여 응접에 허술함이 없게 하라는 일로 아울러 행이함이 어찌할지? 입계한 대로 운허함.

계미(1643) 3월 초10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방금 접한 별견역관(別遣譯官) 홍희남의 수본 내용에, “어제 왜관에 가서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에게 다례를 베풀고 조용히 인사를 나눈 뒤에, 차왜 다이

라가 말하기를 ‘이번 통신사의 행차는 뜻밖에 나온 것이라 기일이 박두하였는데, 조정에서 특별히 두 나라의 사정을 염려하여 진작에 조치하여 기한에 맞추니 다행함을 견디지 못하겠으나, 다만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집정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신의 말을 은근하게 만들어 보내라는 뜻으로 일찍이 이미 진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초고(草稿)를 보고 싶다’고 운운하거늘, 비직이 답하기를 ‘서계 가운데 적은 말은 특별히 다른 뜻은 없고, 도주가 비록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문서를 말하지 않더라도, 어찌 그 사이에 정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국서는 단지 대군이 아들 낳은 것에 대하여 치하하는 뜻으로 하였고, 집정과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계는 먼저 저선(儲羨)의 경사를 언급하고, 다음으로 향축을 가지고 사당에 올리는 뜻을 겸하여 언급할 것이라’고 하였더니, 차왜 다이라가 말하기를 ‘하시는 말은 비록 이와 같더라도, 전례대로 열어보고 도주에게 치보하여, 저쪽에 도착하여 폐단 없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운운하거늘, 부득이 집정과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계의 초고를 내어보였더니, 차왜 다이라와 후지 도모나와와 왜관에 머무는 서승(書僧) 등이 열어본 뒤에 말하기를 ‘이 서계가 좋기는 좋지만, 다만 미진한 곳이 있어서 극도로 불안하니, 급히 동래영감에게 고하여 장계를 올려 조치함이 좋겠다.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는 오로지 약군의 경사를 위주로 하니, 머리 말에 「귀국에서 저선(儲羨)의 경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국왕 전하께서 전일을 우호를 돈독하게 생각하시어 이제 사신을 차출하여 폐백을 받들어 치하하고 겸하여 향축을 가지고 사당에 올린다」 고 운운하여 적어 넣은 것은 극히 합당하나, 그 아래 「귀 대군이 조상을 받드는 정성이 드러나서 후사를 보는 경사를 맞이하였으니 매우 경사」 라고 운운한 말에는, 이른바 조상을 받드는 정성은 곧 이에야스(家康)가 사당을 건축한 뜻을 말한 것이고, 후사를 맞이한 경사는 곧 늦게 아들을 낳게 된 뜻인데, 이 두 조목은 선후가 뒤바뀌었으니, 「후사를 맞이하게 된 기쁨은 매우 경사스럽다」 고 하는 등의 말은 「폐백을 받들어 치하한다」 는 말 아래에 적고, 「귀 대군의 조상을 받드는 정성」 등의 말은 「사당에 올린다」 는 말 아래에 적어 분명하게 만들어 보내는 것이 좋겠다. 조상을 받드는 정성을 먼저 거론하고, 다음으로 후사를 맞이한 기쁨 등의 말을 적은 것은 뒤바뀐 듯하니, 이것이 비록 긴요하지는 않지만 저쪽에 도착하여 무뢰한 서승(書僧) 무리들이 흠을 잡고 말을 고집하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될 것이니 극히 우려스럽다. 또한 봉행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사로잡혀간 사람을 쇠환한다」 는 말은, 지금 해가 오래되어 한 사람도 돌아오려고 생각하는 자가 없어서, 이 한 조목은 번거로움만 있고 보탬은 없는데, 비록 그렇지만 귀국에서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쇠환하여 내려고 계획한다면, 원 서계 가운데 첨가하여 넣는 것은 또한 범범하니, 봉행 등 여러 사람 앞으로 단지 이 한 조목만을 거론하여 별도로 도서계(都書契)를 만들어 보내는 것도 좋겠다’고 하거늘, 비직(卑職)이 ‘공들이 하는 말은 단지 그 한 가지만 알고 있다. 조상을 받드는 정성 아래에 후사를 맞이한 경사 등의 말이 있는 것이 어찌 온당하지 못한 점이 있는가?

쇄환하는 한 조목을 원 서계 가운데 첨가하여 넣거나, 별도로 하나의 서계를 만들거나 사실은 한 가지이니,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배를 탈 기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았으니, 오가며 조정할 도리가 만무하여 극히 우려스럽다'고 하였더니, 차왜 다이라가 말하기를 '문서 가운데 조그마한 착오가 있어도 조치하기 어려운 사단은 참으로 작은 우려가 아니다. 약군에게 치하하고, 일광산에 치제하는 것을 거꾸로 적어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듯하니, 급히 품정(稟定)하여 고쳐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바, 배를 탈 날짜가 이렇게 박두하였는데, 왕래하며 고쳐 지을 즈음에 날짜만 허비하면서 발선하기 전까지 미치지 못할 듯하여 더욱이 민망하니, 십분 참작 상의하여 되도록 속히 조치하시도록 수분한다" 하였음. 차왜 다이라 등과 문답한 이 사연을 보면, 이번 통신사는 오로지 대군이 아들 낳은 것을 치하하여 들여보내는 것이니, 무릇 서신의 말 가운데 적는 말은 마땅히 이것을 주된 뜻으로 해야 하는데, 집정과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계 가운데 적는 말의 주된 뜻이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이렇게 고치기를 청하였는바, 그 말하는 대로 고쳐 적어 들여보내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고 생각되며,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쇠환하는 일도, 별도로 서계를 만들라는 데는 반드시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니, 그 말대로 봉행 등에게는 별도로 도서계(都書契)를 만드는 것 또한 무방할 듯한데, 해조에 명하여 급급하게 확정하여 사행이 발선하기 전에 속히 회답하여 내려 줄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조상을 받드는 것과 후사를 맞이하는 두 말은, 부모 자식의 경중을 따져 말한 것이라 뒤바뀐 것이 아닌데도, 왜인들의 문장 의미는 궁벽하게 치우쳐서, 천착하고 의심하여 이렇게 고쳐주기를 청하는데, 역관들이 이미 즉시 방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을 따라 고쳐 보내는 것이 무방하나, 기일이 이미 박두하여 미처 부쳐보내지 못할까 염려되니, 속히 승문원에 명하여 고쳐 짓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쇠환하는 일은 당초에 별도의 서계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흥희남은 그것이 무익한 일이니 단지 서계 말미에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하였는데, 이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또한 고쳐 지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동부승지 신 윤강(尹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미(1643) 3월 21일

1. 통신사 정사(正使) 예조참의(禮曹參議) 윤순지(尹順之), 부사(副使) 전한(典翰) 조경(趙綱)의 장계 내용. 집정과 봉행 등에게 보내는 고쳐 지은 서계 10통과 사로잡혀간 사람을 쇠환하는 일로 보내는 별서계(別書契) 1통 등 도합 11통을 이달 14일 금군(禁軍)이 가져왔거늘, 받아서 가져 가며, 원 서계 10통은 해조로 올려보낸다고 운운한 일.

一. 통신사의 장계 내용. 이달 15일 신 등 일행이 부산에 도착하였다는 일은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당일 사시(巳時)에 바다로 내려가 배에 올라 바람을 기다리는데, 각 읍에 분정(分定)한 물자가 현재 아직 일제히 도착하지 않았고, 요즈음 바람과 일기가 또한 매우 불순하여, 배가 출발하여 가는 기일이 혹 쉽지 않을 듯하여 극히 염려스럽다고 운운한 일임.

一. 통신사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한상(韓祥)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차와 다리와나리아수[平成澗]의 말이 ‘통신사의 행차가 이미 부산에 도착하여 정녕 기한 내로 배에 탈 것이나, 다만 이 철에는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대마도에서 전례대로 일을 아는 사공 등을 일찍이 이미 극구 선발하여 보냈으니, 그 사공의 말을 듣고 각별히 바람을 기다려 폐단 없이 들어오기를 천만 바라며, 또한 소장로(召長老)의 병세가 더하기만 하고 덜해짐이 없는데, 이 사람은 범연하게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은 불가하니, 통신사의 행차에 있는 의원 한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어,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편으로는 대군에게 알려 감동하여 기뻐하게 하도록, 이 뜻을 전일에 비선을 보내어 진달하게 하였는데, 다시 바라건대 사정을 갖추어 세 사신 앞에 고하여 급히 들여보내는 일 및 통신사 행차의 예단으로 보내는 응자(鷹子) 27연이 이미 대마도에 도착하였는데, 죽은 것이 6연이고, 이 뒤로도 수륙의 긴 노정(路程)에 이러한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고, 도주가 무역하여 가는 응련(鷹連) 또한 여러 마리가 죽은 것이 있으나, 표시가 없어서 끝내 밝힐 방법이 없으니, 이 뒤로는 여기에서 표시를 하여 보내는 등의 일을 고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나왔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의원을 먼저 보내달라는 청은 일찍이 이미 언급하였거늘, 역관에게 명하여 타일러 틀어막는다는 뜻으로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온 배에 또 간절하게 진술하여 전후로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누누이 말하는데, 한결같이 틀어막으면 저들이 반드시 낙망할 것이고, 만약 조정의 지휘를 기다린다면 혹 지체될 듯하며, 지금은 신 등의 행차가 이미 배를 타고 있는지라, 대단하게 폐단이 생기는 청이 아닌 듯하고, 별폭(別幅)으로 부치는 마필(馬匹)을 저들의 배에 실어 장차 발선하고 이마(理馬)¹¹²⁾도 또한 먼저 가야 마땅하기로, 이 배가 들어갈 때 의관 1인을 그들이 청하는 바대로 일시에 들여보내는 것이 무방할 듯하기에 품신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사신이 이미 의원을 데리고 가서 국경에서 가야할 인원을 며칠 먼저 보내어 그들의 간청에 부응하는 것은 일의 체면에 무방하니, 이 뜻을

112) 이마(理馬) : 조선시대 말을 관리하였던 사복시(司僕寺)의 정6품 잡직.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3월 21일 좌부승지 신 홍헌(洪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미(1643) 3월 23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방금 접한 역관 홍희남 등의 수본 내용에,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서찰을 보내어 초청하거늘 가서 보았더니 말하기를, ‘사신의 행차가 이미 배를 탔으나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아직 발선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우려스러운데, 이달 26일 사이에 초량항(草梁項)에 되돌아 와서 정박하여 바람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엇그제 후지 나리아수[藤成湛]가 나왔기에 그 도중(島中)의 소식을 물었더니, ‘다른 일은 없고, 현방(玄方)이 유배되어 간 뒤로 대군(大君)이 별도로 소장로(召長老)와 선장로(仙長老), 인서당(麟瑞堂) 등 3인을 정하여 순안(巡按)과 같이 1년마다 서로 교체하여 두 나라의 문서를 전담하여 관장하였으므로, 해가 오래됨에 따라 도주와 서로 친하여 주선하는 일이 많았으나, 뜻밖에도 이제 세 사람이 함께 교체되고, 그 대신으로 홍장로(洪長老), 단장로(段長老), 백서당(栢西堂) 등 세 승(僧)을 차출하였는데, 이번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날을 당하여 뜻밖에 갑자기 교체되었으니, 대군의 의도가 어떠한지 알수 없으며, 홍장로는 비선으로 급하게 대마도로 나와서 그대로 통신사를 모시고 갈 것이라 하며, 홍장로 등은 깊은 산 속에 거처하는 승려로서 두 나라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일마다 의심하니, 그 난처함이 매우 우려스럽다. 저희들은 일찍이 얼굴을 몰라 장래의 일이 극히 우려스럽다’고 하는바, 세 승려가 한꺼번에 교체되었다는 말은 그 사이 곡절을 알지 못하거니와, 이른바 소장로 등 3인은 을해년(1635) 이후로 대마도에 와 있으면서 병자년(1636) 통신사 때 행차를 모시고 왕래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문서의 문자 용법을 제법 이해하여 제법 주선할 길이 있었으나, 홍장로 등은 그 사람됨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여 극도로 우려스럽다”는 일로 수본하였음. 문서를 담당하는 세 승려가 일시에 교체되어 바뀐 곡절은, 차왜 등이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데, 다시 상세하게 여러가지로 물어서 저쪽에서 교체하여 바꾼 연유를 탐지하여 추가로 치계할 계획이거니와, 문서 담당자 등이 모조리 바뀌는 일이 마침 사신이 들어갈 즈음에 일어난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나, 갑자기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 혹시라도 난처한 일이 없지 않을지 극히 우려스럽다 운운한 일임. [이 일로 인하여 통신사가 장계하고 비변사에서 회계함.]

계미(1643) 3월 27일

경상감사 임담의 장계 내용. 동래부사 정유성의 첩정(牒呈)¹¹³⁾ 내용임. 차왜 등이 말하기를 “뜻하지 않게 이제 세 승려가 함께 교체되어 홍장로, 단장로, 백서당 등 세 승려로 대신 정한 것이 이렇게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날에 당하였고, 홍장로가 비선으로 급히 대마도로 나왔으니, 대군의 뜻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여, 장래의 일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고 운운한 일로 치보하였는데, 통신사가 장차 바다를 건널 즈음에 문서를 살펴보는 사람을 바꾼 것은, 저쪽의 사정이 실로 수상한데, 사행의 역관들이 모두 모두 낯선 초면이라 처음 만나 성의를 표하는 데는 별도의 예물이 없어서는 안되겠기로, 소장로에게 증정하기로 마련한 물건을 이용하자니, 소장로가 비록 교체되어 가지만 미처 떠나기 전에 통신사와 마주치면 또한 전연 예를 폐하는 것도 불가하여 돌려쓰기가 어려울 듯하고, 바다를 건너가기에 임박하여 해조에 품달(稟達)하여 조치하기에도 미치지 못할 형편인지라, 사용될 약간의 예물을 신에게 구하고자 책입지우거늘, 소장로에게 증정하여 주려고 마련한 수량을 살펴보았더니, 포물(布物)은 사행 중의 노자로 충당하여 사용하고, 유돈과 지물은 신의 감영에서 갖추어 보내고, 인삼은 나올 곳이 없어서 동래 상인에게 빌려서 주어 보냈으니, 동 인삼 3근을 해조에 명하여 전례대로 조치함이 어떠할지? 인정과 일의 형편으로 헤아리건대 마침 저들이 교체될 때를 당하여 이러한 예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로, 이렇게 마련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일이 급박한 데서 나와 인삼 3근을 상인에게 빌려 지급하였으니 그 값을 되돌려 갚는 것은 그만 두지 못할 일이니, 호조에 명하여 조치하게 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3월 27일 좌부승지 신 홍헌(洪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미(1643) 4월 16일

경상감사 임담의 장계 내용. 동래부사 정유성의 치보 내용임. 이달 초10일 왜의 작은 배 1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와서 곧장 통신사 행차가 바람을 기다리는 초량항(草梁項)에 도달하였기로, 즉시 훈도 한상(韓祥)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차왜 1인과 격왜 8명 등이 통신사 행차가 이곳에서 발선하는 기일을 상세히 탐지하기 위하여 노인을 가지

113) 첩정(牒呈) : 첩보(牒報). 사건의 정황을 보고하는 문서.

고 나왔다고 운운하기로, 동 노인 1통을 가지고 납입한 일로 회언한다” 하였음. 위의 노인 한 통을 받아 보내는 일로 치보한다 운운하였음.

계미(1643) 4월 20일

一. 통신사의 장계 내용. 지난달 29일에 바다로 나왔다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일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일찍이 들으니 저쪽의 뜻이 잠시 물리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국경을 나온 신하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부당하고, 나가거나 물러서거나 지체하거나 신속하게 하거나를 또한 저들의 말에 일임하는 것도 부당하기로, 이달 초10일에 바다로 나가 배를 출발시켰는데, 나흘 동안 잇달아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초량항으로 되돌아 와서 정박하였더니, 당일 인시(寅時)에 비로소 순풍을 얻어 바다를 건너 들어가며, 마상재(馬上才) 방계남(方繼男)은 병을 얻어 괴로운 통증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로, 짐짓 부산에 머물러 두고 왜선이 돌아들어올 때를 당하여 차도 있을 때를 기다려 들여보내는 일로 동래부사에게 행문(行文)하여 알린 일임.

一. 경상감사 임담의 장계 내용. 동래부사의 치보 내용임. 통신사 행차의 접대를 이달 20일에 마련하였거니와, 동 행차가 홀연 순풍을 만나 발선하여 들어갔는데, 거의 바다 가운데 이르러 역풍이 크게 일어나 어렵게 되돌아 나왔는데, 상선(上船) 및 짐을 실은 배 두 척이 바다 가운데서 미목(尾木)이 부러져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이 배 가운데로 들어가 실었던 짐이 모조리 물에 젖었기에, 짐을 부려 내리고 별에 말렸다가 형편을 보아 다시 싣고 바람을 기다릴 즈음에, 그 형편에 8-9일 내로는 결코 발선하기가 어려운데, 7-8일 접대 비용을 추가로 분정(分定)하여 급히 행하(行下)하라는 일로 치보한다 하였기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무릇 물길로 가다가 바람의 형세가 순조롭거나 거슬리는 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짐이 물에 젖은 것은 참으로 우려할 일이거나, 원역을 접대하는 일은 오로지 본도에 달려 있으니, 참작 상의하여 대응하여 폐단 없이 호송하라는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4월 20일 우승지 신 김육(金瑬)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계미(1643) 4월 25일

경상감사 임담의 장계 내용. 통신사 윤순지(尹順之) 등이 이문한 내용임. 이달 15일 발선하여 들어가다가 행선하여 백리 쯤에 이르러 풍량이 크게 일어나서 상선(上船)의 미목(尾木)이 이미 부러지고 선판(船板)이 모조리 밀려나서 바닷물이 밀려들고, 짐을 실은 배 두 척의 미목 또한 파손되어 부러져서 예측할 수 없는 우려가 잠깐만에 박두하였으나, 다행히도 하늘의 보살핌을 입어 간신히 되돌아와서 부산에 정박하고 연유를 치계한 뒤에, 파손 손상된 미목 및 선판의 파손된 곳을 보수하는 일은 짐짓 좌수사에게 명하여 현재 수리하고 있거니와, 대군 이하 각처에 증정할 잡물 및 양식 밀천과 행주(行廚)¹¹⁴의 물건이 모조리 물을 먹었고, 기름과 청밀과 소주, 그릇 등의 물건 또한 모두 파괴되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서, 갑자기 장만 하기가 어려울 듯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물건은 동래부사와 상의하여 왜공잡물(倭供雜物) 가운데 다소간 추이(推移)하여 가져가겠는데, 물목의 수량은 추가로 기록하여 이문하여 일일이 분정할 계획이며, 바다를 건너가는 양식의 원래 수량은 반미(飯米)가 333섬인데, 바다로 나가기 전에 먼 고을의 사공과 격군들이 양식이 떨어졌다고 날마다 마당 가득 호소하여 보기에 참담하여, 혹 매일 한 되, 혹은 하루걸러 한 되씩 지급하였으나, 그 수량이 적지 아니하여, 초10일부터 바다로 나가 초량항에서 바람을 기다린 뒤로 상하의 원역 등에게 접대한 것이 거의 60섬에 이르니, 앞으로 각 선박을 수리한 뒤에 순조로운 바람이 빠를지 늦을지 또한 미리 알 수가 없고, 여기 있으면서 다 사용한 뒤에 저쪽에 도착한 뒤 곳곳마다 바람을 기다리며 왕래할 즈음에, 반드시 양식이 떨어질 우려를 면치 못하겠는지라, 여러가지로 생각하되 다른 좋은 계책이 없어서, 동 바다를 건너가는 양식 50여 섬 또한 동래에 있는 왜공미(倭供米)로 가져갈 계획으로 동래부사에게 한편으로 이문하였으니, 급급하게 분정하여 동래로 보내어 국사를 함께 이룸으로써 사행(使行)이 저쪽에 도착하여 낭패에 빠지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로 이문한다 하였음. 특별히 증정하는 데 사용할 잡물 및 주방에 공급할 잡물은, 동래부의 왜공(倭供)으로 받는 것을 우선 추이(推移)하여 대어서 보낸 뒤에, 추가로 각 지방관에 분정하여 동래로 수송하여 지급함으로써 왜공에 보충하여 쓰도록 할 것이며, 바다를 건너는 양식도 한결같이 왜공미로써 이문 내용대로 상의 조절하여, 들어가야 할 수량을 동래에서 충당하여 보낸 뒤에, 전례대로 본도의 전답에서 나오는 세 가지 세미(稅米)로 계산해서 지급하여 도로 보상하되 실제로 들어가는 수량을 상세히 성책(成冊)하여 첩보하라는 뜻으로 동래부사 정유성에게 이치를 따져 분부하였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114) 행주(行廚) : 여행할 때 임시로 차린 주방(廚房).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증명하여 줄 잡물과 행주(行廚)에서 사용될 물자가 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및 바다를 건너갈 양식의 부족한 수량은 이미 동래의 왜공(倭供)¹¹⁵으로 비축된 것을 이미 추이(推移)¹¹⁶하여 장만하여 보낸다고 하였는데, 물목(物目) 기록을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낸 뒤에 해조에 명하여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동부승지 신 윤강(尹絳)¹¹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미(1643) 5월 초5일

통신사 상사(上使) 윤순지(尹順之)와 부사(副使) 조경(趙綱)이 4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신 등 일행이 힘들고 어렵게 돌아와서 배를 댄 사실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곧장 해안에 내려가서 기계(器械)를 점검하니, 5선(船)과 6선의 미목(尾木)은 나머지 수량까지 모두 다 부러져 파손되었으며, 상선(上船)의 미목은 한 개만 부러져 파손되었고, 그 나머지 보존한 것도 역시 모두 파괴되었는데, 당일의 바람과 파도에서 허다한 사람의 목숨이 온전했던 것은 실로 이는 요행이었으며, 일의 형세가 급박하여 부득이 좌수영(左水營)에 지위(知委)하여 고쳐 준비하도록 하였더니, 하루 이틀 안에 각 포(浦)의 물건을 수합하고 밤낮으로 역사(役事)를 감독하여 이미 만드는 것을 마쳤사운데, 17일부터 날마다 흐리고 비가 내려 바닷길이 어둡고 캄캄하여 쉽게 발선(發船)하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비의 형세가 잠깐 개이거늘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간다는 일임.

계미(1643) 5월 14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통신사가 데려 가는 당상역관 홍희남과 이장생 등이 4월 29일 성첩한 수본 내용임. “통신사 세 분의 행차가 이달 27일 술시(戌時: 저녁 8시 전후) 쯤에 폐단 없이 대마도 풍기현(豊崎縣)에 도착하였고, 28일에 노를 저어 30리를 가서 서박포(西泊浦)에 도착하였으며, 당일 진시(辰時: 아침 8시 전후)에 발선하여 대마도 부중(府中)에 돌아와 정박할 계획이고, 풍기(豊崎)에 도착하여 도중의 소식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대단히 기이한 일은 없고, 대마부중(對馬府中)에 도착하여 모든 소식은 다시 상세히 탐지하여 수본할

115) 왜공(倭供): 왜관무역과 관련하여 왕래하는 무역 사절을 접대하는 일.

116) 추이(推移): 비용의 명목을 바꾸어 옮겨 사용함.

117) 윤강(尹絳, 1597-1667): 파평윤씨로 자는 자준(子駿), 호는 무곡(無谷)이다. 인조 2년(1624)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으로 거쳐 형조, 예조, 이조의 관서를 역임하였다.

계획임. 마침 나가는 왜선이 있어서 폐단 없이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운운한 일로 수분한다” 하였음. 통신사 일행이 지난 달 27일 발선하여 들어간 일은, 이미 치계한 뒤로 대마도에 들어갔는지의 여부는 막막하여 듣지 못하였는데, 방금 이 보고를 접하니, 발선한 날 술시에 여러 선박이 무사히 대마도에 도착하였다고 하기에 극히 다행이라 운운한 일임.

계미(1643) 7월 18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김탕(金湯)의 치통 내용임. 왜선 2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한상 등에게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이폐이양[以醜庵] 송사선 및 세견(歲遣) 제6선에 격왜 등이 잡물을 실어가기 위하여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예도의 사정 및 통신사 일행의 가고 머문 사정을 물었더니, 격왜 등이 답하기를 ‘예도와 도중의 사정은 이전과 한가지로 다른 사정은 없고, 통신사 일행은 5월 14일 대마도에서 발선한 뒤, 일행 중에 왕래한 사람이 드물어서 어느 곳에 도착하였는지 여부는 또렷하게 알지 못하거니와, 생각건대 이미 예도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운운하였으며, 바다를 건넌 격군 중 서평포(西平浦) 사람 배추백(裴秋白)과 칠포(柒浦) 사람 안립(安立) 등 2명은 적간관(赤間關)에서 병을 얻어 심하게 앓다가 5월 23일 적간관(赤間關)에서 돌려보내왔거늘, 도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리하다가. 이제 비로소 실어 왔다고 하였으며, 격군 등이 병을 얻어 되돌아 올 때 통신사 일행의 장계 1통 만 당상역관 등이 동래로 보내는 수분 1통을 또한 가져왔다고 하기에, 노인 2통을 아울러 가져다 바친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동 노인 2통 및 통신사의 장계 1통을 동봉하여 올려보내거니와, 통신사가 데려 간 당상역관 홍희남과 이장생 등의 수분 내용에, “사신 일행은 5월 19일 폐단 없이 적간관(赤間關)에 도착하여 2일을 머물고, 22일 비로소 순풍을 얻어 상관(上關)으로 향하여 출발하였음. 일본 소식은 별로 다른 기별은 없고, 소장로는 병으로 이달 초9일 죽었으며, 그 대신으로 단(段)장로가 행차를 모시고 갔다고 하며, 홍장로와 단장로는 모두 새로 와서 우리나라 문서의 문자를 알지 못하여, 장차 예도에 도착하여 공무를 볼 즈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매우 걱정스러우며, 대소 사정은 예도에 들어가서 상세히 탐문하여 편의에 따라 수분할 계획이라는 일로 수분한다” 하였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통신사 장계는 비변사에 내려 줌].

계미(1643) 8월 25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임. 왜선 2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한상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일특송사선(一特送使船)과 세견 제7선

등에 격왜 등이 잡물을 실어가기 위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통신사 일행이 가고 머문 사정을 물었더니, 동 격왜 등이 답하기를 ‘왜경(倭京)에서 동행하였다가 장계를 전하러 온 사람을 통하여 상세히 물었더니, 지난 6월 14일 무사히 왜경(倭京)에 도착하여 5일을 머물고 20일에 에도로 향하여 갔다고 운운하였다’고 하며, 통신사의 장계 봉함 1통과 원역의 사신(私信) 봉함 1통, 동래로 보내는 당상역관의 수본 봉함 1통, 도주의 서계 1통 및 노인 2통을 아울러 내어주거늘, 아울러 가져다 바쳤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 항목의 통신사 일행의 장계 1통과 신에게 온 도주의 서계 1통 등을 감봉하여 올려보내며, 통신사가 데려간 당상역관 홍희남 등의 수본 내용에는, “사신 일행이 6월 14일 폐단 없이 왜경에 도착하였고, 20일에 에도로 향하여 출발하는데 마침 대마도로 돌아가는 배편을 만나 상하 원역이 폐단 없이 이곳에 도착한 연유를 수본하며, 이곳의 소식은 특별히 대단한 일은 없고, 행차의 접대가 전에 비하여 다름이 없으며, 대소의 사정은 에도에 도착하여 상세히 탐문하여 일일이 수본할 계획이라는 일로 수본한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도주의 서계 :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계달(啓達). 조선국 동래부사 합하. 세 사신 및 여러 인사들이 탈 없이 이달 14일 경사(京師)에 도착하여 같은 달 20일 성초(星輶)¹¹⁸로 장차 에도로 갔으니, 생각건대 돌아오는 행차가 가까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신속하게 예조에 진달하고 장계로 품신하여 세 사신의 상세한 사정을 알려드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서신의 뜻을 아무튼 살피주시기 바라오며, 초초하게 끝내느라 다 펴지 못합니다. 계미(1643) 6월 18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도장 찍고 씀.

통신사 상사와 부사의 장계 내용. 신 등의 일행이 적간관(赤間關)에 도착한 사정은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이르는 곳마다 지체하다가 6월 14일에 왜경에 도달하였는데, 대기하고 있는 인부와 말을 정돈하기가 쉽지 않기로 5일 동안 머물고, 장차 20일에 앞길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하거니와, 신 등이 대마도에서 왜경에 이르니 거리가 수 천여 리요, 지나온 크고 작은 고을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접대하는 일은 조금도 뒤쳐지지 않았으며, 또한 특별한 소문은 없으며, 이곳에서는 여름을 지나도록 한 점의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뒤로 가는 길이 장마비를 맞게 될듯하여 극히 걱정스럽다는 일임.

118) 성초(星輶) : 성사(星使)가 타는 수레, 즉 국왕이 보내는 사절(使節)의 행차.

계미(1643) 11월 초2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10월 22일 나온 왜선 5척이 표류하여 지세포에 도착하였다가 관소(館所)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상세히 문정하여 추가로 장계하여 알리겠다는 뜻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당일 도부한 부산첨사 김탕(金湯)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훈도 한상의 수본 내용에, “지세포(知世浦)¹¹⁹에 표류하여 도착한 왜선에 문정하기 위해 배를 타고 전진하다가 다대포 앞바다에서 왜선 1척과 만났더니, 곧 통신사 행차로 먼저 온 군관 정부현(鄭傅賢)과 윤용상(尹龍祥), 역관 김시성(金時聖) 등 및 동 군관을 호송하여 건너온 차왜 다카사키 시찌노잉[高崎七之允]과 반종 3명, 격왜 15명 등이 탄 배이거늘, 통신사 행차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앞서 온 군관 등이 하는 말이 ‘행차는 지난 7월 27일 대마도로 되돌아왔는데, 아직 나오지 못한 연유는 행차가 에도에서 출발할 때 대군이 말하기를 ‘잇달아 사고가 있어서 미처 마상재(馬上才)를 관람하지 못했으니, 2-3일로 한정하여 머물러 두고 행차는 먼저 출발하여 달라’고 하였기로, 이장생이 그 마상재 두 사람을 데리고 뒤쳐졌기 때문에, 이장생 등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려 대마도에서 일시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대로 대마도에 머물러 있다’고 운운하였으며, 또 행차가 편안한지 여부를 물었더니, 상하 원역이 모두 무사한데, 다만 격군 중에 곤양(昆陽) 사람 문담상(文淡祥), 울산 사람 허후복(許厚福), 윤학(尹鶴), 서생(西生)¹²⁰ 사람 노(奴) 암회(岩回), 장기(長鬢) 사람 백안(白安), 통영 사람 문자은동(文自隱同) 등 6명이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운운하였음. 또 행차에 대한 접대의 후박을 물었더니, 이전보다 열 배나 더 정성스럽게 대접하였다고 하였음. 또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물었더니 차왜가 답하기를 ‘이달 초6일 먼저 온 배 5척이 압뢰(鴨瀨)로 되돌아가 정박하여 바람을 기다리다가 22일 바람 형세가 순조로울 듯하거늘 5척이 일시에 발선하여 나왔는데,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북풍이 크게 일어날 뿐 아니라 또 바다가 어두워서 향하는 곳을 알지 못하고 바람에 맡겨 표류하다가 간신히 구 지세포(知世浦)에 도착하였는데, 저희들이 탄 배는 통신사 행차에서 먼저 온 군관을 신고 왔기로 먼저 보내도록 허락받았고, 4척은 통제사(統制使)의 분부를 기다려서 보내는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 옥포(玉浦)¹²¹에 머물러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동 먼저 온 군관 등이 하는 말 내용에는 ‘바다를 건넌 격군 중 경주 사람 산복(山福), 제포(濟浦)¹²² 사람 김성립(金成立) 등을 데려오다가, 김성립은 그의 발괄[白活]¹²³로 인하여

119) 지세포(知世浦) : 경남 거제시 일운면(一運面) 지세포리.

120) 서생(西生)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121) 옥포(玉浦) : 경남 거제시 옥포동.

122) 제포(濟浦) : 경남 진해시 제덕동(濟德洞).

123) 발괄[白活] : 역올한 사정을 말이나 글로 관아에 하소연하는 일.

옥포에서 놓아 보냈다고 하며, 차왜가 가져온 동래로 보내는 서계 1통을 올려보내거니와, 통신사의 장계는 먼저 온 군관이 가져왔으며, 옥포에 정박하여 머무는 왜선 4척에 대한 문정은 역풍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로, 순풍을 기다려 앞으로 나갈 계획이라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먼저 온 군관 등의 수본과 훈도 한상의 수본에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먼저 온 군관 및 역관 등은 상륙하는 즉시 장계를 가지고 전로(前路)로 향할 것임. 동 옥포에 정박하여 머무는 왜선 4척은 현재 훈도 한상이 문정하여 회고(回告)하면 치통할 계획이라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음. 먼저 온 군관을 호송하여 온 차왜가 가져왔던 신에게 보내온 서계 1통을 받아 올려보내며, 저쪽 사정 및 사신이 저쪽에 도착하였을 때 접대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은 사신의 장계에 상세하게 실려 있으므로 번거롭게 진달할 필요가 없거니와, 이제 나온 서계의 회답 초고를 해조에 명하여 속히 내려보내어 진작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통신사 군관을 호송하여 온 채왜 및 격군 등은 전례대로 넉넉하게 접대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급급하게 행회하되, 이전에 차왜에게는 예단으로 증명하는 규정이 있었으니 한 가지로 거행함이 마땅할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 감히 이렇게 우러러 품신하오니, 상감께서 재가하심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11월 초2일 좌부승지 신 신민일(申敏一)¹²⁴이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통신사가 데려 간 당상역관 홍희남 등의 수본 내용에,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와 후지 도모나와[藤智繩] 등이 통신사 호행(護行) 사신으로 일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두 왜인은 일찍이 이전에도 이미 접대한 규례가 있으니 응접하는 일은 한결같이 전례대로 거행할 계획이거니와, 접위관은 가까운 고을 수령으로 정하여 접대하는 일을 한편으로 본도 순찰사에게 보고하였는데, 연례에 증명하는 예단 등의 물건은 해당 관청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통신사가 데려간 역관 홍희남 등의 수본 내용에, 후지 도모나와와 다이라 나리다카 등이 통신사의 행차를 호위하여 일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는 일찍이 전에 접대하는 규례가 있으니 접응하는 일은 전례대로 거행함이 마땅하여 접위관은 한결같이 예전 사례를 준수하여 가까운 고을 수령으로 차출하여 정함이 합당하거니와, 접위할 때 차비역관은 사역원에 명하여 급히 정하여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입계한대로 윤택함.

124) 신민일(申敏一, 1576-1650) : 평산신씨로 자는 공보(功甫), 호는 화당(化堂)이다. 광해 7년(1615)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 一. 예조단자.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 및 후지 도모나와에게 각각 하선연과 돌아가는 두 연례(宴禮)의 예단은 각각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도필 20자루, 참떡 20자루, 화석 2넵, 너장 붙인 유둔 1부. 두 차왜의 원역에 대한 두 차례의 연례 예단. 흰 명주 7필, 흰 모시베 7필, 흰 무명 20필. [이상 해당 관청에서 내려 보냄. 전일에 쓰고 남은 것을 본부에 남겨 두었는데 계산하여 주고 부족한 수량을 내려보내는 일로 계하함]

계미(1643) 11월 초5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김적의 치통 내용임.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 되지 않는 배 7척이 나온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하였기로, 사신이 나오는 것임을 또렷이 알겠기에 신이 맞이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달려갔더니, 사신이 탄 배 3척은 폐단 없이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짐을 실은 배 3척 및 행차를 호위한 왜선은 물마루를 넘은 뒤에 바람이 시들하고 해가 저물어 노를 저어서 행선하느라 현재 바깥 바다에 있어서 미처 일시에 도착하여 정박하지 못하기로, 사신이 무사히 도착 정박하였다는 연유를 먼저 치계한다고 운운한 일임.

계미(1643) 11월 초10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김적의 치통 내용임. 어제 뒤쳐졌던 짐을 실은 배 3척은 차례로 도착 정박하였으며, 왜선 5척은 떠서 정박하였기에 즉시 훈도 한상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제1척은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와 반종 3명, 격왜 40명, 제2척은 차왜 후지 도모나와[藤智繩]와 반종 3명, 격왜 40명 등이 통신사 일행을 호위하여 건너기 위해 예조로 보내는 서계 2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 별폭 1통을 가지고 나왔으며, 제3척은 대군의 회례 예단을 가져온 차왜 1인과 반종 2명, 격왜 30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음. 제4척은 세건 제10선이 잡물을 실어가기 위하여 노인을 가지고 나왔음. 제5척은 병으로 죽은 격군 6명의 시신을 실어온 두왜 1인과 격왜 15명 등이 시신을 실어왔기로 노인이 없이 나왔다고 운운하였음.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 등이 소지한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것이라고 운운하기로, 동 서계와 별폭을 베껴 적은 글과 노인 2통을 아울러 가져다 드리는 일”로 회언하였는데, 동 서계와 별폭을 베낀 글 및 노인 2통을 받아서 보내거니와, 통신사 행차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사람인 남녀 모두 14명을 찾아

서 신고 왔다고 하는바, 통신사 행차의 교부(交付)를 받은 즉시 이름과 본관을 성책하여 보낼 계획임. 바다를 건너간 배 6척에 나누어 실은 사공 11명은 관소로 들여보낸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음.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가져온 예조로 보내는 서계 2통과 신 등에게 보내온 서계 1통과 별폭 2통의 등본 및 노인 2통은 해조로 올려보내며, 원 서계는 수일 뒤에 전례대로 다례를 베푼 뒤에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이거니와,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두 차왜는 통신사의 행차를 호위할 따름 특별히 다른 볼일이 없어서 반드시 오래 머물지 아니할 것이기에, 전례대로 두 차왜의 연례에 증정할 예단을 해조에 명하여 급히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예단을 실어온 배의 차왜와 격왜 및 격군의 시신을 실어온 두 왜와 격왜, 사신을 호송하여 온 사공 등에게도 아울러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여 전례대로 접대할 계획이거니와, 이 두왜(頭倭) 등에게는 약간의 증정할 물건이 있어야 마땅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지휘하여 주실 것.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그들의 소명(小名)¹²⁵⁾ 성책을 보내온 뒤에 원적(原籍)의 지방관으로 보낼 계획이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두 왜인을 접대하는 예단 등에 대하여는 전해오는 예전 규정이 있기로, 전례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이미 계하하였거니와, 예단을 실어온 차왜에 있어서는 병자년(1636) 이후의 문서를 통틀어 조사해도 일찍이 나오는 곳이 보이지 않고, 전례로 인용할 근거가 없지마는, 이미 대군의 예단을 가져왔다고 하였으니 너무 무시하는 것은 불가하여, 약간의 예물을 참작하여 증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며, 격군의 시신을 실어온 두왜와 격왜 및 사신을 호송하여 온 사공 등에게 물건을 증정하는 일 또한 폐기할 수 없으니, 편의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 및 동래 부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11월 초7칠 동부승지 신 이행우(李行遇)¹²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계달(啓達).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통신사가 돌아간 뒤에 말타는 채주를 관람하려고 하여 어자(御者) 2인을 동무(東武)에 머물러 두었으나, 여러 날 비가 내려 말을 달릴 수가 없었기에, 대군의 생각으로는 쾌청하기를 기다려 그대로 시일만 허비하면 통신사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9월 2일에 명이 있어서 집정 및 봉행 여러 관원이 나의 집에 모여서 말타는 채주를 시험하였는데, 그 달리는 데 실수가 없음을 보고는 모두들 감동하여 기뻐하였

125) 소명(小名) : 아명(兒名). 어릴 때의 이름.

126) 이행우(李行遇, 1606-1651) : 진의이씨로 자는 사회(士會), 호는 수남(水南)이다. 인조 11년(163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으니, 내가 일컬은 대로 모든 사정을 알아 당일로 백은(白銀)과 겹옷[袷衣]을 받고자 하여 이에 돌아가도록 하였고, 또한 바다와 육지의 먼 길에 접대하는 것과 타는 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의 명이었습시다. 이달 21일에 대마주에 도착하여 시종 수많은 일을 두루 준비하여준 귀국의 배정에 기쁘고 위안이 되었는데, 그 타던 말은 공이 얻고자 하기 때문에 머물러 두고, 말을 부리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는 행차를 따라가게 되어 다행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다이라 나리다카가 전달할 것이라 그치고 펼치지 않습니다. 강에이[寬永] 20년 계미(1643) 10월 24일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다이라 요시나리 봉복(奉復). 조선국 예조 대신 함하. 언삼(彦三) 송사(送使)에 대하여 예전 대로 접대하고자 하여 이에 대감께 품신드렸더니 명하시기를 “귀국의 뜻을 빼앗을 수 없으니 어찌 받지 않겠는가?”라고 하셨으므로 따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양찰하여 주시고, 스스로 아끼시기를. 퍼지 못합니다. 강에이[寬永] 20년 계미(1643) 10월 초9일 평의성.
-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 계복(啓復).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 함하. 관사(官使)가 약군의 탄생을 경하하여 멀리 바다를 넘어 예의와 신의를 돈독하게 하고 이미 사신의 일을 정돈하여 이제 귀국으로 돌아가니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다이라 나리다카 및 후지 도모나와로 하여금 호송하여 보내고 맞이하는 처음과 끝의 예를 온전하게 하오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한 사연은 통신사가 입으로 전할 것이기에 그만 두고, 보잘 것 없는 토산물을 별지에 기록하였으니, 아무튼 웃으며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에이 20년 계미(1643) 10월 초9일 다이라 요시나리. 도장 찍음.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대마도 도주가 본조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온 서계에 대한 답장을 승문원에 명하여 전례대로 초고를 지어내게 하였는데, 그 중에 “타던 말은 공이 얻고자 하므로 머물러 둔다고 한 것은 아마도 마상재에 말을 타고서 재주를 시험하였던 말인 듯한데, 이미 머물러 둔 뒤에 추후에 되돌려 받는 것은 불가하니, 그 말대로 상쾌하게 허락한다는 뜻으로 회답서계에 아울러 언급함이 마땅할 듯하며, 동래 부산 두 곳으로 보낸 예단에 대한 답례로 줄 물건을 참작 마련하여 후록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후록 : 동래 부산의 회례. 각각 인삼 1근.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2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10자루.[이상 해당 관청에서 내려보냄]. 화석 2넵. 참떡 1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 一. 동래부사에게 보낸 예물. 홍추초(紅綳綯) 3단(端), 산화경대(緞畫鏡臺) 2개. 문지(紋紙) 1,000근. 부산첨사에게 보낸 예물. 산화경대 1개. 문지 500근. 백반(白礬) 100근. 동 회례는 이 수량으로 짐작하여 마련함.

- 一. 계미(1643) 11월 20일 통신사 일행이 들어옴.

계미(1643) 11월 22일

- 一. 예조단자. 통신사가 가져온 일본국 회례(回禮) 진상(進上) 물목(物目). 수량 대조.
관백(關白)의 회례 진상. 첩금육곡병풍(貼金六曲屏風) 20쌍(雙). 산금시회대자(緞金蒔繪臺子) 5식(飾). 쇠술[鐵釜], 구리화로[銅爐], 구리물병[銅水壺], 동판립(銅板立), 동수적(銅水滴), 동개치(銅蓋置) 매 장식마다 여러 도구 갖추. 산금시회서봉(緞金蒔繪書棚) 2개. 산금시회광개(緞金蒔繪廣蓋) 10개. 산금시회의연(緞金蒔繪衣桁) 5가(架).

약군의 회례 진상. 산금초대도(緞金鞘大刀) 10자루. 갑옷[鎧] 10벌[領]. 당직(唐織) 50단.

대마도주 회례 진상. 금대병풍(金大屏風) 10쌍. 홍주(紅朱) 3근. 운문지(雲紋紙) 300근. 람발(鑢鉢) 500근.

만쇼잉 회례 진상. 색대단자(色大段子) 2권. 산화연상(緞畫硯床) 2개. 단목(丹木) 200근.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회례 진상. 문선(文選) 1부 31책. 산화연갑(緞畫硯匣) 2개. 우단초(羽段綯) 3권.

봉행 6인, 집정 2인의 회례 물목. 각각 백은(白銀) 100매. 월주면(越州綿) 100순(純). 집정 1인 회례 물목. 백은 100매. 식룡(食籠) 1구(具). 흑칠시회선자(黑漆蒔繪扇子) 200자루. 말광소삼(末廣小篔) 두 면(面). 금니(金泥) 두 면(面). 은니(銀泥) 청지(靑地) 백지(白地) 등.

- 一.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통신사가 가져온 일본 집정 이하 9인이 본조로 보내는 예물은 전례대로 호조로 보내고, 관백 및 약군의 회례 물건은 상방(廂房)으로 옮겨 보내라는 뜻으로 감히 입계합니다”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一. 도주의 회답서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다이라 요시나리 및 수도서(受圖書)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와 만소영[萬松院] 등에서 진상한 예물은 모두 여기에서 하사하여 보낸 것에 대한 답례이니 다시 돌이켜 보내는 것은 부당하거니와, 그 중에 도주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비할 것이 아니고, 피차 간에 수응하는 일을 전담하여 관장하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일에 매양 힘을 다하여 주선하였다고 말할 뿐 아니라, 이제 이번엔 쇄환해 온 남녀가 14명이나 되니, 우리나라로서는 사례하는 것을 그만 두어서는 안될 듯 하니, 전례의 유무를 막론하고 약간의 물건을 갖추어 보내고, 인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회답서계를 지어내게 하여 은근한 뜻을 보이도록 함이 아마도 마땅할 듯한데, 상감께서 재가하심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이러한 진상은 이전부터 모두 회답하였는데 정축년(1637)의 전례를 상고하여 조처하라고 하셨음.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병자년(1636) 이전의 본조의 문서는 거의 모두 흩어져 없어졌고, 정축년(1637)의 전례를 조사하니 근거가 없는데, 다만 정축년(1637) 윤4월 23일 예조단자의 내용에 ‘이제 이번 대마도주의 진상(進上)은 곧 본국에서 예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회례가 있었으니, 우리로서는 다시 회답하는 것이 부당할 듯한데, 다만 이전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전부터 비록 회례의 진상이라도 이쪽에서 반드시 다시 답례로 하사하는 것이 이미 근자의 사례가 되었으니, 회사(回賜)하는 물건을 전례대로 참작하여 마련하여 증정하여 주는 것이 어떠할지?’라고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는 일로 판하(判下)하여 분부하였으니, 지금은 특별히 쇄환해 온 일이 있고 또 도주가 차왜를 보내어온 일이 있으니, 이전의 회계대로 시행함이 마땅할 듯하여 상감의 재가를 엿드려 기다린다고 하여, 11월 24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모두 회례를 내리는 것이 합당할 듯하니, 만소영 등도 함께 시행하라고 하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무릇 수응하는 도리에 증정함이 있으면 답례가 있는 것이 통행의 예인데, 이제 이번 대마도주가 보낸 물건은 전일에 이곳에서 하사하여 보낸 것으로 말미암아 이 회사가 있었으니, 우리로서는 답해야 할 일이 없을 듯한데, 이미 쇄환한 일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전담 차왜를 보내어 토산물을 진상하였으니, 답례하지 않음으로써 낙망하는 탄식이 있어서는 안되겠기로, 감히 회례를 하자는 뜻으로 청하였거니와, 만소영과 다이라 요시자네에 이르러서는 사신의 행차를 호위하는 왜인 편에 부쳐 왔을 뿐 아니라, 피차간에 돌아가며 오고가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끝내 멈출 날이 없으니, 한 번 그 단서를 열어주면 뒷날의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감히 이렇게 품신하오니 상감께서 재가하심이 어떠할지? 11월 26일 우부승지 신 임(林) 차지로 입계하였는데, 전례에 없으니 회계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 一. 예조단자. 방금 계하한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회례 예단은 본디 가격을 살펴서 참작하여 마련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범가죽 2장. 표범가죽 2장.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흰 무명 40필. 인삼 3근. 황모필 1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내려 보냄] 녀장 붙인 유둔 2부. 참떡 10홀.[이상 본도에서 지급].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통신사를 모시고 갔던 역관 홍희남과 이장생 등이 본조에 수분을 내어 일컫기를, “행차가 예도에서 출발할 때 일공(日供)¹²⁷의 남은 쌀 840표(俵)를 남겨 두고 왔는데, 관반(館伴)인 미농수(美濃守)와 출우수(出羽守)가 금으로 바꾸어 추후에 보내왔으나, 병자년(1636) 통신사가 돌아올 때 또한 이렇게 금으로 바꾸어 보내온 것을 금절해(今絶海)¹²⁸에 던져버려서 난처한 일이 많았으므로, 이번에는 도주가 몰래 받아서 시종 숨겼다가, 부산으로 되돌아 건너온 뒤에,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황금 61냥 6전과 예도의 대관왜(代官倭) 등이 서명한 문서와 함께 전하여 주기에, 온갖 말로 뿌리치고 물리치며 이야기하였더니, 관백이 보낸 물건을 중간에 덮어둘 수 없다고 운운하며 여러가지로 이야기하여 부득이 받아 왔으니, 참작하여 조치하여 달라”고 운운 하였으니, 예조에 명하여 조치하게 함이 마땅하기에 감히 입계한다 하였는데, 전교에 입계한대로 하라고 하셨음.

-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동래부사 정유성의 첩정(牒呈)에 일컫기를, “사신이 저쪽으로 들어 갔을 때 각처의 예물을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말을 적어서 도주에게 이첩하였는데, 방금 접한 훈도 한상 등의 수분에, ‘사신이 보내온 각처의 예단을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두 차왜 등에게 들여주었더니, 차왜 등이 말하기를 「이제 이번 면자(綿子) 등의 물건은 곧 사신이 들어갔을 때 접대하였던 관반(館伴) 및 중도에 문안한 사신과 일광산에 모시고 갔던 장관(將官) 등이 회례한 물건이다. 통신사가 예물을 보내고 장관이 회례하는 것은 또한 평소의 규례인데, 이제 와서 받지 않는다면 도주가 사사로이 사용할 수도 없어서 부득이 예도로 들여보낸다면, 여러 장관(將官)들이 크게 노할 뿐만 아니라, 사신이 저쪽에 있을 때 예물로 보낸 물건 또한 되돌려 보낼 것이니, 난처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신이 왕래하면서 피차간에 예물을 보내는 것은, 예로부터 전례가 있어서

127) 일공(日供) : 매일의 식사 대금.

128) 금절해(今絶海) : 통신사 사행이 경유하는 오사카[大坂] 인근에 있는 금절하(今絶河)를 가리키는 듯하다.

오늘에 새로 만든 것이 아닌데, 이곳까지 가져와서 되돌려 받아갈 리는 만무하다」고 운운하며, 되돌려 주면서 받지 않는다’는 뜻은 본조에 갖추어 보고하였으나, 차왜 등이 시종 가져가지 않는다면 형편으로는 장차 버려두고 가야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겠는지?”라고 운운하였는데, 그것을 받거나 물리치거나 신의 예조에서는 경솔하게 함부로 결단하지 못하니, 어떻게 할지 감히 품신드리며, 또한 각처에서 보내온 예물은 면자(綿子)가 300과(把), 칠피(漆皮)가 80령(令), 금병풍(金屏風) 3쌍, 납병(鐵瓶) 50개가 그 원래 수량이므로, 또한 함께 입계한다 하였음. 전교에 “전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치하라”고 전교하였는데, 본조의 정축년 이후 등록을 통틀어 조사하였더니, 이런 예물을 받고 안받는 등의 전례는 전혀 없어서 상고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조치할지 감히 품신드린다고 하였음. 전교에 “그 때의 역관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일로 전교하였는데, 그 때의 역관에게 물었더니, 홍희남과 이장생 등이 수본을 바쳐 일꾼기를, ‘병자년(1636) 관반(館伴) 이하 여러 장관이 보내온 예물은 그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물건은 받아서 격군이나 도종의 왜인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물리쳤는데, 이번에는 모두 받지 아니하였으나, 도주가 사신이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을 적어서 되돌려 보냈고, 되돌려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까지 하였기에, 부득이 가져와서 내보냈다’고 운운하였기에 감히 입계함. 전교에 “물리치는 것이 불가하면, 원하는 대로 받아서 사신 등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음.

계미(1643) 11월 29일

비변사에서 계품하기를 “호조의 계사(啓辭)와 예조의 계사에 통신사를 모시고 갔던 역관 홍희남과 이장생 등이 본조에 수본(手本)을 바쳐 이야기하기를, ‘행차가 에도에서 출발할 때 일공(日供)의 남은 쌀 840표(俵)를 남겨두고 왔는데, 관반인 도농수(到濃守)와 출우수(出羽守)가 금으로 바꾸어 추후에 보내어 왔으나, 병자년(1636) 통신사가 돌아올 때도 이렇게 금으로 바꾸었지만 금절해(今絶海)에 던져버려서 난처한 일이 많았으므로, 이번에는 도주가 몰래 받아서 시종 숨겼다가 부산에 되돌아와서 도착한 뒤에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황금 61냥 6전 및 에도의 대관왜 등이 서명하여 표시한 문서와 함께 전해주었기에, 온갖 방법으로 물리치며 이야기하였더니, 관백이 보낸 물건을 중간에서 덮어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운운하며 여러가지로 발설하여 부득이 받아 왔으니, 참작하여 조치해 달라’고 운운하였기에, 호조에 명하여 조치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감히 입계하였더니,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는 일로 전교하였는데, 저쪽에서 이미 남은 쌀 840표¹²⁹)를 남겨두고 왔고, 관반(館伴)이 금으로 바

꾸어 보내왔기에 온갖 말로 뿌리쳤으나, 관백이 보낸 물건을 중간에 덮어둘 수 없다고 운운하므로 부득이하여 받아 왔으니, 본조에서는 다시 조처할 일이 없고, 받을 지 받지 않을 지를 묘당에 명하여 논의하여 조처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는데, 이제 이번 금화(金貨)를 받는다면 국가의 체면에 손상이 되고, 받지 않는다면 먼 곳 사람의 소망을 어기는지라, 이제 동래로 보내어 동래부사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타이르기를 ‘이 물건은 곧 사신의 일공(日供) 중에서 남은 쌀로 바꾼 것이다. 조정에서는 결코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 만약 사양하여 받지 않는다면 관백이 금으로 바꾸어 보낸 뜻을 저버리는 것이 우려되는데, 이 금이 나온 곳이 사신의 예단 은자와 다름이 없고, 예단의 은자는 이미 공목(公木)¹³⁰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남겨두니, 은이든 금이든 어찌 다르겠는가? 이 금 또한 내년 공목 가격으로 계산하여 준다면 아마도 양쪽 다 편할 듯하니, 이 뜻을 돌아가서 도주에게 고하여 이대로 시행함이 좋겠다고 하여, 그대로 그 금을 차왜에게 되돌려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이 마땅하기에 감히 입계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도주가 보낸 사신의 일공 중에서 남은 쌀로 바꾸어온 황금을 비변사에서 이미 확정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흥희남이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니, 별도로 신실한 금군(禁軍)을 정하여 동래부사에게 내려보내어, 비변사에서 계하한 공문대로 조처하게 함이 마땅하기에 입계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고 하셨습니다.

계미(1643) 12월 초1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두 차왜와 접촉하여 문답할 때, 다이라 나리다카가 말한 마상재(馬上才)의 마필(馬匹) 값을 오래지 않아 내보낼 것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방금 접한 훈도 한상(韓祥)과 별차 최유립(崔裕立)의 수본 내용에,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두 차왜가 말하기를 ‘마상재를 관람한 뒤에 마필을 대군이 머물러두고 보내지 않았으며, 동 가락을 도주에게 명하여 적절하게 헤아려 갖추어 보내라고 분부하였기로, 대마도에 있을 때 마상재인(馬上才人) 등에게 값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더니, 동 마상재인 등이 말하기를 사신의 분부가 없어서 받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받지 않고 왔으므로, 동 말 3필 값으로 은 150냥을 추후에 내어보내는데, 수량을 헤아려 받아 달라’

129) 원본에 84표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840표인 듯하므로 고쳐 번역하였다.

130) 공목(公木) : 공작목(公作木). 일본과의 공무역 대금으로 책정해 두었던 포목. 해마다 미곡 16,000섬 대신으로 공목(公木) 400동(同)을 책정하였다.

고 운운하면서 동 은자를 내어주거늘, 짐짓 관중(館中)에 놓아두었는데, 어떻게 조치할지 수본한다”고 하였음. 동 말 값의 은자를 받아 올려 보낼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지휘하여 주실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마상재(馬上才)로 가져갔던 마필을 되돌려받지 말라는 뜻은 일찍이 도주의 서계로 말미암아 이미 복계(覆啓)하여 확정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그 값의 은자를 추후에 보내왔는바, 받으면 국가 체면에 손상이 있으니, 타일러서 되돌려 주는 일로 동래부사에게 행이함이 어떠할지? 11월 23일 우부승지 신 임담(林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계미(1643) 12월 초9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예조에서 계하한 관문에 의거하여 도주가 보내온 말 값의 은자를 받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명하여 차왜에게 타일러 되돌려 주게 하였더니, 방금 훈도 한상 등의 수본 내용에 “분부한 대로 예조의 관문 내용의 사연으로 말 값의 은자를 되돌려 보내는 일로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에게 타일렀더니, 답하기를 ‘도주가 대군의 분부로 말 값의 은자를 내어보냈는데, 조정에서 특별히 그냥 주는 것을 허락하여 값으로 보낸 은자를 되돌려 보내니 감격함을 견디지 못하겠으며, 마땅히 조정의 명령을 경건히 받들어 돌아가 도주에게 고하겠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수본하였기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계미(1643) 12월 27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비변사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에, “도주가 문서를 보내어 사신의 과실을 들추어내었는데, 이는 실로 전에 없었던 일이므로, 일찍이 두 차례의 장계를 올려 거절하여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치를 따져 복계(覆啓)하였거니와, 그 서계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은 그다지 이해가 없지만, 만약 다른 서계의 사례대로 받아서 엄한 말로 회답하면서 일의 체면이 부당함을 명백히 진술한다면 저쪽에서 뉘우치는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나, 그렇게 아니하고 한결같이 거절하여 이로 인하여 차왜가 마냥 머물게 되면 도리어 손실되는 바가 있으니, 그 서계를 전례에 따라 받아서 예조로 올려 보냄이 마땅한데,

이 뜻을 행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회계(回啓)하여 시행하라 하였기로, 교지의 사연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는 일”로 관문을 발송하였기로, 동 서계를 즉시 받아서 감봉(監封)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대개 신이 당초에 이 서계를 받지 아니하고 문답한 연유를 장계로 알릴 때, 신이 망녕된 소견으로 참작하여, 이렇게 외람된 서계를 매번 전례에 따라 받지 아니하면 그만이거나, 만약 사례에 근거하여 엄한 말로 회답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후회하여 뉘우칠 사단이 없으니, 일의 체면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각별히 엄한 말로 회답하여 이런 길을 막는 것이 혹 적절할 듯하기에, 외람됨을 무릅쓰고 진달한 것이며, 이런 길을 확 막아버리고자 함일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만약 시종 회보(回報)를 얻고자 다그치고 협박하여 마지않는다면, 일이 극히 난처하게 될 것이기에, 이를 우려하여 이렇게 아울러 품신하였는데, 비변사에서 복계할 때 이 한 조목은 전연 거론하지 아니하고, 단지 준엄한 말로 물리쳐 받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회계를 내려 행회(行會)하였기에, 역관 등에게 명하여 한결같이 준엄한 말로 물리쳐 받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공갈 협박하는 사단이 절절이 거듭된 연후에 비로소 이제 그 회답을 허락하여 그들이 그것을 부득이 받아들인 의도를 알았으니, 국가 체면이 손상된 것이 이에 이르러 더욱 심하게 되어, 뒤늦게 후회해도 미칠 수 없게 되었으며, 두 차왜 등이 여러 달 잇달아 머무느라 접대하는 폐단이 끝이 없으니, 동 서계의 회답을 속히 지어내어 과발을 급히 내려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속히 거행하여, 진작 출발하도록 해주실 일 및 도주의 서계 내용임.

통신사가 돌아감에 호송하기 위하여 다이라 나리다가 및 후지 도모나와를 차출하여 보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번거롭게 진달하오니, 가슴 속에 솟아나는 회포가 깊기만 합니다. 이미 말하였지만, 통신사가 동무(東武) 및 일광산(日光山)에 도착하여 바라던 바대로 시종 잘 정돈하여 가지런하였으며, 귀국의 정성스런 생각을 살펴 위에 전달할 수 있었으므로 큰 다행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부사(副使)의 체재(體裁)는 일마다 뜻에 맞지 아니하여, 바다에서나 육로에서와 동무에서도 마음대로 하고자 하여 예법을 잃고 잘못을 행하였으니, 귀국을 위하여 어찌 손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귀국 조정에서는 비록 성신(誠信)을 드러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경에 이르면 대의를 손상하는지라, 그래서 알려져 타이르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니, 바라건대 시험삼아 살펴보십시오. 옛말에 이르기를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서 군주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사신이 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귀국의 명령을 가볍게 하였을 뿐 아니라 또 본방의 예의를 어겼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들은 이제부터 이후로 각자 주선하면서 손을 놓고 지시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이제 아무 일 없이 먼저 귀국으로 돌아갔으니 축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곡절은 두 차사(差使)의 입에 붙여 알릴 것이므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강에이[寬永] 20년 계미(1643) 10월 초9일 다이라 요시나리. 서명. 도장.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일은 평상시의 사례에 따라 회답하는 서신과는 다르니, 회답의 취지를 승문원에 명하여 묘당에 품신하고 확정하여 지어내어 내려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승덕 8년(1643) 12월 27일 동부승지 신 이행우(李行遇)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신(1643) 정월 25일

승정원에서 계품하기를 “지난번 통신사 이하를 적어 계품(啓稟)하라는 하교에 대하여, 일행 원역(員役)의 수를 적어서 계품하면 혹 되었을 것이나, 어제 비망기(備忘記)에 ‘지난 해 시상(施賞)한 수가 10여 인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이렇게 수가 많느냐?’고 이렇게 하교하셨으니, 그렇다면 그 때의 사신이란 원역 가운데서 일을 맡아서 수고한 일이 있는 자를 가려서 계품하는 것인지를, 어려운 일은 아닌 듯하지만 그 말에 ‘지난 해 시상의 은전’이라 하였으니, 단지 수고가 있었던 사람만으로는 10여 인원에 불과하였지만, 이번 사행에는 저쪽에서부터 추가하여 계청(啓請)한 사람이 있고, 또한 일광산에 치제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원역이 이전보다 많았을 듯하나, 다시 뽑아서 계품하라는 일은 없었기에, 승정원에서는 이 뜻을 계품함이 마땅하다 하였으나, 신은 이미 그것이 불가한 줄 알고 오가며 논란한 것이 두 번 세 번에 그치지 않았지만, 끝내 미혹을 돌이키지 못하였기에, 상감께서 하교하신 일을 오늘에도 또한 회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황공하옵게도 감히 계품드립니다.”라고 하였는데, 답하기를 “알았다. 병자년(1636) 통신사의 원역 수를 각 해당 관청에 물어 입계하라”고 하셨음.

갑신 정월 28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되돌아가는 연회를 전례대로 베풀어 행하는데, 동 예단을 모두 증정하였더니, 두 왜인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저희들은 별서계(別書契) 한 가지 일로 부득이 오래 머물렀는데, 조정에서 특별히 답서를 허락하시니 황감(惶感)함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운운하였으며, 이 밖에는 다시 문답한 일이 없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갑신(1644) 2월 15일

동래부사의 장계. 통신사 일행을 호송하여 건너온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돌아들어갔다는 일임.

갑신(1644) 3월 25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김적의 치통 내용에, “세건 제1선의 정관 등에 대한 다례를 베풀 때, 정관이 말하기를 ‘이전에 통신사 행차가 바다를 건넌 때 예단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들여보낸 응자(鷹子)가 에도에 도착하여 4연이 저절로 죽었거늘, 도주가 사사로이 응자를 사들여서 그것으로 변통하여 숫자를 채워 넣어 사용한 뒤에 그 때 즉시 사신 행차에 고하였더니, 추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 실로 감격하였거니와, 오사카 성에 이르러 저절로 죽은 8연도 또한 도주의 개인 응자로 숫자를 채워 사용하였는데, 그 때는 일이 많아서 바쁘게 서두는 사이에 미처 사신 앞에 고하지 못하였는데, 당초 이쪽에서 보낼 적에 붙여 보낸 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비록 지급하지 않더라도 도주가 수량을 채워서 사용한 연유를 고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동 저절로 죽은 8연을 전하여 주거늘, 첨사가 답하기를 ‘이는 첨사가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여 준엄하게 물리쳐 받지 아니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정관 등의 말이 ‘통신사가 갔을 때 예단의 응련(鷹連)이 길 중간에 이르러 저절로 죽은 4연 외에 또 8연이 죽었거늘, 도주가 개인 응자로 수량을 채워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또 추후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저절로 죽은 때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기에 이르렀는데, 당초 충당하여 사용한 4연은 사신의 장계로 인하여 이미 분정하여 들여주었거니와, 8연의 때는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만으로 또 해가 지난 뒤에 보상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대단히 따라주기 어려운 청이로되, 만약 이런 길을 열어주면 뒷날의 폐단이 있을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 상의하여 조처하게 하실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통신사의 예단에 사용한 응자(鷹子) 8연 대신으로 만약 도주가 개인 응자를 실제로 충당하여 사용하였으면, 추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로되, 다만 그들의 입으로만 해가 지난 뒤에 이제 와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일의 체면에 미안하니, 이 뜻을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방색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順治) 원년(1644) 3월 23일 우부승지 신 강대수(姜大遂)¹³¹ 차지로 입계하였는데, “응자 한 가지 일은 사신에게 물어 조처하라”고 하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그 때의 정사 윤순지(尹順之)에게 물었더니, ‘응련(鷹連)은 사신이 부산에 있을 때 왜인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가져가게 하였으므로, 에도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병들어 죽은 것과 또 부족한 수량이 4연 뿐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치계하였는데, 그 때 혹 병들어 죽은 것이 10여 연이나 된다고 말하였으나, 왜인은 그 수량을 말하지 않고 단지 그 부족한 수량만 말하였으므로 단지 4연만 빌어서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제 와서 추가로 말하지만 이미 문서가 없어서 또렷이 알기는 어려울 듯하고 또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제 와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전과 같이 회계하여, 동래부사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방색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順治) 원년(1644) 3월 25일 동부승지 신 조석윤(趙錫胤)¹³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신(1644) 4월 초8일

대마도주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가 상사(上使) 윤순지(尹順之)에게 보내는 서계 내용. 이에 서찰을 보내어 위문드립니다. 엇드려 생각건대 본방(本邦)은 편안하며, 귀국의 정치교화와 공적을 함께 기뻐합니다. 전에 부산포에서 보내주신 정성어린 서신으로, 아득한 바다에 바람이 순조롭고 파도가 평온하여, 돌아가는 배가 탈이 없이 진중(珍重)하고 진중하셨다고 하기에, 불일간에 이를 동무(東武)에 보고하였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본방의 승록(僧錄)이 지난번에 건물 하나를 지었으나 아직 그 편액을 써서 걸지 못하였는데, 원컨대 금지원(金地院) 석 자를 써서 하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록이 나에게 와서 구하는 바가 여기에 있는지라, 이 일은 별도의 종이를 보십시오. 또한 건인사(建仁寺)의 홍장로(洪長老)가 우거하는 곳의 호칭이 십여원(十如院)인데, 이 편액 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고사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인하여 보잘 것 없는 작은 신물(信物)¹³³⁾을 별록(別錄)에 기재하였으니, 아무튼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퍼져 못합니다. 계미(1643) 11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 성명. 도장 찍음. 별록 : 『서전(書傳)』 1부, 산화문갑(緞畫文匣) 1개. 다이라 요시나리 성명. 도장 찍음.

별견역관 홍희남의 수본 내용. 부특송이 나올 적에 통신 상사(上使) 앞으로 도주가 바치는

131) 강대수(姜大濬, 1591-1658) : 진주강씨로 자는 면재(勉哉), 호는 한사(寒沙)이다. 광해 4년(1612)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정언으로서 회양에 유배되었고, 인조반정 뒤에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참의, 전주 부윤을 역임한 뒤 관직에 물러나서 나가지 않았다.

132) 조석윤(趙錫胤, 1606-1655) : 배천(白川) 조씨로 자는 윤지(胤之), 호는 낙정재(樂靜齋)이다. 인조 6년(1628)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대제학, 대사성,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33) 신물(信物) : 신의를 표하는 물품.

서신 및 별폭과 또 금지원(金地院)과 십여원(十如院)의 제액(題額)을 쓰기 위한 당지(唐紙) 4장을 보냈는데, 이른바 금지원은 대군의 국사(國司) 양장로(良長老)의 수호(守號)¹³⁴이고, 십여원(十如院)은 대마도에 와서 거주하는 홍장로(洪長老)의 수호인데, 상사의 손수 쓴 필적을 얻기를 위하여 이렇게 내어 보냈는 바, 이와 같은 따위의 일은 이전에도 빈번하게 있었을 뿐 아니라, 먼 곳 사람의 서신을 뿌리쳐 물리치는 것은 불가할 듯하여, 받아서 올려 보내오니 참작하여 조처하시어 급급하게 회답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대마도주가 윤순지에게 보내는 정단(呈單) 및 역관 홍희남이 바친 수본을 보니, 편액을 써 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말씨가 자못 간절하여 거절하기가 어려운 듯하니, 말하는 바대로 윤순지에게 명하여 써서 보내게 하고, 도주가 이미 서신을 보내고 윤순지에게 물건을 보냈으니, 서로 신뢰하는 도리에 있어서 회답과 회례(回禮)가 없어서는 불가하니, 회답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고, 회례하는 예물은 참작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되, 보내온 서책 등은 해조에 명하여 구분하여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좌부승지 신 이행우(李行遇)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하고, 보내온 예물은 받아들여 하라고 하셨음.

갑신(1644) 4월 15일

호조의 이문(移文) 내용. 귀조(貴曹)의 관문 내용에, 대마도주가 통신사 윤순지에게 보낸 서계 및 보내온 별록의 서책과 글을 보내고 물건을 보내온 데 대하여 회례가 없어서는 안되니, 회례하는 물건은 본 가격을 보고 참작해서 마련하여 지출하고, 편액과 동시에 내려 보내도록 하라는 일로 관문이 왔는데, 상고하여 보았으나 본조에서는 근거로 삼을 만한 문서가 없으니, 귀조에서 참작하여 마련하여 이문하라는 관문임.

이에 의거한 회례. 인삼 1근.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백면지(白綿紙) 10권. 참떡 1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도주가 보내온 물건. 서전(書傳) 1부. 시전(詩傳) 1부. 산화문갑(緞畫文匣) 1개. 이렇게 회이함.

134) 수호(守號) : 직무의 책임자가 거처하는 건물의 당호(堂號)를 가리키는 뜻.

갑신(1644) 5월 12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방금 바친 훈도 한상 등의 수본 내용에, “세건 제1선의 정관에 한결같이 예조 관문 내용의 사연대로 타일렀더니, 답하기를 ‘조정 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도주가 다시 진달하는 것은 부당한데, 다만 그 때 사신 앞으로 명백하게 진달하지 못한 것은, 한편으로는 바뻐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긴급하지 않아 미처 언급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신사 예단의 응자를 들여보낸 원래 수량이 68연인데, 그 중에 대마도에 도착하여 죽은 것이 26연이고, 오사카 성에 이르러 죽은 것이 8연이며, 에도에 도착하여 죽은 것이 4연입니다. 이로써 계산하면 남아 있었던 것이 30연이고, 별록으로 부친 응자 및 사신의 예단으로 아울러 사용한 것이 42연이니, 도주의 응자 12연을 보태어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대마도와 에도 등에서 죽은 것을 이미 사신 앞에 고하였으니, 오사카 성에서 죽은 것이 8연이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나, 이미 문서가 없고 입으로 전하는 것은 믿기가 어려워 되돌려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뒷날 도주가 서계로 진달하면 즉시 계산하여 지급하겠는가? 도주는 소관(小官)과 같지 아니하여, 약간의 응자의 득실 때문에 서계를 다른 나라에 보내지 않을 것이로되,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는 오직 조정에 조처에 달려 있다’고 운운하거늘, 소인들이 말하기를 ‘무릇 일이 되고 되지 않고 간에 그 때를 당하여 조처해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사소한 일을 이렇게 뒤늦게 말하는 것은 매우 근거가 없다. 다시는 번거롭게 이야기 하지 말라’고 운운하여 타일렀는바, 수본한다”고 하였음. 이 문답한 사연을 살펴보면 전후로 죽은 매를 도주가 개인 소유의 매로 모조리 충당하여 사용하였다는 뜻으로 죽은 매를 내어보이기 위하여 나와서 고하였을 뿐, 특별히 시종 억지로 추후에 보상하는 것을 청할 뜻이 없거니와, 다시 발설하면 타일러 틀어막으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다시 신칙하였다고 운운한 일임.

갑신 5월 21일

동래부사 심지명(沈之溟)¹³⁵의 장계 내용. 방금 접한 훈도 한상 등의 수본 내용에, “세건 제1선의 정관 다이라 나리노리[平成矩]가 서신을 보내어 보자고 요구하거늘, 소인 등이 왜관에 갔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돌아들어가는 날이 임박하기 전에, 통신사의 예단 응자가 죽은 것의 대가를 지급하는 일 및 서책 등에 대하여 어찌하여 지금까지 회답이 없는가?’

135) 심지명(沈之溟, 1599-1685) : 청송심씨로 지는 자우(子羽), 호는 농암(壟岩)이다. 광해 10년(1618)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인조 22년(1644) 5월 동래부사로 도입하여 동년 12월 사직하였다. 뒤에 우참찬, 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라고 운운하거늘, 답하여 이르기를, ‘서책 등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간에 근일에 회답이 마땅히 내려오겠거니와, 응자 한 가지 일은 그 때 이미 사신 앞에 고하여 진달한 일이 없고, 또한 문서도 없어서, 저들의 입으로 전하는 것으로는 결코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이전에 동래영감이 이미 장계로 조정에 품신하였는데, 현재 내려온 회답이 없다’고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당초 바빠서 비록 미처 고하여 진달하지 못했으나, 이렇게 사소한 응련(鷹連)을 어찌 두 나라가 서로 신뢰하는 사이에 거짓말을 꾸며 말하겠는가? 시종 틀어막으니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신하니 다시는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가지로 공갈 협박하거늘, 소인 등이 이르기를 ‘무릇 일이 비록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때를 당하여 조처하여야지, 이렇게 뒤늦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 너희에게 있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진술하지 말라’고 운운하여 준절하게 물리쳤다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죽은 응자의 대가를 지급하는 일을 재삼 언급하는 것은, 이쪽의 의도를 시험삼아 탐지하여 어쩔던 요행을 바라는 소치에 불가하기에, 이미 준절하게 물리쳤으니 다시 청할 리는 없을 듯하거니와, 서책은 해조에 명하여 속히 확정하여 분부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요구한 서책은 비단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모두가 구하기 어려운 책이라 부응하기가 어려운데, 이미 먼 곳 사람이 구하는 것이기에, 그 중에서 『진간재집(陳簡齋集)』, 『진후산집(陳后山集)』, 『두자미시(杜子美詩)』 각 1권을 사들여 서 이달 초8일 내려 보냈으니, 생각건대 이미 그쪽에 도착했을 것이라, 이 뜻을 행이함이 어찌할지? 좌승지 신 김(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갑신(1644) 6월 28일

경상감사 임담의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동래 겸임 울산부사 도신수(都愼修)¹³⁶의 치보 내용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갑신조 특송제1선 정관 등의 다례를 베풀 때 정관이 말하기를 ‘지난해 통신사 때 추가로 들여보낸 예단 응자가 오사카 성에 도착하여 저절로 죽은 8연 대신으로 도주가 개인 응자로 수를 충당하여 사용하였던 연유를 세건 제1선이 나왔을 때 진달하였더니, 일이 이미 지나갔으니 추후에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하였는데, 예조의 분부가 어떠한지 알 수 있으나, 사신이 일본에 있을 때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빠서 중간에 고하여 진달하지 못했거니와, 대개 통신사의 예단 응자의 원래 수량 68연 가운데 대마도에 도착하여 죽은 것이 26연이고, 오사카 성에 도착하여 죽은 것이 8연이며, 에도에 도착하여

136) 도신수(都愼修, 1598-1651) : 성주도씨로 자는 영숙(永叔), 호는 지암(止巖)이다. 인조 5년(1627)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좌랑, 호조정랑, 함흥관관, 울산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죽은 것이 4연이니, 이렇게 계산하면 남은 것이 단지 30연인데, 별쪽에 부친 예단 응자 및 통신사 예단의 수량을 아울러 계산하면 42연이기에, 도주의 응자 12연을 보태 넣어 사용한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그 때 부산 영감이 서명한 것을 가져다 납부하였으니 또한 명백하여 의심이 없거늘, 오사카 성에 도착하여 죽은 8연에 대하여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니, 도주에게 어찌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는가? 이런 뜻을 다시 치계하여 속히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하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바"라고 치통하였는데, 동 서계와 별폭 등을 감봉하여 사또게 올리는 일로 치보한다고 하였음. 동 서계와 별폭 등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지난해 통신사 때 보태어 쓴 도주의 응자 8연의 대가를 지급하는 일로 또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 한다 하니, 이전에 말을 만들어 틀어막았으나 끝내 미혹을 풀지 못하니 어떻게 대답하올지, 해조에 명하여 참작 상의하여 조치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죽은 응자를 추후에 지급하는 일로 부산참사가 접하여 응대할 즈음에 말을 만들어 틀어막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청하여 기어코 이 루고자 하는 바, 먼 곳의 사람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서 사소한 물건을 시종 허락하지 아니하여 낙망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니, 경상도에 5연, 강원도에 3연을 분정하여 지급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원년(1644) 6월 28일 동부승지 신 이지항(李之恒)¹³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신(1644) 10월 초4일

동래부사 심지명(沈之溟)의 장계 내용. 부산참사 김적의 치통 내용임. “특송제1선의 정관 등에게 노차연(路次宴)을 베풀 때, 정관이 말하기를 ‘지난 해 통신사 때의 예단 매[鷹子]가 오사카 성에 도착하여 저절로 죽은 8연의 대신으로 도주의 개인 소유의 매로 숫자를 충당하여 사용한 연유는 부득이하여 진달하였는데, 그 대신으로 조정에서 이미 지급하기로 쾌히 허락하시니 감격됨이 그지없으나, 다만 도주가 예도에 들어갈 기일이 가까이에 있는데, 금년에는 이미 가을이 깊어서 매를 파는 상인이 전혀 없으므로, 예도에서 사용할 예단의 매를 아직도 사들여 보내지 못하였기에 참으로 걱정스러우니, 위의 통신사 때에 충당하여 사용한 매의 대신으로 지급하는 매 8연이나마, 우선 많지 않은 시일 내로 속히 들여달라'고 누누이 간청하여 이야기할 뿐 아니라, ‘떠나기 전에 만약 들여주지 않으면 상선연(上船宴)을 먼저 받을 수가

137) 이지항(李之恒, 1605-1654) : 전주이씨로 자는 월여(月如)이다. 인조 11년(1633)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성,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없다'고 하기로, 연유를 치보하오니, 분정한 각 지방관에 기일에 맞추어 보내어 납입하라는 일로 각별히 독촉하여 행하하라는 일로 순영(巡營)에 보고하시고, 살펴보고 시행하실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때는 도주가 예도에 들어갈 때 마땅히 가져가야 한다고 받아 간 뒤에 말려고 하는데, 특송사의 원 기한은 다음 달 초10일이니, 위의 응자 등을 만약 그 전에 데려 오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더 머무르는 폐단이 극히 우려스러워서, 본도는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독촉하였거니와, 강원도에도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기일을 맞추어 독촉함으로써, 때가 늦어 다시 독촉하는 우려가 없도록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침부한 계목 내용. 강원도의 매를 진작 내려 보내지 않아 이런 폐단이 있으니, 본조에서 이문하여 재촉하였거니와, 비록 혹시 미치지 못하더라도 본도에서 편의대로 찾아 지급하여, 더 머무르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신 윤득열(尹得說)¹³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138) 윤득열(尹得說, 1598-?) : 파평윤씨로 지는 천여(天與)이다. 인조 13년(1635)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감사를 역임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 제2책

國譯 鄭景柱 (경성대학교 교수)

監修 李源鈞 (전 부경대학교 교수)

계사(1653) 10월 16일

경상감사의 장계. 방금 동래부사 임의백(任義伯)¹³⁹의 치보를 접하니, 차왜 후지 나리가다[藤成方]가 을미년(乙未年 : 1655) 사신을 청하는 일을 통보하는 일로 이제 또 나왔는데, 그 문답한 내용은 임의백의 치계 중에 상세하게 있기에 이제 번거롭게 중복하지 않거니와, 경접 위관(京接慰官)이 내려와서 접대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거늘, 임의백이 역관 등에게 다시 더 주선하여, 본도의 도사(都事)를 접대하는 관원으로 하여 민폐를 덜게 하고 체면을 무겁게 함이 어떠한 뜻으로 계품하였는바, 혹 적절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확정하라고 분부하였다는 일임.

계사(1653) 11월 17일

경상도사(慶尙都事) 안(安)¹⁴⁰의 장계. 신이 조정의 분부대로 차왜를 접위하는 일로 이달 13일 동래부로 달려갔는데, 부사 신 임의백은 마침 신병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하기로, 16일에 신이 혼자 관소로 갔더니, 차왜 후지 나리가다[藤成方]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0명 등이 차례로 나누어 앉아서 전례대로 다례를 베풀고 서계를 받은 뒤에 안부를 묻고 문답한 말은 번거롭게 진달할 필요가 없거니와, 차왜 후지[藤差]의 말 내용에 “을미년(1655) 통신사 행차에 귀국에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만 마땅히 조치할 일이 있을 듯하므로 감히 이렇게 통고한다”고 운운하였음. 또 말하기를 “이제 이번 서계를 회답할 때 반드시 은근하게 해야지, 낙망하게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재삼 이야기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두 나라의 우호로 좋게 교체하는 도리가, 문자 사이에 은근하게 하는 것은 어찌 네 말을 기다려 하겠는가? 조정에서 또한 반드시 헤아려 조치할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차왜 후지가 답하기를 “접위관의 말이 이렇게 정중하니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며, 그대로 전례대로 수작을 하고 파하였습시다.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은 먼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은, 격식의 문자 사이에 잘못된 곳이 있으므로 차왜에게 되돌려 주고 고쳐 써서 보내라고 하였기로, 부

139) 임의백(任義伯, 1605-1667) : 풍천임씨로 자는 계방(季方), 호는 금시당(今是堂)이다. 인조 27년(1649)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효종 3년(1652) 11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효종 5년(1654) 12월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나중에 황해, 경상, 충청도 관찰사와 도승지, 형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40) 경상도사(慶尙都事) 안(安) : 효종 4년(1653) 8월 초8일 경상도사로 부임한 안후직(安後稷, 1620-1713)이다. 안후직은 광주안씨로 자가 덕초(德初)이며, 효종 원년(1650)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다.

득이 추가로 감봉하여 올려 보낼 계획이며, 또한 차왜 후지의 처신이 자못 다이라 나리쇼[平成] 보다 높아서, 직급이 낮은 작은 역관을 차비(差備)로 일컬어 일의 체면이 없어지겠기에, 신이 동래부사 신 임의백과 상의하여 별견역관 이형남(李亨男)을 시켜 다이라 나리쇼를 접대한 사례대로 그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으므로, 차왜가 되돌아 갈 때 까지 짐짓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임. 대개 이번 차왜는 단지 통신사를 청하여 왔고 다른 볼일이 없어서 오래 머무를 일이 없는 듯하니, 회답서계를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지어내어 내려 보내시며, 세 차례의 잔치에 사용할 예단 물건도 또한 속히 내려 보내어 저쪽 사람이 머물러 지체함으로써 본부에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장계 내용의 사연을 보니, 후지 차왜는 오로지 을미년(1655) 통신사의 일을 미리 통지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회답 문자는 승문원에 명하여 이미 지어내게 하였는데,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후한 의리에 있어서 말을 만드는 사이에 어찌 낙망시키는 뜻이 있겠습니까? 세 차례의 잔치 예단은 이미 이달 16일에 특별히 금군을 정하여 내려 보냈으니 생각건대 이미 도달하였을 것임. 역관 이형남은 장계 대로 후지 차왜가 되돌아가기까지 그대로 머무르게 하도록 허락하며, 본조의 참판과 참의와 동래 부산 네 곳의 회답 예물도 이미 마련하였는데, 후지 차왜가 되돌아가는 것이 지체하여 머물러서는 안 되니, 네 곳의 회례로 지급할 물건을 먼저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내려 보내고, 동래 부산에서 잘못 적은 서계는 고치기를 기다려 올려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0년(1653) 11월 23일 우부승지 신 심(沈)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오(1654) 3월 29일

동래부사 임의백의 장계. 이달 28일 계사조(癸巳條) 부특송 정관 1인과 부관 1인, 압물 2인 등의 노차연(路次宴)을 전례대로 베푼 뒤에, 신이 부산첨사 신 홍여한(洪汝漢)과 더불어 상복(常服)으로 평좌(平坐)하여 서승(書僧)을 불러 보았더니, 서승이 말하기를 “명년에 마땅히 통신사가 있을 것인데, 도주가 미리 도중으로 돌아와야 접대하는 물자를 구비할 수 있으므로, 이미 3월에 관백에게 하직하였더니 관백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지체하여 되돌아 나올 시기를 알 수 없거니와, 다만 통신사 3원이 만약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모순되는 일이 많을까 염려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번에 바라는 것은 통명(通明)하고 포용력이 있는 관원을 사신으로 택한다면 두 나라의 다행이겠기에, 일찍이 이미 차사를 보내어 진달하였거니와, 선격(船格)의 여러 도구에 있어서는, 너무 무시하게 되면 왜경(倭京)에서 보기에 경시하여 모

욕하는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또한 되도록 정밀하고 화려하게 하여, 전일처럼 소박 누추하게 함이 없으면 너무 다행이겠으며, 지난날 청한 등롱(燈籠)을 통신사가 가져와서 일광산에 놓아둔다면 극도로 광채가 날 것인데, 이미 조정에서 주조하는 허락을 받았으니 참으로 기쁘고 다행이라”고 운운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명을 받은 사신을 차출하는 것은 변방 신하의 신분으로서는 감히 가려 뽑는다는 등의 말을 진술하여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선격 등의 물건은 좋게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물력과 관련되는 것이라 형편에 따라 마련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분에 넘치게 할 필요가 없거니와, 그러나 이 한 조목은 이미 해당 관청에다 잠시 품신하였고, 등롱에 들어가는 물자는 실로 너무 거대한데다가, 그 중에 납철(鑛鐵)은 원래 나올 곳이 없는데, 이제 장차 내어보낸다니 나 또한 기쁘고 다행이다”라고 운운하였다는 일을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갑오(1654) 6월 11일

동래부사 임의백의 장계.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7척이 나온다고 하거늘, 즉시 별차 홍여우(洪汝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정관 등의 말 내용에 ‘도중에서 문서 담당 승려로 윤서당(倫西堂)이라 일컫는 자가 올해 세말(歲末)이 곧 바뀌어 돌아갈 때인데, 달장로(達長老)라 일컫는 사람이 예도에서 이미 먼저 차출 확정되어 벌써 대마도에 도착하여 교대하였다’고 하며, ‘등롱을 주조하여 만들기 위하여 목본(木本)¹⁴¹⁾이 또한 나왔으며, 들어가야 할 납철(鑛鐵)은 들어가야 할 수량대로 왜관에서 계산하여 들이는 일로 말을 하여 왔다’고 하거늘, 윤서당이 미리 먼저 교체되어 바뀌는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정관이 답하기를 ‘명년 통신사의 행차에 반드시 피차 간에 왕복하는 문서가 많을 것인데, 이전에 윤서당이 와서 도중에 있던 지 이미 두 해가 지났기에, 물정에 익숙하여 주선하며 두둔하여 보호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기에, 예도에서는 꼭 새 인물을 내보낸 것은 문서 사이에 비밀로 하여 숨기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운운하였는 바, 신이 이미 전하는 말을 듣고 저쪽 사정을 짐작건대, 갑자기 문서를 담당하는 승려를 바꾸는 것은 일의 형편이 마침 그러한 데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예도에서 문서를 엿보고 살피는 것으로 말꼬리를 잡는 바, 그 사이에 공갈하는 작태가 없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문자를 왕래함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더욱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등롱을 주조하여 만드는 것은 중대한 역사(役事)인데, 부산첨사가 전례에 따라 차사원(差使員)이

141) 목본(木本) : 나무로 만든 모형. 견본(見本).

되더라도 담당 역관이 없어서는 안되니, 지난 해의 사례대로 일을 담당할 역관 1인을 급히 차출하여 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확정하여 시행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장계 내용의 사연을 보면 도주가 이제 장차 대마도로 돌아오면서 등록의 견본을 이미 내어 보냈으며, 들어갈 납철 역시 수량에 맞추어 가져다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본부에서 품질을 살펴 때에 맞추어 등롱을 주조하여 만들되, 주조하여 완성할 때 감독할 사지역관(事知譯官)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급속히 선발 차출하여 내려 보내며, 서승(書僧) 다즈조로오[達長老]가 이미 먼저 와서 교체된 연유는 역관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다시 더 탐지하여 실정을 장계로 알리라는 뜻으로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6월 12일 우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갑오(1654) 8월 13일

동래부사 임의백의 장계. 바람에 표류한 왜선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노인을 받아 올려보낸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방금 접한 훈도 윤성립(尹誠立)의 수본 내용에, “이달 초3일 아침에 왜관에 가서 관수(館守) 등과 상견한 뒤에 이내 물기를 ‘이번에 나온 차왜는 무슨 사람이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나왔는가?’ 하였더니, 답하기를 ‘나와서 볼 일은 저희들이 상세히 알지 못하거니와, 대개 억측하자면 필시 통신사의 행차 기일을 확정하는 일로 나왔을 것이고, 차왜의 성명은 히구치 야고자에몽[樋口彌五左衛門]인데, 이는 도중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으로 에도에 왕래하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볼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으로,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반복하여 탐문하였더니, 저들도 이 외에는 실로 상세히 모른다고 하였지만, 이미 들은 바가 있기에 미리 우선 진달하지 않을 수 없기에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음. 신이 윤성립의 수본 내용의 사연을 보고, 또 면전에서 고하는 말을 들으니, 도주가 에도에서 먼저 보낸 왜인이 많지 않은 시일 내에 마땅히 건너올 것이고, 주관하는 일은 아마도 통신사의 행차 기일을 정하는 일일 것이나, 달리 청할 일이 있는지 우려되는데, 이는 내도한 연후에 상세히 알 수 있겠으며, 도중에서 가장 존중받는다는 설은 곧 과장이며,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져 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대를 받으려는 의도이겠거니와, 접위관 및 접대 등의 일은 짐짓 그가 오기를 기다려서 추가로 치계할 계획임. 통신사의 행차는 응당 명년을 지나지 않을 것인데, 등록의 시행해야 할 규정은 오직 해조에서 미리 유념하는 데 달려 있겠거니와, 본도에서 만드는 등롱 또한 이것이 용이하게 주조하여 만들 물건이 아니고, 새길 명문(銘文)은 이미 윤희를 받아 계하하였으니, 청컨

대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지어내어 내려 보내어 기일 전에 주조하여 만들 수 있도록 함이 실로 마땅하기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차왜에게는 접대 등과 관련된 일을 그가 내도하기를 기다려 지휘함이 마땅할 듯하거니와, 통신사의 행차가 명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등록(騰錄)에 부쳐진 시행해야 할 일은 해조 및 본도에서 미리 유념하여 조치함이 마땅할 것이고, 등룡의 명(銘)은 문장을 주관하는 신하가 현재 시원(試院)¹⁴²⁾에 들어갔기에 마치고 나온 뒤에 곧장 지어내어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8월 13일 좌승지 신 조(趙)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오(1654) 8월 23일

동래부사 임(任)의 장계 내용에 운운.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平成政]가 나와서 말한 내용 중, 사지역관(事知譯官)을 진작 9-10월 내로 들여보내는 일에 대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의거하여 계하하기를, 이 장계 내의 문답한 사연을 보면 이야기가 비록 많으나, 그 주관하는 일은 통신사의 행차 기일을 미리 알리고 사지역관을 보내도록 청하는 두 건에서 벗어나지 않거니와, 서계 외면에 적은 것이 비록 혹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경시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예전 형식을 어겼으니 다투어 변론하여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그쪽의 원 서계를 받아 올려 보내기를 기다린 뒤에, 통신사를 차출하여 보내는 일은 묘당에 명하여 품신하여 확정하시며, 회답서계는 승문원에 명하여 지어서 보내도록 하고, 접위관은 본도에서 수령을 택하여 편의대로 접대하고 하고, 경접위관(京接慰官)은 내려 보낼 필요가 없으며,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가 이미 도주의 심복이고 또 에도에서 나왔으며, 예사로 왕래하는 차왜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듯하니, 조금 넉넉하게 접대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잃지 않는 것이 적절할 듯한데, 지난 해 후지 나리가다의 사례대로 세 차례의 잔치 예단을 마련하여 내려 보내고, 압물(押物)과 시봉(侍奉) 등에게도 또한 지난해의 사례대로 시행하되, 다만 반중이 17명이나 되니 이는 실로 전에 없던 규례이니, 10인만 마련하여 내려 보내며, 사지역관은 김근행(金謹行)인데 등룡을 주조하는 감동(監董)으로서 현재 본부에 있으니, 그로 하여금 겸하여 살피도록 하여도 무방하고, 차비역관 1인은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급급하게 차출하여 내려 보내게 하며, 양피(羊皮)는 어느 곳에 쓰려고 단지 5령(疋)만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반드시 달리 요구하는 물건이 있을 것이니, 그쪽에서 다시 문

142) 시원(試院) : 시소(試所). 과거 시험을 치르는 장소.

답하게 치계하기를 기다려 일시에 품의 조처하기로 하되, 응련(鷹連)은 명년이면 통신사가 갈 때를 당하여 본디 전례에 따라 보내는 응련이 있는데, 초여름 사이에 응련을 운반하는 것은 곤란하여, 이번 가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나, 그들이 바라는 바가 수량을 배로 하는 데 있고, 이는 등록에 부쳐져 시행해야 할 일과는 다름이 있어서, 해조에서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니며, 사지역관을 진작 9-10월 사이에 들여보내는 일도, 도주가 예도에서 나오면 문위역관(問慰譯官)을 보내는 것이 평상시 규정이니, 이름을 문위(問慰)라 하여 겸하여 도중의 사정을 탐지하게 하는 것도 또한 무방할 듯하되, 이 또한 해조에서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니기에, 이 두 일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8월 23일 행도승지 신 윤강(尹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복계하여 윤택을 받음.

갑오(1654) 8월 25일

동래부사 임(任)의 장계.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가 나온 연유 및 문답한 사연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17일 훈도 윤성립의 수본 내용에, “차왜의 반중(伴從) 수를 감한 일로 왜관에 들어갔더니, 차왜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통지하기를 ‘제가 만나서 의논할 일이 있어서 지금 만나보려 한다’고 하면서 서로 만나기를 청하거늘, 소인이 들어가서 차왜를 만나보았더니, 차왜가 발언하기를 ‘전일에 재차 서로 만났을 때 모두 바빠서 소회를 다 이야기하지 못하였는데, 제가 나올 때 도주가 정녕 저에게 분부하여 동래 영감 전에 자세히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통신사의 행차는 마침 대군(大君)의 신정(新政) 초기에 해당하니, 사신 세 관원이 뜻에 맞고 어긋남이 없어야만 매사를 조용히 상의하여 조처할 것인데, 소문이 작지 아니하니 이 뜻을 해조에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등룡도 속히 주조하여 만들어 기일에 앞서 들여 보내 달라고 하였으며, 이번 통신사의 행차가 예도로 들어가서 등룡은 일광산 다이유잉[大猷院]의 미나모도 이에히카리[源家康] 원당(願堂)에 두어야 마땅하거니와, 또한 곤겐도오[權現堂]에 예단이 없어서는 안되는데, 대개 두 곳은 일광산에 같이 있어서 취사하는 것이 어려울 듯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광채가 배로 더하고 교체하는 정이 더욱 두텁게 될 것이니, 이 뜻을 또한 모름지기 미리 동래 영감에게 고하여 이것을 해조로 전보(轉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며, 구청 물건으로는, ‘백납촉(白蠟燭) 100자루, 방백자(房栢子) 500개를 먼저 무역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거늘, 소인이 답하여 말하기를 ‘백납촉은 곧 얻기 어려운 물건이라, 100자루의 수량은 너무 많아서 결코 수량에 맞추어 허락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시종 다투어 변론하였더니, 차왜는 ‘100자루를 과연 수량대로 맞추기 어렵다면, 50자루는 백납

측으로 무역을 허락하고, 50자루는 황납촉(黃蠟燭)으로 대신하여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운운하였으며, 또 가져온 구청(求請) 발기[件記]를 내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첫날 상견할 때 제가 털미를 앓고 있어서 겨우 머리를 들 수 있었는데, 바쁘고 급한 사이에 가죽이 좋은 살아 있는 양[皮好活羊] 5마리를 잘못하여 양피(羊皮) 5령(令)이라고 판사(判事)에게 말을 하였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장부를 보니 실로 양피 5령이 아니라 곧 생양(生羊) 5마리였다' 라고 하거늘, 소인이 또한 왜서(倭書)를 보았더니 과연 '생양(生羊) 5마리. 피모(皮毛)에 광택이 있고 순백색 1마리, 순흑색 2마리, 흰색과 검은 색이 섞인 것 2마리'라고 명백하게 적어 놓았거늘, 소인이 말하기를 '문서가 이렇게 분명하거늘 첫날 어찌하여 양피(羊皮)로 잘못 전하였는가?' 하면서 이치에 의거하여 따져서 책망하였더니, 차왜가 답하여 말하기를 '출발할 때 도주가 발기를 내어 주었으므로, 저는 바빠서 상세히 보지 못함으로써 잘못 전달하게 되었는데, 이는 처음 와서 생소한 소치라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며, 소인이 또 서계의 '치서(致書)'와 '증서(贈書)'를 고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반복하여 따지기를 종일토록 하기에 이르렀는데, 차왜는 매양 '에도의 문서를 담당하는 승려 도춘(道春)이 관백의 분부에 따라 써준 서계를 제가 어찌 감히 임의로 고치겠는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계를 버리고 빈손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며, 억지 말을 많이 발언하면서 끝내 듣지 않아 극도로 민망하며, 반종의 일에 대하여는 소인이 '17명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결코 줄이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다투어 변론하였더니, 차왜가 스스로 다른 차왜와는 다르다고 하며 매양 스스로 높이는 말을 하다가, 한참 뒤에 단지 한 두 사람을 줄이는 것을 허락하거늘, 소인이 다시 다투어 따져서 5명을 줄이고 반종 12명으로 그 수를 약정하였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음. 훈도 윤성립(尹誠立)이 16일 차왜와 논란을 벌인 뒤, 이에 17일에 신이 다시 훈도 윤성립과 역관 김근행 등으로 하여금 혹 서찰로 타이르고 혹 말로 논란하여 기어코 서계를 고치라고 하였는바, 신이 이미 발언한 뒤에 저쪽에서 만약 듣지 않는다면 돌이켜 체면을 손상하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므로, 짐짓 역관으로 하여금 먼저 논변하게 하였거니와, 신이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가 하는 바를 살펴보건대, 교만한 마음을 끼고서 동류를 능멸하고 일도 또한 생소하여 관수가 하는 말도 오히려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니, 서계 한 가지 일 또한 편의대로 잘 조처할 형세가 아닌지라 극히 우려스러우며, 그 주인을 알려고 하면 마땅히 그 사신을 보아야 하는데, 도주가 통신사의 행차 기일이라는 긴급하고 중대한 일로 관백의 명을 듣고 차왜를 보내면서, 어찌 사례를 익히 아는 왜인이 없어서 이렇게 경박하고 망녕된 자를 가까이 하여 믿고서 사람을 차출하였으며, 또한 서식(書式)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이렇게 뜻밖의 시끄러운 사단이 있게 되었지만, 또한 저쪽으로서도 보탬이 없어서 만약 의도가 있는 일이 아니라면, 아마도 도주의 일 처리가 형편없는 소치인 듯함. 신은 다시 훈도와 역관들에게 서계를 고쳐 쓰는 일을 따져 다투라고 분부하였거니와, 반드시 일을 주관하며 접대하는

역관이 있는 다음에야 다투어 변론하는 일에 전력을 하게 할 수 있겠으니, 사지역관 1인과 차비역관 1인을 해조에 명하여 급히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일의 처리에 적합할 듯함. 차왜가 허다하게 운운하는 것이 비록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도, 저쪽에서 이미 발설한 것을 낱낱이 들어 수분하고 치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조치하기에 달려 있으며, 반종의 수 5명을 줄이고 백랍(白臘) 50자루를 빼 것은 참으로 다행이거니와, 위의 구청한 물건도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품지(稟旨)해서 확정하여 무역 허락을 지휘하는 것이 실로 합당하여, 아울러 황공하게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본부의 장계에 대하여 이미 복계하여 회하(回下)하였는데 또 이렇게 치계하였거니와, 접대하는 사지역관은 이미 벌써 김금행으로 겸하여 차출하였으며, 차비역관도 또한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최상으로 선발하여 차출하게 하였고, 예단 등의 물건은 이미 마련하여 계하시었는데, 그 구청한 황백납축과 생양과 방백자 등의 물건 및 일광산의 예단은, 김금행이 조정의 명령으로 접대를 겸하여 살핀 뒤에 반드시 다소간 문답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반종의 예단도 이미 10명으로 마련하여 보냈는데, 저쪽에서 비록 12명으로 정하였더라도 다시 줄일 도리가 없지 아니하며, 설혹 끝내 수를 줄이지 않더라도 본부에서 또한 추이(推移)하여 접대할 수 있으니, 아울러 다시 치계를 기다린 뒤에 일시에 품의 조처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8월 25일 좌승지 신 조(趙)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갑오(1654) 11월 초7일

경상감사 권(權)¹⁴³의 장계. 당일 도부한 이달 27일 성첩한 접위관 진주목사 이유창(李有淸)¹⁴⁴의 치보 내용임. 이달 20일 동래부로 달려가서 역관을 불러다가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에게 말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더니, 차왜가 답하기를 “역관을 내려보내어 위로하시는 말씀을 보내시니 천만 감사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으며, 또한 나온 지 이미 오래되어 속히 다례를 행하여 달라”고 운운하였는데, 본부의 부사는 마침 신병이 있어서 혼자서 다례를 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나, 이전부터 부사에게 병환이 있으면 접위관이 홀로 다례를 행하는 데는 이미

143) 경상감사 권(權) : 효종 4년(1653) 10월 12일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효종 6년(1655)까지 재임한 권우(權隅, 1610-1685)이다. 권우는 안동권씨로 자는 자명(子明), 호는 동곡(東谷)이다. 인조 7년(1629)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충청도와 전라도 관찰사를 거쳐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144) 이유창(李有淸, 1605-?) : 전주이씨로 자는 여원(汝遠)이다. 인조 11년(1633)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영월군수를 거쳐 진주목사로 부임하였다.

규정이 있다고 하기로, 부득이하여 이달 26일 목사가 관소(館所)로 나아가 차왜 다이라 나리 노부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1명 등에게 전례대로 다례를 베풀고,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등을 받았으며, 다례에서 술잔을 돌리는 사이에 차왜가 또 말하기를 “제가 통신사를 오도록 청하는 일로 에도에서 나왔으니, 에도에서는 지금 회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번 서계를 즉시 해조로 올려 보내고, 회답서계를 다음 달 열흘 이전에 급히 내려 보내면, 비선을 먼저 대마도로 보내어 에도로 전달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통신사의 행차는 반드시 내년 5월 그믐과 스무날 사이에 대마도에 도착하여야만 8월 초순 사이에 에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이 뜻을 어기지 말고 기일을 지켜 달라”고 하거늘, 목사가 답하기를 “회답서계를 급히 내려 보내는 일 및 통신사가 가는 기일 등의 일은 한결같이 말한 바대로 해조에 알리겠다”고 하였으며, 차왜가 또 말하기를 “통신사의 행차에 예단 응자(鷹子)는 대마도 도중에 도착하여 죽은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명년 여름철은 정녕 깃털을 가는 철에 해당하니, 미리 해조에 보고하여 구분하여 조치하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통신사의 행차가 되돌아 올 때 도주의 아들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가 마땅히 모시고 대마도로 올 것인데, 그때 비용으로 사용할 물건이 많을 것이니, 미리 이 뜻을 알고 적절하게 헤아려 선처해 달라”고 하였으며, “통신사 세 사신은 풍도(風度)가 있고 화합하는 관원으로 극구 선발하여 들어와야만, 행중(行中)에 이전과 같이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거늘, 목사가 답하기를 “응자에 대한 일은 통신사가 출발하는 기일이 이미 확정 되면 해조에서 전례에 따라 분정하는 규정이 있으며, 통신사를 극구 선발하는 일은 본디 조정의 처분이 있어서 이는 접위관이 감히 미리 알릴 일이 아니다”라고 운운하였더니, 차왜가 모두 그렇다고 하면서 답하기를 “알겠다”고 하였으며, 이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다섯 잔으로 예를 마친 뒤에 그대로 자리를 파하고 나왔거니와, 차왜의 반중은 당초에 17명이 나왔거늘, 동래부에서 역관을 시켜서 누차 서로 따져서 12명으로 줄여 정하였는데, 해조에서 또 10명으로 확정하여 분부하였으나, 차왜가 줄일 수가 없는데 또 줄인다고 하여 다투어 고집하며 듣지 않다가, 역관 등이 연일 준엄하게 물리쳤으나, 단지 어색한 폐단만 더할 뿐 조금도 들어줄 형세가 없는지라, 목사가 동래부사에게 물었더니, 부사의 뜻도 역시 서계의 중대한 일로 겨우 다투어 따져서 조정되었는데, 또 이런 사소한 한 두 명의 반중 일로 더불어 다시 따지는 것은 피곤한 일이 될 듯하다 하고, 관수(館守)가 이 일로 서신까지 바쳐서 10명 이외에 다시 1명을 더하여 먼 곳 사람을 위안하는 것이 실로 적합하다고 하였기로, 역관 이 형남으로 하여금 간신히 타일러서 반중 11명으로 조정하여 접대하였는데, 10명의 예단은 이미 내려왔거니와, 1명의 예단은 추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것이 실로 합당하겠고, 동 차왜가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등은 감봉하여 관찰사에게 올려 보내거니와, 이전부터 동래부사에게 혹 신병이 있으면 직접 장계를 올리지 못하고 접위관이 사유를 갖추어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장계로 알리도록 치료하였기로, 등록에 의거하여 이렇게 치료하오니, 도에서는 급속히 장계로 알리도록 치료하였기에, 동 서계 3통과 별폭 4통을 아울러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전에 다이라 나리노부의 서계를 고쳐 다듬는다는 한 조목은 이미 끝을 보았으니, 접대하는 일은 단지 전례대로 함이 마땅하고, 그 가운데 응련에 대한 일은 금년 가을부터 수량을 배로 하여 얻기를 청하고 또 거듭 청하였거니와, 추가로 3좌(坐)를 더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바람에 부응하라는 일로 묘당에서 이미 품의 확정하였으니, 이대로 타일러 거행하며, 통신사가 돌아올 때 도주의 아들이 마땅히 호송하여 올 것이니 적절하게 헤아려 선처하라고 운운한 일은 그 의도가 아마도 많이 언으려는 데 있는 듯하나, 청하는 물건은 지금 미리 헤아릴 수 없으니, 오직 그 때에 임하여 살펴서 조처함에 달려 있으며, 반종의 수를 더하자는 청은 본도와 본부에서 11명으로 상의하여 조정하였으니, 일의 형편을 참작하여 헤아리건대 반드시 등한한 것이 아니기에, 1명의 3차 잔치 예단을 전례대로 각기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로 하여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급하게 내려보도록 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11월 초7일 동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갑오(1654) 11월 16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에 시행되어야 할 여러 일은 계미년(1643) 사례에 의거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하되, 다만 그 때는 도주가 나열한 조목으로 말미암아 추가하여 보낸 사람이 많았으나, 지금은 줄여서 한결 같이 전례대로 마련하였는데, 문위역관이 되돌아온 뒤에 만약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품지(稟旨)하여 조정함이 어떠할지?

一. 사신이 출발하는 날짜 및 바다를 건너는 날짜는 문위역관이 되돌아 온 뒤에 관상감(觀象監)에 명하여 택일하여 거행함.

一. 사신의 반전(盤纏 : 노자) 등의 물자는 해조에 명하여 미리 마련함.

一.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계미년(1643) 사례대로 마련하여 지급함.

- 一. 사신의 장복(章服)은 부사 이상은 모두 당상관의 장복으로 상의원(尙衣院)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하게 함.
- 一. 일행 원역의 의복과 화자(靴子) 등의 물건은 공조와 제용감(濟用監)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함.
- 一. 사신의 형명기(形名旗)와 독(纛)¹⁴⁵은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함.
- 一.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는 본도에 명하여 정하여 보냄.
- 一.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印信) 한 개는 관자(關子 : 關防)를 갖추어 주조하되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고, 도장집[印家]과 관자 집[關家]과 쇠가죽 남라개집[南羅介家 : 문서통]을 한 바리 만들어 또한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대령하게 함.
- 一. 상선(上船) 두 척과 하선(下船) 두 척, 소선(小船) 2척에 격군을 함께 본도에 명하여 미리 먼저 수리하여 만들고 가려 선발하여 호송하게 함.
- 一. 상사(上使)의 자제 2원과 군관 6원, 노자(奴子) 2명. 부사(副使) 자제 2원, 군관 6원, 노자 2명. 종사관(從事官)의 자제 1원, 노자 1명. 왜통사(倭通事) 당상 2원, 당하 5원. 한통사(漢通事) 2원. 사자관(寫字官) 2원. 의원(醫員) 2원. 화원(畫員) 2원. 별파진검군관(別破陣兼軍官) 2인 등은 전례대로 각 해당 관청에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되, 포수(砲手) 2명은 계미년(1643)에 마상재(馬上才)를 도주(島主)가 나열한 조목으로 말미암아 들여보냈으므로 줄였는데, 지금은 포수를 보낼지 혹은 마상재를 들여보낼지 여부를 문위역관이 돌아온 뒤에 정할 것임.
- 一.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엄격하게 더 금단하고, 원역 등이 만약 법을 벗어나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에 돌아온 뒤에 일일이 조사 계품할 것임.
- 一.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에 명하여 찾아 지급하게 함.

145) 독(纛) : 군왕이 타고 가는 가마나 군대의 대장 행렬 앞에 세우던 의장(儀仗) 용의 큰 깃발.

- 一. 일행 원역은 각각 노자(奴子) 1명을 데려 감.
- 一. 사신 이하가 관문이나 나루를 건너가면 마땅히 간검(看檢)하는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계미년(1643) 사례대로 마련하여 만들어 지급할 것.
- 一.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계미년(1643) 사례대로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간 인물을 찾아 되 돌려 오기 위해 본조에서 만들어 주는 돈유공문(敦諭公文)을 가지고 찾아내어서 어루만 지고 보살피 데리고 나올 것.
- 一. 일본국왕에게 보내는 서계에는 전례에 위정이덕(爲政以德) 어보를 사용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함.
- 一. 일본국 집정과 대마도주와 수직왜와 수도서인 등에게 사신이 돌아 들어올 때 차등을 지 워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이대로 시행함.
- 一.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 말을 보낼 것.
- 一. 사신 일행에게 사용되어야 할 잡물은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계미년(1643) 사례에 의하여 상고하여 급히 마련하여 대령할 것.
- 一. 사신이 가져가는 예단은 일본국왕 및 집정 4인, 봉행 6인, 장로(長老) 1인 등 각 왜인에게 전례대로 차등을 지워 증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미리 마련 하게 하였는데, 수직왜에게도 9인의 수량을 마련하기로 하여 이 수량대로 마련하였거니 와, 그 가운데 혹 죽은 자가 있거나 혹 죄를 받은 자가 있으면 사신이 저쪽에 도착하여 보고 들어서 남아 있는 자에게만 나누어 증정해 줄 것.
- 一. 사신을 들여보낼 때 일본 집정과 도주 이하 수도서왜인 등에게 본조에서 서신을 보내고 증정하여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 때도 전례대로 서신을 보내니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마련하게 함.
- 一. 미진한 조목은 추가로 마련하여 시행함.

순치 11년(1654) 11월 16일 행도승지 신 윤(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 一.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일본국왕 이하 각처에 증정할 예물을 계미년(1643)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는데, 미리 마련하여 대령하라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였으니, 이 외에 만약 가감할 곳이 있으면 문위역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품지하여 확정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 一. 일본국왕 앞으로 보내는 예단. [서계가 있는데, 통은 은(銀) 장식 주홍 칠로 함]. [도서(圖書 : 도장)는 위정이덕(爲政以德) 어보로 함]. 대유자(大濡子) 10필. 대단자(大段子) 10필. 황조포(黃照布) 30필. 검은 삼베 30필.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50필. 인삼 50근. 범가죽 15장. 표범가죽 20장. 채화석(彩花席) 20장. 각색 붓 50자루.[색필(色筆) 30자루. 황필(黃筆) 20자루]. 청사피(靑斜皮) 30장. 준마(駿馬) 2필, 안장 구비. [이상 해당 관청에서 마련]. 유매떡[油煤墨] 50홀. 황밀(黃蜜) 100근. 청밀(淸蜜) 10기.[매 단지에 1말씩]. 어피(魚皮) 100장. 색지(色紙) 30권. [이상 본도에서 마련]. 응자(鷹子) 20연 중 [15연은 본도에서 마련, 5연은 강원도에서 마련].
- 一. 집정 4인에게 각각. [각기 서계가 있음. 통은 흑칠 납염(臘染) 장식].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가죽 2장.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마련]. 유매떡 20홀. 유둔(油菴) 3부. 화석(花席) 5장. [이상 본도]. 응자 1연. [강원도에서 마련].
- 一. 봉행 6인에게 각각. [각기 서계가 있음. 통은 흑칠 납염 장식].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가죽 1장. 황모필 20자루.[이상 해당 관청]. 유매떡 10홀. [본도에서 마련]. 응자 1연.[강원도에서 마련].
- 一. 대마도주에게. [서계가 있음. 통은 흑칠 납염 장식으로 하되 도주 및 장로와 수도서인 등에게 보내는 서계를 함께 한 통에 넣음].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인삼 5근. [이상 해당 관청]. 화석 5장. [본도에서 마련].
- 一. 수도서(受圖書) 3인에게 각각. [각각 서계가 있음].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범가죽 1장. [이상 해당 관청]. 화석 3장. 유둔 1부. [이상 본도].

- 一. 장로(長老) 1인. [서계 있음]. 인삼 3근.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당 관청]. 유매떡 10홀.[본도에서 마련].
- 一. 수직왜 9인에게 각각. [서계 없음].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황모필 1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화석 2장. 유매떡 5홀. [이상 본도에서].
- 一. 권현묘(權現廟)의 분향(焚香) 폐백. [당초에는 폐물을 한결같이 대유원(大猷院)의 사례대로 마련하기로 계하하였으나, 도주의 청으로 인하여 전량 예물을 감하고 그 대신 말로 헌폐(獻幣)함]. 준마 1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되 안장 없음].
- 一. 사신의 예단.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이상 해당 관청]. 오색지 50권.[본도에서 마련]. 황모필 각색 모두 100자루. 유매떡 100홀. [이상 해당 관청]. 채화석 20장. 유둔 10부. 백지 100권. [이상 전남도(全南道)에서 마련]. 석린(石鱗) 20근. [황해도에서 마련].
- 一. 대유원(大猷院) 폐백. 금단(錦段) 3필. 대화촉(大花燭) 2쌍. 대부용향(大芙蓉香) 30매. 채화석 10장. [이상 해당 관청]. 자기잔(磁器盞) 잔대 구비 1죽(竹). 대접(大貼) 3죽. 보시기[甫兒] 3죽. [이상 본도]. 석린 10근. [황해도에서 마련].
- 一. 사신 예단.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이상 해당 관청]. 오색지 50권. [본도에서 마련]. 황모필 각색 아울러 100자루. [해당 관청에서 마련]. 유매떡 100홀. [황해도에서 마련]. 채화석 20장. 유둔 10부. 백지 100권. [이상 본도]. 석린 20근. [황해도에서 마련].
- 一. 사신이 각처에 보내는 예단. 인삼 5근. 소은장도(小銀粧刀) 10자루. 색필(色筆) 50자루. 청심원(淸心元) 100알[丸].[의사(醫司)에서].
- 一. 권현묘의 분향 사용 물품. 백단향(白丹香) 2냥(兩). 은향합(銀香盒) 1부. 홍상건(紅床巾) 사라(紗羅) 1필. 주홍곡수좌(朱紅曲水座) 면지(面紙) 2장.[이상 해당 관청].
- 一. 승인(僧人)에게 면피(面皮 : 체면치레) 용으로.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30필. 흰 무명 50필. [이상 해당 관청].

- 一. 대유원(大猷院)의 향전(香奠) 사용 물품. 백단향 2냥. 은향합 1부. 홍상건 사라 1필. 주홍 곡수좌 면지 10장. 백납촉(白臘燭) 3쌍. 대부용향 3쌍. [이상 해당 관청].
- 一. 승인(僧人)에게 면피 용으로.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30필. 흰 무명 50필. [이상 해당 관청].
- 一.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 갈 잡물을 계미년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는데, 이 수량을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등의 각 도 및 해당 관청에다 급급하게 마련하라는 일로 이문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 一. 경상도에 복정(卜定)¹⁴⁶⁾ : 진간장[甘醬] 10섬. 간장(良醬) 1섬. 녹두가루 10말. 율무가루 1말. 청밀(淸蜜) 13말. 밀가루[眞末] 10말. 환소주(還燒酒) 150병. 밀계(蜜桂) 1,000 닢(立). 황촉(黃燭) 60자루 [각 1자루마다 무게 3냥씩]. 포육(脯肉) 20접. 전복 10접. 말린 해삼 1섬. 말린 홍합 1섬. 호두 1섬. 황률(黃栗) 1섬. 표고(禁古) 2말. 꽃감 40접. 잣 2섬. 인삼 8근. 백지 50권. 만화석(滿花席) 30장. 채화석(彩花席) 30장. 대유지(大油紙) 4권. 칠선(漆扇) 50자루. 유선(油扇) 200자루. 참기름[眞油] 7말. 녁장 붙인 유둔(油菴) 20부. 누룩[眞麴] 40원(圓). 콩[太] 6섬. 팥[赤豆] 7섬 [전세(田稅)로 바꾸어 장만]. 범가죽 7장. 표범가죽 3장. 군량(軍糧) 333섬 [전세(田稅)], 편포(片脯) 2접. 소금 5섬. 시슴가죽 1장. 흰 사발 15죽(竹). 흰 보시기 15죽. 흰 대접 15죽. 흰 접시 25죽. 흰 종지[白宗子] 15죽. 백자 대접 5죽. 백자 중발 5죽. 백자 접시 10죽. 백자 잔, 잔대 갖추어 8부. 백자 종지 3죽. 백자 사발 4죽. 백자 규화배(葵花杯) 잔대 갖추어 3부. 큰 차일[大遮日] 1부. 작은 차일[小遮日] 3부. 지의(地衣) 3부. 면석(面席) 3. 독석(篤席) 3. 단석(單席) 3. 화방석(花方席) 3. 문방석(紋方席) 1죽. 고족상(高足床) 3. 안식(案息) 3. 작은 밥상[小食床] 3, 수반(手盤) 갖추어. 인안자(印鞍子) 1, 여러가지 갖추어. 교의(交椅) 3. 놋쇠 타구[鑪唾口] 3. 매[鷹子] 15연(連). 교자(轎子) 3. 놋쇠 촛대[鑪燭臺] 3쌍. 유지 포대[油紙袋] 4부. 작은 병풍[小屏風] 3. 작은 서안[小書案] 3. 사령 관대[使令冠帶] 10건. 모둔(毛菴) 3. 일산(日傘) 3. 바가지[瓢子] 대중소 24개. 평연(平硯) 3, 집[家]을 갖추어. 청산(靑傘) 3. 밥고리[食古里] 3. 화연(花硯) 5면(面). 우산(雨傘) 3. 체[篩子] 6. 대분토(大分土) 3. 요[褥] 3. 채칼[菜刀] 3. 소분토(小分土) 3. 용정(龍亭) 3. 큰 밥술[大食鼎] 4. 관대 가죽상자[冠帶皮箱] 3. 향꽃이[香童子] 3. 중간 밥술[中食鼎] 5. 작은 밥술[小食鼎] 4. 좌철(坐鐵) 3. 부쇠

146) 복정(卜定) : 조정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함에 있어서 각 지방에 그 책임을 나누어 정하는 일.

[火鐵] 2, 석소(石巢) 갖추어. 부젓가락[火筯] 3쌍. 적쇠[炙金] 3쌍. 놋소라[鑪所羅] 3. 놋대야[鑪大也] 3. 놋요강[鑪要光] 3. 칠기 쟁반[漆平盤] 4죽. 용탕 숟가락[禿匙] 3단(丹). 큰 놋숫가락[鑪大匙] 3. 놋젓가락[鑪筯] 3매이(每伊). 놋쇠뚜껑[鑪盖子] 3. 행주치마 3. 수건(手巾) 3. 홍면비적(紅綿臂赤) 3쌍. 유기 새옹[鑪沙用 : 작은 놋쇠 솥] 3, 아리쇠[阿利金 : 삼발이] 갖추어. 도롱(塗籠) 4바리(駄), 잡물을 넣어 담기 위해. 차보시기[茶甫兒] 3, 차숟가락과 차탁 갖추어. 놋주전자[鑪酒煎子] 3. 좌면지(座面紙) 30장. 항아리[缸] 4좌. 독[瓮] 11. 어피(魚皮) 80장. 오색지(五色紙) 100권. 흰 사기 항아리[白沙缸] 10 [예단의 청밀을 담기 위해서]. 장계지(狀啓紙) 12권. 건지황(乾地黃) 10냥. 옥리인(郁李仁 : 산앵두씨) 3근 9냥. 마황(麻黃) 7냥. 황기(黃芪) 3근. 맥문동(麥門冬) 10냥. 천문동(天門冬) 1근. 길경(桔梗 : 도라지) 2근 13냥. 적복령(赤茯苓) 10냥. 시호(柴胡) 10냥. 백출(白朮) 3근 8냥. 방풍(防風) 2근 12냥. 산약(山藥) 3근 11냥. 천남성(天南星) 4냥. 마른 모과[乾木瓜] 5냥. 세신(細辛) 5냥. 인동초(忍冬草) 2근. 백작약(白芍藥) 2근 10냥. 당귀(當歸) 1근. 백복령(白茯苓) 10냥. 천궁(川芎) 7냥. 승마(升麻) 5냥. 전호(前胡) 3냥. 향유(香薷) 2근. 강활(姜活) 5냥. 백지(白芷) 3냥. 창출(蒼朮) 3근 8냥. 황금(黃芩) 8냥. 박하(朴下) 3냥. 적작약(赤芍藥) 2근 8냥. 황백(黃柏) 10냥. 백편두(白扁豆) 4냥. 택사(澤瀉) 6냥. 대황(大黃) 8냥. 소엽(蘇葉) 7냥. 상백피(桑白皮) 5냥. 반하(半夏) 8냥. 애엽(艾葉) 5두름[冬音]. 목통(木通) 10냥. 차전자(車前子) 2냥. 오미자(五味子) 1근. 형개(荊芥) 4냥. 상품의 가는 도롱이[上細簍] 3부. 상품의 언치[上鞍赤] 3부. 백적(白赤) 3부. 유삼(油衫) 3부. 달치[月乙赤] 3부. 차상품의 익힌 도롱이[次熟簍] 44부. 차상품의 언치[次鞍赤] 42부. 짚도롱이[草簍] 25부. 화자(靴子) 정하게 구비하여 3부.

- 一. 전라도(全羅道) 복정(卜定) : 응자 8연. 울무 2말. 청밀 3말. 전복 10접. 말릴 해삼 1섬. 말린 홍합 1섬. 호두 1섬. 곱감[乾柿子] 30접. 백지 90권. 화석 20장. 칠선(漆扇) 50자루. 유선(油扇) 400자루. 백첩선(白貼扇) 30자루. 생강 6말. 표고버섯 2말. 진말(眞末) 10말. 밀계(蜜桂) 1천 닢. 초[燭] 60자루 [매 자루 무게 3냥씩]. 미선(尾扇) 20자루. 참기름 10말. 녁장 불인 유둔 10부. 여섯 장 불인 유둔 10부. 참누룩(眞麴) 5동. 조기[石首魚] 2,000마리. 건어(乾魚) 40속(束). 도련지(搗鍊紙) 3권. 초주지(草注紙) 20권. 녹두 2섬. 대절먹[大節墨] 50정(丁) [25정을 추가 분정함]. 중절먹[中節墨] 50정. 포육(脯肉) 30접. 흰모시베 24필. 참깨[眞荏子] 2섬. 편포(片脯) 2접. 말린 노루[乾獐] 4마리. 참쌀 1섬. 말린 꿩[乾雉] 20마리. 김[海衣] 40접. 소금 4섬. 생울(生粟) 2섬. 녹두가루 5말. 범가죽 6장. 사슴 가죽 2장. 표범 가죽 3장. 차일 1부. 휘장[帳] 1부. 오색지 15권.

一. 충청도에 복정 : 응자 2연. 울무 2말. 청밀 4말. 밀가루 10말. 밀계(蜜桂) 1,500넙. 초[燭] 80자루, [매 자루 무게 3냥씩]. 대절떡 50정, [25정을 더함]. 중절떡 50정. 녀장 붙인 유둔 10부. 여섯 장 붙인 유둔 10부. 참누룩 40원. 조기 1,500속(束). 건어 40속. 도련지 2권. 초주지 10권. 참깨 1섬. 흰 모시베 30필. 편포 2접. 개자(芥子) 3말. 찹쌀 2섬. 말린 꿩 20마리. 범가죽 3장. 표범가죽 1장. 차일 2부. 휘장[帳] 3부. 행수목(行需木) 1동.

一. 강원도에 복정 : 청밀 10말. 밀계 1,500넙. 초[燭] 100자루 [매 자루 무게 3냥씩]. 포육 10접. 말린 해삼 1섬. 말린 홍합 1섬. 인삼 12근. 참기름 3말. 편포 2접. 말린 노루 5마리. 말린 꿩 60마리. 미역[甘藷] 200근. 좁쌀[粟米] 7섬. 메밀[木米] 3섬. 황밀 30근. 오미자 2말. 표범가죽 1장. 배[生梨] 100개.

一. 함경도에 복정 : 응자 8연.

一. 양 의사(醫司)에 복정 : 황기 3근. 도라지 2근 13냥. 백출 3근 8냥. 방풍 2근 12냥. 산약 2근 10냥. 백작약 2근 11냥. 산앵두 씨 2근 10냥. 창출 3근 8냥. 적작약 2근 8냥.

一. 황해도에 복정 : 백렴(白蘘) 5근.

一. 각 도의 응자 분정 수

경상도 19연. 강원도 15연. 함경도 8연. 전라도 8연. 충청도 2연. 이상 응자 52연.
국왕 전 20연. 집정 4인에게 각 1연. 봉행 6인에게 각 1연. 반전(盤纏) 15연. 나머지 수 7연.

갑오(1654) 11월 19일

경상감사 권우(權堦)의 장계. 통신사가 이미 차출되고 출발 기일이 멀지 않은데, 바다를 건너갈 배는 비변사에서 분부하여 이미 좌우 수영에 분정하였거니와, 전례를 상고하면 바다를 건널 때 각 항목으로 들어가야 할 잡물이 극히 많은데, 반드시 미리 먼저 강구하여야만 때를 당하여 궁색하게 될 우려가 없을 수 있으며, 계미년(1643) 통신사 때 다른 도에 분정한 잡물이 미처 맞추어 같이 오지 않았으므로 궁색한 일이 많았다고 하니, 각 도에 분정한 잡물과 배에 사용될 여러 도구와 격군을 아울러 한결같이 이전의 등록대로 해조에 명하여 미리 분부

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통신사의 행차에 사용될 잡물은 한결같이 이전 등록대로 이미 계하하여 각 도에 분정하였는데, 이렇게 회이하며, 분정한 잡물은 기일에 맞추어 수송 납입하여 이전과 같이 궁색하게 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로 다시 더 여러 도에 신칙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11월 19일 좌승지 신 조(趙)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오(1654) 12월 18일

예조의 계목에 이르기를, “일본 통신사가 가져갈 예단 및 여행 중에 사용할 잡물은 한결같이 전례대로 하고, 한편으로 계미년(1643)에 추가로 마련한 수량을 보태어 넣으라고 이미 계하하여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전례에 의거하여 각 도에 분정하였는데, 계미년(1643)에 뒤늦게 추가로 마련한 물자는 출발 기일이 촉박하여, 인삼 5근, 대절참먹[大節眞墨] 50정, 작은 은장도 10자루, 색필 50자루는 해당 관청에서 준비하여 보내고, 백작약 등 9종을 아울러 약재 45근은 양 의사(醫司)에서 준비하여 보냈는데, 이제는 출발 기일이 아직 멀었으니, 은장도와 색필 등과 같이 지방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은 비록 부득이 그대로 해당 관청에 책임지우지 않을 수 없으나, 인삼과 참먹은 해당 도에 보태어 분정함이 마땅하며, 또한 그 때는 일광산에 치제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폐백 피륙과 돛자리, 그릇, 향촉 등의 물건을 또한 준비하여 보냈지만, 이번에는 치제를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으니, 문위역관이 문답하고 되돌아 온 뒤에 따라서 품의하여 조처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진교에 “윤택한다” 하셨음.

갑오(1654) 12월 29일

동래부사 임(任)의 장계.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平成政]가 도해역관(渡海譯官)이 오기를 고대하다가, 도해역관 이형남(李亨男)이 내려온 뒤에 돌아가기를 매우 다급하게 재촉하는데, 새 부사 신 정창주(鄭昌胄)¹⁴⁷가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며, 신의 질병이 이전과 같기로 부득이

147) 정창주(鄭昌胄, 1606-) : 자는 사흥(士興), 호는 만사(晩沙), 또는 만주(晩洲)이다. 인조 15년(1637)에

접위관 진주목사 신 이유창(李有滄)이 이달 19일에 동 차왜의 상선연을 혼자 베풀었는데, 이달 20일 도부한 접위관 진주목사 이유창의 이문 내용에, “이달 19일 목사가 관소로 나가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 및 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1명 등의 상선연을 전례대로 베풀고, 예조에서 내려 보낸 예단을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주고, 그대로 ‘여러 달 오래도록 지체하였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위로하였더니, 차왜가 답하기를 ‘저희들이 오래도록 지체하였을 뿐 아니라, 접위관께서 접대하는 일 때문에 여러 날 머물러 계셨으니 매우 미안할 뿐 아니라, 누차 연회를 베풀어 증정하시는 예단을 매양 넉넉하고 후하게 주시니 더욱이 황공하고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말씀드릴 바를 모르겠다’고 하며 재삼 사례하여 마지않았으며, 또 말하기를 ‘저희들이 통신사를 오게 청하는 일로 나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 이제 장차 바다를 건너면서 세 사신의 직함과 성명을 알고싶다’고 운운하거늘, 목사가 답하기를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것은 조정에서 이미 확정하였는데, 사신의 직함과 성명은 현재 또렷이 알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차왜가 말하기를 ‘제가 비록 미처 들어 알지 못하고 간다 하더라도, 세 사신의 직함과 성명은 뒤에 대마도로 되돌아가는 편에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미리 예조에 통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풍도(風度)가 있고 화협(和協)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이전에 청한 바처럼 여행 중에 어긋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거늘, 목사가 답하기를, ‘접위관은 오로지 보고하여 알리기만 하고, 조정의 처분에 달려 있다’고 하였음. 차왜가 또 말하기를 ‘응련(鷹連)이 갖을 가는 것이 바로 4-5월 경인데 미리 이 뜻을 알아서 전일에 진달한 것처럼 섬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우려가 없게 해 달라’고 하거늘, 목사가 답하기를 ‘이는 일찍이 이미 해조에 보고하여 알렸다고 하였음. 아홉 잔으로 예를 마친 뒤에 그대로 파하여 나왔고, 사연을 치통하는 일’이라고 이문하였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문위역관 이형남이 내려갈 때 부사(副使)의 교체 여부를 미처 조정하지 못하였기로, 이형남이 와서 묻기를, “세 사신의 직함과 성명을 생각건대 도주가 반드시 물을 것인데 어떻게 대답할지?” 운운하거늘, “네가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생각건대 반드시 조정될 것이니, 차출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먼저 내려가라”고 분부하여 보냈는데, 동 부사를 유창(兪場)으로 차출한 뒤에 즉시 파발로 형남에게 통지하였거니와, 설혹 형남이 미처 들어 알지 못하고 갔더라도, 관왜(館倭)의 왕래가 이어지고 있으니, 아무 아무가 차출된 것을 비록 별도로 통지하더라도 저절로 알 수가 있겠으며, 응련은 수량을 넉넉하게 하여 더 보내달라는 일로 차왜 다이라가 전후로 누누이 이야기하여, 묘당에서 복계하여 두 세 연을 더 보내도록 허락하였으나, 계미년에도 또한 더 보냈으므로 분정할

문과에 급제하고, 효종 5년(1654)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승지를 역임하였다.

때 계미년(1643) 수량에 의거하여 더 정하였으니, 이제 짐짓 그냥 두었다가 문위역관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그가 말하는 바를 듣고 품의 조처함이 적당하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12월 29일 좌승지 신 김(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갑오(1654) 12월 26일

경상감사 권우가 이달 11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방금 계하하기를,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해야 할 여러 일은 계미년(1643) 사례에 의거하여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는데, 그 중 상선(上船) 2척과 하선(下船) 2척, 소선(小船) 2척에 격군(格軍)을 아울러 본도에서 미리 먼저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하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음. 일시에 도부한 동 예조의 관문 내용에, “방금 통신사가 가져가는 예단을 전례대로 마련하고, 이외에 가감할 곳이 있으면 문위역관이 되돌아 온 뒤에 조정하며, 일본국왕 이하 예단 잡물을 먼저 마련하라는 일로 관문한다” 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방금 통신사 잡물을 한결같이 이전의 등록의 수량대로 마련하라고 계하하였으니, 관문 후록을 상고하여 분정을 받은 각 지방관에서는 조처하여 준비하고, 다시 분부하는 즉시 수송하여 동래로 납부하라는 일로 관문을 보낸다”고 하였음. 동 바다를 건너 갈 배 6척은 좌우 수영(水營)에 분정하여 만드는 것이 전례이기로, 일찍이 이미 두 수영에 분정하였거니와, 수영에 있는 등록을 상고하였더니 배에 사용될 잡물은 본도 및 호남과 호서에 분정하였으며, 격군은 전라도와 본도에 분정하였는데, 이제 이번 관문 내용에는 격군도 아울러 본도에서 미리 일일이 만들고 간택하라 하였고, 다른 도에 분정하는 여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는바, 그 연유를 모르겠음. 대개 배 한 척에 들어가는 잡물로는, 풍석(風席) 190넙(立), 숙마(熟麻) 새끼줄[線索] 1,225발[把], 숙마(熟麻) 각 항목의 밧줄[注索] 971근 7냥, 산마(山麻) 각 항목의 밧줄 679근 14냥, 초둔(草苴) 40번이라고 등록에 실려 있는데, 6척의 배의 대소가 같지 않고, 들어가는 잡물 또한 그 선체의 대소에 따라 가감되니, 이로 미루어보면 배 한 척에 들어가는 그 수량이 매우 많음을 알 수가 있음. 계미년(1643)에 충청도에 분정한 바 초둔 42번, 풍석 167넙, 숙마 새끼줄 1,008발, 숙마 791근, 산마 379근 8냥이라, 두 도에 배정된 것이 두 척의 선박에 사용되는 양에도 차지 않으며, 선박의 못으로 사용할 정철(正鐵)에 있어서도 배 한 척에 들어가는 그 수량이 또한 많으나, 원래 호남 호서에는 분정하지 않고 모두 본도에서 마련하였으며, 6척 배의 격군 302명 중에서 전남도에 분정한 격군은 단지 40명이고, 그 나머지 262명은 본도에서 정하여 보내고, 또한 자장목(資裝木)을 갖추어 지급하는 규정이 있거니와, 계미년(1643)에도 배에 들어갈 잡물은 들어갈 수량의 다소가 분명치 않아 각도에 분정한 물건도 태

반이 부족하여 본도에서 임시로 갑자기 장만하였는데, 이번에는 전례에 분정한 물건마저도 다른 도에 분정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해조에서 등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여 이렇게 된 소치인지라, 동 선박에 사용될 잡물 및 격군을 해조에 명하여 전례를 참고하여 그 들어갈 분량을 추가로 마련하여 호남과 호서에도 균일하게 분정하게 하며, 이번에 해조에서 마련한 예단 물종 및 반전 잡물을 계미년(1643) 등록과 비교하면 가감된 곳이 많은데다가, 호조에서 마련하는 것과 다른 도에 분정한 것을 아울러 뒤섞어서 본도에 분정하였는바, 계미년(1643) 통신사 때 추가로 고쳐 마련한 일은 해조의 등록에 실리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어긋나는 차이가 있게 된 것인지, 해조의 등록이 혹 산실되었는지, 명백하게 조정하지 않고 각 지방관에 분정하는 것은 안되겠기로, 전후의 물종이 어긋난 차이가 있는 곳을 기록 성책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니, 해조에 명하여 한결같이 전례에 의거하여 급속히 조정하여 분부하실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 내의 사연을 살펴보니, 거기에 누누이 이야기한 것은 배에 사용될 잡물 및 격군을 다른 도에 분정하지 않았다는 일 및 예단과 반전(盤纏) 잡물을 계미년(1643) 등록에 비하여 가감한 것이 많다는 일이거니와, 당초 통신사 사목(事目)을 계하할 때, 계미년(1643) 사목을 가져다 상고하니, 상선 2척과 하선 2척, 소선 2척에 격군을 아울러 본도에 명하여 미리 먼저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하게 한다고 실려 있었으며, 분정등록에도 또한 다른 도로 분정하여 행회한 일이 없으므로, 단지 계미년(1643) 원 단자(單子)를 베껴 적어 계하하여 본도에 분부하였는데, 잡물 및 격군 분정의 수를 이렇게 명백하게 치계하였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그 때 담당 관리가 살피지 아니하고 등록에 실어놓지 않은 소치임. 통신사의 행차에 해당 도만 그 고통을 지나치게 받으니, 다른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아울러 책임지우는 것은 불가하여, 잡물과 격군 등은 한결같이 계미년에 분정한 수대로 시행할 것이며, 예단과 반전의 잡물 가운데 약군(若君)과 위덕원(威德院), 일광산(日光山)의 예단은 이번에는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계미년(1643) 사행이 출발하기에 임하여 추가로 마련한 물건은 다른 도에 미처 분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해조에서 가져다 장만한 것을, 이번에는 각 도에 분정하였으니, 이것이 가감이 있게 된 까닭이거니와, 그 가운데 본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및 달리 추이(推移)하여 감할 수 있는 물건은, 본도에서 올려 보낸 성책 및 본조에 보관한 등록을 상세히 상고하여 다시 품의 조처함이 마땅하니, 이 뜻을 호남과 호서 감사에게 아울러 행회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12월 22일 우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본도에서 올려보낸 성책 및 본조에 보관하는 등록을 상호 참고하였더니, 계미년 단자 가운데 황밀 100근을 본도에 분정

하고, 황조포(黃照布) 30필을 해조에 분정하였는데, 그 때 감사가 마련하기가 어려운 형편을 거론하면서 바꾸어 분정할 것을 청하였거늘 장계대로 바꾸어 정하였다가, 그 사행이 출발하기에 임박하였을 때 황조포를 해조에서 갖추어 보내었는데, 이는 해조에서 한 때 변통한 것으로 원래 입계하여 조정한 일이 없었으며, 통신사의 행차에 해조에서 마련하여 보낸 물건은 한정이 없기로 한결같이 계미년 당초 계하한 공문에 의거하여 각각 두 곳에 분정하였는데, 황밀은 본도에서 마련하고 황조포는 해조에서 마련해 보내는 일로 다시 신척하였음. 유매떡[油煤墨]은 계미년에 마련하여 보낸 수량 395정이 모두 본도에 분정하였다가, 그 뒤 본도의 장계로 말미암아 해서(海西 : 황해도) 및 호남 호서에 280정을 옮겨 분정하였는데, 계미년(1643)에 추가로 마련한 반전으로 호조에서 장만한 것은 이미 벌써 호남 호서로 옮겨 분정하였으니, 이제 또 더 분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번에 해서에 분정하지 않은 것은 일광산에 별도로 사용할 예단이 있을까 우려해서이고, 또한 서쪽 지방의 물력을 염려하여 짐짓 분정하지 않았는데, 본도에서는 또한 혼자 담당하는 일이 많아서 번민한다고 일컫는 것은 당연하니, 본도에 분정한 유매떡 245정 가운데 110정은 황해도로 옮겨 분정하며, 도해역관이 되돌아 온 뒤에 만약 특별히 사용할 일이 있다면 각 도 및 해조에서 대략 추가로 분정함이 마땅하고, 인삼은 계미년(1643)에 분정할 때 8근을 본도에 분정하고 12근을 강원도에 분정하였고, 또 5근은 사행이 출발하기에 임박하여 해조에서 장만한 것을 취한 것이므로, 이번에는 본도에 3근을 더하여 분정하고, 2근은 강원도에 분정하였는데, 본도에 3근을 더 분정한 것을 걱정하니, 본도의 일의 형편을 또한 보살피야 마땅하기에, 강원도에 추가로 분정한 수량과 함께 일체 줄여서 없애고, 해조에 명하여 한결같이 계미년(1643) 사례대로 마련하여 보내게 하며, 각종 약재는 계미년(1643) 당초 마련한 수가 극히 적었으므로, 출발하기에 임박하여 추가로 마련하는 일이 있었으나, 미처 지방에는 분정하지 못하고 의사(醫司)에서 책임지고 장만하였지만, 이제 의사의 물력이 또한 지탱하기 어려우니, 전일에 하지 않던 일을 또 다른 도에 과급하여 분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아울러 본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계하하였더니, 본도에서는 계미년(1643) 등록에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오로지 의사에 책임지우거나 다른 도로 옮겨 분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위와 같으니, 반은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게 하고 반은 의사에 명하여 마련하여 보내게 하며, 백렴(白藪)은 해당 의사에서도 항상 공물 수량이 적다고 하여, 생산되는 황해도에 분정함이 마땅하니, 해조 및 각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12월 26일 행도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을미(1655) 2월 25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통신사의 출발이 멀지 않은데 이형남이 되돌아 온 뒤 품신하여 정할 일이 많으나, 이형남이 아직도 돌아온다는 보고가 없으니 매우 괴이하고 의아합니다. 이

전에 계미년(1643) 통신사를 들여보낸 것과 출발 기일을 아울러 모두 저쪽에 알렸으니, 이제 또한 자문(咨文)을 보내는 것은 묘당에 명하여 의논하여 조처함이 어떠할지?”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음.

을미(1655) 3월 초2일

문위역관 이형남과 박원랑(朴元郎)¹⁴⁸ 등의 수본 내용임. “소인 일행이 지난해 12월 27일 날이 밝아서 부산 앞바다에서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니, 풍량이 하늘에 닿아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멀미로 인사를 살피지 못하였는데, 겨우 배를 통제하여 해시(亥時) 무렵에 대마도의 악포(鰐浦)에 도착하였고, 기다리던 왜인 및 별송(別送) 두왜(頭倭) 후지 자에몽[藤左衛門]이라 이름을 칭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육지에 내리니, 즉시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平威政]가 그 후지 자에몽[藤左衛門]을 데리고 와서 만나보고는 도주의 말로 문안하였음. 28일 미시(未時) 쯤에 발선하여 60리를 가서 금포(金浦)에 멈추어 자고, 29일 묘시(卯時)에 발선하여 80리를 가서 압뢰(鴨瀨)에 도착하니, 도주가 두왜 후루카와 간헤이에이[古川勘兵衛]라 이름을 일컫는 자를 보내어 은근이 위로하고는, 인하여 뜻을 올려 발선하여 80리를 가서 미시 쯤에 부중(府中)에 도착하여 즉시 육지에 내렸는데, 도주가 두왜 2인을 보내어 은근히 치사(致謝)하였음. 정월 초1일은 곧 새해인지라, 도주 이하 노소 장관(將官)이 서로 축하하느라 분주하여 접촉하지 못하다가, 초5일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 등 5인이 관소에 와서 보고는, 도주의 뜻을 전달하여 말하기를, ‘즉시 접촉하는 것이 당연한 예이지만, 그러나 신정(新正)일 뿐 아니라, 근래에 추위에 건강을 손상하여 진작 접촉하지 못했으니 허물하지 말라’고 하였음. 도주의 병에 차도가 있는 뒤 13일 오시(午時)에 도주의 성 안에 갔더니. 봉행 두 사람이 문 밖에 나와서 맞이하여 헐소청(歇所廳)으로 인도하여 들어갔는데, 도주가 의관을 갖추고 나와 본청(本廳) 정단(正壇)의 동벽(東壁)에 앉고, 별쪽으로 부친 잡물은 미리 먼저 차단(次壇)에 배치하고서, 문위서계(問慰書契)를 다이라 나리노부가 가지고 앞서 인도하여 차단에 이르러 소인에게 주기에, 소인이 받들어 가지고 몇 걸음 쯤 나가니, 봉행 1인이 꿇어앉아 받아서 북벽(北壁)의 탁자 위에 봉안하였고, 도주가 일어나자 소인 등이 재배례를 행하고, 도주가 담으로 읊을 하였으며, 소인 등이 도주 앞으로 나아가 조정의 명령을 말하기를 ‘태수께서 오래에도에 있다가 폐단 없이 영광스레 되돌아 왔기에, 특별히 도주의 노고를 생각하여 저희들을

148) 박원랑(朴元郎, 1620-?) : 무안박씨로 자는 원지(元之)이다. 인조 23년(1645)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였으며 교회(教誨)와 주부(主簿)를 역임하였다.

보내어 위문하였다'라고 하였더니, 도주가 말하기를, '귀국이 안녕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람을 보내어 위문하시니 감사하기 그지 없다' 라고 하고는, 그대로 토배(土俵)로 세 잔을 마신 뒤에, 또 말하기를 '통신사는 이미 차출되었는가? 직함과 성명을 상세히 말해 달라'고 운운하거늘, 소인이 답하기를 '사신은 현재 아직 차출되지 않았 미처 듣지 못하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지난 해 차왜가 갈 적에 이전보다도 직급이 높고 화협(和協)¹⁴⁹ 할 사람을 차출해 보내 달라는 뜻으로 말을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가?'라고 하기에, 소인이 답하기를 '사신의 왕복이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본디 이전의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만 직급이 높은 사신을 별도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은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운운하며 준절하게 물리쳤더니, 다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화협'에 대하여는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平成政]가 부산에 갔을 때 일찍이 자세히 진술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이미 통촉하고 있는데 어찌 꼭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주가 말하기를 '품고 있는 사연이 많은데, 달장로(達長老)는 곧 깊숙이 거처하다가 처음 온 사람이라, 두 나라의 접대하는 규정을 모르며, 몸을 숨겨 방관하고 있으니 허다한 이야기를 다 토로하지 못하였다' 운운하고는 들어간 뒤에, 달장로와 만쇼잉 수승(首僧)과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 등과 밥상을 마주하여 잔치를 베푼 뒤에 날이 저물어 파하였습니다. 21일 달장로가 그 절로 청하여 잔치를 하였는데, 곧 이폐이양[以厓庵]이었습니다. 대청 북쪽 벽 탁자 위에 「조선국왕전하만만세(朝鮮國王殿下萬萬歲)」라고 한 전패(殿牌)가 있기에 소인이 의관을 갖추어 전패 앞에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는 즉시 편복(便服)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장로는 재삼 안부를 묻는데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있는 듯하였습니다. 자리를 파할 무렵에 장로가 말하기를 '지금 대군 앞에서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은 심술이 불량하니 장차 통신사가 출발할 적에 문서를 은근하게 만들어 보내어 탈을 잡히지 않도록 함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기에, 소인이 말하기를 '통신사의 행차에 오가는 문서는 본디 이전의 규정이 있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장로의 지나친 우려가 아닌지?'라고 하고는 파하였습니다. 26일 도주가 별연(別宴)이라 칭하면서 두왜를 보내어 간청하거늘 도주의 성 안으로 갔더니, 봉행 두 사람이 나와서 인도하여 후당(後堂)에 들어갔는데, 이 당(堂)은 곧 도주가 특별히 통신사를 위하여 지은 집이라 하는데, 극도로 화려하였습니다. 도주가 편복으로 나와서 또 별당으로 인도하여 들어가 좌우 사람을 물리치고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 등 몇 사람만 불러서 종이 한 장을 내어 보이는데, 곧 통신사가 있었을 때 여러 곳에 보낸 서계 및 예단과 예의 절차의 일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도주가 소인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여 재삼 읽어 주며 말하기를 '선대군(先大君) 때는 귀국의 사신이 누차 왕복하여 사정을 익히 알았기에 비록 비방하는 말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헤아려 조치하였는데, 이제는 새 대군이

149) 화협(和協) : 서로 마음을 툇 털어놓고 협의함.

연소하고 유약하여 일의 체면을 알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매우 급하게 화를 내며, 그 밖의 여러 집정(執政)들은 잘 보여 기분을 맞추는 것을 위주로 하니 장래에 난감한 형편을 이루 말로 다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귀국에서는 매양 공갈한다고 트집을 잡거나 혹은 지휘를 받는다고 억측하니 감히 진달할 수 없을 듯한데, 그렇지만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는 곧 두 나라의 큰 일인지라, 저는 두 나라 사이에 처하여 피차의 형세를 진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귀국에서 어떻게 알겠는가? 통신사를 들여보낼 때 귀국에서의 비용이 혹 적지 않을 득하나, 저 또한 통신사를 모시고 왕래할 때 여러 곳의 예단과 그 밖의 비용으로 드는 물건이 귀국보다 10배나 되니, 이 번민이 어떻겠는가? 통신사가 갔다가 올 때 일본 사람이 칭찬하면 저 또한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도 체면 없음이 어떻겠는가? 통신사가 만약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처신하면 일본에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일이 생길까 우려되니, 허다하게 허비되는 물자는 오히려 이야기 할 것도 못되며, 조정에서 보내는 뜻이 도리어 헛된 곳으로 돌아가서 당초 보내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지금 진술하는 것은 곧 미봉해보려는 계획이지 제 자신을 도모하려는 계획이 아니다. 첨지(僉知)께서는 귀국하여 예조 대신 앞에 잘 고하여 달라'고 하거늘, 소인이 답하기를 '보여 주신 20건 가운데 18건은 예조에 고하였으니 조처가 어떠할지는 모르겠거니와, 어필 및 권현묘(權現廟)의 향화(香火) 자금을 대한 것은 결코 예조에 돌아가 고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거절하였더니, 도주가 안색을 바꾸어 말하기를 '첨지의 소임은 피차간의 사정을 통하는 사람인데, 저의 하는 말을 예조에 전달하지 않겠다고 운운하는 이야기는 매우 타당하지 않다. 임진년(1652)에 귀국의 선대군(先大君) 어필 및 여러 재상이 제출한 시(詩)가 아직까지 일광산 동조(東照) 권현묘당에 있는데, 첨지께서는 어찌하여 문득 이렇게 발언하시는지? 이에야스[家康]의 태평(太平) 이래로 두 나라의 두터운 교분이 더욱 돈독하고, 저 역시 선조(先祖) 이래로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온갖 주선을 해 온 지 이제까지 60여년 동안 조금도 우호를 잃은 적이 없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수년 이전 이에야스[家康]의 묘당(廟堂)을 만쇼잉에 창건한 이후 대군(大君)이 장로를 보내와서 조석으로 분향하는데, 귀국에서 어찌 유념해 줄 일이 없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말하기를 '유념해 달라는 일은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자, 도주가 말하기를 '이에야스[家康]는 다이라 히데요시[平秀吉]를 공격하여 없애고 사신을 보내어 강화한 이후, 두 나라가 이렇게 평온한 것은 모두 이에야스[家康]의 덕이다. 조정에서 이에야스[家康]의 신의를 유념하여 주시어 특별히 향화(香火)의 자금을 허락하여 두 나라가 더욱 성신을 두텁게 한다면 대군이 기뻐함이 어떻겠는가? 제가 예도에 있을 적에 집정 등이 묻기를, 「권현묘당을 창건한 뒤에 조정에서 별도로 염려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기에, 제가 답하기를 대마도로 돌아간 뒤에 장차 이 말뜻을 고하면 생각건대 반드시 유념해 주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운운하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답하기를 '도주의 말

은 귀로도 들을 수가 없고 입으로도 말할 수가 없다. 히꼬미쯔[彦三]는 곧 도주의 아명(兒名)이 아닌가? 그 송사(送使)를 지금까지 없애지 않는 것은 일이 매우 근거가 없다'고 운운하며 시비를 많이 하였고, 더구나 이런 시일에 또 일선(一船)을 얻고자 하니 인심을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귀국에서는 단지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른다. 제가 비록 형편없으나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임오년(1652) 분의 히꼬미쯔[彦三] 도서(圖署)는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와 죠슈자[怨首座], 후지 도모나와[藤智繩] 등을 시켜 가지고 내어 보내면서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로 고쳐 적어 달라는 일로 진달하였더니, 조정에서 특별히 저희 섬이 척박함을 유념하시어 그대로 되돌려 주시어 지금까지 조정의 덕택을 감촉드리는데, 어찌 감히 이런 말을 발언하시는가? 새 대군이 전위(傳位) 받은 뒤로 대소 사정이 전에 비해 각기 다르므로, 다치바나 나리마사[橋成正]가 죽고 그 교대로 봉행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를 특별히 차출한 데는 그 의도가 있는데, 첨지는 어찌하여 생각하지 않는가? 가까운 시일에 마땅히 다이라 나리수케를 내보내어 각 조목의 조건을 예조에 상세히 진술하면 절로 변동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이제 첨지와 더불어 논란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답하기를 '왕년에 다치바나 나리마사가 부산으로 나가서 이 일을 동래에 자세히 진술하려고 하였으나, 동래영감께서 제멋대로 결코 장계할 수 없다는 뜻으로 타일러 거절하였으니, 이제 비록 다이라 나리수케를 부산으로 내보내더라도 따라 줄 리는 만무하며, 또한 지난해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가 가져간 서계 종이 위의 글자에 약조를 어긴 것이 있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예조에서 이치에 의거하여 준절하게 물리칠 때 다이라 나리노부가 부산 왜관의 두왜와 상의하여 고쳐 바친 것은 다행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주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 즉시 다이라 나리노부를 불러서 그 연유를 물었더니, 뚜렷한 일을 감히 숨기지 못하고, 부산에 있을 때 피차 간에 서로 버티며 여러 달을 지내다가 부득이 하여 관수 및 이대관왜(二代館倭)와 더불어 심분 상의하여 고쳐 적어 바쳤다는 뜻으로 일일이 곧바로 고하였더니, 도주가 책망하고는 말하기를 '치(致) 자나 증(贈) 자가 앞서의 규정에 어긋남이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도[道春]이 초고를 잡은 글자는 나도 그 사이에 손을 대지 못하는데, 하물며 네가 다른 나라로 나가서, 작지 않은 서계 문제를 나에게 고하지 않고 갑자기 혼자 독단하였으니, 모두 극형의 죄가 아닐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관수는 곧 제1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의 아들입니다. 다이라 나리노부가 죄를 받으면 그 자식은 그 가운데서 면하지 못하므로, 다이라 나리다카가 문득 말하기를 '다이라 나리노부는 연소한 사람이라. 일의 경중을 모르고 일 처리를 망녕되이 혼동하여 엄중한 법률로 처벌함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였으나, 못 사람이 보고 듣는데 어떻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다이라 나리노부 역시 도주가 총애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하던 말을 돌이켜 생각하더니 침묵하여 멈추었습니다. 소인이 말하기를 '다이라 나리노부가 도주에게 품의하지 않고 임의로 고쳐 적은 것을 책망하는 것은 과연 그렇지만, 도[道春]이 만든 초고를 감히 그 사이에

손을 대지 못한다고 운운한 이야기는 실로 그 뜻을 모르겠다.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예조에서 전례대로 집정에게 서계를 보내는 규정이 있는데, 그 때 회답서계 종이에 만약 치(致)나 증(贈) 자를 적어 준다면 사신이 묵묵히 받겠는가? 도주의 말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였더니, 도주가 말하기를 '제가 다이라 시게오키[平調興]와 서로 송사를 할 때, 도순이 힘껏 다이라 시게오키를 구원해 주어서, 뜻대로 되지 못하고 얼마다 어색하게 되었다. 이런 글자를 일부러 써 보냈다면, 저 또한 이 때문에 마음을 달이며 번민한다. 통신사에게 가져 오는 회답서계는 제가 마땅히 만분 주선할 계획이나, 만약 그 때 혹시라도 도순이 적었다면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답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일은 도주가 가운데서 선처하기에 달려 있는데, 두 나라 사이의 일을 허술하게 보지 말고 성심을 다해 힘을 쓰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또한 두 나라 사이에 오가는 문서로 말하자면 이미 정해진 격식이 있어서 금석과 같은데, 근래에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와 다이라 시게오키 등이 나올 때 예조참판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연속하여 써 보내니 이 또한 무슨 의도인가? 약조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예조에서 굳이 고집하여 받지 않을 무렵에, 미봉하느라 이번만 받았거니와, 후일 만약 참판 앞으로 서계를 만들어 보낸다면 받아 줄 리가 만무하니 일절 써 보내지 말라'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타일렀더니, 도주가 답하기를 '평상시에 오가는 서계는 조금도 어긋난 일은 없었으나, 대군이 분부한 일이면 부득이 참판 앞으로 서계를 만들어 보내는데, 이는 장로가 관장하는 것이고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의 절박한 번민을 귀국에서 어떻게 상세히 알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답하기를 '매사를 장로에게 미루는 것은 실로 성신(誠信)의 바른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더니, 도주가 답하기를 '우연히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 또췌록 주선할 계획이나, 다만 뒷날 장로가 어찌 할지 모르니 매우 우려된다'고 운운할 무렵에, 봉행 다이라 나라수케[平成扶]가 말하기를 '다췌 조로오[達長老]가 와서 대청에 기다리니, 수 많은 이야기를 이제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하여, 도주는 들은 즉시 일어나 들어갔습니다. 소인 등이 후당으로 되돌아 나오니, 다췌 조로오 및 만쇼잉수승(首僧)과 죠주잉[長壽院] 서승(書僧)이 잇달아 들어와서 서로 대하여 두 번 읊을 하고 그 대로 앉아 마주하여 밥을 먹었습니다. 이른바 만쇼잉수승은 대군이 맡겨보낸 권현묘당(權現廟堂)에서 조석으로 분향하던 승려이고, 죠주잉의 서승은 서수좌(怨首座)가 중풍에 걸린 뒤에 이 승려로 문서 담당을 교대하였다고 합니다.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다췌 조로오가 말하기를 '저는 곧 깊은 곳에 거처하는 사람으로 당초 두 나라에서 두텁게 사귀는 도리를 모르는데, 요사이 보니 도주가 귀국을 향하는 정성이 더할 수 없이 극진함을 보았다. 지난 해 권현사당을 창건하더니 이번에는 또 이 후당(後堂)을 건축하였는데, 도주가 비용으로 쓴 물자를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것이다. 권현묘당은 두 나라가 장구토록 안녕하게 하려는 계획이고, 이 후당을 건축한 것은 귀국의 통신사를 접대하기 위한 뜻이니 그 성신(誠信)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

가? 통신사가 오면 반드시 권현묘당에 유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거늘, 소인이 답하기를 '두 곳을 건축하는데 비록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서 알면 그만이지 무슨 염려해야 할 일이 있겠는가?' 하였더니, 조로오가 말하기를 '침지의 말이 사실 그렇다면 도주가 귀국을 위한 정성의 의도는 한갓 힘만 허비한 것이다. 이 일은 제가 주관할 바가 아니나, 여론을 들어보니 귀국에서는 이에야스[家康]의 덕의(德義)에 유념하여 특별히 분향의 자금을 허락하여 두 나라가 영원히 우호하도록 함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므로, 감히 이렇게 언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한결같이 약조를 준수하여 조금도 다시 고칠 리가 없으니 번거롭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또한 말을 만들어 거절한 뒤에, 9잔의 예를 행하고 나서 과하였습니다. 대개 다짜 조로오는 고오 조로오[洪長老]에 견줄 것이 아니고, 용모가 험악하고 하는 말이 매우 침침하여 은연히 공갈하니,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극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달 초5일 봉행 3인이 회답서계 1통과 별폭 1통을 가지고 관소로 와서 전해 주거늘, 받아서 열어 본 뒤에 동 별폭에 부치는 잡물 또한 수량을 대조하여 받아서, 일행을 호송하는 세견 제1선 송사왜에게 주어 신게 하였습니다. 초6일 상선연(上船宴)을 청하기에 의관을 갖추어 도주의 성 안에 가서 의식 대로 예를 행하였는데, 도주가 말하기를 '귀국에서 침지를 보내어 위문해 주시니 감사하다. 전일에 글로 적어 보여준 것은 오로지 미봉하려는 데 있으니, 무릇 진술한 일을 지나치다고 우려하지 말고 일일이 굽혀 시행하라는 뜻을 예조대인 앞에 잘 전달해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운운하고 들어간 뒤에, 다짜 조로오 및 만쇼잉 수승과 죠주잉 서승,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 등이 나와 좌정한 뒤에, 다짜 조로오가 많이 노한 기색을 가지고 말하기를 '엇그제 들어온 다이라 나리오키[平成興]가 가져온 예조참관의 회답서계를 열어보니, 역관을 들여보내는 데는 이전의 규정이 없다고 운운하여 적어 보냈는데, 이로써 본다면 귀국에서 일본을 향하여 성신으로 두텁게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거짓말이다. 새 대군이 전위(傳位)한 뒤로 만사가 이전과 다르기에, 이제 지금 이 통신사의 행차에는 난처한 일이 많을 것이므로 역관을 청하여 와서 허다한 곡절을 면전에서 진술하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도주가 귀국을 위하여 미봉하는 일이다. 무슨 체면에 손상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전례에 의거하여 방색하는가? 침지 등을 이미 들여보낸다고 답하였으면 피차간에 편한데 이런 지경에 이르니 이것이 무슨 성신의 도리인가? 이는 일본을 멸시하는 소치이다'라고 하며 불량한 말을 많이 발언하거늘, 소인이 답하기를 '조로오는 어찌하여 이렇게 노하여 말하는가? 작지 않은 두 나라 사이의 문서에, 말을 꾸며 주고받는 것은 실로 바른 도리가 아니다. 도주가 에도에 오래 있다가 폐단 없이 섬으로 돌아왔다면 우리 쪽에서 전례대로 역관을 들여보내어 위문하는 규정이 있으니, 만약 전달할 일이 있으면 그 때 이야기하여도 불가하지 않는데, 저희

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먼저 서계를 보냈으니, 이는 먼저 일의 체면을 잘못된 소치인데, 우리나라에 무슨 허물이 있는가?’ 하였습니다. 다투어 변론할 무렵에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와 죠주잉 서승이 곁에서 말을 만들어 정지하게 한 뒤에, 마주하여 밥을 먹고 잔치를 베푼 뒤에 해가 저물어서 파하였습니다.

초7일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와 다이라 나리쓰라[平成連],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 등이 관소로 와서 말하기를 ‘이번 통신사가 에도로 들어가서 되돌아 올 적에는 도주가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에게 전위한 뒤에 부자가 일행을 모시고 나올 것인데, 그 때 비용으로 쓰일 물자가 평상시보다 배가 되어, 무슨 물자로 여러 곳에 수응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귀국에서 만약 이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주가 견디기가 어려울 형편’이라 하면서 종일토록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이는 모두 불측한 말이기로 소인이 답하기를 ‘공들이 하는 말은 모두 객담(客談)이다. 우리나라는 난을 겪은 뒤로 경비가 모조리 고갈되고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서 만민이 굶주리니 이웃나라의 급한 사정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운운하여 틀어막았더니, 평성부가 화를 내어 말하기를 ‘침지가 일마다 이렇게 틀어막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제가 또한 오래지 않아 부산으로 나갈 것인데 그 때 절로 처치할 길이 있으니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마쓰다히라 비젠노카미[松平備前守]와 산조 다이나곤[三條大納言], 오다 세즈노카미[太田攝津守] 이 세 사람은 곧 도주의 사위이다. 통신사가 에도로 나갈 때 아마도 예단을 하는 일이 있을 듯하므로 미리 먼저 진달하니 적절하게 헤아려 조처하여 달라’고 운운하고는 파하였습니다.

이달 13일 대마도 부중에서 발선하여 연일 역풍 때문에 노를 저어 전진하여 17일에 겨우 악포(鰐浦)에 도착하여 바람을 기다리다가, 당일 술시(戌時) 쯤에 돌아와서 부산에 도착하였는데, 서계와 별폭을 먼저 베껴 적어 동봉하여 올려 보내며, 별폭에 부친 잡물은 간품(看品)하여 바친 뒤에 올라갈 계획이며, 나머지 다른 사정은 별단(別單)으로 적어 올린다는 일임.
순치 12년(1655) 3월 초2일 계하한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도해역관의 수본 내용에 누누이 한 이야기는 모두가 피차 간에 주고받은 사이의 이야기로 특별히 긴급하게 복제할 일은 없거니와, 이른바 도주의 세 사위에게 예단을 보내는 일은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사신이 재량하여 조처하기에 달린 일인데, 도주에게 부조한다는 말은 저쪽에서 이미 말머리를 꺼냈으니 반드시 그만두지만은 않을 것인지를 참으로 우려되고,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오면 다시 굳이 청할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단지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잘 말을 만들어 틀어막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3월 초7일 동부승지 신 성하명(成夏明)¹⁵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문위역관 이형남과 박원량 등이 바다를 건너 뒤의 별단(別單).

一. 선대군(先大君)¹⁵¹ 사후에 일본은 더욱 태평하여 별로 우려할 일이 없으며, 새 대군이 즉위하였으므로, 귀국에서 경하로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것은 양국의 성신(誠信)이니, 국서(國書)에 적는 말은 매우 은근하게 하고, 별폭의 물건은 한결같이 계미년(1643)의 사례대로 하되, 한 두 종을 적절히 수량을 더하여 보냄이 좋겠음. 응련(鷹連)은 계절이 마침 여름철인지라 생각건대 반드시 중도에 죽는 일이 많을 것이니 수량을 배로 하여 들여보내고, 4월에는 응자(鷹子)가 깃털을 가는 시기이니, 털을 간 목은 매를 들여보내어 그때 임하여 매물되는 폐단이 없게 하며, 또한 별폭에 부치는 준마 2필 중 1필은 위라말로, 1필은 가라말과 적다말 가운데 순색으로 들여보내고, 안장을 갖추면 좋겠음.

一. 일광산 도오조[東照] 다이콘젠[大權現] 묘당(廟堂) 영사(靈祠) 앞으로 위라 준마 1필을 들여보내어 이것으로 폐물을 삼으면 좋겠음.

一. 일광산 다이콘젠[大權現] 묘당(廟堂)과 다이유잉[大猷院] 묘당은 거리가 1-2리 정도이니 통신사는 먼저 다이유잉에 갔다가 다음으로 다이콘젠으로 감이 좋겠음.

一. 다이유잉 묘당에 통신사가 참예(參詣)할 때 등룡(燈籠)은 귀국에서 이미 주조하여 만들었다고 하니 이는 다행이며, 악기(樂記) 여러 도구는 정하게 갖추어 들여보내는 것이 매우 적절함. 또한 제문(祭文)은 은근히 제작하여 보내고 치제할 때의 전물(奠物)은 새 물[新水]과 새 불[新火]로 숙수(熟手)가 새 옷을 입고 함매(啣枚)하여 손을 대지 않고 조과(造果)하므로, 계미년(1643) 치제 때 각종 전물(奠物)이 비록 극히 정하였으나 일본의 풍속과는 달랐기에 사당(社堂)에 진설하지 않고 곧장 대군 앞으로 들었는데, 이번의 전물 여러 도구는 가져오되 그 가운데 기름에 지지는 물건은 일본 풍속에 맞지 않으나, 호두와 대추, 밤, 잣, 꽃감, 청밀(淸蜜) 등의 물건은 수량을 갑절로 가져와서, 그 중 좋은 것을 가려 정결한 버들상자(柳筥)에 담아 넣어 치전(致奠)함이 좋겠음. 혹시 익혀서 진설하는

150) 성하명(成夏明, 1595-?) : 창녕성씨로 자는 계희(季晦)이며 호는 호산(壺山)이다. 인조 15년(1637) 문과에 급제하였다.

151) 원본에 '선귀대군(先貴大君)'이라 되어 있으나 '貴' 한 글자는 잘못 들어간 글자이므로 번역하지 않았다.

일이 있으면 숙수(熟手)가 없어서는 안될 듯하니 숙수 1명을 데려와도 무방함.

- 一.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담은 상자는 보기에 초초하여 불경(不敬)한 듯하니, 이번 행차에는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은장식에 칠을 입히고 단자(段子)로 안팎 겹보자기를 만들어 싸서 보냄이 좋겠음. 일본에서 회답하는 서계는 은자(銀子)로 껍을 만들어 담아 넣어 보내니, 예사로 여기지 말고 유념함이 좋겠음.
- 一. 새 대군¹⁵²⁾은 나이가 어리므로 신하들이 섭정하여 만사가 전에 비하여 각기 달라서 그 사이에 주선하기가 극도로 걱정되니, 이번의 통신사는 양순하고 온화한 관원으로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고, 일본의 법을 모르고 때를 헤아려 변통하지 않는 관원이면 일이 생길까 우려되니 당초에 보내지 않음이 좋을 것임.
- 一. 귀국에서는 비록 분부하지 않은 일이라도 수시로 고하여 진달하지만, 통신사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임의로 한다면 소문이 좋지 않고, 그 사이 난처함을 어찌 다 진달할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을 상의하여 선처하라는 뜻으로 통신사에게 분부하여 보냄이 좋겠음.
- 一. 집정 및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계 이외에 혹시라도 서계를 보낼 곳이 있으면 생각건대 임의로 궁박한 일이 있을 것이니, 전례대로 빈 종이로 성첩(成貼)하여 보냄이 좋겠음.
- 一. 큰 바다에 배를 운행하면서 자상하고 신중하지 않아서는 안되므로, 바람을 살피고 조수 물때를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사공에게 달려 있는데, 귀국의 사공은 일본 해로(海路)의 험하고 쉬운 곳을 모르므로, 최상으로 선발한 왜인 사공을 각 배에 나누어 실어서 만전을 기하려고 하니, 왜인 사공이 혹 바람이 없다거나 혹 비나 눈이 온다고 말함에도 임의로 발선하여, 도중에 역풍을 만나거나 혹 선판(船板)이 부러지고 손상되거나 혹은 선미(船尾)가 부러지고 파손되어, 거의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가 근근이 살아 돌아오니 한심하지 않은가? 이번에는 만분 상세히 살펴 이전같이 우려되는 폐단에 없게 함이 좋겠음.
- 一. 수륙 각 역참에서의 접대는 모두 대관(大官)이 먼 길을 나가 대기하면서 극도로 정하게 마련하여 기다리는데, 사신이 혹 멀미를 칭탁하거나 혹 신병을 칭탁하여 육지에 내리지

152) 원본에 '귀대군(貴大君)'으로 되어 있으나 '貴'는 '新'의 오자로 보이므로 고쳐 번역하였다.

않아서 진선(進膳)한 물건을 공연히 부질없이 버리니, 은근히 접대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번 행차에는 한결같이 도주가 진달하는 바를 따라 서로 공경하는 도리를 보여주면 좋겠음.

- 一. 사신이 데리고 가는 원역(員役)은 의복을 단자(段子)나 명주로 하고, 그 가운데 소동(小童)은 곧 통신사가 안전에 사환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어리고 단정한 사람을 택하여 데리고 오되, 상중하의 관원들이 도처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잡담하거나 혹 빼앗거나 혹 싸워서 듣기에나 보기에 매우 부당하니, 각별히 엄금함이 좋겠음.
- 一. 일행 중에 혹 무역할 물건이 있으면 이곳에서 별도로 통사왜(通事倭)를 정하여 사들여 드릴 것이니 아래 사람들로 하여금 문란한 폐단이 없게 함이 좋겠음.
- 一. 세 사신이 타는 배는 각별히 정밀하게 지어서 채색의 용 무늬를 그리고 배의 휘장은 색깔 있는 단주(段紬)로 하며, 배의 노 등의 물건은 일일이 정밀하게 갖추어 일본 사람의 비웃음을 사지 않게 함이 좋겠음.
- 一. 마상재(馬上才)는 이곳에서 형편을 보아 뒤에 진달하여 고하겠으니, 이번 행차에는 데려오지 말고, 악공(樂工)은 사신의 체면에 약간 없어서는 안될 듯하니 한 두 사람 데려와도 좋겠음.
- 一. 독축관(讀祝官)은 잘 읽는 사람을 최상으로 선발하되 의관을 정하게 착용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이는 독축만 할 뿐 아니라 예도로 갔다가 돌아올 무렵에 일본에서 문사(文詞)를 하는 사람과 언어를 주고받을 때, 혹시라도 망발을 하고 또한 숨겨야 할 일을 갑자기 발설함이 없지 않으면 그 우려됨이 어떻겠는가? 십분 선발하여 데려오면 좋겠음.
- 一. 각 역참에 들여 놓은 기마(騎馬)는 일본 나라 안에서 유명한 대관(大官)과 집정, 봉행 등의 말인데, 일행 가운데 원역(員役)이 채찍을 휘둘러 달리다가 열이 나서 죽게 되어 극히 한심하니, 이번 행차에는 이런 폐가 일절 없게 함이 좋겠음.
- 一. 화원(畫員) 등의 사람이 왕래하는 사이에 서화 등의 물건을 곳곳에서 팔아 지금까지도 욕하는데, 이번에는 잘 선발하고, 글씨에 능한 사람인 설봉(雪峰) 또한 데려 오면 좋겠음.

- 一. 집정 이이 카봉[井伊掃部], 아키 사카이[頭酒井] 시누카노 카미[讃岐守], 마쓰 다히라[松平] 이즈노 카미[伊豆守], 아베[阿部] 도요고우노 카미[豊後守], 이다꾸라[板倉] 수호노 카미[周防守] 등 5인의 직함과 성명은 생각건대 필시 예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니, 기일에 맞추어 베낀 글을 들여보내고, 만약 없으면 속히 회답함이 좋겠음.
- 一. 콘겐[權現] 묘당(廟堂)을 만쇼잉 뒤에 건립한 것은 본디 도주가 만든 일은 아니고, 대군(大君) 4대가 서로 계승하여 섬에, 국내가 태평하니 이는 실로 전에 없었던 경사인지라, 이 때문에 일본의 상하 인민들이 감축하여 권현의 덕화가 있는 곳이면 곳곳마다 묘당을 창건하여 조석으로 분향하므로, 도주 또한 부득이하여 창건한 것이다. 선도주(先島主) 다이라 요시도모[平義智]는 귀국에 공이 있어서 특별히 원당 만쇼잉에 향화(香火)의 자금을 주었기에 지금까지 감축한다. 하물며 다이콘겐의 공은 다이라 요시도모에 못하지 않으니, 귀국에서 이 사이의 사리를 양찰하여 특별히 향전(香奠)의 자금을 허락하여 성신을 보여 주도록 함이 적절함.
- 一. 어필을 다이유잉 묘당에 써서 보낼 때 선대군(先大君) 생시에 귀국에 대하여 은근한 뜻이 많았다는 뜻을 제출하여 보내면 좋겠음.
- 一. 위의 20조목은 도주가 일본 문자로 적어 보여주거늘, 그 가운데 어필(御筆)을 써서 보내는 일 및 이에야스[家康]의 묘당 향전(香奠)의 자금과 관련된 일은 결코 예조에 전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타일렀다는 일임.
- 순치 12년(1655) 3월 초2일 계하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도해역관 이형남의 별단(別單)을 보니, 조건이 비록 많으나 또한 부질없는 이야기가 많으므로, 그 중 긴요한 일만 하나하나 회계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 一. 이제 이번 통신사는 새 관백(關白)이 계승하는 것을 축하하는 예이니, 교린의 도리에 있어서 국서에 하는 말에는 은근하게 보임이 적합하니, 승문원에 명하여 잘 지어내게 하되, 예단은 한결같이 계미년(1643) 사례대로 이미 마련하였는데, 한 두 종의 적절하게 더하는 일은 짐짓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그 하는 말을 듣고 조처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응련(鷹連)도 전일에 마련한 것에 이미 여분의 수량이 있으니 배로 보낼 필요가 없으며, 말의 색깔은 그 말한 바대로 찾아 보냄이 마땅함.

- 一. 대권현 영사(靈祠) 앞으로 보내는 위라 준마 1필은 저쪽에서 이미 발언하였으니 그대로 부응함이 마땅할 듯하나, 그 말에 이르기를 ‘이것을 폐백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예단 가운데 적절하게 수량을 줄여서 말로 대신함이 적합함.
- 一. 다이콘젠 묘당에 이전에 사신이 들어갔을 때 혹 분향하거나 혹 치제하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제 이전대로 함이 마땅하되, 이른바 다이유잉 묘당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일체로 시행함이 마땅할 듯한데, 해조에서는 마음대로 하기 어려우니, 이는 묘당에 명하여 논의하여 조치할 것.
- 一. 저쪽에서는 다이유잉 묘당에 등룡(燈籠)을 청하여 언은 뒤에 또 악기를 청하는 것은 대개 다이콘젠 묘와 일체로 하려고 하는 뜻이나, 전에 이미 갖추어 보냈으니 이제 틀어막기가 어려운데, 또한 해조에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니, 묘당에 명하여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며, 전물(奠物) 한 가지 일은 그 말대로 시행하되, 숙수는 1명을 정하여 보내도 무방하니, 사신에게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게 함.
- 一. 회답서계는 저쪽에서 은으로 께를 만들어 담아 넣어 보내거늘, 여기에서 보내는 께작은 납칠 장식으로 만들어 보내는바 과연 매물찬 일이라, 이번에는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칠을 하고 은장식을 하며, 단자(段子)로 안팎 겹보자기를 만들어 보냄이 적절함.
- 一. 집정 및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계는 본디 예전 격식이 있는데, 국서(國書)를 어찌 빈 종이에 성첩하여 보낼 리가 있겠는가? 다이라 나리수계가 와서 비록 혹시 다시 발언하더라도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이치에 의거하여 틀어막게 할 것.
- 一. 큰 바다를 운행하는 배는 자상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한 것은 참으로 그 말과 같은 점이 있으나, 이는 사신이 임시로 그 말하는 바를 택하여 선처하는데 달려 있으며, 각 역참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은근하게 접대하여 서로 공경함을 보여주는 일 및 원역이 타는 말을 타고 치달리다가 죽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또한 사신에게 달려 있음.
- 一. 악공(樂工)은 저쪽에서 이미 보내기를 청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계미년(1643)에는 수량을 줄인 것이 또한 많았으니, 해당 장악원에 명하여 그중 제법 음률을 아는 자를 정하여 2인을 보낼 것.

一. 독축관 및 글씨를 잘 쓰는 사람과 화사(畫師) 등은 사신이 선발하여 데리고 가는 데 달려 있음.

一. 곤젠 묘당의 향전(香奠)의 자금 및 어필에 대한 일은 이형남이 감히 예조에 진달하여 고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미 타일렀다고 하였으니 복계할 필요가 없으며, 이 밖의 여러가지 일은 회계 가운데 거론할 필요가 없고 사신이 임시로 잘 조처함에 달려 있음.

순치 12년(1655) 3월 초7일 동부승지 신 성하명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하였고, 사신이 마땅히 명심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각별히 예사로 여기지 말고 거행하게 하되, ‘빈 종이에 성첩하는 일은 저쪽에서 전례라고 하나, 이른바 전례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나? 다시 관찰하여 살펴라’고 하셨음.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곤젠[權現] 묘당(廟堂)의 치제와 분향은 본디 전례가 있어서, 다이유잉[大猷院]은 곧 이에야스[家光]의 사당이니 치제하는 한 절차는 달리하기 어려울 듯한데다가, 장소 또한 매우 가까우니 행하더라도 무방할 듯하고, 악기(樂記)도 등롱(燈籠)을 이미 허락하였기에 그대로 부응함이 마땅할 듯하니, 혜조에 명하여 거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3월 초9일 동부승지 신 임의백(任義伯)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을미(1655) 3월 초8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도해역관 이형남의 별단(別單)을 회계(回啓)하여 판부(判付)한 내용에, ‘빈 종이에 성첩하는 일을 저쪽에서는 전례(前例)에 의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전례라는 말은 무엇이나? 다시 살펴서 조처할 일’이라 판하(判下)하였는데, 집정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계를 저쪽에서는 비록 전례에 의하여 빈 종이에 성첩하는 것으로 말하였으나, 이전부터 통신사의 행차에 일찍이 빈종이로 만들어 보내는 규례는 없었고, 계미년(1643) 통신사 때 차왜 후지 도모나와는 약군(若君) 앞으로 보내는 별폭 1장은 어보(御寶)만 찍고, 1장은 국왕이라 적고 그 위에 어보를 찍어, 2장을 가지고 예도에 와서 집정과 상의하여 좋은 모양으로 조처하지는 말을 하였는데, 이른바 전례는 이것을 가리키는 듯하나, 그 때 묘당에서는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에 빈 종이로 성첩하는 것은, 비록 그 의도하는 바를 모르지만, 교묘한 허위인 듯하여 결코 따라주기 어렵다고 이치에 의거하여 따져 책망하라는 뜻으로 복계하여 시종

허락하지 않았으니, 감히 계품드립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조의 계목. 대마도주에게 문위(問慰)의 서계와 왜관에서 변경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각기 글을 지어 들여보내는 일로 계하한 두 건의 별폭 가운데, 문위 예단(禮單)은 이전의 문위 사례에 의거하여 마련하였으나, 왜관 변경의 서계 별폭 예단은 경인년(1650) 조하(弔賀)의 회사(回謝) 예단 사례를 대략 본떠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해당 관청 및 본도에 급급하게 마련하게 함이 어떠할지?

문위 별폭 예단.

범가죽 2장. 표범가죽 4장. 인삼 5근.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10필. 흰 무명 3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화석 10장. 참떡 30홀. 상화지(霜華紙) 10권. 화연(花硯) 3면(面). 녁장 붙인 유둔 5번.[이상은 본도에서]

왜관 변경의 별폭 예단

범가죽 2장. 표범 가죽 2장. 인삼 3근.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화석 5장. 녁장 붙인 유둔 3번. 참떡 30홀. [이상 본도에서].

예조단자. 동래부사가 올려보낸 도해역관 이형남이 가져온 대마도주의 진상 :

시회휴자(蒔繪携子) 2개. 시회기록상(蒔繪記錄箱) 2개. 여정(旅程) 다기(茶器) 2개. 문지(紋紙) 2,000장. 동대수로(銅大水爐)¹⁵³ 1개. 시회대과분(蒔繪大菓盆) 2개. 동관반(銅盥盤) 편구(片口) 대소 2개 덧붙여. 원경(圓鏡) 2면. 공작미(孔雀尾) 2개.

을미(1655) 3월 초8일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출발하는 날짜와 배를 타는 날짜를 문위역관이 되돌아온 뒤에 택일하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이제 일관이 택일하였더니 출발은 오는 4월 20일 진시, 승선은 5월 19일 진시(辰時)가 길하다고 하니, 이렇게 알림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3월 초8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습니다.

153) 동대수로(銅大水爐) : 원문의 이 부분은 아마도 ‘동대화로(銅大火爐)’의 오키인 듯하다.

을미(1655) 3월 13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왜인이 구청한 다이유잉 묘당의 악기를 콘젠 묘당과 일체로 허락하여 부응하는 일로 묘당에서 이미 복계하게 확정하였는데, 이미 만들어 보내기로 허락하였으면 임진년(1652)에 보낸 수량에서 가감되는 바가 있어서는 안되겠으므로, 한결같이 그 때 만들어 보낸 수대로 별단에 적어 넣고, 임진년의 사례대로 호조와 공조 낭청이 장악원 관원과 함께 살펴 한결같이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척도 대로 각별히 정밀하게 제조하여 보냄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一. 임진년(1652)에 제조하여 보낸 악기의 수 : 거문고[琴]. 슬(瑟). 축(柷). 어(敵). 훈(塤). 지(簾). 약(簫). 관(管). 통소[簫].

이상 10종 악기 각 1건씩 이대로 만들어 보낼 것.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콘젠 묘당 및 다이유잉 묘당에 통신사가 들어갈 때 일체로 치제하는 일로 조정에서 이미 복계하여 확정하였고, 치제할 때의 폐백 및 사신의 예물은 계미년(1643)에 이미 행한 격식이 있어서, 콘젠 묘당 및 다이유잉에 모두 한 가지로 마련하여 별단에 적어 넣었는데, 콘젠 묘당의 준마 1필은 그 폐물을 감하여 대신 보내는 일로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와서 다시 청하였으니 그대로 부응함이 마땅하나, 이제는 짐짓 이전의 수량으로 마련하되, 두 곳의 제문 역시 계미년(1643)의 사례대로 문학을 주관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간곡하게 말을 만들어 지어 보내 줌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폐물 대신으로 말을 보내는 일로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와서 다시 청한 말은 별단과 회계 가운데 전혀 없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초기(草記)하였는가? 해당 관청에 물어서 계품하라”고 하였음. “콘젠 묘당의 폐물을 말로 대신 보내라는 청은 도주에게서 나왔으므로, 별단의 회계 가운데는 그 청하는 대로 부응하여 예단의 양을 줄이는 뜻으로 계품하였고, 별도로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와서 다시 청한 말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판서 신 이후원(李厚源)¹⁵⁴이 출발할 때 다시 생각하기를, 말로써 폐백을 대신하는 것이 비록 도주의 청이지만, 예단 중에 장물(長物)¹⁵⁵은 단지 금단(錦段) 3필 뿐인데, 이제 만약 미리 금단을 줄이고 말만 준비한다면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온 뒤에 혹 불만한 기색이 없지 않을 것이

154) 이후원(李厚源, 1598-1660) : 전주이씨로 자는 사진(士晉), 호는 우재(迂齋)이다. 인조반정 이후 완남군(完南君)에 책봉되고, 효종 때 관직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155) 장물(長物) : 그 중 조금 나은 물건.

니, 이제 짐짓 이전대로 마련하여 저쪽의 행동을 기다려 그 뜻을 뚜렷이 한 연후에, 혹은 전부 줄이거나 혹은 차등지어 줄임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였으므로, 이런 계사(啓辭)를 만들어 갔기에, 감히 계품드립니다”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 一. 조선국 예조에서 삼가 교지를 받들어 정사(正使) 이조참의 조형(趙珩)¹⁵⁶, 부사(副使) 사복시정 유창(兪暢)¹⁵⁷, 종사관(從事官) 홍문관 부교리 남용익(南龍翼)¹⁵⁸이 서계와 예물을 수령하여 가지고 앞으로 일본국에 갈 것인데, 삼가 이대로 관문을 보내니, 대조하여 살펴 시행할 것. 관문 수령자에게 가도록.

계개(計開) : 기마(起馬) 43필. 상선(上船) 2척. 중선(中船) 2척. 소선(小船) 2척.

정사 이조참의 조(趙) [임시직함(假卿)]

부사 사복시정 유(兪)

종사관 홍문관 부교리 남(南)

당상역관 행사직(行司直) 홍희남(洪喜男)

행사용(行司勇) 김근행(金謹行)

상통사 행참봉 김시성(金時聖)

전정 정시심(鄭時謹)

차통사 행사맹 이상한(李尙漢)¹⁵⁹

전참봉 변이표(卞爾標)¹⁶⁰

압물통사 전판관 홍여우(洪汝雨)¹⁶¹

한학상통사 전판관 오인량(吳仁亮)

한학압물통사 전직장 이승현(李承賢)¹⁶²

156) 조형(趙珩, 1606-1679) : 풍양조씨로 자는 군헌(君獻), 호는 취병(翠屏),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인조 8년(1630)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효종 5년(1655) 대사간으로 일본 통신사의 책임을 맡아 다녀왔으며, 관직이 좌참찬에 이르렀다.

157) 유창(兪暢, 1614-1692) : 창원유씨로 자는 백규(伯圭)이고 호가 추담(秋潭)이다. 효종 원년(1650)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을미 사행에 사복시정으로서 통신부사가 되었고,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다.

158) 남용익(南龍翼, 1628-1692) : 의령남씨로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곡(壺谷)이다. 인조 26년(1648)에 문과에 급제하고 경상도 도사를 거쳐 효종 6년(1655)에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현종 8년(1667)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59) 이상한(李尙漢, 1618-?) : 정선이씨로 자는 사수(士秀)이다. 효종 2년(1651)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으며 교회를 역임하였다.

160) 변이표(卞爾標, 1623-?) : 밀양 변씨로 자는 탁연(卓然)이며 효종 1년(1650)에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으로 종사하다가 자헌대부의 품계까지 받았다.

161) 홍여우(洪汝雨, 1626-?) : 남양홍씨로 자는 폐연(沛然)이다. 효종 1년(1650) 증광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으며 총민(聰敏)을 역임하였다.

의원	전주부 한형국(韓亨國) ¹⁶³ 사과 최인(崔愼)
사자관	전참봉 김의신(金義信) 전사과 정□(鄭□)
화원	전사과 한시각(韓時覺) ¹⁶⁴
독촉관	상호군 이명빈(李明彬)
상사자제군관	행사용 조침(趙琛) 한량 목양선(睦良善)
군관	전첨사 조현(趙鉉) 전우후 나득성(羅得星) 무겸 한상(韓相) 초관 이형익(李亨益) 내금위 정지석(丁之碩) 전현감 이동로(李東老)
부사자제군관	전사과 민응성(閔應性) 한량 정철선(鄭哲先)
군관	훈련원첨정 박지용(朴之墉) 전종사 최산준(崔山峻) 무겸 정사한(鄭斯翰) 전관관 정귀현(鄭貴顯) 내금위 이몽량(李夢良) 전사과 최성길(崔聖吉)
종사관자제군관	한량 남득정(南得正)
별파진	겸군관 윤익형(尹益桐) 김견희(金見希) 이마 박홍원(朴弘遠) 악공 설의립(薛義立) 김몽술(金夢述)

162) 이승현(李承賢, 1614-?) : 하음이씨로 자는 자운이다. 인조 20년(1642)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한학(漢學)에 종사하였으며 교회를 역임하였다.

163) 한형국(韓亨國, 1617-?) : 청주한씨로 자는 사원(士元)이다. 효종 3년(1652) 증광시의 의과(醫科)에 합격하고 교수를 역임하였다.

164) 한시각(韓時覺, 1621-?) : 청주한씨로 자는 자유(子裕), 호는 설탄(雪灘)이다. 도화서 화원으로 교수를 역임하였다.

	숙수	한영(韓英)
상사	반인	정득열(丁得說)
	노자	2명
부사	반인	이행점(李行點)
	노자	2명
종사관	반인	도신덕(都愼德)
	노자	2명
당상역관 이하	노자	17명
군관	노자	19명

위 관문을 보냄.

정사 이조참의 조(趙)

부사 사복시정 유(兪)

종사관 홍문관부교리 남용익(南龍翼)

을미(1655) 3월 13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이번 통신사 때 각항의 사목은 한결같이 계미년(1643) 사례대로 마련하여 이미 계하하였으나, 그 가운데 다이유잉의 치제는 곧 새로 설정한 것이라 예의 절목은 특별히 이동이나 가감하는 일이 없이 한결같이 콘겐 묘의 의식대로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므로, 아울러 그대로 마련하여 전일에 계하하였고, 사로잡혀간 사람을 쇠환하는 한 가지 조목은 계미년(1643) 통신사 때 유문(諭文)을 지어내어 보냈는데, 이제 이전대로 거행함이 마땅하나, 다만 임진년(1592)이 지금부터 64년 전이라 앞서의 통신사 행차에 이미 한 사람도 쇠환함이 없었으니, 사리로 헤아려 보건대 저쪽에서 기꺼이 허락할 뜻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때의 젊은이가 거의 늙어 죽게 되어 글로 타일러 쇠환하는 것이 한갓 형식으로 돌아갈 듯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러러 품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더니, 전교(傳敎)에 ‘대신에게 물어 조치할 일’이라고 하셨기에, 대신에게 수의(收議)하였더니, 영의정 이(李)는 ‘쇠환하는 일은 계미년(1643) 통신사의 행차에 이미 한 명도 쇠환하지 못했으니 이제 비록 또 유서를 보낸다 하더라도 기꺼이 허락할 리가 없고 일이 허문(虛文)이 되어 조금도 보탬이 없으니 해조의 계사 내용대로 시행함이 불가하지 않은데, 상감의 재가를 기다리겠습니다’고 하였고, 우의정 심(沈)은 ‘임진년(1592)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리가 없어서,

계미년(1643)에도 또한 한 사람도 쇄환하여 보낸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타일러 쇄환하는 것은 실로 형식에 가까우니 해조의 계사대로 시행함이 마땅한데, 상감의 재가를 기다립시다' 라고 하였으며, 영돈녕부사 김(金)은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상감께서 재가하심이 어떠할지?" 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이르기를 “수의한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전교에 ‘얼마 전에 역관 이형남이 들어갔을 때, 도주가 「관백의 예단을 전에 비하여 약간 두서너 가지를 더하여 보내달라」 고 한 말이 있었던 듯한데, 이제 이 예단 가운데 어떤 물건을 더 보내는가? 해조에 물어 입계하라'고 하는 일로 전교하셨는데, 이제 이 관백에게 보내는 예단 한 두 종류를 더 보내는 일은 본디 도주의 말에서 나왔으므로, 판서(判書) 신 이후원(李厚源)이 그 별단을 회계할 때, 다이라 나리수케[平威扶]가 나오면 그 하는 말을 들어 조처해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복계하여 윤택하였는데, 그 때 즉시 동래부에 행회(行會)하여 즉시 거행하도록 하였지만,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온 것이 비록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본부에서 당시 그 물건 종류를 탐문하여 치보한 일이 없었으므로, 예단을 봉함하여 싸는 날 추가하기에 적절한 물건을 홍희남에게 물었더니, 홍희남 또한 미리 헤아리는 것이 불가하고, 반드시 저쪽에 가서 다이라 나리수케에게 탐문하여 그 물건 종류를 정한 뒤에라야 마련할 수 있겠다고 운운하였는데, 회보를 기다리는 사이에 날짜가 쉽사리 지연되어, 추가할 만한 물종을 마련하여 들여야 마땅하나, 허다한 물종을 등록 대로 마련한 것 외에, 신의 예조에서는 실로 어떤 물건이 추가할 만한지 여부를 모르겠고, 그날 홍희남의 말 내용에, 한 종류는 화룡촉(花龍燭)이 아마도 저쪽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될 듯하다 하였으나, 한 종류는 요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기에, 이를 아울러 계품드립니다” 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다이라 나리수케가 다시 제기하지 않았으면 이제 짐짓 그냥 두라”고 하셨음.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방금 왜인이 구청한 악기를 만드는 호조와 공조 낭청(廊廳)¹⁶⁵의 보고를 접하니, ‘제반 악기를 거의 다 조성하였으나, 그 가운데 어(敵)의 재료로 들어갈 가목(椴木 : 피나무)과 지(簾)와 약(簫 : 피리)에 사용될 오죽(烏竹) 황죽(黃竹) 등의 재료를 호조에서 강원도 및 양남(兩南)에 분정하였는데, 현재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통신사의 출발 기일이 겨우 4-5일 밖에 남지 않았으니 기일에 맞추어 만들 수가 만무하다고 운운’하였음. 본조에서 이 악기를 조성하라는 일로 계하한 것이 3월 13

165) 낭청(廊廳) : 각 관아 당하관(堂下官)의 별칭.

일에 있었으니, 그 사이 날짜가 40여 일이나 되는데, 진작 속히 거행했으면 비록 먼 곳에서 운반하여 가져오는 재료라도 반드시 이렇게 궁색할 우려는 없을 것인데, 이렇게까지 연기하여 다른 나라에 갖추어 보내는 막중한 물건을 장차 사신이 출발하는 기일에 맞추지 못하고 위촉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듣자니 그 일은 5종의 악기를 만드는 재목이 설사 금명간 올라오더라도 통신사가 사조(辭朝)하기 이전에 조성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 하니, 당해 호조와 공조 낭청 및 장악원 관원을 모두 추고(推考)하고, 도착하지 않은 목재를 성화같이 재촉하여 밤낮없이 만들어 통신사가 배를 타기 전까지 추후에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계품한 대로 담당 관리를 추고함이 옳고, 또한 본조에서도 검속하여 신칙하지 않은 것은 더욱 편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을미(1655) 3월 23일

경상감사 남훤(南翺)¹⁶⁶이 3월 18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통신사의 이문 내용임. “계미년(1643)에는 일광산 다이콘젠[大權現] 묘당(廟堂)에만 치제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이유잉에도 치제하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치제할 때 설치할 차일과 휘장, 돛자리[地衣], 방석(方席), 배석(拜席) 및 잡물을 담은 그릇과 익힌 음식을 진설할 때 사용될 그릇을 모두 계미년(1643) 등록을 상고하여 일일이 마련하였으니, 위 항목의 두 곳의 포진(鋪陳: 깔개), 잡물 그릇 등을 마련하여 부산으로 보내달라는 일로 이문한다”고 하였음. 일광산 치제 때와 관련하여 본도에서 준비하는 물건은 상세히 정한 수량대로 마땅히 마련할 것이거니와, 다이유잉 치제는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동 치제 때 사용할 각 항의 예물 및 잡물을 한결같이 일광산 치제 때의 사례와 같이 별도로 마련한다면, 들어가야 할 물종이 극히 많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유둔(油菴), 오색지(五色紙) 등의 물건은 분정하여 마련할 무렵에 일자가 이미 박두하여 형세가 매우 궁색한데, 해당 관청 및 다른 도에도 분정할 물건이 있으니, 본도 및 다른 도에 분정할 물건을 해당 관청에 명하여 속히 분부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큰젠 묘당 및 다이유잉에 치제할 때 각 항목의 예물 및 잡물의 종류와 수량이 매우 많은데 그 가운데 유둔과 오색지 등의 물건을 마련할 무렵에 일자가 이미 박두하였거니와, 큰젠 묘당 및 다이유잉의 폐백과 사신의 예단을 마련한 단자를 가져다 살펴보니, 판서 신 이후원이 출발하기 전에

166) 남훤(南翺, 1609-1656) : 의령남씨로 자는 백도(伯圖), 호는 창명(滄溟)이다. 인조 14년(1636)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효종 6년(1655) 2월 27일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7년(1656) 정월 15일 파직되었는데, 이듬해 부친상을 당하여 상복을 입고 슬픔이 과도하여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죽었다.

이미 참작하여 해당 관청 및 다른 도에 분정하였고, 유둔과 오색지 등의 물건도 그 가운데 있어서 계하하여 행회하였는데, 본도에서 혼자 감당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치계한 것은, 행회(行會)가 미처 저쪽에 도착하지 않은 소치인지라, 이런 뜻으로 본도에 다시 이문을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3월 23일 우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을미(1655) 4월 초3일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 종사관이 가져 가는 일행의 금단절목(禁斷節目)은 계미년(1643) 사례대로 마련하여 개좌(開坐)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 一. 일행이 가져가야 할 물건은 점검하여 바리를 만들고, 각기 글자를 적어 표시하여 착압(着押)하고, 또 자호(字號)로 착압하여 매달아 묶어 두고, 도중에 불시에 적간(摘奸)하며, 포소(浦所) 및 대마도, 그 밖의 머무는 곳에서 특별히 더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물(官物)로 몰수하고 범한 사람은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 一. 『대전후록(大典後錄)』과 『속록(續錄)』에 실린 바대로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紗羅) 능단(綾緞), 황백사(黃白絲) 보물을 몰래 거래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 一. 『대전후록』과 『속록』 내용에 왜인의 은(銀)을 무역하는 자와 왜인이 가져온 대랑피(大狼皮) 및 포소(浦所)에서 몰래 거래하여 바꾸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通事)는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 一. 향통사(鄉通事) 및 장사꾼이 왜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여 어두운 밤중에 매매하거나 혹 서로 모이는 자는 모두 잠상금물조(潛商禁物條)로 논단함.
- 一. 일행의 인원 등이 본국의 숨겨야 할 일 및 국가의 중대한 일과 관계되는 일을 누설하는 자는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 一. 상통사(上通事) 이하 일행의 하인이 금제(禁制)에 걸린 자는 곤장 80대 이하로 직단(直斷)함.

- 一. 다른 여러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검속하되, 우리 국경 내에서 범한 일은 즉시 장계로 알리고, 바다를 건넌 뒤에 범한 일은 조정에 돌아온 뒤에 일일이 적어 계품할 것.
- 一.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갔다가 쇄환하여 돌아온 사람을 격군(格軍)에 뒤섞어서 충당하는 것은 매우 편치 못하니 일절 충당하지 말고, 만약 충당하였다가 드러나면 본관 수령은 각별히 추고하여 죄를 다스림.
- 一.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軍器)는 종사관이 착압하고 장부에 적어두고, 만약 군기를 몰리 매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 一.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빼내어 사사로이 통하는 자와 상국(上國)과 관계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아울러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순치 12년(1655) 4월 초3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을미(1655) 4월 초3일

큰켄 묘당 및 다이유잉의 치제 의식.

제를 지내기 이틀 전에 장소를 관장하는 자는, 제문과 폐백을 진설하여 봉안하는 자리를 사당의 대문 밖 동쪽에서 남향으로 설치하고, 사신의 자리는 제문 두는 곳의 남쪽에서 동편 가까이 서향으로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자리는 사신 자리의 뒤에 설치한다. 하루 전에 찬자(贊者)는 사신이 절하는 위치를 동쪽 계단 동남쪽에서 서향으로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위치를 사자의 뒤에서 조금 남쪽에다 서향으로 설치하되 북쪽을 상석으로 하며, 찬자와 알자(謁者)의 위치는 당 아래 동쪽 가까이에서 서향으로 설치하며, 사신 이하의 문 밖에서의 위치를 대문 밖의 길 남편에다 설치하는데, 매 등급마다 위치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여 북향하되 서편을 상석으로 한다. 제문을 태우는 장소를 노대(露臺)의 남쪽 서편 가까이 설치하고[구리 화로를 놓아둔다], 사신의 망료위(望療位)는 그 남쪽에서 북향하고, 축관 및 찬자는 동쪽에서 서향한다.

그 날 행사 전에 장찬자(掌饌者)는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제문 안(案: 작은 탁자)을 신위의

오른편에 올려두고, 준소(樽所)를 방문 밖에, 폐백 안을 준소의 왼편에 설치한다. 향로와 향함은 초와 함께 신위 앞에 진설하고, 제기는 격식대로 진설하고, 세(洗 : 손씻는 곳)를 동편 계단 동남쪽에서 북향으로[사신의 세는 동편에 두고, 작세(爵洗 : 작(爵)¹⁶⁷)을 씻는 곳]는 서편에 둔다, 뇌(甃 : 물 그릇)는 세의 동편에 두되 작(勺 : 구기)을 올려두고, 비(篚 : 대 상자)는 세의 서편에서 남쪽 방향으로 두어 수건을 넣어두며, 집사의 관세(盥洗)는 사신 세의 동남편에 북향으로, 준과 뇌와 비와 떡(糲 : 떡개)을 관장하는 자의 위치는 준과 뇌와 비와 떡의 뒤에 설치한다.

그날 시간이 되기 전에 사신 이하는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제문과 폐백과 제물(祭物) 등을 각각 용정(龍亭)과 채여(彩輦)에 담고, 제물은 가자(架子 : 들것)에 올려가지고 제를 지내는 곳으로 나아가 막차(幕次) 안의 탁자 위에 두고,[제물은 사당(社堂)으로 들여간다] 사신 이하는 각기 머물 곳으로 간다.

행례(行禮) : 장찬자(掌饌者)는 들어가 격식대로 찬구(饌具)를 진설한다. 마치면 찬자와 알자는 먼저 들어가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장소에서 북향하여 사배(四拜)한다. 마치면 각기 제 자리로 간다. 알자는 사신 이하를 인도하여 대문 밖의 위치로 간다. 알자는 축관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장소로 간다. 찬자가 사배(四拜)라고 소리치면 축관 이하는 모두 사배한다. 마치면 관세위(盥洗位 : 손씻는 자리)로 가서 관세를 하고 마치면 각기 제 위치로 간다. 집사자는 작세위(爵洗位 : 작을 씻는 자리)로 가서 작(爵)을 씻고, 작을 닦는다. 마치면 비(篚)에 놓고 받들어 준소로 가서 점(坫 : 잔받침대) 위에 놓아둔다. 마치고 나면 제문을 담은 용정 및 폐백을 실은 채여(彩輦)가 정문으로 들어온다. 알자는 사신을 인도하여 뒤따라 간다. 당을 올라가 문 밖에 이르면, 부사(副使)와 종사관은 절하는 자리로 가고, 상사(上使)는 제문을 받들어 제문 탁자 위에 둔다. 집사자는 폐백을 받들어 방문 밖의 폐백 탁자 위에 둔다.

알자는 상사를 인도하여 절하는 장소로 간다. 알자는 상사의 왼편으로 나아가 행사(行事)를 청하고 물러나 제 자리로 간다. 찬자가 ‘사배(四拜)’라고 하면, 사자는 네 번 절한다. 찬자가 ‘행전폐례(行奠幣禮)’라고 하면, 알자는 상사를 인도하여 관세위로 가서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손을 닦는다. 마치면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가서 북향하여 섰다가 꿇어 앉는 것을 거둔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드리면, 알자가 도와서 세 번 향을 올린다.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려둔다. 축(祝)이 폐비(幣篚)를 사신에게 주면, 사신은 폐백을 잡아 헌폐(獻幣)하고, 폐백을 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려두고, 거들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는, 인도하여 내려와 제 자리로 돌아간다.

167) 작(爵) : 의식용 술잔의 일종. 세 개의 다리가 있으며, 구연부(口緣部)에 넓은 부리가 있고 좌우에 두 개의 뿔을 세웠다.

찬자가 ‘행초헌례(行初獻禮)’라고 하면, 알자는 상사를 인도하여 올라가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집사자는 떡을 들어 술을 따르고, 집사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상사를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가서 북향하여 섰다가, 도와서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작을 사신에게 준다. 사신은 작을 잡고 헌작(獻爵)하고 작을 집사자에게 부어서 신위 앞에 올려두고, 거들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축은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제문을 읽는다. 마치면 알자가 거들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 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행아헌례(行亞獻禮)’라고 하면, 알자는 부사를 인도하여 관세위로 가서 관수 세수하고 마치면, 올라가 준소로 가서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執樽者)가 떡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사신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가서 북향하여 섰다가, 거들어서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작을 사신에게 준다. 사신은 작을 잡고 헌작하고,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려둔다. 알자는 거들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 자리로 간다. 찬자가 ‘행종헌례(行終獻禮)’라고 하면, 알자는 종사관을 인도하여 아헌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 제 자리로 간다.

찬자가 ‘사배(四拜)’라고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한다. 찬자가 ‘망료(望燎)’라고 하면, 알자는 상사를 인도하여 태우는 장소로 가서 북향하여 선다. 축이 비(篚: 대상자)에 제문 및 폐백을 담아서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태우는 곳에 둔다. 찬자가 ‘가료(可燎)’라고 하면 태운다. 마치면 알자는 상사의 왼쪽으로 가서 ‘예를 마쳤습니다[禮畢]’라고 하여 거들고는 그대로 상사를 인도하여 나간다. 부사와 종사관은 차례대로 따라 나간다. 찬자는 본디 자리로 되돌아오고, 알자는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장소로 돌아온다. 찬자가 ‘사배(四拜)’라고 하면 축 이하는 모두 사배하고,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찬자와 알자는¹⁶⁸⁾ 계단 사이로 가서 사배하고 나온다.

순치 12년(1655) 4월 초3일.

국서(國書)

지난번 전하(殿下)께서 새로 아름다운 통서(統緒)를 계승하여 나라 안을 편안하게 하여 능히 큰 사업을 이었으니, 우호관계로 교류하는 처지에 있어서 매우 기쁘고 다행하게 여깁니다.

168) 원본의 이 부분에 있는 ‘알자(謁者)’ 두 글자는 잘못 들어간 글자인 듯하다.

이에 사신을 보내어 축하의 의식을 갖추오니, 이는 실로 양국이 함께 사랑하는 의리입니다. 토산물이 매우 박하나 애오라지 먼 곳에서 정성을 포함합니다. 오직 더욱 전대의 공훈을 크게 하여 아름다운 천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다이유잉[大猷院] 제문

[유 을미 4월 을묘삭 20일 갑술 조선국왕 ○○은 삼가 신 통정대부 이조참의 지제교 조형(趙珩) 등을 보내어 일본국 다이유잉의 영(靈)에게 치제합니다.]

아득히 생각건대 영신(靈神)은, 공덕을 크게 드러내어, 큰 사업을 이어받아 지키며, 남겨준 법칙을 준수하여, 후손이 능히 창성하고, 효성스런 생각이 더욱 독실합니다. 우뚝할사 저 정한 사당은, 명복을 비는 곳인지라, 그 산은 높다랗고, 단청은 찬란하게 빛나니, 보우하는 은덕이 미쳐, 기반이 더욱 혁혁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대대로 친목을 닦음에 돈독하여, 비록 큰 파도가 막혀 있지만, 명성과 공훈을 사모한지 오래입니다. 이에 사절을 보내어, 보잘 것 없는 제수를 올리니, 부디 음덕의 보살핌으로, 영세토록 함께 즐겁기를.

여러 집정에게 보내는 글

멀리 귀 대군(大君)이 전대의 공훈을 영광스럽게 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국왕 전하께서 예전의 우호를 계속하시려고 생각하여 사절을 보내어 폐백을 받들고 축하하며 겸하여 편액 어필 및 향축과 등롱과 악기를 가지고 가서 다이유잉 묘당에 올리고 인하여 다이콘겐 묘당에 아울러 분향하오니, 귀 대군께서 선조를 받드는 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새 정치를 보필하여 능히 큰 복을 부지하시기 바랍니다. 넉넉지 않은 물건을 부쳐 보내니 물리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튼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여러 봉행에게 보내는 글

멀리 귀 대군이 전대의 공훈을 영광스럽게 어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국왕전하께서 예전의 우호를 계속하시려고 생각하여 사절을 보내어 폐백을 받들고 축하하며, 겸하여 편액 어필 및 향축과 등롱과 악기를 가지고 가서 다이유잉 묘당에 올리고 인하여 다이콘겐 묘당에 아울러 분향하니, 귀 대군께서 선조를 받드는 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새 정치를 보필하여 능히 큰 복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넉넉지 않은 물건을 보내니 물리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튼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도주 앞으로 보내는 글

계절은 청화절(淸和節)이 되었는데, 아득히 생각건대 일어나고 거처하는 일상생활이 좋은지 위안되는 마음 번갈아 지극합니다. 조정에서는 귀 대군(大君)이 새로 큰 통서(統緒)를 계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을 보내어 치하하며, 겸하여 편액 어필 및 향축과 등롱과 악기를 가지고 가서 다이유잉 묘당에 올리고, 인하여 다이콘젠 묘당에 아울러 분향하니, 귀 대군께서 선조를 받드는 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원컨대 태수께서는 조정에서 돈목을 닦는 뜻을 잘 받들어, 오고 가는 것을 호송하여 능히 좋은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넉넉지 않은 토산물은 웃으며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서를 받은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글

생각건대 청화의 계절에 거처하시기가 좋은지 참으로 위안이 됩니다. 넉넉지 않은 박한 차례를 아무튼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다짜 조로오에게 보내는 글

조정에서는 귀 대군이 새로 큰 통서를 계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을 보내어 치하하며, 겸하여 편액 어필 및 향축과 등롱과 악기를 가지고 가서 다이유잉 묘당에 올리고 인하여 다이콘젠 묘당에 아울러 분향하니, 귀 대군께서 선조를 받드는 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원컨대 고해(苦海)를 건너는데 호송하여 때맞추어 오가도록 하고 명령하는 뜻을 전달하여 돈목함을 닦는 의리를 힘써 밝히는 것은 조로오[長老]가 특별히 힘을 쓰는데 달려 있습니다. 토산물이 비록 박하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여러 집정에게 병기(兵器)와 관련하여 보내는 서계

생각하면 우리 양국이 대대로 평화와 우호를 돈독하게 하여,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통보하고 의뢰하지 않는 물건이 없으니, 이는 참으로 성신(誠信)이 양 쪽 다 미더운 데서 나온 것입니다. 병기(兵器)를 교환하여 사는 것은 금제(禁制)에 관계되는 것인데, 교분의 우의가 이미 독실하니 서로 막힐 일이 없는지라, 무릇 품은 생각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깊이 생각하여 무역하여 바꾸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여 특별히 더 유념하시기 바라며, 평상시 규정에 구애되지 말고 매매하도록 허락하여 준다면, 실로 여러분이 좌우에서 주선한 힘에 있는 것이라, 그 다행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후한 뜻이 있는 처지에 번거로움을 잊고 이렇게 아울러 알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도주 앞으로 석유황(石硫黃) 구매에 대한 서계

본국은 귀방(貴邦)과 대대로 돈목을 닦은 사정에 대하여는 이미 서로 막힘이 없으니, 물산의 유무(有無)를 서로 의뢰하는 도리가 있음이 당연합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석유황(石硫黃)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데, 근래에 결핍됨으로 인하여 사용할 계책이 없으니, 바라건대 태수께서는 대대로 이어온 우호의 의리를 깊이 생각하여, 다시 무역해 오는 도리를 다시 생각하여 무역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주선한 힘을 돌아보는 생각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두터운 보살핌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번거로움을 잊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 아무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대마도주 앞으로 추가로 송별하는 서계

무더위가 이렇게 심한데 지내시기에 진중하게 보전하시는지? 사행이 먼저 바다에 이르러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나 키와 노가 부러져 파손되었는데 다행히도 귀 차사가 와서 보호해 주심에 의지하여 전복되어 낭패를 보는 지경을 모면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후한 은덕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예물이 물에 젖어 더럽혀진 것이 많았는데, 들은 즉시 고쳐 장만하여 보내오니, 모름지기 귀 주에서 사행에게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을미(1655) 4월 초9일

- 一.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예단을 써서 봉합하는 작업은 이달 17일 호조와 예조 당상관 및 세 사신이 본조에서 함께 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초9일 입계하여 계품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 一. 경상감사 남훤이 3월 28일 성첩한 장계. 이전에 도부한 통신사의 이문 내용에, “계미년(1643)에는 일광산 다이콘젠 묘당에만 치제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이유잉에도 치제하는 일로 계하하면서, 두 곳에 치제할 때 포진(鋪陳) 잡물과 그릇 등을 계미년(1643) 등록을 상고하여 준비하는 일로 이문하였기로, 한결같이 일광산 치제 때의 사례대로 마련하고, 해당 관청 및 본도에 분정하는 물건을 해조에 명하여 확정하라는 일로 이전에 이미 치제하였거니와, 역관 이형남이 바다를 건너갔다 되돌아 온 뒤에 베껴 보낸 별단에 적힌 말

을 살펴보았더니, 다이콘젠 묘당의 영사(靈祠) 앞으로 워라말 준마 1필을 들여보내고, 이것을 폐백으로 삼음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다이유잉 치제 때 각종 전물(奠物)과 여러 도구를 가져 오는데, 그 중에 기름에 지지는 물건은 일본의 풍속에 맞지 않고, 호두 등의 과물(果物)은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와서 그 중에 좋은 것을 골라 정결한 버들 상자에 담아 넣어 치전함이 좋겠고, 혹시 음식을 익혀 진설하는 일이 있다면 숙수가 없어서는 안 되니 일을 아는 숙수 1명을 또한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바, 대권현묘당에 준마 1필로 폐백을 삼으면 치제하는 일이 없을 듯하기로, 역관 이형남을 불러 그 곡절을 물어보았더니, 다이콘젠은 계미년(1643)에 이미 치제하였고, 이번에는 단지 준마 1필을 폐백으로 하여 분향 배례할 따름이고, 다이유잉에만 계미년(1643) 다이콘젠 치제 때의 사례대로 제물 및 예물 등을 들여보내는 일로 도주와 문답하고 돌아 왔다고 하였는바, 이미 치제하지 않고 준마 1필만 들여준다면 예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비단 본도에서만 홀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반드시 분정한 규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막중한 일을 신이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에 짐짓 해조의 분부를 기다렸는데,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다이콘젠과 다이유잉 두 곳에 치제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반드시 통신사와 해당 관청이 모두 저쪽의 사례를 상세히 모를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널 기일이 또한 가까이 임박하였기에, 두 곳의 제물을 마련할지 여부에 대하여 어느 말을 따라야할지 참으로 우려되는데, 이전에 이런 등의 일은 의례히 역관의 수본대로 하여 뒷날 난처한 우려가 없게 하였으나, 지금은 이형남의 말이 이와 같아서 다이콘젠 묘당에는 원래 치제하는 일이 없고 예물 역시 거론함이 합당치 않으니,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확정하여 명백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당초 이형남이 올려보낸 별단 중의 일을 판서 신 이후원이 신 등과 모여 앉아서 홍희남을 불러다 물어서 조목조목 회계하였는데, 원 단자 중에 하나에는 ‘다이콘젠 묘당에 워라말 준마 1필로 폐백을 삼음이 좋겠다고’ 하고 하였고, 하나에는 ‘다이콘젠 묘당과 다이유잉 묘당은 거리가 1-2리이니 통신사가 먼저 다이유잉에 갔다가 다음으로 다이콘젠으로 감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하나에는 ‘다이유잉 묘당에 통신사가 참예(參詣)할 때 약기 여러 도구를 정밀하게 준비하여 들여보내고, 제문 또한 은근하게 지으며, 전물을 정결하게 마련한다’고 운운하였으므로, 두 곳에 치제하는 일로 묘당에서 확정하였는데, 이제 감사의 장계를 보니, 이형남을 불러 그 곡절을 물어보았더니, 다이콘젠에는 계미년(1643)에 이미 치제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분향 배례만 있을 뿐이고, 다이유잉에만 계미년의 다이콘젠 사례대로 치제하는 일을 도주와 문답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바, 이형남이 감사에게 고한 것은 전일의 별단과 크게 차이가 있으니, 혹시 별단을 보낼 무렵에 그 글이 짧아서 상세 곡진하게 적지 못한 소치인지 매우 놀라운지라, 이형남을 유사(攸司) : 해당

관청)에 명하여 추고하게 하되, 이제 그 말에 의거하면 곤젠 묘에 치제하지 않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는 듯하니, 준마 1필을 폐백으로 하는 외에 그 나머지 예물은 앞의 단자 가운데 표를 붙여 감하여 없애며, 비록 치제하지 않더라도 사신이 이미 분향하는 일이 있다면 전혀 예단이 없는 것은 불가하여, 이는 그대로 보냄이 가할 듯하니, 곤젠 묘의 치제는 없애고 다시 분향으로 마련한다는 뜻으로 해조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4월 6일 우부승지 신 권우(權堦)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을미(1655) 4월 17일

전교에, “일본 관백에게 보내는 예물을 해조에서 이미 감봉했다고 하는데, 매 종류마다 약간을 내관에게 명하여 가져와 보게 하였더니, 피륙과 붓이 형편없음이 막심하고, 명주는 더욱 매우 추악하고, 붓자루는 누추하여 차마 바로 보지 못하겠다. 다른 나라에 보내는 물건이 어찌 이러한가? 왜인의 정결한 성품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광채 없음이 막심하고 일이 매우 놀랍다. 감봉한 해조의 당상 등을 아울러 추고하고, 담당 낭청은 먼저 과직한 뒤에 추고하며, 당해 색리(色吏 : 담당관리) 및 필장(筆匠) 등은 가두어서 형벌을 시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되도록 정묘하게 밤낮없이 고쳐 만들어, 사행의 기일에 맞추도록 하라는 일로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며, 또한 보내는 악기 또한 반드시 이러해야 하니 일체로 엄하게 신칙하라” 하셨음.

을미(1655) 4월 23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에 차왜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의 문답에 운운한 일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는 차왜 다이라 나리수케가 말한 바 피차간에 광채를 내리는 계획에 지나지 않는데, 도주가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몰인정함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의 정인지라, 후록의 조건(條件) 사설(辭說)이 비록 많지만 태반이 이형남의 수본에 해조로 이미 복계하여 확정된 일이거니와, 저쪽에서 이른바 전일 사신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연유로 발설한 것인지? 사신이 명을 받들어 다른 나라에 가면 서로 의논하여 적절한 쪽으로 귀결되도록 힘써야 마땅하며, 저쪽에서 우리 통신사를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극도로 풍성하고 후하게 접대하거늘, 종전에 사신이 자중함이 너무 지나쳐서 바쳐 올리는 잔치상을 병을 청탁하여 받지 아니하고, 곤장 데리고 간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저쪽 사람들로 하여금 무료하여 낙망하게 한 것은 참으로 이웃나라와 교제하며

사신을 보내는 본뜻을 잃은 것이며, 저쪽에서의 모든 일은 사신이 알 길이 없어서, 들어간 뒤로는 도주와 상의하여 그 중 사리에 맞는 것을 채용함이 무방하거늘, 도주가 교묘한 속임수로 기만한다고 지나치게 의심하여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과연 곡절을 모르고 잘못하여 비웃음을 받는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그 하는 말을 듣고 상의하여 선처함이 적절하며, 독촉관과 서사(書寫), 화원(畫員) 등은 사신이 이미 선발하여 데리고 갔거니와, 이전에 화원이 용심(用心)이 형편없어서, 집정 이하가 요구하는 바는 하나도 부응하지 않고, 반드시 장사꾼들에게 비싼 값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수궁하여 그려 주었으므로, 지금까지 침을 빨고 욱한다고 하는바, 나라를 욱되게 하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은 없으니, 이번에는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하기에, 아울러 사신에게 알릴 것이며, 배 위에 띄는 장막은 경상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였거니와, 저쪽 사람들은 모두 금단(錦段)을 사용한다 하는데, 붉은 명주[紅紬] 장막을 배 위에 오래 설치하면 바람과 이슬이 젖어서 반드시 색깔이 바래고, 예도에 들어간 뒤에는 보기에 형편없을 것이니, 해조에 명하여 한 건을 더 마련하여 보냄이 마땅하며, 예단으로 사용할 말은 사복사에서 각별히 가려 보낸다고 하였거니와, 말의 재질과 품격은 멀리 간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중간에 병들어 질뻔거릴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미리 좋은 말 한 두 필을 뽑아서 잘 먹여서 대기하게 하였다가, 서울에서 내려보낸 말이 만약 사고가 있으면 바꾸어 보냄이 무방하며, 응련(鷹連)은 여름날 멀리 보내는데 그 전체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전에 동래부사의 장계로 인하여 원래 수 45연에다 두세 마리를 더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이미 복계하여 행회하였거니와, 두서너 마리는 부족할 듯하여 추가한 수량이 전후로 통틀어 10마리인데, 원래 수량의 매가 무사히 도달하게 되면 추구한 수의 응련은 전일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가 도주의 연례 구청으로 옮겨 시행하던 대로 해도 무방하며, 악기는 해당 장인에게 물으니 이달 내로 다 만들어 보낼 수 있다고 하였기로, 다시 분부하여 재촉하게 하였으며, 다이유잉의 제물에는 익힌 음식을 진설하지 말라는 일은 그 말대로 시행하는 일로 해조에 일찍이 이미 복계하여 분부하였거니와, 다이콘젠에 치제하는 일은 이형남이 도중에 들어갔을 때 사신이 분향만 할 따름 제를 지내지 않는다는 일로 이미 도주에게 확정하였거늘, 이제 다이라 나리수케가 또 실과 등의 물건을 다이유잉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간다고 말을 하는바, 실로 근거가 없으니 따라주는 것은 부당하며, 단자(單子)를 빈 종이로 성첩(成貼)하는 일은, 차왜의 하는 말은 혹 집정 가운데 교체되어 바뀌는 자가 있을까 우려하여 그 난처한 폐단이 없게 하고자 함이나, 해조에서도 또한 이런 폐단을 우려하여 단자 외면에 집정의 성명을 적지 아니하고, 가서 저쪽에 도착한 뒤에 그 성명을 탐지하여 적어 넣으면 되지, 또 빈 종이로 성첩하여 보낼 필요가 없으며, 다이유잉의 어필 한 조목은 일찍이 선왕조(先王朝) 때에 저쪽의 간절한 요구로 말미암아 특별히 ‘일광정계(日光淨

界) 창효도장(彰孝道場) 여덟 개의 큰 글자를 큰겐 묘에 하사하였는데, 저쪽 나라 사람이 성심으로 흠모하여 지금까지 진보(珍寶)로 여기고 있으므로, 또 이런 청이 있었기에, 아래에서 감히 우러러 청하지 못하오니, 상감께서 재가하십시오. 도중(島中)에서 큰겐 묘를 설립하였다고 세견선을 청하여 얻고자 차왜가 누누이 말을 하는데, 이는 모두 이런 장본(張本)이 있기 때문이고, 저쪽에서 주간하는 일은 오로지 이 일에 달려있거니와, 이제 만약 그들의 청으로 인하여 세선(歲船)을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면, 당장 사리가 부당할 뿐 아니라, 일후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이치에 근거하여 준절하게 배척하여 기어코 방색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알림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4월 23일 우부승지 신 성하명(成夏明) 차지로 입계하였는데, 그대로 윤택하면서, “태복시(太僕寺)에서 보내온 말 1필은 더욱이 형편 없는 노마(駑馬 : 둔한 말)라, 비록 무사히 도달한다 하더라도 본도에 명하여 그쪽에서 이것보다 훨씬 좋은 말을 바꾸어 보냄이 마땅하며, 권현묘의 실과 등의 물건은 본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또 제를 베푼다는 뜻이 아니니 원하는 대로 해도 무방하며, 하사하는 뜻은 후일 인견할 때 면전에서 의논하여 조처하며, 숙수를 데리고 가고 제물 또한 미리 마련하여 간다고 운운한 것은 이른바 익혀서 진설하는 물건이라 해조에서는 무슨 물건을 갖추어 보내는가? 또한 배의 휘장은 비록 사신이 스스로 받들 일이지만 혐의로 여기지 말고 광채 나는 물건을 선택하여 준비해 감으로써 체면이 없게 되는데 이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며, 실과와 청밀을 담은 그릇은 또한 사신에게 명하여 가려서 가지고 가서 불결한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 一. 호조에서 계품하기를, “동래부사 장계에 대하여 첨부한 계목에, ‘큰겐 묘의 실과 등의 물건은 본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또한 제를 지낸다는 뜻이 아니니 원하는 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일로 판하하여, 비변사에서는 이것을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게 함이 마땅하다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다이유잉에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밀가루, 청밀(淸蜜), 찹쌀, 백미, 팥, 녹두, 메밀, 두부콩[泡太] 등의 물건을 아울러 마련하고, 큰겐 묘에는 단지 분향만 하여 간격이 있어야 마땅할 듯하니, 한결같이 비변사에서 계품한 사연의 별단(別單) 가운데서 단지 ‘각종 실과’ 만 다시 표를 붙여 들이라는 뜻으로 감히 계품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을미(1655) 4월 26일

동래부사 한진기(韓震琦)169)가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갑오조 부특송 정관 2인과 선주 3

인, 압물 2인, 시봉 2인, 반중 7명에게 전례대로 상선연을 베풀었음. 정관 다이라 나리노리 [平成寺]가 여러 차례 역관 이형남을 보내어 신에게 말을 전하기를 “돌아갈 기일이 이미 다가 왔으니 연향(宴享)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음악 도구는 가져오지 말라”고 운운하였거늘, 신이 생각건대 청하는 바를 만약 혹시 순순히 따라준다면 매사를 모두 다투어 이기려고 생각 할까 염려되어, 말을 만들어 답하기를 “이제 이번 연향은 사사로이 베푸는 잔치가 아니라 곧 사연(賜宴)과 사악(賜樂)이거늘, 음악을 펼치는 한 가지 일 또한 변방 신하가 임의로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지하려 한다면 마땅히 연향을 물리고 예조에 품신한 다음에 라야 하겠다”고 하였는데, 정관이 또 역관을 보내어 말하기를 “통신사의 출발 기일이 임박하여 저희들은 반드시 속히 들어가야만 앞으로 준비할 일이 많은데, 어찌 잔치를 물리겠는가? 이제 당장 잔치를 받게 해 달라”고 하거늘, 신이 부산첨사 신 홍여한(洪汝漢)과 함께 왜관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 즈음에, 정관이 또 말하기를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가 나온 것은 오로지 원당(願堂)의 예단 일 때문인데, 영감의 말씀이 동떨어져 합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이라 나리수케가 자처(自處 : 자살)하려고 하거늘, 저희들이 짐짓 타일러 중지시켰습니다. 이 일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이라 나리수케는 반드시 되돌아가지 않고 장차 이곳의 귀신이 될 것입니다. 그들 부자가 모두 이곳에서 죽으면 어찌 크게 가련하고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며 누누이 이야기하였는데, 신은 “이 일은 네가 간여할 것이 아니니, 마땅히 다이라 나리수케와 말해야지, 너와 서로 따질 수가 없다”고 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다이라 나리수케가 연청(宴廳)에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전일에 이른바 과실을 담은 버들상자[柳筥]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자[筥]라고 잘못 전하였으니, 반드시 가늘고 흰 버들고리로 하며, 예단의 말 안장은 최상품으로 정밀하게 만들고, 수피(垂皮) 등의 물건은 반드시 조선의 당상관이 타는 모양으로 누은(纒隱)을 붙인 쇠로 만들어 보내어 광채가 나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운운하였음. 다이라 나리수케가 아침 밥 및 숙공(熟供)을 먹지 않는 일로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렀는데,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받지 않기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다이라 나리수케가 밥을 먹지 않고 자결하려고까지 한다고 운운한 것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한데, 이는 묘당에서 생각건대 반드시 분부하여 조처할 것이거니와, 버들 상자를 버들고리로 고쳐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본도에 명하여 말하는 바대로 하라고 하며, 예단 가운데 안장

169) 한진기(韓震琦, 1610-) : 청주정씨로 자는 치규(稚圭)이다. 인조 27년(1649)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효종 6년(1655) 4월 동래부사로 도입하여 7년(1656) 11월 좌수사(左水使)와 다른 일로 의금부에 잡혀 갔다.

은 이미 올려 보내게 하였는데, 누은부철(纒銀付鐵) 등의 일은 해조에 명하여 장계대로 급히 정하게 만들어 보내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4월 26일 우부승지 신 성하명 차지로 입게 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을미(1655) 4월 29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을 때, 상감께서 “전자에 일본국에서 손수 쓴 필적을 얻기를 원한 일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였는데, 영의정 이(李)가 말하기를 “당초에 틀어막지 못하였고, 앞의 조정에서 이미 행한 전례가 있기에 지금 와서 허락하지 않으면 낙망할 듯하다”고 하였고, 우의정 심(沈)은 말하기를 “비단 앞의 조정에서 이미 행하였을 뿐 아니라 저들도 매우 보배로 중시하니, 그 원하는 바대로 하여도 아마 무방할 듯한데, 아래에서 감히 청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전일에는 일광정계(日光淨界) 창효도장(彰孝道場) 여덟 글자를 적어 주었는데, 이제는 어떤 문자를 적어 줄까?” 하였음. 병조판서 원두표(元斗杓)가 말하기를 “유신(儒臣)과 대제학에게 명하여 의논하여 계품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적어 줄 문자를 유신에 명하여 상의하여 계품하게 하라”고 하셨음.

一. 승정원에게 계품하기를, “전교에 ‘선왕(先王)의 조정에서 일본에 어필을 하사할 때 글자 크기가 어떠하였으며 어떤 모양의 종이를 사용했는지, 생초(生緞)였는지 널리 상고하여 계품하라’는 일로 명하셨는데, 임진년¹⁷⁰의 일기를 상고해 보니 승정원에서 비변사의 뜻으로 입계하기를 ‘일광정계(日光淨界) 창효도장(彰孝道場) 8자를 적어 주는 일로 윤택을 받았으며, 종이 위에 쓰는 것은 체면이 없을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흑 능라(綾羅)나 흑 사라(紗羅)에 콩물[太染]을 들이고 금을 뿌린 두 폭을 정밀하게 마련하여 들임이 적당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또한 글자 체를 여염에 널리 찾아 보니 그 때 모사(摸寫)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들였더니, 전교에 “알았다. 쇄금능라(灑金綾羅)로 예비용 포함하여 4폭을 해조에 명하여 이전대로 만들어 들이라”고 하셨음.

어필(御筆)은 **궐내에서 써서 승정원에 내리고**, 승정원에서 써서 봉함하여 승문정자 이향천(李享千)이 가지고 동래부의 통신사가 머무는 곳으로 내려 보냈는데, 내통(內筒)은 주홍칠 은 장식에다 니금(泥金)과 니은(泥銀)으로 그림을 그렸고, 외통은 참흑칠[眞黑漆]에 주석[豆錫] 장식을 하고, 내외의 대단(大段)으로 만든 겹 보자기 등의 물건은 아울러 궐내에서 만들고, 밖의 붉은 채와 포장하여 묶는 등의 잡물은 해당 관청에서 진배(進排 : 진상)하였음.

170) 임진년 : 이는 아마도 인조 임오년(1642)의 착오인 듯하다.

-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어필을 담은 통은 한결같이 이번 국서를 담은 사례대로 하여 해당 관청에 명하여 정치하게 미리 만들어 칠을 하고, 들어가는 여러 도구 또한 마련하라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유히한다”고 하셨습니다.
- 一. 비변사에서 계품하기를 “큰젠 묘의 제물은 당초 해당 관청에서 한결같이 다이유잉의 사례대로 마련하라고 계하하였으나, 그 뒤 분향례만 행하고 제를 지내지는 않는다는 일로 확정하였으므로, 별단의 제물은 표를 붙여 내렸으며, 실과 등의 물건은 해조에 명하여 다시 마련함이 적절하나, 이른바 다이유잉의 제물은 해당 관청에 계하한 단자를 가져다 살펴보니, 밀가루, 청밀, 찹쌀, 백미, 팥, 녹두, 껍질 있는 과실 등 22종이라, 만약 흑시라도 익힌 음식을 진설한다면 마땅히 흑 밀과(蜜果 : 유과)를 만들거나 혹은 병면(餅麵 : 떡가루)을 만들고, 실과 또한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며, 익힌 음식을 진설하지 않으면 이런 각종 물건은 말린 물건으로 함이 마땅하니, 그 말 대로 유기(柳器 : 버들고리)를 만들어 담아서 전해 줌이 적절하기에, 감히 계품드립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을미(1655) 5월 초3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전교에 ‘전일 일본에 어필을 하사할 때의 규례(規例)를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하리(下吏)에게 묻게 하였더니, 어보를 찍었다고 하는데 무슨 어보를 찍었는지? 조정 관원에게 물어서 계품하라’는 일로 명령이 내려왔는데, 본조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임오년(1632) 3월분의 접위관 동래부사의 장계에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의 완강한 요청으로 인하여, 어필에 찍는 어보는 반드시 전일 통신사가 가져간 국서에 찍는 어보로 찍어서 보내어, 저쪽에 도착하여 서로 대조하여 신빙이 되게 하고, 흑시라도 어긋남이 없게 해 달라고 운운 하였는데, 그 때 본조에서는 장계 내용대로 통신사를 보낼 때 일본에 보낸 서계 가운데의 전례대로 위정이덕(爲政以德) 어보를 찍어서 어필을 보냈습니다”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을미(1655) 5월 16일

통신사 조형과 유창 등이 5월 초9일 성첩한 장계. 신 등은 지난달 20일 사폐(辭陞)¹⁷¹한 이후로 날짜를 배당하여 출발하였는데, 일행이 의성(義城)에 도착하여 비를 만나 하루를 머물

다가, 당일 미시 쯤에 비로소 동래부에 도착하였고, 내일 부산으로 향할 계획이거니와, 방금 접한 부산첨사 홍여한의 보고 내용에, 함경도에 분정한 응자 16연 중 13연이 중도에 모조리 죽고 남아 있는 것이 단지 3연 뿐이나, 또한 반드시 산다고 할 수는 없다고 운운하였는바, 동래부사 한진기가 듣고 이 뜻을 본도 감사에게 보고하였으며, 감사는 도내 각 지방관에 분정하였다고 하거늘, 신 등이 이곳에 도착한 뒤에 바야흐로 이문을 보내어 재촉하였거니와, 수합하여 와서 바칠 동안에 날짜가 저절로 지연될 뿐 아니라, 그 밖의 4도에 분정한 응자는 이미 내도하여 신 등의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모두가 무사하리라 보전하기 어려워 매우 염려됩니다. 당초 계하한 대로 배를 타기로 택일한 19일 이전에 미처 주선하지 못할 형편이니, 해조에 명하여 이달 이내로 고쳐 택일하여 내려 보내게 하시며, 다이유잉에 하사하는 붓은 전교 내용의 의도대로 머물러 대기할 계획이라 운운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통신사가 배를 타는 길일을 일관에게 명하여 이달 내로 고쳐 택일하여 진작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5월 16일 좌부승지 신 조한영(曹漢英)¹⁷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을미(1655) 5월 17일

예조 단다. 통신사가 배를 타는 좋은 날을 이달 안으로 고쳐 택일하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일관에게 명하여 택일하게 하였더니, 이달 27일이 좋다고 하여, 이날로 거행하는 일로 통신사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5월 17일 입계하여, 계품한 바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을미(1655) 5월 16일

경상감사 남훤(南翺)이 5월 11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관문 내용, “동래부사 서장(書狀)의 차왜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와 문답한 일에 의거하여, 비변사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통신사가 가져가는 예단의 말은 사복사에서 각별히 뽑아서 보내라고 하

171) 사궤(辭陞) : 먼 길을 떠나는 사신이 국왕에게 하직의 인사를 드리는 절차.

172) 조한영(曹漢英, 1608-1670) : 창녕조씨로 자는 수이(守而), 호는 회곡(晦谷)이다. 인조 15년(1637)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경기관찰사, 예조참판, 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였거니와, 말의 재질과 품등은 멀리 가본 연후에라야 그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으며, 도중에 병들어 절뚝거릴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미리 좋은 말 한두 필을 가려뽑아서 잘 먹이면서 대기하였다가, 서울에서 내려 보낸 말이 혹시라도 사고가 있으면 바꾸어 보내도 무방하다 하였으며, 응련은 여름철에 멀리 보내는 데는 모든 수량이 무사히 도달한다고 보장하기 어렵기에, 이전에 동래부사가 장계한 원래 수량 45연에 두세 마리를 추가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이미 복계하여 행회하였거니와, 두어 마리 부족한 듯하여 통틀어 전후로 10마리의 수를 추가하여 들여보냈다가, 원래 수의 매가 무사히 도달하였으면, 추가한 수량의 매는 전일에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平成政]가 말한 바대로, 도중(島中)의 연례 구청(求請)으로 옮겨 시행해도 무방하니, 이 뜻을 본도 감사에게 알리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여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윤택하시면서 '태복사에서 보내는 말 한 필은 더욱이 재질이 없고 노둔하며 열등하다고 하니, 비록 무사히 도달한다 하더라도 본도에 명하여 이보다 좋은 말을 가려서 바꾸어 보냄이 마땅하다'고 전교하셨기에, 교지 내용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였는데, 사복사에서 보내온 말 1필은 판부한 내용대로 먼저 바꾸어 들여보냈으며, 그 나머지 말도 또한 그것이 반드시 쓸만한 지 보전하기 어려우니, 다른 말로 선발해 두었다가 서울에서 내려 보내는 말의 좋고 좋지 않음을 살펴보고서 조치할 것인데, 바꾸어 보내는 말은 십분 최상으로 선발하며, 응련(鷹連)은 추가된 수량 7마리를 일찍이 이미 분정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추가로 보내야 할 3마리와 합쳐 모두 7마리이거니와, 이 3마리는 일의 형편이 급박하여 다른 도에 분정하기가 불가하여, 본도에서 체구가 크고 재질이 준수한 것을 들여보내라는 일로 관문을 보내고, 동 마필(馬匹)을 도내 각 지방관의 역(驛)에 여러가지로 물어서 약간 필을 겨우 얻어, 신과 통신 상사와 부사가 함께 간품(看品)하여 그 가운데 조금 나은 것 2필을 이미 끌어다 동래로 보내어 선택하도록 하였거니와, 근래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말들은 도내에 전혀 없어서 매년 무역을 허락하지 못하여 왜인이 말꼬리를 잡는 사단이 되지만, 이제 이 예단 말은 전례에 따라 무역을 요구한 말과는 다름이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찾아내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역관 홍희남의 말에 모두 서울에서 내려보낸 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앞서의 예단에 합당한 말을 찾기 어려움이 위에 진술한 바와 같고, 이제 보낸 2필의 말이 나쁜 것이 없어 물리칠지 여부를 미리 헤아리지 못하기에 매우 우려됩니다. 응자(鷹子) 3마리는 즉시 각 지방관에 분정하였거니와, 방금 동래부사 한진기의 치보를 보니, 통신사가 바다를 건널 때 함경도에 분정한 응자 8마리와 예비용 8마리 도합 16마리를 동 도의 감영 군관이 가져왔다가, 도중에서 잇달아 죽고 3마리만 데려왔다고 하였는바, 막중한 예단의 응자가 이렇게 다수 죽고, 통신사가 배를 타는 기일이 박두하였는데, 함경도에서 다시 마련하여 왕래할 동안에 미치지 못할 형편이므로, 동 함경도에 원래 정한 수량 내에 죽어버린 응자 5연은 부득이 본도의 연례 세견선의 왜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지방관에 특별히 추가로 분부하여 독촉하여

보내도록 하였는데, 이제 계절과 날씨가 바야흐로 더워서 이 때가 무사히 들어가는 것 또한 반드시 기약하기가 어려운바, 동 응자 5연은 가을을 기다려 갖추어 보냄으로써, 연례 왜인에게 지급하는 수량을 충당하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해당 도에 분부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렇게 매우 더운 철을 당하여 먼 길에 응련(鷹連)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은 그 형세가 참으로 그리할 만하여, 함경도에서 보내는 응련 5마리는 가을철을 기다려서 갖추어 보내게 함으로써 해마다 왜인에게 지급하는 수량을 충당하는 일은 일의 형편이 양쪽 다 편하니, 장계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두 도의 감사에게 행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5월 16일 좌부승지 신 조(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一. 동래부사 한진기의 장계.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에 이르기를 “운운. 왜선 3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이형남과 별차 이신남(李信男)¹⁷³ 등에게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제1척은 을미조 검대세건 제9선이고, 제2척은 차왜 다이라 나리쓰라[平成連], 봉진암물 1인, 시봉 1인, 반중 15명, 격왜 40명, 제3척은 물을 끄는 작은 배에 격왜 10명 등이 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예조참판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참의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지고 나왔거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며, 가지고 있는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것이라 하기로, 동 서계와 별폭을 먼저 베껴 적고 노인(路引)과 아울러 받아서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면서, 신이 즉시 훈도 이형남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이번에 나온 차왜 다이라 나리쓰라는 오로지 통신사를 호위하여 가는 일로 나왔고 별로 다른 일은 없는데, 이미 예조참판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으며, 또 도주가 친애하고 믿는 봉행으로서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의 무리와 다름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경접위관의 접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통신사가 배를 타는 기일이 박두하여 비록 경접위관을 청하더라도 미처 내려올 형편이 아니니, 본도의 수령을 접위관으로 하여 접대하는 일로 타일러 확정하게 하였으며, 데려 온 반중도 15명이나 데려 왔는바, 이전의 규정과 어긋남이 있으니 이 인원수는 결코 접대할 수 없다고 다시 타일러 수반하라’고 분부하였더니, 방금 바친 훈도 이형남의 수본 내용에, ‘방금 도부한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온 차왜 다이라 나리쓰라가 데려온 반중이 전에 비해 수가 많은 것은 매우 부당

173) 이신남(李信男, 1607-?) : 연곡이씨로 자는 여실(汝實)이다. 인조 11년(1633) 증광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였으며 교회를 역임하였다.

하니 다이라 나리노부[平成政]의 사례대로 11명만 접대한다는 뜻을 십분 타일러 확정하였으며, 접위관은 경접위관을 하지 않고 본도 수령 가운데서 택하여 차출하는 일로 이미 타일러 확정하였다'고 하는데, 3차례의 잔치 때 증정하여 지급하는 예단을 급히 내려보내라는 일의 치통 및 수본한다"고 하였기에, 한편으로는 본도 순찰사에게 치보하여 수령 접위관을 가려서 차출하여 접대할 계획이며, 3차례의 잔치에 증정하여 지급할 예단을 해조에 명하여 급히 마련하여 내려보내시기를. 예조 참판과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와 별폭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등은 아울러 받아 올려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제 이번 다이라 나리쓰라[平成連]가 데려온 반중은 다이라 나리노부[平成政]의 사례대로 11명으로 접대한다면, 다이라 나리쓰라의 접대 또한 평성정이 왔을 때의 사례대로 거행하며, 접위관도 이 장계를 보면 본도에서 수령을 가려 차출하여 이제 반듯 이미 차출하여 보냈을 것이며, 차비역관은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급속히 차정(差定)하여 그로 하여금 예단을 가져 가게 할 것임. 또한 다이라 나리쓰라를 도중(島中)에서 보낸 것은 단지 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관장하는 일이 없는데, 서계 가운데는 예조참판을 거론하기까지 한 것은 이전의 규정을 어김이 있으며, 지난 해 겨울에 이런 서식(書式)을 이형남이 도중에 들어갈 때 이미 벌써 타일러 틀어막았는데도, 반년이 채 되지 않아 또 이런 버릇이 있는 것은 그 조짐을 길러주어서는 안되니, 동래 부사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러 후일의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로 아울러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5월 16일 좌부승지 신 조(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을미(1655) 5월 30일

동래부사 한진기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이형남과 별차 이신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라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작은 배에 격왜 8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격왜 등이 말하기를, 통신사 행차의 예단 응련(鷹連)과 마필(馬匹)을 속히 들여보내라는 일 및 통신사 행차의 상중하 원역을 기일에 앞서 적어 보내주어야 접대하는 한 가지 일을 경유하는 길에 미리 알릴 수가 있는 일이거늘, 지금까지 적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재촉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며, 전일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물건을 통신사 행차와 일시에 무역하여 보내어 기일에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는 일을 관수왜 등에게 또한 재촉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였다’고 운

운하였기에 치통한다” 하였음. 이제 이 차왜 다이라 나리쓰라[平成連]와 관수 등이 요청한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역관 이형남에게 명하여 제철이 아니라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타일러 방색하게 하였다고 운운한 일임.

을미(1655) 6월 초5일

통신사 조형과 유창 등이 5월 27일 성첩한 장계. 신 등 일행은 오늘 오시 쯤에 배를 탔으며, 마침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포구를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거니와, 하사하는 어필은 일찍이 기다리라는 하교가 있었기로 바야흐로 공손히 기다렸다가 받들고 갈 계획이며, 집정 등에게 보내는 서계 가운데 이 한 조목을 첨가하여 넣어서 고쳐 적어 내려 보낸다는 뜻이 또한 해조의 이문 가운데 있으니, 아울러 기다리겠으며, 예단 말 3필 가운데 1필은 못한 듯하여 본도에서 예비하여 대령하라 하였기로 겨우 찾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난 20일 왜인에게 들려주었으나, 이것만 못하다고 하였던 말을 저쪽에서는 3필 가운데 이 말이 가장 낫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온 3필을 모두 다 폐단 없이 받았고, 응자(鷹子) 55연 또한 수량대로 들여 주어서, 내일 사이에 장차 들여보낸다고 운운하기로, 이마(理馬) 박홍원(朴弘遠) 및 격군 1명을 전례대로 말을 실은 배에 주어 보냈으며, 사행을 호위하는 차왜 다이라 나리쓰라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이 내려온 뒤에 신 등과 함께 출발할 수 있을 것인데, 진작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 비록 순풍이 불더라도 홀로 발선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우려되오니, 회답서계를 해조에 명하여 급히 만들어 보내어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통신사가 가져갈 고쳐 지은 서계를 지난달 23일 역관 박원량이 가지고 갔고, 어필은 지난 달 25일 승문 정자 이형천(李亨千)¹⁷⁴이 가지고 갔으며, 차왜 다이라 나리쓰라에 대한 회답서계 및 예단은 지난달 27일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이미 출발시켰는데, 생각건대 지금 저쪽에 도착하였을 것이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6월 초5일 우승지 신 권(權)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174) 이형천(李亨千, 1621-?) : 경산이씨로 자는 익세(翼世), 호는 포은(浦隱)이다. 효종 5년(1654)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좌랑을 역임하였다.

을미(1655) 6월 초7일

통신사 조형과 부사 유창 등이 6월 초1일 성첩한 장계. 신 등이 지난 달 27일 배를 탄 일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초1일 오시 쯤에 승문원 정자 이형천이 하사한 어필을 받들어 가지고 부산에 도착하였거늘, 신 등이 삼가 받아 포장을 풀고 살펴보았더니, 내외의 퀘짜과 그 밖의 봉함과 포장 여러 도구에 손상된 곳이 없었으며, 용정(龍亭)과 의장(儀仗) 등의 물건은 동래부에 명하여 또한 정밀하게 준비하게 하였는데, 호행차왜(護行差倭) 다이라 나리쓰라가 반드시 서계의 회답을 기다린 뒤에야 출발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동안 날짜가 지연되어 매우 민망하고 걱정된다는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을미(1655) 6월 11일

통신사 조형과 부사 유창 등이 6월 초5일 성첩한 장계. 어필을 삼가 받았다는 일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신 등이 배를 탄 지 이미 10일이나 되었으나 장마비가 열흘 잇달아 내리고 순풍이 아직 늦어서 닻줄을 풀지 못하니 매우 우려되며, 응자 55연은 왜인에게 폐단 없이 전해 주어서 배에 싣고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 접한 호행차왜 다이라 나리쓰라가 보내 온 말 내용에, 응자 13연이 이미 죽었고 그 나머지 30연은 모두 이미 먹이를 물렸으니 며칠 되지 않아 장차 모조리 죽을 형편이라 운운하였는바, 그 중에 비록 혹 생존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수의 태반이 감소되고 달리 변통할 계책이 없는데, 관백의 별폭에 부치는 30연과 집정 등에게 별폭으로 부치는 10연은 수량 대로 가져 가지 않을 수 없기로, 긴박하여 부득이하게 한편으로 본도 감사에게 이문하여 도내의 응련(鷹連)을 급급히 찾아 보내라는 일로 분부하였으며, 신 등이 비록 이미 발선한 뒤라도 추후에 관왜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들여봄이 마땅하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본도 감사에게 알려 속히 거행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통신사의 장계를 보면 예단으로 지급하는 응련이 거의 모조리 죽어서 부득이하여 별폭에 부치는 도합 40연을 본도에 이문하여 찾아보낸다고 하면서, 본도에서 추이하여 이제 반드시 수송하겠거니와, 다만 본도에서 일시에 도합 40연의 매를 수합하지 못하면 앞으로 반드시 부족할 우려가 있으며, 균일하게 짐작 분정하여 한쪽으로 부담이 치우치는 일이 있게 해서는 불가하니, 가을 수확을 기다려서 40연 중에서 그 대신으로 강원도에 10연, 함경도에 15연으로 하여 이 수량을 기일에

맞추어 본도로 갖추어 보내되, 15연은 또한 본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이런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6월 12일 우승지 신 권(權)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을미(1655) 6월 12일

경상감사 남훤이 6월 초8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통신사의 이문 내용, “일행이 배를 탄 지가 이미 10일이 되었으나, 장마비가 이렇게 오기에 아직도 발선을 늦추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며, 각 도에 분정한 응자(鷹子) 55연을 폐단 없이 관왜에게 들여주어 배에 싣고 초량항에서 바람을 기다렸는데, 13연은 이미 죽고 그 나머지도 모두 먹이를 물려서 형세가 장차 모조리 죽을 것이라고 호행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말을 전해왔는바, 관백 앞으로 보내는 별폭에 부치는 30연, 집정 등에게 별폭으로 부치는 10연은 수량에 맞추어 가져가지 않아서는 안되겠는데, 달리 변통할 계책이 없어서 부득이 본도에 명하여 도내의 있는 곳에서 찾아 급급하게 일제히 실어 보내게 하라는 뜻으로 연유를 치계하였으니, 이문이 도부하는 즉시 각 고을에 분정하여 진작 속히 부산으로 보내게 하되, 비록 발선한 뒤에라도 관왜(館倭) 등에게 추가로 주어 들여보낼 수 있으리라는 일이니 급급하게 거행해 달라”는 일로 이문하였는데, 이 이문 내용의 사연을 살펴보면, 예단의 응자 55연 중 13연은 이미 죽었고 그 나머지도 모두 먹이를 물려서 장차 모조리 죽을 형편이라, 관백에게 예단으로 보내는 30연 및 집정 등에게 보낼 10연은 수량에 맞추어 가져 가지 않아서는 안되겠으니, 동 응자 55연이 비록 모조리 죽지 않더라도 이미 모두 먹이를 물려 장차 모조리 죽겠다고 하였으니, 앞으로의 일이 극히 우려되나, 이문하여 오가며 분정하여 찾을 동안에 낭패가 날 우려가 없지 않기로, 예단에 들어가야 할 응자 40연은 반드시 본도에서 홀로 담당할 일은 일이지만, 일이 다급하게 생겨났기에 부득이하여 각 고을에 분정하여 각기 그 경내의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여러가지로 찾아내어 수납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였거니와, 본도에 당초 분정된 응련도 적합한 것이 전혀 없어서 간신이 찾아내어 들여주었는데, 이제 와서 허다하게 추가로 분정하는 일이 뜻하지 않은 때에 생겨났고, 또 계절이 어긋나서 실로 쉽게 얻기가 어려운데다, 분정한 각 지방관에서 비록 혹시 찾아내더라도 이렇게 더위가 극성일 때를 당하여 폐단 없이 멀리 보내는 것 또한 반드시 기약할 수가 없으니 극히 우려된다는 연유를 먼저 치계하는 일임.

을미(1655) 6월 14일

통신사 조형과 유창 등이 6월 초9일 성첩한 장계. 신 등이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리는 일은 전일의 장계에 상세히 있거니와, 초9일 진시 쯤에 비로소 순풍을 얻어서 바다로 전진하였으며, 응련(鷹連) 원래 수량 55연 가운데 23연은 이미 어제 폐단 없이 실어 갔고, 먼저 죽었던 것은 13연이고 추가로 죽은 것이 2연으로 모두 15연이고, 그 나머지 17연은 바야흐로 왜관에 두고 특별히 잘 보호하고 있는데, 그 깃털을 가는 철을 당하여 배에 실은 지 여러 날이 되어 손상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뒤로 온전히 살아나서 일 없이 들여가는 것 또한 반드시 기약할 수 없어서 매우 우려되니, 본도에 명하여 장계대로 기일에 맞추어 찾아내어 왜관으로 추후에 주어서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치계하였으며, 이번에 데리고 가는 역관의 수는 전에 비해 반으로 줄어서, 6척의 배에 나누어 신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막 염려하고 있었는데, 마침 왜역 박형원(朴亨元)이 왜인에게 예단을 가져왔거늘, 부득이 데리고 가면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

一. 동래부사 한진기가 6월 초8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8일 도부한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 “통신사 행차의 예단 말을 실어 운반하기 위하여 나와 있었던 왜선 1척에 양마왜(養馬倭) 4명, 격왜 15명 등이 동 말 3필 및 등룽(燈籠)을 실었으며, 서울에서 내려온 이마(理馬) 1인, 종왜(從倭) 1명이 또한 함께 났으며, 통신사의 예단 응련 23연은 을미조 겸대세견 제12선 1척에 격왜 30명이 실었다”고 하였음. 동일 도부한 접위한 울산부사 윤세임(尹世任)¹⁷⁵의 이문 내용에 “이달 초8일 통신사의 행차를 호송하는 차왜 다이라 나리쓰라 및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1명 등에게 전례대로 상선연을 배푼 뒤에 해조에서 내려온 예단을 들여 주었더니, 다이라 나리쓰라가 말하기를 ‘저는 단지 통신사의 행차를 모셔가기 위해 나왔거늘 귀국에서 접위관을 파견하여 세 차례나 잔치를 내리고 내린 물건이 또한 반중에까지 미치니 지극히 감격하여 진달할 바를 모르겠으니, 접위관은 모름지기 이 뜻을 조정에 돌아가 상주해 달라’ 운운 한 일임.

을미(1655) 6월 22일

동래부사 한진기가 6월 15일 성첩한 장계. 이달 14일 도부한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

175) 윤세임(尹世任, 1596-?) : 파평윤씨로 지는 중경(重卿)이다. 인조 11년(1633)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 형조정랑 등을 거쳐 영암군수, 평산부사, 울산부사를 역임하였다.

에 운운하기를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통신사의 장계를 봉해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이형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작은 배 1척에 격왜 9명이 통신사의 장계를 궤에 담아 넣어 나왔거늘, 동 행차가 무사히 바다를 건넌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격왜 등이 하는 말이, 「상사와 부사가 탄 배 및 그 밖의 짐을 실은 배들은 겨우 도착하여 악포(鰐浦)에 정박하였으며, 종사관이 탄 배는 겨우 물마루를 지나 치목(鷓木: 키) 두 건이 모두 부러져 파손되어 거의 위급할 즈음에 이르렀는데 차왜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가 마침 바다가운데까지 따라잡아서 구제하여 겨우 전진하는 차에 작은 배 10여 척이 또 맞이하러 나와서 간신이 지지견촌(志志見村)으로 호송하여 왔는데, 동 촌은 악포와 거리가 80여리이며, 동 부러진 치목을 개조하여 돌아들어가는 배에 급히 부쳐 보내어 행차가 대마도에 오래 머무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고 하였으며, 예단의 응련도 또한 즉시 기일에 맞추어 들여보내 달라고 운운하였으며, 동 장계를 넣은 궤는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기에, 동 장계의 궤를 받아서 보내는 일”이라고 치통하였는데, 이 문정과 치통의 사연을 살펴보니, 통신 상사와 부사가 탄 배는 겨우 무사히 도착하였는데, 종사관이 탄 배는 거의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가 간신히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바, 듣고 보니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겠음. 동 치목을 개조하는 일 및 예단의 응련 등을 급급히 들여보내는 일은 아울러 본도 순찰사 및 좌수사에게 논보(論報)하였으며, 통신사의 장계 궤를 받아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임.

을미(1655) 6월 25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예단을 고쳐 마련하여 역관을 들여보내는 연유와 도주에게 문서를 지어 보내는 일로 비변사에서 이미 계하하였는데, 서계 가운데 전례에는 본조의 참의 직함을 적는데, 참의가 현재 차출되지 않아서 일의 형편이 급박하니, 전 참의 김상지(金尙之)의 이름으로 적어 넣어 보냄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을미(1655) 8월 14일

동래부사 한(韓)의 장계. 방금 도부한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에 운운, “초탐장 두 모포만호(豆毛浦萬戶) 이희봉(李希奉)의 치보 내용에, 왜선 1척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기에 즉시 훈도 이형남과 별차 이신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차왜 다이라 나라나가[平成長]가 탄 배 1척에 시봉 1인, 반종 7명, 격왜 40명 등이 통신사

행차의 장계를 넣은 궤짝 및 도주의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차왜의 말이, 「통신사 행차가 대마도에 도착한 뒤 바람 형세가 연일 불순하여 도중에 머물러 지체하다가 지난달 22일 비로소 순풍을 얻어 발선하였고, 동 행차 하인 7명은 병이 위중하여 대마도에 머물러 두었으며, 또 1명은 통신사가 대마도에 있을 때 죽었는데, 동 병든 사람 등이 이제 비로소 병이 나았기로 시신과 아울러 데리고 실어 나왔으며, 죄를 범한 소통사(小通事) 김춘남(金春男) 또한 신고 나왔으니, 육지에 내린 즉시 교부(交付)할 계획이니와, 어제 물마루를 넘은 뒤에 밀물이 물러가고 바람이 시들하여 밤새 노를 저어 이제 비로소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치겠다고 하거늘 베껴 적었으며, 통신사 행차의 장계를 넣은 궤를 아울러 가져다 바치는 바라고 회언하였기에, 동 장계 및 서계의 등본을 받아서 올려보내거니와, 동 서계에는 ‘명력(明曆) 원년’이라 적어 넣었거늘, 그 역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곡절을 물었더니, 차왜의 말이, ‘7월부터 시작하여 명력(明曆)으로 개원(改元)하여 사용한다’고 운운하였음. 위의 되돌아 온 사람인 곤양(昆陽)의 격군 1명, 거제의 격군 1명, 초계(草溪)의 사령 1명, 울산의 격군 1명, 구소비포(舊所非浦)의 격군 1명, 안골포(安骨浦)의 격군 1명, 동래의 소동(小童) 1명 등은 교부하여 즉시 본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거니와, 사망한 지세포 격군은 그의 처자 등에게 시신을 수습하라는 뜻으로 한편으로 이문하여 알리고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일”이라고 치통하였으며, 일시에 바친 훈도 이형남과 별차 이신남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나온 차왜 다이라 나라나가(平成長)가 가져온 통신사 행차의 장계를 넣어 담은 궤짝은 부산진에 들었으며, 기타 순영 및 본부로 보내는 공문을 올려 보내거니와, 되돌아온 사람 김춘남 등은 육지에 내리는 즉시 동래부로 올릴 계획임. 대개 이 차왜가 비록 도주의 친근한 사람이라고 하나, 그가 담당하는 바는 우리나라 사람 및 통신사 행차의 장계를 가져오는 것일 따름이니, 세견 제1선의 사례대로 접대함이 편하고 타당할 듯하여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치통 및 수본하였음. 이 문정 및 수본의 사연을 보면, 차왜 다이라 나라나가가 별로 담당하는 일이 없이 단지 우리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으니, 세견 제1선 정관의 사례대로 접대하는 것은 불가하며, 도주의 서계 가운데 명력(明曆) 원년(元年)이라 적어 넣은 일도 범연하게 문정하여 치계하는 것은 불가하기로, 훈도 이형남과 별차 이신남 등을 불러다가, “세견 제1선은 정관 1인, 선주(船主) 1인,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반중 3명인데, 이제 이번 차왜는 특별히 선주와 봉진(封進)의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등록을 상고하면 이페이양 송사의 사례로 접대함이 마땅하여 이로써 확정하며, 연호를 고친 일도 저쪽 나라에서 반드시 사고가 있어서 고친 것이니, 모름지기 속히 끝까지 상세히 탐문하여 치보하게 하라”고 분부하였더니, 훈도 등의 수본 내용에, “한결같이 이페이양 사례대로 정관 1인, 반중 3명을 접대하는 일로 확정하였으며, 연호를 고친 일을 다이라 나라

나가에게 끝까지 물었더니, ‘저는 연소한 사람이라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거늘, 관수(館守)에게 가서 물었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국왕이 지난 4월에 죽었고, 그 아들이 계승하여 왕이 된 뒤에 명력으로 개원하였다’고 하였다”고 수본하였음. 차왜에게 증정하여 줄 예단은 한결같이 이떼이양 송사의 사례대로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마련하여 급히 내려보내 주시기를. 이제 이번에 되돌아온 하인 7명은 교부하는 즉시 원적(原籍)의 지방관으로 떠나 보내겠으며, 죄를 범한 소통사 김춘남도 교부 즉시 본부에 단단히 가두어서 조정의 조치를 대기하라고 분부하였음. 통신사의 장계를 넣어 담은 궤짝 및 차왜 다이라 나리나가 가져 온 예조로 보내는 서계의 등본 1통을 감봉하여 아울러 올려보내는 일임.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봉복(奉復).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화첩(華帖)이 멀리 도착하여 정녕 귀국이 청평함을 알겠습니다. 본방(本邦)도 편안하니, 함께 기뻐하며 위안이 됩니다. 이제 통신사가 부산포를 발선하는 날, 중류에서 폭풍이 일어나 오던 배가 겨우 부러지고 파손되었는데, 비록 그렇지만 수리하여 띄워서 누선(樓船)이 막힘 없이 와서 저희 고을에 도착함에 멀리 염려함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감사하는 말씀을 저에게 정중하게 하였으니 다행으로 여깁니다. 내일 장차 나가서 통신사와 더불어 함께 대마부(對馬府)의 포구에 배를 띄울 것이나, 그러나 날마다 바람이 거슬러서 닻줄을 풀지 못하고 연기하여 7월 20일에 이르러서 순풍을 얻었으니, 오사카에 도착하는 날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방이 곳곳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는 것은 오직 통신사의 마음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나는 때때로 이런 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은 더위가 떠나지 않았으니,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를 보살피십시오. 나머지는 밝게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명력 원년 을미(1655) 7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제 이번에 나온 차왜는 주관하는 일이 없고 단지 통신사의 장계 및 우리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따름이니, 정계 내용대로 이떼이양 송사의 사례로 접대하고 증정하여 주는 예단은 두 차례의 잔치를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동래부사 및 부산첨사가 전례대로 접대함이 마땅하며, 왜왕(倭王)이 비록 죽었다고 하나 이 관수의 무리가 구전(口傳)으로 하는 말은 이곳에서는 알고만 있을 따름이며, 다이라 나리나가[平成長]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은 승문원에 명하여 지어서 보내게 하며, 지세포 격군 1명은 국사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서 죽었으니 매장하는 데 약간의 물품을 본도에 명하여 적절하게 헤아려 지급하게 하고, 죄를 범한 김춘남은 비변사에서 회계하여 조치함이 마땅한데,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8월 14일 동부승지 신 목(睦)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병신(1656) 2월 14일

동래부사 한(韓)의 장계 내용. 전에 통신사가 사서(私書)를 통역하는 역관 오인량(吳仁亮)이 모시고 간 장계에 대하여 회하(回下)를 들여보내지 말라는 일로 치계하였는데, 어제 신시쫘에 금군 윤욱(尹旭)이 가져온 예조의 공문에, 즉시 훈도 이형남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들려 주어 비선으로 급히 통신사에게 전하라고 하였거니와, 통신사 일행이 이달 초6일 악포로 돌아와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바람 형세가 순조로울 듯하니 반드시 발선하여 건너 올 것인데, 이제 이 공문은 혹 바다 가운데서 서로 어긋날 폐단이 없지 아니하나, 이 공문의 말뜻은 저쪽에서 혹시 알더라도 무방할 듯하며, 또한 매우 편리하고 좋으므로, 전하든 전하지 않든 조정의 분부대로 즉시 들여보냈으며, 이제 관수가 하는 말을 들으니, 도주가 별도로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 및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와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를 보내고, 또 별차왜를 보내어 나온다고 운운하는데, 이들 왜인은 경접위관을 내려보내어 접대해야 하겠으니, 접위관을 미리 차출하여 두었다가 다시 계달하는 즉시 내려보내는 것이 궁색할 폐단이 없을 듯하다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다이라 나리다카와 다이라 나리수케가 이번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 왜인들은 지난해 나왔을 때 이미 접대한 규정이 있었으니, 세 차례의 잔치를 아울러 행하여 접대하되 접위관은 장계 대로 서울에서 차출하여 보내며, 다이라 요시자네는 곧 도주의 아들인데 이제 또 별도로 차왜를 보내는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접대는 도주의 차왜와 같은 모양으로 하는 것이 불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할 듯한데, 그가 나오기를 기다린 뒤에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심분 자세히 알아서 따져 정하여 치계한 뒤에 조처함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2월 14일 동부승지 신 채(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병신(1656) 2월 17일

동래부사 한(韓)의 장계 내용. 이달 초10일 통신사 일행이 탄 배 3척이 도착 정박한 연유 및 차왜 등의 배에 추후에 문정하여 장계로 알리겠다는 뜻은 이미 치계하였는데, 부산첨사 홍(洪)의 치통 내용에, “통신사 세분의 행차가 탄 배 3척이 도착하여 정박한 연유는 이미 치통하였거니와, 방금 접한 초탐장의 치보 내용에, 통신사의 짐을 실은 배 및 일행을 호송한 배 등이 물마루를 넘은 뒤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밤새워 노를 저어 이제 비로소 연

속하여 도착 정박하였다고 일로 치보하였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는데, 회연 내용에 ‘제1척은 통신사 행차를 호송하여 온 도주의 차왜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2명, 격왜 40명, 제2척은 수목선에 격왜 10명이며, 제3척은 차왜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0명, 격왜 40명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음. 제4척은 통신사의 행차를 호위한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의 차왜 미토모 나리미찌[源成倫]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2명, 격왜 40명임. 제5척은 관백의 회례 예단 잡물을 가져온 차왜 다이라 나리[平成次]와 반중 3명, 격왜 40명임. 통신사 일행의 배 및 일행을 호송한 배 등은 밤을 새워 노를 저어 역지로 나왔다고 운운하였으며, 그들이 가진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치겠다고 운운하였기로 먼저 베껴서 바쳤는바, 회연한다’고 하였기로, 동 베껴서 바친 서계를 받아 올려보내거니와, 평의진 송사의 차왜 미토모 나리미찌를 접대하는 한 가지 일은 왜인 등이 다이라 요시자네 송사는 미토모 나리다카보다 등급을 올려 접대해 달라고 운운하였는데, 다이라 요시자네의 서계 가운데 ‘하리마슈[播磨州] 태수(太守)’라 적어 넣었고, 그 부친 요시나리[義成]가 현재 대마도 도주인데, 그 부친의 제1봉행인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보다 위로 접대하는 것은 일의 체면이 부당하기로, 역관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러 반중 1명을 감하였으니, 위의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 미토모 나리미찌[源成倫] 등에 대한 3차의 잔치에 증정 지급할 예단을 해조에 명하여 급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시고, 예단을 실어온 차왜에게는 전례대로 차등을 두어 접대할 계획이니, 지로사공왜(指路沙工倭) 12명에게 증정하여 지급할 물건을 아울러 마련하여 내려보내 주실 것. 원성행, 원성부 등이 가져온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및 다이라 요시자네의 송사 미토모 나리미찌가 가져온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등의 등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원 서계는 수일 뒤 다례를 베풀고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이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송사의 차왜는 도주의 차왜와 한가지로 접대할 수 없다는 뜻을 겨우 이미 계하하였는데, 이제 장계를 보면 반중 1명만 감하였다고 하니, 1명을 감하는 것은 차등이 있지 아니한 듯하거니와,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 미토모 나리미찌[源成倫] 등에 대한 3차례의 예단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냈으며, 관백의 예단을 실어온 차왜는 단지 예단을 실어왔을 따름이니 지난번 통신사 일행 중의 사람을 데려온 차왜의 사례에 의거하여 두 차례 잔치 예단을 마련하여 내려 보내며, 지로사공왜 등에게 증정하여 지급하는 물건도 또한 전례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낸다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2월 17일 동부승지 신 채(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一. 동래부사 한(韓)의 장계 내용. 관수왜가 말한 바 경접위관을 미리 차출하는 일은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제 지금 차왜의 사정을 몰래 탐지하였더니,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와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 두 왜인이 서로 시샘하여 틈이 생겨 매우 심하게 화합하지 못하는데, 다이라 나리수케의 뜻은 이번에 만약 다이콘젠도우[權現堂]의 일이 성립된다면 저 혼자 그 공을 독점하지 못하기에 입밖에 내지 않고 후일을 기다린다고 운운하면서 드러내어 돌아가기를 재촉하는 기색이 있으며, 다이라 나리다카는 계미년(1643) 통신사의 행차를 호송하여 나올 때 수령 접위관이 접대하였다고 하는데, 다이라 나리다카의 접대에 이미 전례가 있고 다이라 나리수케 또한 오래 머물지 않는다면 관수왜가 말하는 바대로 한결같이 따를 필요는 없겠으니, 동 접위관을 수령 중에서 최선으로 선발하여 차출하는 일로 본도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편의대로 접대할 계획임. 다이라 나리다카와 다이라 나리수케는 성을 미토모[源] 자로 고쳤거늘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번 통신사 행차를 호위할 때 이 두 왜인은 공로가 많았기에 관백이 성을 미토모씨[源氏]로 하사하였다고 하기로 연유를 치계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지난번에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다이라 나리다카 등이 나오면 경접위관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로 계하하였으나, 이제 장계를 보니 본도에서 편의대로 접대하겠다고 운운하였으니, 본도 수령 중에서 선발 차출하여 접대하는 일로 다시 분부하시며, 차비역관은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급히 선발하여 보내라는 일로 또한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2월 17일 동부승지 신 채(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병신(1656) 2월 18일

경상감사의 장계 내용.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에, “관수가 말한 바로 말미암아 경접위관을 미리 차출하는 일로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는데, 방금 차왜의 사정을 몰래 탐지하니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와 두 왜인이 서로 시샘하여 틈이 있어서 매우 불화한데, 다이라 나리수케의 뜻으로는 이번에 만약 콘젠도우[權現堂]의 일이 성공하면 그가 홀로 그 공을 차지할 수 없다고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후일을 기다린다고 운운하면서 드러내어 재촉하는 기색이 있으며,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는 계미년 통신사를 호송하여 나왔을 때 수령 접위관이 접대하였는데, 다이라 나리다카의 접대에 이미 전례가 있고 다이라 나리수케 또한 오래 머물지 않는다면 관수왜가 말한 바를 한결같이 따를 필요가 없으니, 동 접위관을 수령 가운데서 최선으로 선발하여 정하는 일로 본도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편의대로 접대할 계획이고, 서계 가운데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라 적어 넣었거늘,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번

통신사의 행차를 호송할 때 이 두 왜인이 공로가 많기로 관백이 미토모[源]자로 성을 하사하였다고 하기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로 장계하였는데, 동 접위관을 본도 수령 가운데서 차출하여 정하여 접대하는 일을 행하하도록 첩정하였기 때문에, 접위관 양산군수 김왕(金迺)을 차출하여 전례대로 접대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였다는 일로 치계한 일임.

병신(1656) 2월 23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통신사 일행을 호송한 차왜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2명, 원성부(源成扶)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0명 등에 대한 차례를 차례대로 전례의 의거하여 배푼 뒤에 예조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4통 등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와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 등은 모두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가 장차 도주가 될 사람으로서 통신사를 수행하여 나왔으니, 별도로 역관을 보내어 위문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지급하는 예단도 도주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에게는 비록 전례대로 내려 보내더라도 요시자네에게는 특별히 추가하여 보냄으로써 조정에서 특별히 유념하여 후하게 보살핀다는 뜻을 보여 준다면 요시나리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간청하며 이야기하였고, 미토모 나리수케는 도해역관을 내려 보내기를 기다려서 호송하여 갈 것이며, 미토모 나리다카는 회답서계가 내려오는 즉시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고, 통신사가 가져간 별서계(別書契)에 대한 이야기는 별지에 감봉하여 계달하는 일로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미토모 나리다카 등이 다이라 요시자네는 장차 도주가 될 사람인데 통신사를 따라 나왔으니 별도로 역관을 보내어 위문하지 않아서는 안되고, 예단도 특별히 추가하여 보내달라고 운운하였는데, 다이라 요시자네가 장차 도주가 되면 별도로 역관을 보내어 한 번 위문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은데, 이미 전례가 없으니 짐짓 흥희남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상세히 규례를 물은 연후에 품지하여 확정하며, 미토모 나리다카에 대한 회답서계는 승문원에 명하여 급히 말을 만들어 지어 내어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2월 23일 동부승지 신 채(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병신(1656) 4월 초9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차왜 미토모 나리미치[源成倫]는 전에 독한 종기로 앓았는데 이제

까지 차도가 없기에, 그에게 행할 재차의 잔치는 전례대로 숙설(熟設)¹⁷⁶로 들여 달라 하였기로, 그가 원하는 바대로 초4일에 동 차왜 미토모 나리마찌 및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1명 등에게 배풀 잔치 음식과 잡물을 전례대로 숙설로 들여 주었고, 해조에서 증명하여 지급하는 예단 잡물도 또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다는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병신(1656) 4월 22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차왜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가 말하기를, ‘통신사 세 사신에게 도주(島主) 및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가 회례 예단으로 보낸 물건을 받아 올려 보내 달라’고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통신사가 받지 않은 물건을 이제 받을 수가 없다’고 타일렀고, 해조에는 ‘어떻게 조처할지 확정하여 분부하여 달라’는 일로 첩정(牒呈)하였는데, 해조의 회관(回關) 내용에 ‘본부에서 장계를 올려 조처함이 적합하다’고 하였는바, 굳이 거절하여 받지 않으면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가 반드시 도로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니 어떻게 조처할지, 해조에 명하여 다시 상의하여 품의 조처하여 지휘하여 주시고, 또한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와 미토모 나리미찌[源成倫]가 가져 갈 회답서계를 재촉하는 사연을 해조에 논보하였는데, 동 차왜 등이 돌아갈 기일을 재촉할 뿐 아니라, 접대 비용이 헤아릴 수 없으니, 미토모 나리다카와 미토모 나리미찌가 가져갈 회답서계를 해조에 명하여 먼저 속히 내려 보내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 도주 및 다이라 요시자네가 보낸 통신사의 예단 물건에 대해 동래부사가 전번에 본조에 이문하였거늘, 장계하여 확정하라고 회이(回移)하였더니, 이 물건을 처치함에는 본디 전례가 있으니 이전대로 올려 보낸 뒤에 품의 조처하며,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 등의 회답서계는 비변사에서 이제 방금 조처를 의논하고 있으니 그것이 완료된 뒤에 내려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4월 23일 우부승지 신 성(成)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병신(1656) 5월 19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예조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에, 이제 이번 도주(島主) 및 다이라요시자네[平義眞]가 보낸 통신사 예단 물건에 대하여 지난번에 동래부사가 본조에 이문(移文)하였

176) 숙설(熟設) : 음식을 익혀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요리 차림.

거늘 장계대로 확정하여 회이하였는데, ‘이 물건의 처치는 본디 전례가 있으니 이전대로 올려 보낸 뒤에 품의 조처함이 어떠할지?’ 라고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하셨던 일이기도, 계하한 내용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즉시 훈도 이형남(李亨男)과 별차 원장립(元章立)¹⁷⁷⁾ 등에게 명하여 동 예단의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한편으로 베껴 내어 오며, 한편으로 간품(看品)하여 받아서 올려 보내라는 뜻으로 차왜 원성부에게 급급하게 확정하여 분부하였는데,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가 이달 초5일부터 아랫배[小腹] 아래에 갑자기 큰 종기가 생겨나 증세가 위중하여 바야흐로 생사간에 있기로, 동 도주 및 번마수(幡磨守)가 통신사 세 사신에게 보낸 예단을 받아 올리지 못하며, 만약 회답하는 일이 있다면 날짜를 지연할 수 없겠기로 특별히 훈도에게 명하여 왜관으로 들여보내어 탐문하게 하였더니, 동 예단 물목(物目)만 적어 보여주었다고 가져 왔거늘, 동 물목을 베껴 적어 해조로 먼저 올려 보내고, 보내 온 잡물을 추후에 받아 해조로 올려 보낼 계획이며, 미토모 나리수케는 다른 차왜에 비길 것이 아니고, 두 나라 사이의 일을 주관하는 왜인이 이렇게 병세가 위중한 바, 전례대로 약물(藥物)을 갖추어 지급하여 치료하여 주시며, 이달 14일 도부한 부산첨사 유(兪)의 치통 내용에, 훈도 등의 수분 내에 왜관에 머물던 대관(代館)이 거느린 왜인 1명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거늘, 저쪽에서 당일 왜관 뒷산에 묻어두었다는 수분이기도,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177) 원장립(元章立, 1607-?) : 원주원씨로 자는 회경(希卿)이다. 효종 2년(1651)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직장(直長)을 역임하였다.

편집위원

위원장 강대민 (경성대학교 교수)
위 원 김동철 (부산대학교 교수)
박은경 (동아대학교 교수)
김강식 (동서대학교 교수)
황경숙 (부경대학교 교수)
홍연진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국역위원

자료해제 김동철 (부산대학교 교수)
자료번역 정경주 (경성대학교 교수)
감 수 이원균 (전 부경대학교 교수)

釜山史料叢書 20

國譯 通信使臚錄 (I)

발행인 강창석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집·교열 부산광역시사편찬분과위원회
발행일 2013년 8월 31일
인쇄 대훈기획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76-10
I S B N 978-89-964675-0-2(세트)
979-11-85308-00-5

비매품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전화 051) 888-4122, 팩스 051) 888-4129

자료검색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www.bssisa.com)